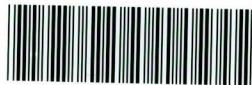


파주시향토사자료집

坡州實錄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파주 관련 사료 -

G&G PAJU 파주시중앙도서관



AM033521

파주시 · 파주문화원

ও

ପ୍ରାଚୀ

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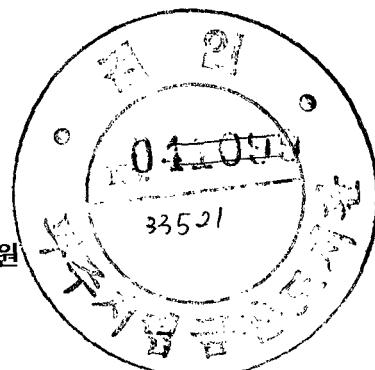
911.53

파76호

파주실록

조선왕조실록이
수록된 '파주' 판권

사료-



파주시·파주문화원



발간사

파주는 예로부터 문향(文鄉)으로 일컬어지며, 선사시대의 고인돌 유적지로부터 삼국시대의 성터 유적, 보물로 지정된 고려시대의 용미리 석불, 조선시대의 향교와 서원 등 수많은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을 간직해온 문화유적의 보고(寶庫)이며, 대현 이율곡 선생, 우계 성흔 선생, 방촌 황희 선생, 윤관 장군 등 우리 민족의 역사를 빛낸 뛰어난 선현들을 배출한 역사의 고장입니다.

선대들의 빛나는 역사적·문화적 전통의 계발과 전승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선대의 문화유산을 가꿔 후대에게 전해주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주어진 임무임을 생각할 때 올바른 향토사의 정립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01 지역문화의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향토사료집 『파주실록』을 발간하게 됨은 매우 뜻 깊고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파주실록』은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기록된 파주지역 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분야별로 정리한 책으로 조선시대 파주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파주실록』이 조선시대 파주의 역사와 선현들의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귀중한 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더불어 새로운 향토문화 창달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파주문화원장 신춘범

축간사



파주 향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파주실록』의
발간을 온 시민과 더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파주는 지리적으로 고려시대의 도읍지인 개성과 조선시대의 도
읍지인 한양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율곡 이이, 방촌 황희, 우계 성훈,
목재 윤관 장군 같은 위대한 선현과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역사와 문향의 고장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내용의 풍부함과 기록의 정확성 등에서 세계 최고
의 실록으로 평가받고 있는 역사서로서 파주에 관련된 수많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파주관련 사실(史實)들을 연혁, 사회, 경제, 전란 그리고 외교, 인물, 유적으로 구분하며 우리고장 선현들의 자취와 혼을 알기 쉽게 살펴 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책이 학문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문향 파주의 친란한 역사문화 사료로 길이길이 후손들에게 읽혀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파주실록』을 발간하는 데 애써오신 신춘범 파주문화원장님
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파주시장 송달용



축간사

파주의 지난 500년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향토사 자료집 『파주실록』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번 『파주실록』 발간의 위해 애써 노력해 주신 신춘범 파주문화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며, 노고를 치하합니다.

『파주실록』이 근간으로 삼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조 470여 년 역사를 기록한 자료로 가장 오래되고 방대한 양의 역사서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그 역사기술에 있어 특히 진실성과 신빙성이 높아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세계적으로도 귀중한 역사 기록물입니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의 파주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파주 역사서 『파주실록』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즉, 파주와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 파주의 생활상, 시대적 상황, 지역특성 등을 쉽게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파주실록』은 파주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역사 기록물로서, 앞으로 향토사 연구자료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매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파주실록』 발간을 축하드리며, 파주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재창

축간사



문향의 고향 파주의 조선시대의 역사를 시민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향토사자료집 『파주실록』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해 오면서 인류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후세에 물려주어 새로운 문화창달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금번 발간되는 『파주실록』을 통해 조선시대 파주인들의 생활사를 살펴보면서 우리 지역의 향토 역사 문화창달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인들이 대대로 지켜왔고 앞으로 우리가 대대로 가꾸어 나가야 할 우리 파주에 대한 사랑의 정신과 역사의식이 시민여러분의 마음속에 움를 수 있도록 많은 시민에게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를 읽으면서 바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이 ‘우리 파주는 과연 어떤 곳인가?’를 일깨워 파주의 정체성(正體性)과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얘기해 주는 책으로 시민 모두가 적극 참여하는 전원·문화·관광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정신적인 길잡이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파주실록』이 발간되기까지 많은 애를 써주신 신춘범 파주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파주시의회의장 이하용

ଓ

ପ୍ରାଚୀ

일러두기

1. 관련기사의 발췌는 전산 입력된 조선왕조실록 CD-Rom을 활용하였고 내용에 따라 문장과 번역문 일부를 수정하였다.
2. 기사의 내용별 분류는 몇 차례에 걸친 수정과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하였는데 지역적인 특성과 기사의 분포 정도를 고려하여 연혁, 사회상, 경제상, 임진왜란·병자호란과 파주지역, 외국 사신들이 오가는 길목에 있는 파주, 인물, 유적 등으로 나누었다.
3. 분류된 각각의 기사에는 내용에 따라 임의로 적당한 제목을 붙였다.
4. 가능하면 한자는 풀어썼으나 인명과 지명은 팔호 속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5. 어려운 한자 단어나 용어는 어휘에 맞도록 한글 문장으로 풀어쓰고, 고유명사나 관용어는 한자를 밝히고 간략한 해설을 덧붙였다.
6. 수정실록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는 삭제하였다.
7. 파주 관련기사로 검색이 되었다고 하더라고 파주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고, 중략된 부분은 ‘...’로 표시하였다.
8. 관리들의 이동상황이나 재해상황 등과 같이 기록내용이 간략하거나 아주 짧은 경우 별도의 표로 작성하여 해당 장 앞부분에 제시하였다.
9. 검색된 내용의 연대별 색인을 책의 끝부분에 첨부하였다.

차례

일러두기 · 7

제1장 파주의 연혁 ━━━━━━━━━━━━━━━━ 11

1. 제도 개편 · 11
2. 지리 · 14
3. 군사제도 · 17
4. 파주에 왔던 관리 · 33

제2장 파주의 사회상 ━━━━━━━━━━━━━━━━ 69

1. 고변, 참서 · 69
2. 살인, 절도 · 72
3. 강상죄 · 80
4. 금표 · 94
5. 전염병 · 97
6. 자연재해, 이변 · 108

제3장 파주의 경제상 ━━━━━━━━━━━━━━━━ 109

1. 농업 · 109
2. 조세 · 115
3. 구휼 · 117

제4장 임진왜란·병자호란과 파주지역 ━━━━━━━━━ 131

1. 임진왜란과 파주 전투상황 · 131
2. 명나라 군사의 주둔 · 138
3. 파주산성 · 150

제5장 외국 사신들이 오가는 길목에 있는 파주 ━━━━━ 161

1. 명의 사신들, 그리고 파주 · 161
2. 청파의 외교 · 175

제6장 파주의 인물 ━━━━━━━ 177

1. 청백리, 충신 · 177
2. 효자, 효부, 열녀 · 240
3. 파주에 머문 사람 · 243

제7장 파주의 유적 ━━━━━ 249

1. 행궁 · 249
2. 순릉 · 254
3. 공릉 · 256
4. 영릉 · 258
5. 장릉 · 263
6. 희릉 · 275
7. 소령원 · 286

파주실록 연표 · 293

찾아보기 · 313

ଓ

ପ୍ରାଚୀ

제1장 파주의 연혁

1. 제도 개편

□ 봉성현을 서원군으로 승격시키다

<태조 2년(1393) 11월 6일> 봉성현(峰城縣)을 승격시켜 서원군(瑞原郡)으로 삼았다.

□ 경기도를 좌우도로 나누다

<태조 3년(1394) 6월 23일> 도평의사사에서 경기도의 각 고을을 쇠하고 성한 정도, 그리고 넓고 좁은 것에 따라 좌우도(左右道)로 고치자고 청하였다. 이에 장단(長湍), 파평(坡平), 현주(見州), 사천(沙川), 포주(抱州), 풍양(豐壤), 서원(瑞原), 행주(幸州), 심악(深岳), 한양(漢陽), 부원(富原), 과주(果州), 철원(鐵原), 영평(永平), 승령(僧嶺), 삭녕(朔寧), 적성(赤城), 임강(臨江), 마전(麻田), 송림(松林), 연주(漣州), 고봉(高峯), 교하(交河), 금주(衿州), 양천(陽川), 남양(南陽), 안산(安山), 인주(仁州), 토산(土產), 안협(安峽)을 좌도에, 개성(開城), 강음(江陰), 해풍(海豐), 배주(白州), 연안부(延安府), 평주(平州), 재령(載寧), 강화(江華), 진강(鎮江), 하음(河陰), 교동(喬桐), 서흥(瑞興), 우봉(牛峯), 신은(新恩), 협계(俠溪), 수안(遂



『대동여지도』 파주 부근

安), 곡주(谷州), 부평(富平), 동성(童城), 통진(通津), 수안(守安), 김포(金浦), 덕수(德水)를 우도에 소속시켰다.

□ 교하·심악·석천을 합쳐 교하감무라 하다

<태조 3년(1394) 9월 28일> 심약·교하·석천(石泉)의 세 고을을 합하여 교하감무(交河監務)라 하였다.

□ 교하현을 없애 고양과 원평에 나누어 소속시킬 것을 건의하다

<세종 17년(1435) 7월 22일> 경기감사 성개(成槩)가 아뢰기를, “지금 이조에서 교명(敎命) 받은 바에 의하여 도태시킬 만한 주현(州縣)을 조사하여 아립니다. … 一. 임강과 장단은 거리가 매우 가까우니 합쳐서 하나의 군(郡)으로 만들고 읍은 중앙에 두되 사신을 접대하고 군사를 내는 등 의 일은 원평(原平)과 고양(高陽)의 예(例)에 의거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一. 교하현은 고양과 원평에 끼어 있어 형세가 굽은살[贅肉]과 같으며, 남쪽으로 고양과의 거리가 일식경(一息頃. 약 30리)이요, 동쪽으로 원평과의 거리가 일식경이니, 마땅히 교하현을 혁파하여 고양과 원평에 나누어 소속시킬 것이 어떻겠습니까” … 하였다.

이에 상이 이조에 명하여 내려서 의정부와 각 조(曹)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 교하현을 원평에 소속시키다

<세종 17년(1435) 12월 17일> 이조에서 아뢰기를, “경기의 … 임강·마전·장단과 양주 관할 내의 교하·임진·고양 등 고을은 원평부에 옮겨 소속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양주진에 속한 교하

<세조 3년(1457) 10월 20일>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지(傳旨)를 받들어 제도(諸道)의 중의(中翼)·좌익(左翼)·우익(右翼)을 혁파하고, 양탁(量度)하였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거진(巨鎮)을 설치하여, 소속된 바의 모든 고을을 마감하여 계문(啓聞)합니다. … 경기의 경우 양주진(楊州鎮)에는 연천·마전·적성·원평·교하·고양·수평(水平)·포천·가평을 속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자성왕비의 고향인 원평부를 승격시켜 파주목으로 삼다

<세조 5년(1459) 10월 2일> 자성왕비(慈聖王妃)의 고향이라 하여 원평부를 파주목(坡州牧)으로 승격시켰다.

□ 장단의 한 면을 파주에 소속시키다

<인조 14년(1636) 3월 27일> 장단의 한 면(面)을 파주에 소속시켰다. 장릉(長陵)이 파주에 있는데, 경계가 서로 접해 있기 때문이었다.

□ 새 능을 정한 교하현을 군으로 승격하다

<영조 7년(1731) 8월 4일> 임금이 도감당상(都監堂上)을 불러 보았다. 새 능(陵)을 교하에 정했다 하여 본현(本縣)을 승격시켜 군으로 삼을 것을 명하였다.

2. 지리

<세종실록지리지/ 경기 양주 도호부/ 교하현>

◆ 교하현

본래 고구려의 천정구현(泉井口縣)이다. 신라가 교하군으로 고쳤고, 고려 현종 8년(1018)에 양주 임내(任內)에 붙였다. 조선 태조 3년(1394)에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고, 한양(漢陽) 임내인 심악현(深岳縣)과 부평(富平) 임내인 석천향(石淺鄉)을 이에 붙였는데, 태종 14년(1414)에 불필요한 관리는 도태시켜, 교하현과 석천향을 원평부에 붙이고, 심악현을 고양현에 붙였다가, 태종 18년(1418)에 다시 현감(縣監)을 두었다[별호는 선성(宣城)이다].

사방경계는 동쪽으로 고양에 이르기 20리, 서쪽으로 오도성(烏島城)에 이르기 10리, 남쪽으로 한강에 이르기 20리, 북쪽으로 낙하진(洛河津)에 이르기 20리이다.

호수가 590호, 인구가 1,629명이요,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64명, 선군(船軍)이 43명이다. 토성(土姓)은 노(盧)·김(金)·이(李)·옥(玉)·박(朴)이요, 망성(亡姓)은 윤(尹)이다[서울에서 왔다. 한 책에는 전(田)으로 되어 있다]. 심악현의 토성은 이(李)·박(朴)이요, 망성은 전(全)이다[한 책에는 김(金)으로 되어 있다]. 석천향의 토성은 염(廉)·차(車)이고, 망성은 애(夜)·호(扈)이다.

땅은 기름지며, 개간한 밭이 3,956결(結)이다[논이 7분의 4가 된다]. 토의(土宜)는 오곡(五穀)과 조, 메밀, 녹두, 팽, 뽕나무, 삼(麻)이다.

낙하도(洛河渡)는 현 북쪽에 있는데, 도승(渡丞)이 있다.

오도성은 현 서쪽에 있다. 한강과 임진강의 하류가 이곳에서 합친다.

<세종실록지리지/ 경기/ 양주 도호부/ 원평 도호부>

◆ 원평도호부(原平都護府)

서원군(瑞原郡)은 본래 고구려의 술이흘현(述爾忽縣)인데, 신라가 봉성(峯城)으로 고쳐서 교하군의 영현(領縣)으로 삼고, 고려 현종에 양주 임내에 붙였다가, 명종 2년(1172)에 비로소 감무를 두었으며, 창왕 즉위년(1388)에 서원현령(瑞原縣令)으로 고쳤다. 조선 태조 2년(1393)에 현(縣)의 아전과 백성들이 연명(聯名)하여 고하기를, “현이 양도(兩都)의 복판에 있어서 날로 쇠퇴해지오니, 관호(官號)를 올려 구제하옵소서” 하였으므로, 지서원군사(知瑞原郡事)로 승격시켰다.

파평현(坡平縣)은 본래 고구려의 파해평사현(坡害平史縣)인데, 신라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내소군(來蘇郡)의 영현으로 삼고, 고려 현종 8년

(1018)에 장단현(長湍縣) 임내에 불여 상서도성(尙書都省)의 관할로 삼았으며, 문종 17년(1063)에 개성부(開城府)의 직속을 삼았다가, 예종](1106)에 비로소 감무를 두었다. 조선 태조 7년(1398)에 파평(坡平)을 서원(瑞原)에 합병하여 원평군이라 고쳤고, 태종 14년(1414)에 교하현을 혁파하여 이에 불였으며, 15년에 1,000호(戸) 이상이 되어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켰다. 태종 18년(1418)에 다시 교하현감(交河縣監)을 두게 되자, 원평(原平)은 1,000호가 차지 못하므로 다시 군(郡)으로 강등해야 되나, 아전과 백성들이 또 전과 같이 청원하여 그대로 도호부로 삼았다. 파평의 별호는 영평(鈴平)이다.

사방경계는 동쪽으로 양주에 이르기 13리, 서쪽으로 임진에 이르기 10리, 남쪽으로 고양에 이르기 20리, 북쪽으로 임진도(臨津渡)에 이르기 13리이다.

호수가 494호, 인구가 1,316명이요, 군정은 시위군이 17명, 선군이 26명이다. 토성은 서(徐)·염(廉)이요, 차성(次姓)은 애(夜)이고, 촌성(村姓)은 차(車)이다. 파평현의 토성은 지(智)·윤(尹)이요, 망성은 방(邦)·백(白)·파(皮)이다. 인물은 문하시중영평백문숙공(門下侍中鎗平伯文肅公) 윤관(尹瓘)이다[고려 예종 때 사람이다].

땅은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반반 되며, 개간한 밭이 5,325결이다[논이 5분의 2가 좀 모자란다]. 토의(土宜)는 오곡과 조·팥·녹두·메밀·참깨·뽕나무·삼이요, 토공(土貢)은 지초(芝草)이며, 약재는 석창포(石菖蒲)이다 [썩 좋다].

봉화(烽火)가 1곳이니 성산(城山)이요[부(府) 서쪽에 있다. 서쪽으로 임진 도라산(都羅山)에 옹하고, 남쪽으로 고양 소달산(所達山)에 옹한다], 역(驛)이 1곳이니 마산(馬山)이다.

3. 군사제도

□ 임진강 나루에서 거북선과 왜선으로 꾸민 배가 해전연습하다

<태종 13년(1413) 2월 5일> 통제원(通濟院) 남교(南郊)에서 머물렀다. 이날 아침에 세자에게 명하여 조정(朝廷)으로 돌아가도록 하니, 세자가 따라가기를 굳이 청하여 함께 행차하였다. … 임금이 임진도(臨津渡)를 지나다가 거북선[龜船]과 왜선(倭船)이 서로 싸우는 상황을 구경하였다.

□ 교하를 우익에 편성하다

<세조 1년(1455) 9월 11일> 병조에서 아뢰기를, “각도 연해의 요충지에는 진(鎮)을 설치하고 진장(鎮將)을 두어 그 방어를 견고히 하고 있으나, 내륙의 주현(州縣)에는 아직 진을 설치하지 않아서 만약 외적이 침략하여 변방의 진들이 감히 이를 막지 못하게 되면 마구 들어와 짓밟을 것이니 염려스럽습니다. 내륙에도 거진을 설치하고 근방의 여러 고을을 중익(中翼)·좌익(左翼)·우익(右翼)에 분속시키도록 하소서. … 경기의 부평도(富平道)는 그 중익을 부평·인천·양천·금천·고양으로 하고, 좌익은 수원·남양·안산·과천으로 하며, 우익은 김포·교하·통진독진(通津獨鎮)·교동(喬桐)·강화·개성부로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군 무기를 신청하다

<세조 12년(1466) 7월 12일> 병조에서 군기(軍器)를 상정(詳定)하여 아뢰기를, “… 파주·고양·교하·마전·적성 등은 각기 향각궁(鄉角弓) 17장(張), 마전(磨箭) 9부(部), 통전(筒箭) 8부(部), 장창(長槍) 7자루, 중창(中槍) 10자루, 환도(環刀) 17파(把), 궁현(弓絃) 34개가 배당되었습니다. 이상의 군기는 1년에 한 번 제조하는데, 기모(旗髦)는 2년 만에 한 번 제조합

니다. 상공(上貢)하는 수량 외에는 모두 거진(巨鎮)에 보관해 두고, 갑옷과 투구, 징, 북과 나발은 거진에서만 제조하여 바치게 하소서” 하였다.

□ 화살을 맞고도 살아 돌아온 사람

<세조 13년(1467) 7월 27일> … 경기도관찰사 이계전(李季專)과 전라도관찰사 안조(安遬)에게 치서(馳書)하기를, “함길도(咸吉道) 정벌에 종군했던 파주 사람 승계손(承繼孫) 등이 싸움에 나아가 화살을 맞고도 살아서 돌아왔으니, 각각 1년 동안 복호(復戶)해 주고 술과 고기를 내리라” 하였다.

□ 훈련을 평계로 사냥을 시킨다

<예종 1년(1469) 2월 16일> 교하사람 전 훈도(訓導) 현극민(玄克敏)이 봉사(封事) 10여 조를 올렸다. 상이 이를 보고 말하기를, “현극민이 진술한 바는 쓸 만한 데가 있으니 옷 1벌을 내려주어라” 하였다.

그리고 현극민의 말을 쫓아 팔도관찰사(八道觀察使)와 절도사·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에게 유시하기를, “군사를 교련(敎鍊)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일이니 늦추어서도 안되고 또한 노역(勞役)을 시켜서도 안된다. 그런데 간혹 훈련을 평계하여 군사를 모아 사냥을 하는 자가 있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원망을 품고 농상(農桑)이 제철을 잃게 되니, 이제부터 사열과 훈련을 평계하여 군사를 피곤하게 하는 자는 군율로써 처단하라” 하였다.

□ 관속이 부족한 파주

<성종 24년(1493) 5월 28일>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성건(成健)이 상소하여 폐단을 아뢰기를, “경기의 여러 고을 중에서 용인, 진위(振

威), 포천, 양지(陽地), 죽산(竹山), 파주, 고양, 양주, 장단, 영평, 이천, 마전, 양천, 지평(砥平), 적성, 과천, 금천, 교하, 가평, 양성(陽性), 음죽(陰竹) 등의 고을만은 조잔(凋殘)하고 사람이 모자라니, 이 뒤로 관속인은 모두 무시험으로 뽑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허종(許琮)·정문형(鄭文炯)·유지(柳擡)는 의논하기를, “아뢴 대로 시행하소서” 하였다.

□ 불법으로 수행원을 둔 파주 사람 김섬

<중종 37년(1542) 5월 9일> 경기관찰사 신거관(慎居寬)이 수행원을 외람하게 차지한 데 대한 장계를 올렸는데 그 내용에 파주 김섬(金鋗)의 수행원 황다물리(黃多勿里)가 기록되어 있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수행원의 숫자는 법전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사사로이 부탁하여 지나치게 차지해서 군읍(郡邑)에다 늘어놓아 이권을 그물질하는 바탕으로 삼았다. 수령들 역시 나라의 법전은 생각하지 않고 굽혀서 맞아들여 그 때문에 양민들이 모두 사문(私門)으로 돌아가 군액이 태반이나 비어 지탱하지 못할 형세였다. 비록 추고하라는 명이 있었지만 금방 다시 그렇게 되어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재상으로 있는 사람은 추고를 보면 한 것만 요행으로 생각하여 조금도 놀라지 않아 폐습이 끝내 고쳐지지 않았다.]

□ 파주·임진이 무너지면 경성도 위험하다

<광해 10년(1618) 7월 5일> 전교하기를 “경성을 지키려면 반드시 먼저 임진·파주 등의 곳을 방어하여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데 이같이 유유하고 범범하게 헛되이 시일을 보내니 심히 근심된다. 파주·임진을

굳게 지켜 보호할 계책을 다시 더 칙실히 조치하라. 또한 양곡을 쌓아두는 것과 군사를 조련하는 것, 성을 쌓는 것, 성지(城池)를 수리하는 것, 군기를 수입하는 것 등의 일을 아울러 더욱 급급히 상의하여 확정하여 선처할 일을 비변사에 말하라” 하셨다.

□ 파주·임진을 지킬만한 계책을 논의하다

<광해 10년(1618) 7월 9일> 비변사가 아뢰기를, “본사 계사에 답하기를 ‘파주와 임진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파주는 이미 방어사를 보내서 산성을 수축하여 보전하고 지키려는 계책을 시행하고 있고, 임진은 파주 경내에 있어 떨어진 거리가 멀지 않아서 영(營)을 설치하고 방책을 세우려 합니다. 용진(龍津) 같은 데는 온 고을이 텅 빈 나머지 민력(民力)을 나누기가 어려운 까닭에 의외의 사변이 생기면 수원부사(水原府使)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임진에 진주하여 방수하게 할 일을 이미 강구하여 아뢰었습니다. 만약 사기가 급하면 하도 군사들도 모여야 하니 이 군사로 상하의 강단(江灘)을 나눠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임진년의 환란이 반드시 없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감히 아뢸니다” 하였다.

이에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오늘날의 급무는 기율을 엄격히 밝히고 장령(將領)을 잘 선택하는 일뿐이다. 장령을 잘못 뽑고 기율이 엄하지 않으면 본사가 헤아려 처리한 것이 다 헛일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더욱 잘 헤아려 살펴 처리하라” 하였다.

□ 역번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달려나온 파주·교하 군병들

<인조 6년(1628) 1월 7일> 어영청이 아뢰기를, “고양·파주·교하·수원

등 근처에 있는 하번(下番) 어영군과 총융청의 아병(牙兵) 등이 역변을 전해들은 뒤 전령(傳令)이 없었는데도 스스로 나온 사람이 84명입니다” 하였다. 이에 상이 이르기를 “이들이 역변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정성이 매우 가상하다. 경중을 나누어 논상하라” 하였다.

□ 북한산성의 환곡을 파주·교하·고양·양주에 나누어주다

<숙종 39년(1713) 9월 2일> 주강(畫講)에 나아갔다. 지사(知事) 조태채(趙泰采)가 아뢰기를, “북한산성의 환곡을 파주·고양·양주에만 나누어주면 백성은 적고 곡식은 많을 것이니, 교하 또한 똑같이 나누어주도록 하소서” 하였다. 이에 상이 그대로 따랐다.

□ 파주 관내인 장산에 별장을 두다

<영조 30년(1754) 11월 28일> 금위대장 구선행(具善行)이 임진에 가서 살피고 돌아와 형편을 아뢰었다. 상이 말하기를 “산성이라고 일컫기에는 작을 것이다” 하였다. 이에 구선행이 말하기를 “신이 물가를 따라 장산(長山)에 이르러 형편을 두루 살펴보았더니, 참으로 서로(西路)의 요충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토성(土城)을 쌓고 별장(別將)을 두면 좋을 듯한데, 파주 사람들은 다 이곳에 고을을 옮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이에 상이 말하기를 “청석동(青石洞)을 지나면 지킬 만한 곳이 이곳뿐이다” 하였다.

이어서 별장을 두고 돈대와 홍예석문(虹霓石門)을 설치하라고 명하고, 총융사 홍봉한(洪鳳漢)으로 하여금 경략(經略)하게 하였다. 홍봉한은 우선 윤태연(尹泰淵)을 별장으로 차출하여 장공(將功)으로 속죄할 수 있도록 하기를 청하니 상이 그대로 따르고, 또 장산에도 임진의 예에 따라 별장을 두라고 명하였다.

□ 피주 방어사를 의정부에서 추천하게 하다

<영조 42년(1766) 4월 29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 정 홍봉한이 말하기를, “**피주방어사(坡州防禦使)**를 의정부에서 추천하는 일을, 우의정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좌의정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임무를 중하게 함이 마땅하니, 묘당에서 추천함이 가하다” 하였다. 대사헌 한광희(韓光會), 대사간 임준(任鑑)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서울을 방어하려면 피주고을을 혜음령 위로 옮겨리는 상소문

<정조 2년(1778) 7월 20일> 윤면동이 상소를 올리기를 “… 고을을 혜음령 위로 옮기고 양주목사는 고을을 홍복산성(洪福山城)으로 옮기게 함으로써 북한산성을 밖에서 가로막도록 하되, 기영(畿營)에서 총괄하여 통제하게 함으로써 서북쪽을 막아야 합니다. 수원의 병마(兵馬)는 수영(守營)에 예속시켜 동남쪽의 길을 막게 하고, 또 심도(沁都)의 해방(海防)과 더불어 사면을 둘러서 막게 하면서 각 성이 공동으로 지키게 한다면, 인심에 동요하지 않게 되어 서울을 반드시 지켜야 할 곳으로 여기게 되고, 굳게 지키어 근왕(勤王)의 군사나 의사(義士)의 군대를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 하였다.

□ 나룻배를 관리하는 임진의 한 자리를 금위영에 소속시키다

<정조 14년(1790) 12월 24일> … 총융청이 아뢰기를, “임진과 장산이 임무는 비록 서로 다른 것이 없지만 임진은 나룻배를 겸하여 관리하니, 노랑진의 규례에 의하여 이 진으로 바꾸어 차임하면 실로 편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임진의 한 자리는 금위영에 옮겨 소속시킨 후 별장 이하 인원들의 매달 급료 및 각종 지출은 종전대로 시행하게 해야겠습니다. 해

당 진은 곧 본청의 소속인 우영의 파주좌국장(坡州左局將)으로서 이미 떨린 군사도 있고 군량도 있으므로 군제를 고치기 어렵고 군량 또한 관리해야 하므로 겸감목관(兼監牧官)의 규례에 의하여 그 관리 성적을 본 청에서 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규례로 정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파주의 우영을 총융청의 중영으로 개칭하다

<정조 16년(1792) 12월 15일> 총융청의 오영(五營) 제도를 개정하고 관성장(管城將)의 호칭을 별아병천총(別牙兵千總)이라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전교하기를, “수원부사의 관직 제도를 바로잡는 것은 그 일의 중대성으로 보거나 수도 방위의 요새인 점으로 보거나 꼭 바로잡아야 할 일이기에 일전에 우선 별중영(別中營)으로 당분간 부르기로 하교했었다. 총융청 영제(營制)에 있어서도 일정한 명칭이 없어서는 안될 것이니, 수어청 예에 따라 삼영(三營) 제도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성소는 그대로 별도의 한 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가를, 묘당이 병조 판서 또는 총융사를 지냈던 사람들과 상의하여 의견을 모아 초기하게 하라” 하였다.

이때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신이 병조판서와 일찍이 총융사를 지낸 여러 장수들과 상의하였더니 모두들, 수원은 지금 총융사에 통속되어 있지 않으니 총융청의 영은 의당 수어청의 전영·중영·후영 제도를 모방하여 남양(南陽)의 전영과 장단의 후영은 예전대로 호칭하고 파주의 우영을 중영으로 호칭을 바꾸어 삼영 제도를 갖추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어청의 군제(軍制)를 보면 좌별장·우별장이 각기 아병(牙兵)을 거느리고 임시로 오영 군제로 호칭되고 있는데 총융청에도 이미 좌아병천총·우아병천총이 있으니 그 역시 수어청의 좌·우별장 예에 따

라 임시로 오영으로 호칭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관성장을 중부천총(中部千總)으로 호칭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거기 딸린 군대래야 아병 5초(哨)와 승군(僧軍) 300여 명에 불과하여 군인의 총 숫자가 천 명에도 차지 못하므로 그 자체 1개 영이 될 수도 없으니 앞서 말한 중부 천총을 별아병천총으로 고치고 옛날대로 관성소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들 하였습니다. 대체로 이 변통은 군사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호칭을 바꾼 것에 불과한데 수어청 제도가 이미 근거가 되고 있고 장수들의 의견도 서로 다르지 않으니 이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장용청의 후초가 파주에 설치된다

<정조 17년(1793) 1월 12일> 정조 6년(1782) 무예출신(武藝出身)과 무예별감으로 장교를 지낸 사람 30명을 가려서 번을 나누어 명정전(明政殿) 남쪽 회랑에 입직하게 하였다. 그리고 을사년(1788)에 장용위(壯勇衛)라 호칭하고 20명을 늘리니 이것이 장용영이 설치된 시초이다. 정미년(1787)에 처음으로 27명을 두기 시작해서 무신년(1788)에 88명을 증원하여 좌초(左哨)를 만들었고, 신해년(1791)에 우초(右哨)를 늘렸으며, 계축년(1793)에 중초(中哨)를 늘렸다.

기유년(1789)에 5초를 처음으로 창설하였는데, 전초는 진위에 있고 좌초는 양성에 있고 중초는 용인(龍仁)에 있고 우초와 후초는 광주에 있다.

2초는 무신년(1788)에 창설했는데 우초는 고양에 있고 후초는 파주에 있으며, 3초는 을묘년(1795)에 중설했는데 전초는 안산(安山)에 있고 좌초는 과천(果川)에 있고 중초는 시흥(始興)에 있다. 3초는 무신년(1788)에 창설했는데, 전초는 지평에 있고 좌초는 양근(楊根)과 가평에 나뉘어 있고 중초는 양주(楊州)에 있다. 우초와 후초는 을묘년(1795)에 중설했는데,

우초는 양주에 후초는 장단(長湍)에 있다.

상이 또 군대가 있으면 군량이 있어야 하므로 매번 하나의 영(營)을 둘 때마다 백성들이 그 해를 받아, 훈국을 설치하면서는 3년 동안의 세금으로 2필의 포(布)가 생기었고, 금위영·어영청·수어청·총용청을 설치하면서는 보미(保米)와 보포(保布)가 6도에 편만해졌는데, 지금 다시 각 영이 하던 대로 한다면 원대한 도모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었다. 이것이 내영과 외영의 시말이다.

정조 13년(1789)에 현릉원을 옮기고서 옛 원(園) 터는 바로 28년 동안 궁검(弓劍)을 모셨던 자리이므로 차마 황폐해지게 버려 둘 수 없다 하여 파주의 옛 장릉(長陵) 예에 따라 위전(位田)을 백성들에게 경작하도록 허락해주고, 진둔별장(鎮屯別將)을 두어 배봉진이라 칭하여 장용영에 소속 시켜서 별후사파총(別後司把摠)으로 삼고 아병 2초를 두었다.

정조 12년(1788)에 상이 경기도의 산간 백성들이 처음에는 꿩 사냥에 시달렸다 다시 선달에는 맷돼지 사냥에 시달린다는 소식을 듣고는 꿩 사냥과 맷돼지 사냥을 중지시켰다. 그리고 양근 등 네 고을의 수어청 둔전 아병 15초에서 매 초마다 25명씩을 떼어내 초를 만들어 몰이꾼을 대신하게 하고, 양주와 고양에 2초를 설치하고 아울러 둔전을 병사가 있는 고을에 설치하였다. 축령산(祝靈山)과 용문산(龍門山) 두 산을 사냥하는 장소로 삼아 봉산(封山)으로 정하고 팻말을 세웠는데, 그것은 군사를 농사에 붙여 두는 뜻에서이다. 장단·마전·적성도 사냥하던 곳이었으나 세 고을의 경내는 둔전을 설치하기에 합당하지 않아 거기서 가까운 파주에 둔전을 설치하고 군사를 두었다. 이것은 향군(鄉軍)의 시말이다.

□ 총용청의 파주 능행 담당을 면제하다

<정조 21년(1797) 8월 8일> 하교하기를, “무릇 능에 행행하여 하룻밤

을 묵고 올 적에는, 비록 하룻길이라도 군병의 호위와 군병을 담 밖에 배치하는 일을, 서남도(西南道)는 진무영(鎮撫營)과 총융청이 담당하고 동도(東道)는 수어청이 담당하니, 이것은 옛날부터 행해오던 예이다. 근래의 사례로 말하더라도 고양·파주에 갔을 때는 호위와 배치하는 일로 진무영과 총융청의 군병을 대부분 썼고, 광주·이천은 또한 수어청 관하의 군사를 썼다. 그런데 근년에는 일마다 폐해를 줄임이 너무 지나쳐서 일체 모두 면제하였다” 하였다.

□ 파주의 초군을 수어영으로 이속시키다

<순조 2년(1802) 2월 7일> 장용영 철파 별단(別單)

… 별좌사(別左司)의 향군 3초와 별우사(別右司)의 향군 3초 이상 6초 중에 광주 2초는 도로 수어영(守禦營)에 소속시키고, 용인·안산·시흥·과천에 있는 4초는 모두 마땅히 수어영에 도로 소속시켜야 하는데 지금은 네 고을의 군병들이 모두 수원 외영(外營)에 소속되어 있으니, 군제(軍制)를 개정할 동안만 임시로 수원부에 소속시키고, 우사(右司) 향군 5초와 지평·양근·파주·가평 3초는 도로 수어영에 소속시키고, 양주·고양 2초는 도로 본읍(本邑)에 소속시킨다. …

□ 파주의 1개 면을 군대로 편성하다

<영조 40년(1764) 5월 14일> 상이 주강을 행하고, 대신과 비국 당상(備局 堂上)을 인견하였다. 홍봉한이 총융사(摠戎使) 구선복(具善復)의 논계대로 장산의 8돈(墩) 이외에 한두 개의 돈대(墩臺)를 더 설치해서 새로 이속된 파주의 1개 면(面)의 민호(民戶)를 군오(軍伍)로 환정(換定)하여 궐액(闕額)에 보충하고 또 장산과 임진의 두 진영으로 앞뒤로 적을 공격하여 완급(緩急)이 있을 때 방어하는 계책으로 삼기를 청하니, 상이 허락하

였다.

□ 홍봉한이 파주 등지의 수비책을 올리다

<영조 40년(1764) 10월 13일> 영의정 홍봉한이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임진과 장산에 성을 설치하게 된 것은 성상의 결정에서 나온 것이고 신이 실로 명을 받아 그 일을 주관하였습니다. 문루(門樓)와 여러 돈대의 공사가 이미 차례로 끝나고 백성들도 점차로 모여 살고 있으니, 다급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수비의 건에 대해 아직까지도 계책을 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파주는 강 연안 일대에 산이 두루 쌓여 있으므로 비록 성을 쌓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세가 믿을 만합니다. 그 고을 주산(主山)은 고려 때 봉명산성(鳳鳴山城)이었습니다. 지세가 깎아지른 듯이 험준하고 사방으로 옛볼 수 있는 산봉우리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고 정승 유성룡이 성을 고친 다음 서울 후면을 막을 수 있는 영을 만들자고 청하였고, 도원수 권율(權慄)과 순변사 이빈(李賓)이 패잔병을 수습하여 홀로 외로운 성을 보존하여 저돌적인 왜적으로 하여금 감히 날뛰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또 과거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더구나 이 두 진을 이미 설치하였으니 대비가 시급한데 그 임무를 맡길 곳이 본주를 놔두고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지금 별도로 조치할 것 없이 장단의 옛 영을 파주로 옮겨 설치한 다음 수성장(守城將)을 겸하게 하고 임진과 장산 두 진의 별장을 수성 양 별장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평상시에는 두 진관(鎮管)을 본주에 예속시키고 유사시에는 본 고을의 수령이 두 진으로 나가 지키면서 강의 동쪽 여러 고을들의 군사를 소집하여 빙 둘러 지키도록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점의 대비가 적절히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견

고하게 막을 수 있는 계획이 영구히 힘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의 오른쪽 여덟 고을을 둘로 나누어서 고양·교하·적성의 군사는 파주에 예속시키고, 파주는 수원의 규례처럼 이력을 높여주면 군사의 제도가 더욱 갖추어지고 방어가 더욱 공고히 될 것이니, 그 나머지 설치할 것들은 편리에 따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훈련대장 구선행과 총용사 구선복은 모두 일을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계획이 신과 강론을 거치지 않고도 같았으니, 신의 이 말은 신 혼자만의 견해만은 아닌 것입니다. 원하건대 하순(下詢)하시고 재량하여 처리하소서” 하였다. 상이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는데, 신하들도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비답하기를 “지금 경의 차자를 보니 조목 조목 열거한 사안들이 적절하였다. 문관과 무관이 교차(交差)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되 대신에게 문의함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 파주를 서울의 4보(輔) 중 하나로 삼으라는 상소

<정조 9년(1785) 7월 26일> 유학(幼學) 조익(趙翼)이 상소하기를, “… 서울 군문(軍門)에 있어서는 오영을 설치한 것은 오위(五衛)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어청과 총용청 두 영에 있어서는 한갓 실상이 없는 장부(帳簿)만 가지고 있으므로 나라의 큰 해가 되고 있으니, 이 두 영을 폐지하여 남한산성(南漢山城)은 광주부윤(廣州府尹)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북한산성(北漢山城)은 관성장(管城將)에게 전적으로 위임할 것입니다. 수원·광주·양주·파주를 서울의 사보(四輔)로 삼아 장초(壯哨)와 아병을 양주·광주·파주의 세 고을에 나누어 친병(親兵)으로 삼는다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하였다. 비답하기를 “아뢴 바는 근거가 있고 채용(採用)할 말이 많이 있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 장용영이 새로 정한 향군절목

<정조 12년(1788) 7월 19일> 장용영이 새로 정한 향군절목(鄉軍節目)을 올렸다. 절목에 아뢰기를 “… 수어청의 둔아병 3초를 물이꾼으로 환정(換定)하고 해당 청의 둔전을 항둔(餉屯)과 상환하여, 아병의 신미(身米) 및 둔세(屯稅)의 부족분을 모두 급대(給代)하게 하였습니다. 급대할 수효를 아래에 개록(開錄)합니다. …

—. 지금 이 군병 3초 안에서 154명은 지평, 50명은 양근, 50명은 가평, 127명은 파주에 있는데, 이들을 합하여 초를 만들고 뽑힌 군정(軍丁)은 아무 고을의 보인(保人)이거나 한정(閑丁)을 막론하고 모두 수어청에서 줄인 둔아병의 수에 따라 환정하였습니다.

—. 수어청은 125명을 1초로 하였는데, 본영은 127명을 1초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매 초마다 부족한 수를 합하면 6명이 되는데, 지평과 파주에서 각각 2명씩, 양근과 가평에서 각각 1명씩을 순영(巡營)의 기수보(旗手保) 등 가벼운 역(役)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편의에 따라 수를 채우도록 하였습니다. …

—. 장단·마전·적성 등 고을의 사냥을 하는 곳에는 군대를 두어야 마땅하나, 세 고을의 경내에는 이미 둔전할 만한 곳이 없으므로 그곳과 가까운 파주에 둔전을 설치해 군대를 두기로 하고, 외군(外軍) 3초 중에 2초는 동쪽 산골 세 고을에서, 1초는 파주의 동쪽과 서쪽에서 뽑아 정하도록 지금 이미 단속하였습니다. 파주 운천면(雲泉面)에 있는 방영(防營)의 둔전토(屯田土) 실수(實數) 30결 54부 6속인 것을 본영에 이속시켜 적당히 헤아려 세액 총수를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 하였다.

□ 파주의 둔토를 군역청에 소속시키다

<순조 2년(1802) 9월 12일> 비변사에서 말하기를, “장용영을 철파한

뒤에 돈·곡식·무명·베, 둔토·군기·공해(公廝)를 이속하고 군병(軍兵)을 접제(接濟)하는 것과 호조·내수사 각 아문(衙門)의 노비공(奴婢貢) 급대를 조처하는 방도를 각각 별단(別單)을 갖추어서 올립니다” 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둔토를 구처하는 질(秩), 장연(長淵)·광주·가산(嘉山)·고성·영유(永柔)·공주·이천(伊川)·용강(龍岡)·음죽·파주의 둔토는 군역청에 소속시키고, 과천의 둔토는 노량진에 소속시키고, 배봉의 둔토는 해당 목관(牧官)에 소속시킨다.”

□ 이양선 출몰에 대비해 파주에도 진을 치다

<고종 3년(1866) 10월 15일> … 8월 16일에 2척의 서양배가 남쪽 바다로부터 곧바로 경강에 침입하여 사흘 밤을 묵고 돌아갔는데 말이 서로 통하지 않아 사정도 알 수 없었고 거동에 대해서도 따져볼 수 없었다. 그들은 제멋대로 오가다가 9월 6일 크고 작은 서양배 30여 척이 또 경기 일대에 들어와 부평부(富平府) 앞바다에 정박하기도 하고 혹은 강화부의 갑곶진(甲串津)으로 곧바로 들어가 망루(望樓)를 파괴하고 공해를 불태워버리고 백성들을 살해하고 소와 기축들을 약탈하였으며 사고(史庫)에 있는 책들을 배로 실어 가는 등 모두 약탈하여 갔다.

이어 우리는 순무사(巡撫使) 이경하(李景夏)로 하여금 수도를 엄격히 방어하게 하였고, 선봉중군(先鋒中軍) 이용희(李容熙)는 통진부(通津府)에 진을 치고, 좌선봉장(左先鋒將) 정지현(鄭志鉉)은 제물진(濟物鎮)에 진을 치고, 우선봉장(右先鋒將) 김선필(金善弼)은 부평부에 진을 치고, 유격장(遊擊將) 한성근(韓聖根)은 문수산성(文殊山城)에 진을 치고, 유격장 양현수(梁憲洙)는 정족산성(鼎足山城)에 진을 치고, 유격장 이기조(李基祖)는 광성진(廣城鎮)에 진을 치고, 총융사 신관호(申觀浩)와 소모사(召募使) 이원희(李元熙)는 양화진(楊花津)에 진을 치고, 소모사 정규옹(鄭圭應)은

서강(西江) 어구에 진을 치고, 어영청중군(御營廳中軍) 권용(權誡)과 경기 중군 백낙현(白樂賢)은 행주 어구에 진을 치고, 양주목사 임한수(林翰洙)는 여현(礪峴) 어구에 진을 치고, 초토사(招討使) 한응필(韓應弼)은 연안부(延安府)에 진을 치고, 방어사(防禦使) 유환(柳完)은 파주목에 진을 치고, 도호사(都護使) 신숙(申肅)은 장단부에 진을 치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격문을 보내 싸움을 벌일 것을 제의하고 약속한 날짜에 살펴보니 적들은 무리를 모두 모아 가지고 포구에 집결해 있으면서 서로 맞붙어 싸움할 생각은 없이 우리 연해와 포구들의 배들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혹은 몰래 문수산성·정족산성 등 여러 성들을 습격하다가 성을 지키는 장수들에 의해 격퇴당하고 말았다.

우리나라에서 무기와 장구류들을 수리하고 벼리기도 하고 전선(戰船)을 수리하였으며 또 삼로(三路)의 수군들로 하여금 힘을 합쳐 공격하게 하였는데 10월 12일에 크고 작은 서양배들은 이어 즉시 제놈들의 무리를 거느리고 외양(外洋)을 향해 퇴각해 갔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적들의 침입을 받은 대략적인 내용이다.

□ 도적의 출몰이 잦은 파주의 혜음령

<고종 28년(1891) 8월 30일> 의정부에서 제의하였다. “지금 경기감사 조병식(趙秉式)의 장계를 보니, 파주목 혜음령(惠陰嶺)에는 나무가 무성하기 때문에 도적 무리들의 출몰이 다른 데보다 심하여 백성들이 안착할 수 없으니 특별히 진영(鎮營)을 설치하여 규찰·단속하도록 묘당에서 지시를 받아 처리하게 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영(嶺)의 좁은 목은 평탄한 육지와는 달라서 도적의 무리들이 숨기기가 쉽습니다. 약탈이 더욱 심한 것은 가끔 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 듣기에 놀라운 일입니다. 직제를 더 내려오는 것은 물론 신중히 할 일지만 만일 찾아내 잡는 데 도움이

되는 방도가 있다면 얼른 승인하지 않고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장계에서 요청한 것은 어디까지나 충분히 생각하고 한 것이니 해당 목사가 토포사(討捕使)를 겸임하도록 비준을 받는 문제를 해당 조에 지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승인하였다.

3. 파주에 왔던 관리

연 대	인 물	직 책	비 고
세종 8년 1월 17일	박 도(朴 篡)	교하현감 부임	
세종13년 12월 19일	허 늘(許 訥)	교하현감 부임	
세종17년 10월 1일	이 평(李 枢)	교하현감 부임	
세종23년 7월 17일	허 와(許 瑀)	교하현감 부임	
성종 8년 4월 17일	송선충(宋善忠)	교하현감 부임	
성종19년 6월 29일	정문창(鄭文昌)	파주목사 부임	
중종39년 5월 17일	안 위(安 瑞)	파주목사 포장	
인조10년 8월 3일	정지경(鄭之經)	파주목사 파직	세를 많이 거듭
인조10년 11월 2일	박 노(朴 篡)	파주목사에서 판결사로	호사(胡使) 접대하기 위함
인조11년 12월 18일	십기성(沈器成)	파주목사 감좌	
명종 2년 6월 20일	이 지(李 芝)	파주목사 부임	
명종 2년 7월 5일	유 숙(柳 淑)	파주목사 부임	
선조20년 10월 27일	황정식(黃廷式)	파주목사에서 의자	연로
선조20년 10월 29일	노 준(盧 塏)	파주목사 파직	동래부사로 있을 때 잘못
선조26년 1월 11일	홍가신(洪可臣)	파주목사 부임	
선조26년 5월 11일	홍가신(洪可臣)	파주목사 부임	
선조27년 12월 22일	홍치경(黃致敬)	파주목사 부임	
선조34년 6월 16일	황 서(黃 曜)	파주목사 부임	
선조34년 12월 29일	권 순(權 恵)	파주목사 부임	
선조35년 1월 6일	권 순(權 恵)	파주목사 부임	
선조37년 9월 26일	김공휘(金公輝)	파주목사 부임	
선조35년 2월 13일	유공신(柳拱辰)	파주목사 부임	
선조37년 6월 19일	허 상(許 鏡)	파주목사 부임	재행(才行)
영조35년 1월 6일	김이형(金履亨)	파주목사 부임	수의(首醫)로서 공
영조40년 10월 19일	원중회(元重會)	파주목사 부임	
영조45년 9월 22일	이윤덕(李潤德)	파주목사 파직	어사 마종 안나감, 공장 안비침
영조46년 1월 12일	장지풍(張志豐)	파주목사 파직	대신(臺臣)에게 하직인사 안함
영조51년 2월 11일	홍화보(洪和輔)	파주목사에서 승지로	
정조14년 9월 10일	박종악(朴宗岳)	파주목사 부임	
정조15년 9월 2일	이민보(李敏輔)	파주목사 부임	
정조19년 8월 5일	서영보(徐英輔)	파주목사 유임	
순조 5년 12월 16일	심공열(沈公燁)	파주목사 감좌	
순조즉위년 9월 21일	김점운(金漸運)	파주목사 감좌	
순조 8년 12월 17일	이인식(李寅植)	파주목사 감좌	

□ 이름을 숨기고 교하수령을 고발하다

<세종 7년(1425) 2월 2일> “… 대개 백성을 억압하고 재물을 긁어모으는 자들이 군현(郡縣)에 늘어 있어, 고혈(膏血)을 짜내고 뼈를 깎아내어 사사로운 욕심을 채운다면, 백성이 부지하고 살 길이 없어 바로 근심과 원성이 있을 것이요, 입으로 그 탐오(貪汚)를 밀하고자 하여도 죄를 두려워하여 말하지 못하면, 드디어 장리로 하여금 편안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욕심을 마음껏 부리게 될 것이니, 백성들의 고통을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지금 경기 교하현의 서원(書員) 정을방(鄭乙方)이 죄에 걸림을 두려워하여 사노(私奴) 두을언(豆乙彦)으로 이름을 고쳐 그 수령 조만안(趙萬安)의 범한 바를 고하여 말하기를, ‘기민(飢民)을 구제할 미곡 30석을 사사로이 매각하여 남용하였고 국고 의창(義倉)의 환상곡(還上穀) 수납을 과중하게 하고는 이를 다시 두량(斗量)하여 따로 저장하였다’ 하였사오니, 그 고소한 바와 같다면 이도 또한 장리인데 고한 자만이 홀로 그 죄를 받는다는 것은 진실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신 등이 생각하건대, 중외(中外)의 관리로서 장오(蠶汚)의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비록 은사(恩赦)가 있어도 그대로 율에 의하여 결단하고 불법 살인에 이르러서는 특사(特赦)의 용서를 받게 되니, 이로써 본다면 장리의 죄는 중하고 불법 살인의 죄는 경한 것입니다. 경한 것은 고소를 허용하고 중한 것은 고소 함을 불허하고 있으니, 법을 쓰는 데 중정(中正)을 잊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중외의 관리로서 만약 관민(官民)의 재물을 착복한 자가 있으면, 모두 고소를 허용하여 탐오를 징계하고 민생을 위로하도록 하옵소서” 하였다.

그러나 상이 말하기를 “이는 급한 일이 아니다. 내가 후일에 친히 너희들을 보고 말하리라” 하였다.

□ 교하현감 재직시 남용한 미곡과 잡물을 소급 징수하다

<세종 10년(1428) 9월 5일>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조만안은 교하현감이었을 때에 미곡(米穀)을 160여 석이나 남용하였고, 또한 관청의 쌀로 소금을 바꾸어다가 억지로 민간에 팔아서 잡곡을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또 기름·쇠·종이·붓 따위의 물건을 민호(民戶)에서 거두어 썼고, 또 한전(閑田)과 관가의 재목을 고득종(高得宗)의 종에게 주고 좋은 말과 바꿨으니, 그가 공적인 것을 병자해서 사적인 영리를 도모하여 포학하게 거둬들여 백성을 해롭힘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시일이 지나서 치죄(治罪)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남용한 미곡과 남에게 증여한 잡물(雜物)은 징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황희에게 땅을 준 현감

<세종 13년(1431) 4월 21일>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교하 백성 김가상(金可像)이 말하기를 ‘박도(朴禡)가 교하현감이 되었을 때 어염세(魚鹽稅)·선세(船稅) 및 관청 안의 초완(草薦)을 남용하였고, 또 일수(日守)와 관노(官奴)를 부리어 재목을 물로 운반하여 농장을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부에서 캐물었으나 박도가 자복하지 아니합니다. 또 관가의 둔전을 황희와 어머니 김씨에게 주었으니, 반드시 그 실상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직첩을 거두고 고문하여 다스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환곡미를 착복한 현감

<세종 28년(1446) 4월 19일> 교하현감 이연손(李延孫)이 환상(還上)을 받아들일 때 되도록 무겁게 하게 하여 대개 3~4석에 한 섬은 남겨 얹었다. 이해 봄에 하삼도(下三道)의 쌀을 옮겨 경기 고을에 진휼하는데, 이연손이 그 쌀은 몰래 집으로 옮겨가고 남긴 곡식으로 그 수량을 채워서

촌민(村民)에게 나누어주었다. 또 남이 일까 두려워하여 사면(四面)의 이정(里正)·이장(里長)에게 당부하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쌀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묻거든, 환곡미를 받았다고 대답하라” 하였다. 이에 백성들이 모두 울부짖었다.

□ 3등급이나 가지된 교하현감

<단종 2년(1454) 3월 9일> 이조에 전지하기를, “… 교하현감 이계기(李啓基)는 청렴결백하고, 백성을 불쌍하게 여겨 폐단을 제거하여, 특히 한 업적이 현저하게 있으니, 3등(等)을 뛰어 가지(加資)하여 그 능함을 표하라” 하였다.

<단종 2년(1454) 3월 11일> … 우현납(右獻納) 조효문(曹孝門)이 본원에 아뢰기를, “… 이계기는 교하현에 나가서 다스린 지가 겨우 두어 해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보고 3등씩이나 뛰어 가지하셨습니까? 세종조 때에는 수령(守令)이 십고십상(十考十上)인 자라야 한 자급(資級)을 뛰어 제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금 이 계기가 만약 6기(六期)를 채우면 또 장차 무엇으로 처하겠습니까?”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현감만의 잘못이 아니다

<세조 3년(1457) 10월 1일> 어찰(御札)을 사헌부에 내려 이르기를, “교하현감 민충원(閔忠源)이 법을 어기어 남형(濫刑)한 것을 숨기고 계달하지 않았다. 다른 지역의 수령들도 필시 남형한 것이 많을 텐데, 감사도 이를 들어 알지 못하였으니 내가 이를 알 리가 없다. 이는 임금이 임금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신하가 신하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인데, 어찌 홀로 교하현감만의 허물이겠는가? 감사의 죄이니 이를 자세히 조사하여 계문(啓聞)하라” 하였다.

□ 노비를 때려죽인 파주목사

<세조 12년(1466) 8월 11일>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전 파주목사 윤훈(尹勸)이 파주의 사노(私奴) 금록(金祿)을 형틀에 매어 가두어 두고는 날마다 악독한 형벌을 가하여 운명하기에 이르렀는데, 때려서 죽인 일을 은폐하려고 민호에게서 베[布]를 거두어 금록의 아내에게 중국 정면포(正綿布) 10필을 주고, 또 금록의 본주인 이열(李列)에게 정포(正布) 2필과 말·소 각 1필씩을 주었습니다.

또 백성 김계중(金繼曾)의 어망(魚網)을 받고, 또 의창(義倉)의 곡식을 거두어 받으면서 감고(監考) 김황(金煌)으로 하여금 벼 1곡(斛. 10말)마다 1두(斗)를 더 거두기도 하고 혹은 벼 1곡마다 2두를 덜고서 쌀 1두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 본읍(本邑)의 목공(木工)으로 하여금 그 형 윤증(尹增)의 집을 짓도록 하고 또 그 형에게 관아의 목재를 주기도 했으며, 기관(記官) 차면신(車勉信)과 도(道)의 품관(品官) 안서(安緒)를 교유(敎誘)하여 거짓으로 금록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말을 꾸며 고(告)하였습니다. 윤훈의 죄는 장(杖) 100대에 도역(徒役) 3년에 해당되며, 준 물건은 관청에서 몰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윤훈은 먼 곳에 유배를 보내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못하게 하였다.

□ 근무성적은 나쁘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교하현감

<성종 1년(1470) 2월 7일> … 교하현감을 체차(遞差)하게 되었는데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박근(朴瑾)이 백성들의 고충을 매우 자세하게 말하였는데, 이는 백성의 일에 유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교하현감에 제수하라” 하였다.

<성종 1년(1470) 2월 11일> 이조겸판서(吏曹兼判書) 한계미(韓繼美)가 아뢰기를, “박근은 전에 영동현감(永同縣監)이 되었다가 파면 당하였고,

뒤에 충주판관(忠州判官)이 되어서 겨우 1년 만에 체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하현감에 제수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체임하소서” 하였다. 또 이극증(李克增)은 아뢰기를, “박근을 다른 직책으로 고쳐 제수하고 교하현감은 다른 사람을 권하소서” 하였다. 그러나 상이 체임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성종 1년(1470) 2월 20일> 교하현감 박근이 하직하니 대왕대비가 인견하고 하교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두 번 수령이 되었다가 모두 체임되었으니 백성을 다스리기에 마땅치 않다고 한다. 그러나 네가 진언(陳言)한 것을 보니 민간의 고충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따라서 네가 폐막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 보내는 것이니, 가서 정성껏 시행하라” 하였다.

<성종 2년(1471) 6월 27일> 교하현감 박근이 근무성적이 나빠 괴출(罷黜)되니 읍인(邑人) 황처량(黃處良) 등이 상언(上言)하기를, “박근은 백성을 자식같이 아끼는 까닭으로 백성들이 모두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사람의 참언(讒言)을 듣고 박근의 성적을 낮게 주어 백성이 모두 실심(失心)하였습니다. 청컨대 박근을 그대로 현감에 두소서” 하였다.

이에 전교하기를 “수령의 직임은 백성을 보호함이 중하거늘, 박근을 폄하(貶下)에 둔 것은 어째서이냐? 관찰사를 불러 묻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관찰사 어세공(魚世恭)이 와서 아뢰기를, “박근은 재질이 본래 잔렬하여 간리(奸吏)들이 두려워함이 없는 데다가 작폐(作弊)한 일이 많은 까닭으로 폄척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성종 2년(1471) 7월 2일> 전 교하현감 박근에게 명하여 본 고을에 그대로 근무하게 하였다. 이에 사헌부 지평(指平) 김수손(金首孫)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교하읍 사람들이 상언하였다고 하여서 박근을 그대로 근무하게 하였으나, 이것은 감사에게 수령의 출척(黜陟)을 위임(委任)하

신 뜻에 어긋납니다” 하였다. 이에 전지하기를, “박근의 사람됨이 비록 용렬(庸劣)하다고 하지만 그의 정사(政事)는 백성들에게 편리한 점이 있었다. 또 감사에게 물으니, 그가 범한 죄는 입기(入己)의 죄가 아니라고 한다. 내가 감사의 성직처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백성들에게 편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파면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김수손이 또 아뢰기를, “가령 박근이 백성에게 알맞게 하였다고 하지만, 이러한 길을 한 번 열어놓으면 후에 박근과 같은 자가 있어서 몰래 자기와 친근한 품관향리(品官鄉吏)를 부추겨서 서로 다투어 상언하게 할 것이니 이러한 조짐을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이에 전지하기를, “박근이 백성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파면하지 않는 것이다. 그밖에 비록 100인이 상언하는 일이 있더라도 어찌 그것을 따를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성종 2년(1471) 7월 5일> 이조에 전지하기를, “전 교하현감 박근이 비록 현감성적이 나빴으나 백성들을 사랑하여 베푸 정치가 있었던 것 같으니 경직(京職)에 서용해야겠다. 그 정적을 백성들에게 자세히 물어서 아뢰어라” 하였다.

□ 체임시 우등을 약속 받은 교하현감

<성종 4년(1473) 9월 26일> 이조에 전지하기를, “… 교하현감 하맹순(河孟詢)은 체임할 때에 우등(優等)으로 높기게 하라” 하였으니, 진휼사(賑恤使) 한명회(韓明渾)의 계달로써 이 명을 내린 것이다.

□ 파주목사 이운의 불법에 대해 국문을 전교하다

<성종 17년(1486) 1월 20일> 홍문관 응교(應敎) 이창신(李昌臣)과 교리(校理) 조지서(趙之瑞)가 명을 받고 여주·파주에 가서 수령의 불법한

것을 살펴 조사하고 와서 아뢰었다. 승정원에 전교(傳敎)하기를, “파주목사 이윤(李倫) 등이 민간에 심은 뽕나무의 수가 관찰사 칠사계본(七事啓本) 수령이 고을을 다스리는 데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일에 관해 올리는 계문)의 수와 같지 않고 군기가 또한 잘 단련되지 못하였으니, 사헌부(司憲府)에 내려 추문(推問)하라. 또 수령의 허위를 감사가 마땅히 조사하여야 할 것인데, 칠사계본에 거짓으로 그 본수를 증가하였으니 매우 옳지 못하다. 감사도 국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 이의무를 교하에 보내어 수령의 부정을 조사하다

<성종 19년(1488) 1월 23일> 홍문관 교리 이의무(李宜茂)를 교하에 보내어 칠사(七事)의 상황을 적간(摘奸)하게 하였다.

□ 교하 등지의 수령의 불법을 아뢰다

<성종 20년(1489) 12월 17일> 전한(典翰) 성세명(成世明)이 경기에서 돌아와서 광주, 남양, 과천, 금천, 교하, 음죽, 풍덕, 고양, 지평, 양성, 진위, 김포, 장단, 마전, 양근, 삭녕 등 17고을의 불법(不法)한 일을 아뢰니, 사헌부에 회부하기를 명하였다.

□ 평계를 대고 제사에 불참한 파주목사

<성종 25년(1494) 6월 19일>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 홍홍(洪興)이 치계(馳啓)하기를, “파주목사 김지동(金智童) 등은 제릉제집사(齊陵祭執事)에게 초상집에 간다거나 병이 있다 하며, 능제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부경사신(赴京使臣) 정괄(鄭括)·김수손(金首孫)이 경상(境上)을 지나니 부리나케 나아가 접대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에 일컬었던 것이 거짓임이 명확합니다. 제집사는 바로 신자(臣子)의 직분인데, 여사(餘事)로 보고

조금도 삼가는 마음이 없으니 법(法)으로써 엄중히 다스려서 뒷사람을 징계시키소서” 하였다. 이에 전교하기를 “김지동을 파출(罷黜)하여 사헌부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라” 하였다.

□ 늙은 파주목사 김원신을 바꾸도록 하다

<연산 6년(1500) 8월 14일> 장령 정인인(鄭麟仁)과 정언 정인겸(鄭仁謙)이 아뢰기를, “… 파주목사 김원신(金元信)은 나이가 많아 수령에 적합하지 않사오니 체직(遞職)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졌았다.

□ 문인에 더 어울리는 장수 여윤철

<연산 10년(1504) 7월 2일> 평안도 절도사 여윤철(呂允哲)이 치계하기를, “지난 6월 26일에 야인(野人)이 침입하여 군사 1명을 죽이고 사람 5명과 소 3마리와 말 2필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병조가 아뢰기를, “여윤철이 방비를 계울리 하여 5~6일 사이에 적이 두 번이나 침입하였으니 잡아와서 국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 하라” 하였다.

여윤철은 일찍이 파주목사로 있을 적에는 백성을 사랑하고 법령을 지켜서 고장 안이 편안하여 옛날 순리(循吏)의 기풍이 있었으나, 변방에 나아가 진수(鎮守)함에는 사졸(士卒)을 어루만지고 방비를 삼가되 한결같이 규칙만 지켜 변통하는 바가 없었으니, 그때의 말들이 ‘윤철은 무인(武人)이기는 하나 장수의 재주는 그의 장점이 아니다’ 하였다.

<중종 4년(1509) 4월 12일> 동지중추부사 여윤철이 죽었다. … 윤철은 판서 여자신(呂自新)의 아들로 청렴근검하였다. 파주목사를 지냈는데 백성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여 영구 앞에 와 제사지냈다.

□ 박영창은 파주수령에 적합지 않다

<중종 4년(1509) 6월 26일> … 대간 간원이 아뢰기를, “파주목사 박영창(朴永昌)은 성품이 본래 망령되고 막되어 백성을 다스리기에 맞지 않습니다. 속히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나이가 많아 파주목사로 부임하지 못한 김약균

<중종 5년(1510) 8월 14일> 대간이 아뢰기를, “파주는 처음부터 피폐하였고 중간에는 목사가 자주 바뀌는 데서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니, 마땅히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약균(金若鈞)은 나이가 70을 지났으니 늙어서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대전(大典)』에 ‘65세가 지난 자를 외임(外任)에 제수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조가 자세히 살피지 못한 것이니 마땅히 속히 개정(改正)해야 합니다. …” 하니,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김약균은 체차하는 것이 가하다. …” 하였다.

□ 입거한 백성이 도망친다

<중종 20년(1525) 12월 10일> 병조가 아뢰기를, “입거(入居)한 사람이 도망하게 되면 관리를 추고하되 그 중에도 심한 자는 파직하는 것이 곧 사목(事目)에 있는 법입니다. 입거는 중요한 일인데 조심해서 방지하고 지키지 않아 도망치도록 하였으니, 성상의 분부대로 먼저 파직하고 추고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였다. 이에 전교하기를, “파주목사 양계벽(梁季璧), 고양군수 신억수(申億守), 양재찰방(良才察訪) 양형(梁炯) 등을 우선 파출하라” 하였다.

□ 가뭄에도 불구하고 파주로 제사지내려 간 경기도사

<중종 24년(1529) 4월 26일> 정원에 전교하기를 “올해에는 봄부터 여름까지 비가 내리지 않아 매우 가물어 내가 일찍부터 걱정하고 두려워하였다. 정전에서 거처를 옮기고 반찬가지수를 줄이며 음악 연주를 중지하는 일이 겉치레 같기는 하나 가뭄을 근심하는 뜻에서는 해야 할 것이다. 억울한 옥수(獄囚)를 심리하여 지체시키지 말 것을 경중(京中)에는 이미 하유(下諭)하였거니와, 또한 각 도에서 한기가 이어할 때가 있으면 기우제(祈雨祭)의 향축(香祝)을 으레 청하여 내려보냈다. 곧 팔도의 관찰사에게 지성으로 빌어서 반드시 비를 얻으라는 뜻을 하유하라. 또 비가 내리는 것과 농사의 형편을 계속하여 치계할 것도 서장(書狀)에 아울러 언급하라. 또 요즈음 경기감사와 도사(都事) 등이 한 일[도사 박광필(朴光弼)이 어머니를 모시고 파주에 제사지내려 가서 재목을 민간에서 내도록 배정하여 제 집을 만들었는데, 감사 김극개(金克愷)가 금지하지 않고 그 고을에 통지하여 도리어 도와서 만들게 하였으므로, 대간(臺諫)이 논계(論啓)하여 모두 파직시켰다]을 보니, 사사로이 백성에게 일 시키는 일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일체 금하라고 각 도에 아울러 하유하라” 하였다.

□ 파주목사 채세걸에게 향표리 한 벌을 하사하다

<중종 25년(1530) 4월 24일> 관찰사 이수동(李壽童)의 장계를 보고 전교하기를, “파주목사 채세걸(蔡世傑)은 옥송 처리는 조심스럽게 하며 요역(徭役)과 부렴(賦斂)은 가볍게 해주어서 이같은 흉년에도 백성들이 고통을 받지 않는다 하니, 예에 따라 포상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세걸은 사람됨이 경박하여 헛된 명예는 높지만 실행은 보잘것없다. 그러나 험학하는 자보다는 역시 나은 점이 있다 하겠다.]

□ 처남의 집을 노린 파주목사

<중종 27년(1532) 6월 13일> 사헌부가 아뢰기를, “… 파주목사 공서린(孔瑞麟) 아내의 형제는 딸 하나 아들 셋이었습니다. 그의 장인 윤승세(尹承世)가 생존했을 당시 장자(長子) 영원위(鈴原尉) 윤내(尹鼐), 차자(次子) 윤정(尹鼎), 차자 윤재(尹鼐) 및 첨자(妾子) 등에게 각각 집 한 채씩 주고 공서린의 아내에게는 윤정이 사는 집 앞의 빙터를 떼어주고 겸하여 집 지을 때 필요한 미포(米布)를 주어서 집을 짓게 하였습니다. 윤정과 공서린은 연결된 담장에 문을 달리 쓰며 각각 자기 집에서 편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윤승세가 죽은 뒤에 공서린이 처부의 문기(文記)를 가지고 윤정의 집을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정이 한성부에 정고(呈告)하자 한성부에서는 문기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공서린에게 넘겨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기는 바로 윤승세가 갑자년 죄를 입었을 때 모두 적몰(籍沒)될까 두려워서 당시 처녀인 공서린의 아내에게 이 재산을 불여준다는 문기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뒤 승세가 면방된 뒤에 집은 윤정에게 주고 빙터는 공서린에게 주었는데, 그 문기를 미처 거두어 없애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서린이 남몰래 이 문기를 숨겨놓고 장인이 살았을 때와 죽은 뒤 3년간은 문기가 있다는 것을 형제간에 숨기고 발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난 뒤 재산을 나눌 때 갑자기 이 문기를 내놓고 윤정의 집을 빼앗으려고 소송을 걸었고 판결 받아 취득했기 때문에 윤정을 돌아갈 곳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승세가 여러 자녀와 첨자에게 모두 집을 주면서 윤정에게만 집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만무한 이치이며, 자기 아들에게는 한 채의 집도 주지 않고서 사위에게만 거듭 두 채의 집을 주었다는 것도 만무한 이치입니다. 공서린과 윤정이 담장을 연결하고 집만을 달리한 것이 각기 장적(帳籍)에 기재되어 있고 살아온 지도 거의 20여 년이 되었으니, 윤정과 공서린

에게 준 것임을 환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몰래 문기를 감추었다가 하루아침에 빼앗아가니, 친척이며 인근 마을 사람들이 모두 욕할 뿐만 아니라 조정에서도 모두 경악하고 더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공서린은 지극히 탐욕스럽고 무례하니 파직시켜 사풍(土風)을 격려하고 윤정의 가옥에 대한 일은 다시 분간(分揀)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에 전교하기를 “… 공서린은 사대부로서 동기간(同氣間)에 쟁송한 것이 이와 같으니, 크게 사풍에 관계된 일이다. 아뢴 대로 파직하고 그 가옥은 다시 분간하게 하라” 하였다.

□ 파주목사 시절 민폐를 끼친 성을

<중종 29년(1534) 12월 17일> 사간원이 아뢰기를 “부평부사(富平府使) 성율(成璵)은 전에 파주목사로 있을 적에 잘못한 일이 많아 백성에게 폐를 끼쳤으니 … 체직시키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파주교수 김응벽을 탄핵하다

<중종 30년(1535) 3월 12일> 사간원이 아뢰기를 “… 전주교수(全州教授) 김응벽(金應璧)은 폐기된 지 이미 오래이니 파주교수(坡州教授)가 된 것도 죽합니다. 마땅히 죄를 뉘우치고 파주교수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멀다고 기피하니 추고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다. 이에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 치세에 공정한 파주목사 심광언

<중종 33년(1538) 11월 18일> 전교하였다. “지금 경기감사 상진(尙震)의 서장을 보니 … 파주목사 심광언(沈光彦)은 조용히 관직에 머물러 있으면서 정도와 중용으로 송사를 처리하니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들이 다

그에게로 나아간다고 하였다. 마땅히 그들에게 포폄을 행하여 권장과 징계의 뜻을 보여야 할 것이다. 심광언에게는 상으로 표리를 내리는 것이 좋겠다.”

□ 늙은 파주목사의 파직을 청하다

<중종 37년(1542) 12월 18일> 사헌부가 아뢰기를, “… 파주목사 이희보(李希輔)는 노쇠하여 전혀 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공채(公債)를 징납하는 일을 하리(下吏)에게 일임시키므로 근거 없이 징수하여 백성을 침해하는 데 조금도 거림이 없습니다. 그 폐해가 백성들에게 미쳐 온 고을에 원성이 들끓고 있습니다. 목민의 직에 합당하지 못하니 파직시키소서” 하였다.

이에 답하기를 “… 이희보가 직임에 있을 수 없는 인물이라면 체직시키는 것이 옳겠으나, 조정의 의논을 들으니 재예(才藝)가 아까우니 파직시킬 필요는 없다” 하였다.

□ 부역을 균등히 한 파주목사 안위

<중종 39년(1544) 5월 14일> 경기도관찰사 홍섬(洪暹)의 서장(書狀)을 정원에 내리고 일렀다. “안위(安瑋)의 행적은 단지 ‘벼슬살이를 법대로 하고 부역을 균등하게 했다’고만 했으니 향표리(鄉表裡) 1습(薦)을 내려라.”

[서장은 다음과 같다. “파주목사 안위 등은 벼슬살이를 직책대로 하고 백성들의 부역을 균등하게 하였습니다. … ”]

□ 치민과 구황을 잘못한 파주목사 안위를 파직

<명종 2년(1547) 6월 7일> 지난번에 사헌부에서 문폐사(問弊使) 김개(金鑑)의 서제(書啓)로 인하여 파주목사 안위 등을 치민(治民)과 구황(救

荒)을 잘못했다 하여 파직하기를 청하였다. 사인(舍人) 정유길이 삼공(三公)의 뜻으로 아뢰기를, “백성 한 사람의 호소로 인하여 갑자기 그 수령을 파직한다면 반드시 폐단이 있게 됩니다. 더구나 경기도의 혹심한 흉년은 근래에 없던 일이며 수령을 보내고 맞는 폐단이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추고하게 되면 그 죄가 저절로 드러날 것이니 아직은 파직하지 말고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문폐사를 파견한 것은 백성들의 폐단을 알고자 해서이다. 이미 이것으로 아뢰었는데 만일 채용하지 않는다면 왜 기어코 문폐사를 파견하였겠느냐?” 하였다.

□ 목사의 행장을 빼앗은 백성들

<명종 3년(1548) 2월 4일> 상이 석강(夕講 : 임금이 신하들과 더불어 저녁 때 글을 강론하는 것)에 나아가자 시독관 정유길(鄭惟吉)이 아뢰기를 “전 파주목사 조세봉(曹世鳳)이 체직되어 돌아올 때 읍민들이 길을 막고 그의 행장(行裝)을 빼앗으면서 말하기를 ‘백성들은 짚어 죽을 지경인데 백성을 구해주지는 않고 이 관물(官物)을 훔쳐서 어디로 싣고 가느냐?’고 하였으니, 이와 같이 경악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파주는 경기도 안이어서 왕화(王化)가 가장 먼저 미치는 곳인데도 오히려 그런 야박하고 악한 풍속이 있는데, 더구나 먼 시골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수령들이 백성을 침략하는 것과 재상이 열읍(列邑)에서 가렵주구하는 것이 이때보다 더 심한 적은 없었다. 그러므로 완악한 백성이 체직되어 돌아가는 수령의 짐을 길에서 빼앗으며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이같은 일이 빈번하였으니 인심과 풍속을 알 만하다.]

□ 봉명직을 사양하는 김수

<선조 16년(1583) 8월 15일> 김수(金暉)가 파주에 도착해서 상소하여 봉명(奉命)의 일을 사양할 것을 청하니, 상이 답하기를 “상소를 보니 그 대 뜻을 충분히 알겠다. 나는 그대를 의심하지 않는다. 승직(陞職)시킨 그 한 가지 일만 보더라도 내 뜻을 잘 알 것이다. 마음놓고 가서 맡은 직무를 다하라” 하였다.

□ 수령의 자리가 빈 피주

<선조 26년(1593) 8월 23일> 사헌부가 아뢰기를, “파주는 대로변(大路邊)에 위치하였고 또 그 잔파(殘破)됨이 혹심한데 수령의 자리가 비어 있는 지가 3~4개월이 되었으니 매우 한심합니다. 새로 부임할 목사 심우정(沈友正)은 빌에 종기가 나서 서울에 있는데 몇 달 안에는 부임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감사는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았으니 경기 감사를 추고하소서. 심우정을 개차(改差)하시고, 일찍이 대간 시종을 지낸 명망 있는 문관 중에서 신중히 골라서 소복(蘇復)의 임무를 맡기소서” 하였다. 이에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리” 하였다.

□ 파주목사 심일휴의 가치를 개정해 달라

<선조 31년(1598) 2월 18일> 사헌부가 아뢰기를, “… 안팎의 군량이 고갈되었는데도 이어댈 방도가 없으니, 특별히 많이 저곡(儲穀)한 우수한 수령은 당상관으로 승급시켜 다른 사람을 권면시키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중 겨우 100여 석을 넘은 자와 겨우 50석이 되는 자에게도 증가(重加)를 제수하고 있어 포장(褒獎)하는 은전이 도리어 중하지 않게 되어버리니 물정(物情)이 모두 불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납곡사목(納穀事目)에 의거하면 쌀 170석을 당상에 제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가(私家)에서 바치는 것도 그 수량이 오히려 이렇게 많은데, 더구나 수령으로서는 관비(官備)한 수량이 이와 같이 적어서야 되겠습니까. 파주목사 심일휴(沈日休) 등을 아울러 개정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다만 수령의 가자에 대한 일은 활법(活法)이 없을 수 없으니 이미 받은 가자를 이제 고칠 수는 없다” 하였다.

□ 중국 관원과 친한 파주 둔전관

<선조 33년(1600) 3월 5일> 대사헌 이유중(李惟中), 장령 박경선(朴慶先)과 지평 윤홍(尹弘)이 아뢰기를, “신들이 파주에 둔전을 설치하고 백성들을 모아 집결시킨 것은 개간을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그네들이 편안히 쉬어가게 함으로써 사신이 오가는 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박내성(朴乃成)이라는 자가 둔전관으로 있으면서 와서 유숙하려는 사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조관(朝官)이나 사자(士子)들까지도 은밀히 중국인을 사주하여 쫓아내고 겁탈하였으므로 공론이 나빠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잡아다가 신문할 적에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 으레 직명(職名)을 묻는 것이고 조관의 경우에는 반드시 아뢰어 의금부로 이송시키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성은 공초(供招)할 적에 둔전관이라고만 하고 자기의 직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부에 그 추안(推案)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에 내리신 분부를 들으니 신들이 살피지 못한 잘못이 크니, 체직시켜 주소서” 하니, 사퇴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 33년(1600) 3월 7일> 영의정 이산해(李山海)가 아뢰기를, “지난 번 파주의 중국 관원 이승총(李承寵)이 비변사에 사람을 보내고 이어 신에게 서신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지금 같혀 있는 박내성을 석방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관원이 요청할 일이 있으면 마땅히 도감(都

監)에게 청해야 하는 것인데, 신에게 서신을 보낸 것에 대해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비변사는 모든 채상(宰相)들이 모이는 곳이고 신이 수좌(首座)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 듯싶었습니다.

신은 실상 박내성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릅니다만 비변사 제상들의 말을 들으니 내성은 군공(軍功)으로 훈련원정이 되었을 뿐 아니라 도총부도사(都摠府都事)도 역임하였으므로 법사(法司)에 가두고 추문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생각컨대, 이는 매우 온편치 못한 처사이기는 하나 대관이 한 것을 지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원의 서신을 통지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계첩(揭帖)을 집의(執義) 문홍도에게 보내고 이어 중국 관원의 의사를 구전(口傳)하였습니다. 이 일의 곤절은 이러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생각컨대 중국 관원이 매우 낮은 사람이긴 하나 그 계첩은 직계(直啓)했어야 했는데 사적으로 문홍도에게 통지하였으니, 처사가 온당하지 못하게 된 잘못이 실은 신에게 있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계첩을 통지한 것은 무방한 일이다” 하였다.

□ 과오를 자책하며 파직을 청하는 지평

<선조 34년(1601) 9월 30일> 지평 김정일(金鼎一)이 아뢰기를, “… 신은 이달 18일 휴기를 얻어 부모를 뵈려 갔었는데, 신의 생각에 ‘대간의 체면은 보통 사람의 행차와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여겼으므로 미리 거치게 될 일로(一路)에 선문(先文)을 띄웠습니다. 그리하여 파주 마산참(馬山站)에 도착하니 목사가 신에게 조반(朝飯)을 제공하였으며, 장단의 본가에 이르니 부사가 양식과 찬거리를 보내왔습니다. 이는 신이 참으로 우매한 나머지 잘못인 줄 모르고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조가 경기감사의 장계에 대한 회계공사(回啓公事)에

‘각 읍이 결단난 이때에 사명이나 공차 인원이 아니면 평상시의 예에 따라 지공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지나간 일이라고는 하지만 음식을 받고 폐를 끼친 죄가 실로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중한 지위를 차지하고 앉아 타인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속히 신의 직을 파직 하소서” 하였다. 그러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 공정성의 시비가 많은 파주목사 이성록을 파직하다

<선조 35년(1602) 2월 12일> 지평 조정견(趙庭堅)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대간의 관직을 설치한 것은 시비를 바르게 하고 공론을 밝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그 직에 있는 사람은 왜곡된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파주목사 이성록(李成祿) 등은 지난번 사헌부에 있으면서 영남 유생 문경호(文景虎)의 상소로 인하여 피험한 당시 대사헌 황신(黃愼)을 처치할 때에 극력 구제하려고 하였습니다. … 거기에도다가 사당(私黨)을 비호할 줄만 알았지 공의는 엄폐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성 혼과 간신 정철까지도 구제하려 하였습니다. 만일 성상께서 그 정상을 통촉하지 못하시어 그들의 말을 행해지게 한다면 시비가 어지러워지고 공도가 어두워져서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성록·조익·민유경 등을 모두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끝없이 거둬들이는 목사

<광해 1년(1609) 11월 17일> 사간원이 연계하여 아뢰기를, “파주목사 이세온(李世溫)은 끝없이 거둬들이고 탐욕스럽고 잔인하여 온 지경이 아우성이며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루라도 관원으로 있어서는 안되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 하니, 답하기를 “이미 유시하였

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전 파주목사 한백겸의 출기

<광해 7년(1615) 7월 3일> 전 파주목사 한백겸(韓百謙)이 출하였다. 사람됨이 단아하였고 마음가짐이 관대하였다. 어려서 행촌(杏村) 민순(閔純)에게 사사받았는데, 역학(易學)에 밝았으며 예서(禮書)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 천거로 벼슬길에 나왔다. 선조조에 중외의 유신(儒臣)들을 불러 모아 『주역전의(周易傳義)』를 교정하게 하였는데, 한백겸은 홍가신(洪可臣)·정구(鄭述)와 함께 그 선발에 뽑혔다. 집에 있으면서는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었으며 여러 차례 주군(州郡)을 맡았는데 순리(循吏)라고 칭해졌다. 광해군 3년(1611) 파주목사에 제수되었는데 폐조(廢朝)의 정치가 어지러움을 보고는 즉시 관직을 버리고 서호(西湖)의 작은 농장으로 돌아가 경전(經典)을 깊이 탐구하다가 출한 것이다.

□ 파주목사가 된 뒤에야 인사를 한 이시발

<광해 10년(1618) 3월 13일> 함께로 연계하기를, “… 이시발(李時發)은 대론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고는 말미를 받아 시골에 내려간 뒤 고의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으며, 서울에 돌아온 뒤에도 머리를 내밀지 않다가 파주목사에 제수된 뒤에야 배사(拜辭)하였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교묘하게 피한 자취가 분명하여 숨길 수 없습니다. … 멀리 유배 보내라고 명하소서. … ” 하니, 답하기를 “알아서 적당히 처리할 것이니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 적의 도강을 방비하지 못한 파주목사의 파직을 청하다

<인조 2년(1624) 2월 12일> 사간원이 아뢰기를, “서로(西路)의 폐군한

장수는 율(律)에 따라 처치해야 하겠으나, 적을 치는 일이 급하므로 그들이 스스로 공을 이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강탄(江灘)의 방수(防守)야말로 방위하는 중책인데, 파주목사 박효립(朴孝立) 등은 적이 아직 강을 건너기 전에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먼저 무너졌으니, 이들을 용서하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파직하소서” 하였다. 이에 상이 답하기를 “패군한 장수를 파직으로 논하는 것은 매우 구차하다” 하였다.

<인조 2년(1624) 2월 14일> 사헌부가 아뢰기를, “명을 받고 장수가 되어 군율을 어긴 자는 죽는 것이 옛 군지(軍志)입니다. … 박효립은 임진의 하탄(下灘)을 방수하다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달아나 무너져서 천연의 참호인 험조한 곳을 마치 평지를 밟아오듯이 건너게 하였습니다. 한교(韓橋)는 부장으로서 적이 강에 다가오기 전에 앞서 달아날 계책을 말하였는데 마을에 숨어 있으면서 행재소에 대죄하지 않고 있으므로 물정이 통분해 합니다. 파주목사 박효립을 군율에 따라 처치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가장 먼저 도망치자고 주장한 파주 초관

<인조 5년(1627) 7월 17일> 총융사 이서(李曙)가 치계하기를, “경기의 도망쳤던 장수와 사졸을 모두 벌할 수 없으므로 그 중 범죄가 중한 자는 충군시키고 가벼운 자는 도삼년(徒三年)에 처할 것으로 이미 계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 … 파주의 장관(將官) 이순온(李純溫)·안신도(安信道) 등은 모두 유식한 양반으로서 도망칠 것을 맨 먼저 주창하였고 체포하여 하자 활을 당겨 사람에게 겨누고 다른 사람의 말을 빼앗아 타고서 현재 도망중에 있습니다. 이들을 잡아 군정을 엄히 하소서” 하였다.

<인조 5년(1627) 11월 4일> 병조가 아뢰기를, “파주 초관(哨官) 안신

도는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흩어져 도망할 것을 앞장서 주창하고서 즉시 도주하였는데 다행히 붙잡았으나 선전관(宣傳官)이 표신(標信)을 가지고 내려가 참형(斬刑)에 처할 즈음에 임하여 본주에서 단단히 가두지 않아 온 집안이 도망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놀랍고 분통스럽습니다. 색리(色吏)는 가족을 모두 변방으로 이주시키고, 목사는 우선 기한 내에 마음을 다해 추적하여 체포하게 한 후에 중죄수를 도망치게 한 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하였다.

이에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기한 내에 잡지 못하면 목사를 붙잡아 국문하여 정죄하라” 하였다.

□ 고을의 여종과 간통한 파주목사

<인조 9년(1631) 6월 17일> 사간원이 아뢰기를, “… 전 파주목사 양귀생(梁貴生)은 몰래 고을 비(婢)와 간통하여 그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이를 본 그 남편이 분을 뜯이겨 관가의 창고에 불을 놓아 수백 석의 곡식을 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목사를 국문하여 죄를 정하고 그 곡식을 모두 징수토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양귀생을 추고하라” 하였다.

□ 파주목사 윤형각의 형벌 남용죄

<인조 25년(1647) 12월 21일> 사헌부가 아뢰기를, “파주목사 윤형각(尹衡覺)은 형벌을 지나치게 사용하여 사람을 죽였으므로 감사가 이미 치계하였는데, 형조에서는 추고할 것으로 입계하였습니다. 어찌 사람을 죽인 죄인을 추고만 하자고 청할 수 있습니까. 청컨대 윤형각은 먼저 파직하고 뒤에 추고하며, 형조의 해당 관리는 추고하고 낭청은 파직하소서” 하였다.

이에 답하기를 “윤형각에 대해서는 그의 함사(減辭) : 서면으로 묻거나

대답하는 말)를 본 뒤 법에 따라 조율하고, 형조의 관리나 낭청은 아울러 추고하라” 하였다.

□ 궁실의 농장 때문에 시달리는 파주 백성들

<효종 즉위년(1649) 11월 16일> 집의 송준길(宋浚吉)이 상소하기를, “… 지금 백성들의 곤란함이 이미 심한 지경에 이르러 밖으로는 제압을 받고 안으로는 믿을 곳이 없으며 천재지변과 괴이한 일이 없는 달이 없습니다. … 시골에 살면서 익히 부로(父老)와 사민(士民)의 논의를 들었는데, 대동법을 시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매우 간절합니다. … 파주는 작은 고을인데 대군(大君)이 농장을 설치하여 부역을 피하려는 백성들이 다투어 달려가고 있는데도 관가에서 감히 호령을 하지 못해 백성들의 부역이 이 때문에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며 궁노(宮奴)들이 교만·횡포하여 소란을 피워 나라 사람들의 말이 자자한데, 아 이 역시 금지시킬 수 없겠습니까. 전(傳)에 이르기를 ‘부자·형제가 족히 법 받은 후에야 백성들이 법 받는다’라고 하였으니, 오직 성명께서는 마음을 쓰소서. … ” 하였다.

□ 국상 중에 술과 고기를 먹은 파주목사

<현개 1년(1660) 2월 29일> 대사간 김수항(金壽恒) 등이 탄핵하기를, “해미영장(海美營將) 이필(李泌)은 일찍이 국상(國喪)의 공제(公除) 전에 파주목사 유탄연(柳坦然)과 공해(公解)에서 대좌하여 보통 때처럼 술과 고기를 먹었으므로 듣는 자들이 모두 놀라며 통분해 하고 있습니다. 탄연은 이미 이 때문에 죄를 받았는데 이필만이 면할 수는 없으니,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차임 규정에 어긋나게 제수한 파주목사

<현종 5년(1664) 1월 12일> 현납 홍주삼(洪柱三) 등이 아뢰기를, “근래 의관(醫官)들까지 읍재(邑宰)로 뒤섞어 제수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청명한 조정의 일대 폐정(弊政)이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후계(鄭後啓)를 처음에 특명으로 남양부사에 제수했다가 곧바로 정청(政廳)이 아됨에 따라 파주목사로 바꾸어 제수하였습니다. 주(州)라 하든 부(府)라 하든 그 경종은 실로 같은 것이고 그의 자급(資級)이 걸맞지 않는 것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사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목사로 옮겨 제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1품(品)의 자급을 수령으로 차임하는 규정은 없었는데 격외로 창시하는 것은 실로 뒤 폐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차(改善)하소서” 하였다. 그러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 관용 물품을 끌어다 쓴 전 파주목사

<현개 5년(1664) 6월 29일> 선혜청이 아뢰기를, “본청의 사목에 각 읍의 관수(官需)를 범삭(犯剝)하여 남용하지 말 것으로 계하하였는데, 파주의 전목사 이정·이경면(李慶綿) 등은 체직되어 돌아올 때 모두 범삭하여 끌어셨습니다. 이정은 사사로이 쓴 것은 아니니 먼저 파직한 뒤에 추고하고, 이경면은 사사로이 썼으니 잡아다 추문하여 죄를 정하소서” 하였는데, 이를 따랐다.

□ 민폐를 끼친 파주목사 유정을 파직하다

<현개 7년(1666) 2월 13일> 집의 이유(李祐) 등이 아뢰기를, “파주목사 유정(柳廷)은 관직에 있으면서 일 처리를 멋대로 하였습니다. 본주의 관사를 중수할 때 선혜청에서 예산에 의한 쌀을 지급해 주자 스스로 힘

써 일해보겠다고 하고서 본청에 돌려보냈습니다. 적곡을 분급할 즈음에 농민이 관문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자를 이름에 따라 호되게 부려 여러 날 동안 지체시켜 놓으니 백성들이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본주에서 부역을 면제시켜 주는 일에 이르러 매결마다 12두로 거두는 잘못된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숙(稅赦)을 줄여주는 날이 되자 10두를 민간에 대신 내게 하니 원망이 날마다 심하고 사람들의 말이 자자하니 이와 같이 기능을 과시하면서 원망을 모으는 사람을 하루라도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여 거듭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쳐서는 안됩니다.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누차 아뢴 뒤에야 따랐다.

□ 청렴치 못한 파주목사 박유동의 파직을 청하다

<현종 8년(1667) 11월 8일> 사간 여성제(呂聖齊) 등이 탄핵하기를, “파주목사 박유동(朴由東)은 청렴치 못하다는 비난이 많습니다. 그의 장모의 상을 치르면서 부의(賻儀) 물품이라고 하면서 마을에서 수십 석을 억지로 거두어들였습니다. 파직하소서”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 경기도 어사 김만중의 파주목사 평가

<현종 12년(1712) 11월 1일> 경기도어사 김만중(金萬重)이 서계하기를, “전 파주목사 홍무(洪茂) 등은 진휼의 정사를 신중히 보지 않았고, 파주목사 이보(李葆)는 직무를 신중히 보아서 칭찬이 높았습니다” 하였다. 이에 상이 이보는 진휼의 정사를 잘하여 자급을 높여주었다 하여 보류하고 홍무는 모두 먼저 파직한 뒤에 추고하라고 하였다.

□ 치적도 없이 승진한 파주목사

<숙종 38년(1712) 11월 10일> 지평 김상옥(金相玉)이 상소하여 시사

(時事)를 논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근년 이래로는 공도(公道)가 날로 없어지고 여행을 노리는 길이 크게 열려 하나의 초사(初仕) 자리나 읍재(邑宰) 자리가 비면, 부정한 연줄과 옆길로 청탁이 몰려들며 제목(除目)이 나오기도 전에 물색(物色)이 먼저 정해집니다. 수재(守宰)가 된 사람들은 오로지 헛된 명성만을 바라고 당로(當路)에 아첨하여 겨우 한 고을 원을 지내자마자 갑자기 주부(州府)로 승진합니다. 파주목사 홍우정(洪禹鼎)은 일찍이 남쪽의 고을을 맡았을 때 치적이 두드러지지도 않았는데, 특별히 승진시켜 서용하여 갑자기 목사를 제수했습니다. 정사(政事)하는 준례에 어긋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으니 개정(改正)하는 거조(舉措)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에 0답하기를 “해당 부서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 암행어사가 알아준 선정

<영조 1년(1725) 5월 11일> 경기암행어사(京畿暗行御史) 이정웅(李挺膺)이 서계를 올렸다. 이에 분부하기를, “파주목사 정내주(鄭來周) 등은 모두 치적(治績)이 칭찬할 만하니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특별히 가자하여 임명시키고 이미 체차(遞差)된 사람은 특별히 3품 수령에 임명하라” 하였다.

□ 군량미를 백성 구제에 쓰자고 청한 파주목사 등의 상소

<영조 1년(1728) 11월 2일> 파주목사 정내주, 교하현감 황유후가 상소하여 청하기를, “두 고을에 재황이 있었으니 내야 할 경리청(經理廳)·금위영의 쌀을 금년만 한정하여 본읍에 받아 두어서 진휼하고 구제하는 밀천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군량미(軍糧米)를 거두는 일은 중대하여 허락하여 줄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이에 상이 말하기를 “북한산성을 쌓기 전에는 군량미를 의당 각 고을에 받아 두어야 하며, 더구나 지금은 백성이 곤궁한 때이다” 하였다. 그러나 호조판서 신사철(申思喆)도 그 불가함을 강력히 진달(陳達)하자 상이 다시 말하기를 “성인(聖人)이 말하지 않았던가? ‘차라리 먹을 것을 버릴지언정 어찌 백성을 버리겠느냐?’고 하였으니, 특별히 받아 유치(留置)할 것을 윤허한다” 하였다.

□ 파주목사에게 임진강도 함께 지키게 하다

<영조 4년(1731) 3월 19일> 상이 명하기를, “파주목사 정혁선(鄭赫先)은 임진별장(臨津別將)과 함께 임진강을 방비하라” 하였다.

□ 산릉으로 힘든 파주목사 등에게 상을 내리다

<영조 7년(1731) 9월 19일> 상이 산릉(山陵)의 노고를 이유로 … 파주목사 이굉(李塏)과 교하군수 홍중주(洪重疇) 등을 가자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경중을 나누어 시상하였다.

□ 늙어서 송사를 못 보는 파주목사

<영조 7년(1731) 12월 9일> 현납 이홍직(李弘稷)이 상서(上書)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 파주목사 홍용몽(洪應夢)은 나이가 많고 병이 들어 송사를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아전들이 농간을 부려 백성들의 수심과 원망이 많습니다. … 신은 파직시켜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니, 왕세자가 그대로 따랐다.

□ 능행 준비를 잘못하여 벌받은 파주목사

<영조 16년(1740) 8월 1일> 장령 박수(朴遜)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 르기를 “파주목사 이사윤(李思胤)은 능행(陵行) 때 물건 대주기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먼저 대신의 행차 때 나아가 접대하지 않았으니 감처(勘處) 하소서 … ”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파주목사를 방어사로 승격시키다

<영조 31년(1755) 8월 14일> 병조판서 홍봉한이 상에게 말하기를, “… 이제 이미 역사를 마쳤으나 다만 장산과 임진은 몇 리를 사이하고 있는데 불과하여 두 별장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장산을 첨사(僉使)로 승격시키고 이어서 방어하게 한다면 관방을 중히 하는 방도로 마땅하게 될 듯 싶습니다” 하니, 상이 여러 신하들에게 묻고서 이어서 명하기를 “파주목사를 방어사로 승격시키고 장산별장은 첨사로 승격시켜 방어중 군(防禦中軍)을 삼으라” 하였는데, 장단은 전에 방어영이었으나 이때에 이르러 파주로 옮기고 독진(獨鎮)으로 시행하였으니, 어영대장 정찬술(鄭贊述)의 의논을 따른 것이었다.

□ 곤장으로만 디스린 목사

<영조 32년(1756) 10월 15일> 사헌부[지평 이보관(李普觀)이다]에서 상달하기를, “파주목사 이언소(李彦墉)는 상도(常道)에 어긋난 정사(政事)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는 읍면(邑面)의 수효대로 참나무를 깎아 곤장을 만들었는데, 길이는 양척(量尺)만하고 크기는 어린아이의 팔뚝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곤장에 각기 면(面)의 이름을 쓰고 그 끝에 낙인(烙印)을 찍어 이것으로 백성을 치기도 하고 이것으로 양전(量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고을에 한 사람이 그 어버이의 상(喪)을 당했는데, 장기(葬期)



「법정변송도」(작자미상)

가 마침 환곡을 갚을 때 있었으므로 장사를 치른 뒤 즉시 바치겠다는 뜻으로 시기를 늦추어 달라고 애걸하였더니, ‘관(官)은 단지 형장(刑杖)만 알고 다른 것은 모른다’는 제사(題辭)를 내리고는 물리쳐 버렸습니다. 진실로 조금이나마 인효(仁孝)의 마음이 있다면 어찌 차마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포악하고 사나우며 잔인하고 야박한 사람은 목사로 둘 수 없습니다. 파직하소서” 하니, 왕세자가 답하기를 “잡아다가 처리

하라” 하였다.

□ 파주목사 권식 등을 죄줄 것을 청하다

<영조 50년(1774) 3월 27일> 사헌부[지평 홍낙향(洪樂暉)]에서 계달하기를, “파주목사 권식(權式)을 임명하는 제목을 내리자, 여론이 매우 시끄러우니 개차(改差)하고, 전관(銓官)은 추고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이에 상이 그대로 따랐다.

□ 뇌물을 받고 공물을 횡령한 목사

<정조 5년(1781)월 3월 7일> 파주의 전 목사 이장한(李章漢)을 잡아다 추문하여 공초(供招)를 받았는데, 하교하기를 “뇌물이 공공연하게 행해져 온갖 방법으로 옥사(獄事)를 지연시켰으니, 오직 이 한 가지 일만으로도 그에게 있어서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이다. 더구나 그가 아무리 무례한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차마 승미(升米)·민전(緝錢)에 손댈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고도 도리어 역가(役價)를 지급하지 않았는가 하면 이것마저도 또 부족하여 곡포(穀包)를 더 보고하고 공물(公物)을 도둑질하여 먹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있어도 참으로 엄중히 처분해야 마땅한데 하물며 각 죄목이 한꺼번에 탄로 났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또 봄·가을의 능알(陵謁)에 경기 백성들이 준비하느라 그 고통이 적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선조(先朝) 때부터 특별히 민폐(民弊)를 진념(軫念)하여 저치곡(儲置穀)을 지급하도록 허락하여 비용을 보상하는 밑천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에게도 또한 사람의 마음이 있을 텐데, 탐욕이 비록 가슴 속에 꽉 차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에까지 욕심낼 수가 있겠는가? 만약 특별히 무겁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다른 고을 수령들을 징계할 수 없을 것이니, 이 죄수는 우선 먼 땅에 연한을 정하지 말고 정배(定配)하라. 이

는 바로 한 사람을 징계하여 백 사람을 면려하는 뜻이니, 해당 청에서는 이 판부(判付)를 낱낱이 들어 본도(本道)에 행회(行會)하여 특별히 엄하게 계획하라. 가을에는 응당 심탐(審探)하는 방도를 행하게 될 것인데,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아울러 감사(監司)까지도 함께 무겁게 감죄(勘罪)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였다.

□ 영릉에 어제어필비를 세우고 파주목사를 승진시키다

<정조 9년(1785) 11월 6일> 영릉(永陵)에 어제어필비(御製御筆碑)를 세우고 감동당상(監董堂上)에게 시상하였으며, 차사원(差使員)인 파주목사 오재휘(吳載徽)를 가선대부로 승진시켰다.

□ 파주목사 홍인묵을 등용하다

<정조 11년(1787) 5월 23일> … 경기의 통진부사(通津府使) 황인영(黃仁煥)과 파주목사 홍인묵(洪仁默)은 계제직(階梯職)의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서 조용(調用)하였다.

□ 파주목사의 파직을 청한 경기관찰사를 파직하다

<정조 14년(1790) 9월 7일> 경기관찰사 박종악(朴宗岳)이 장계를 올리기를, “지금 파주목사로 적성현감(積城縣監)을 겸임한 홍상덕(洪尙德)의 보고에 의하면, 이 달 7일에 내수사별제(內需司別提)가 빈 교자 하나를 가지고 본 고을 사목리(沙鷺里)의 죄인을 안치한 곳에 이르러 교자를 꾸며 가지고 대문 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현감이 친히 군줄을 거느리고 온갖 방법으로 막았으나 세력을 빙자하고 공갈하는 통에 맞서기 어렵게 되어 밀려가기도 하고 막기도 하면서 서작포(西作浦)에서 10리쯤 떨어진 곳까지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그 안치된 죄인의 죄악이 과연

어떠한데 제대로 방비하지 못하여 이처럼 길을 떠나게 하였는지 너무도 놀랍습니다. 엄격하게 막아서 도착하는 곳에 잡아두고 감히 전진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으로 엄히 신칙하는 동시에 겹임현감 홍상덕을 파직하여 내쫓고 그 죄상을 유사로 하여금 법에 의해 엄히 다스리게 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승지 서영수(徐灝修)·박성태(朴聖泰) 등이 대궐에 나아가 면대를 청하니, 하교하기를 “내수사 관원이 빈 교자를 가지고 가 궁인(宮人)을 태워 온 것이 도대체 무슨 큰 일이기에 감사는 잡아두고 길을 막으라고 서둘러 장계하는가. 면대를 청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데, 일개 궁비(宮婢)를 태워온 일 때문에 합문에 나와 면대를 청하기까지 한단 말인가. 너희들을 모두 교체하겠다. 명령을 받든 행차를 어찌 감히 막는단 말인가. 해당 현감을 잡아다 문초하고 엄중히 처결하라. 감사를 삭직하도록 하라” 하였다.

□ 군대 사열시 파주목사에게 시상하다

<정조 16년(1792) 2월 27일> 군대를 사열하면서 여러 장수들과 경기 감사, 개성유수, 그리고 영릉 행차시의 지방관인 파주목사 이민보(李敏輔)에게 상을 주었으니, 이는 규정에 비추어 시상한 것이다.

□ 직무를 기피한 파주목사를 석방하다

<정조 17년(1793) 9월 18일> 경기관찰사 정창순이 치계하기를, “파주목사 이백연(李柏然)이 병을 평계로 직무를 폐하고 있으니 유사(有司)에게 그 죄를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의금부가 죄를 평의하여 올리기를, “수령으로서 임지에 부임한 뒤 직무를 기피하는 자는 바로 그곳에 도배(徒配)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저번에 대신(臺臣)이, 수령을 귀양보냄에 있어 자기가 부임했던 고을에는 정배하지 말도록 아뢰어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풍덕부(豐德府)에 3년 기한으로 귀양을 보내소서” 하니,

판하(判下)하기를 “직무를 기피한 수령을 바로 그 지역에 정배하는 것은 곧 선왕조의 수교(受敎)로서 『대전통편(大典通編)』에도 기재된 규정이다. 저번의 대계(臺啓)에 대해서는 좋은 말을 올리라는 뜻으로 한두 수령에 대한 처분을 즉시 도로 철회시켰던 것이다. 대신이 법전을 참고해 보지 않고 경솔히 고치자고 청한 것은 나이가 젊고 규정에 서툴러서 그랬던 것인데 어찌 그것을 영원히 준수할 법으로 삼아 선왕조의 수교를 감히 고칠 것인가. 경들은 체차하고 백연은 석방하겠다” 하였다.

□ 왕명을 받드는 관원에게 행패를 부린 파주의 아객과 아전들

<정조 18년(1794) 3월 28일> 경기도관찰사 서용보(徐龍輔)가 장계하기를, “일전에 마마해권관(馬馬海權管) 정이유(鄭履綏)가 부임하던 길에 임진에 당도하여 파주의 아객(衙客 : 수령을 찾아와 관아에서 묵고 있는 손님)과 군교·하례(下隸)들에게 팁박을 당하고 심지어 불잡아서 길거리 를 아래위로 끌고 다니기까지 하였으며 행장에 들어 있던 물건도 많이 빼앗겼다고 합니다. 이는 범죄에 속하는 사건이므로 우선 공문을 보내어 당해 목사에게 조사시켰습니다. 파주목사 신대곤(申大坤)이 침보(牒報)한 내용에 ‘혐의되는 것이 있어서 조사하는 일을 거행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공문을 보내어 따져 물은 뒤에 끌어낼 수 없는 혐의를 얹지로 끌어대어 부당하게 변명을 늘어놓은 것은 기강과 크게 관계되는 만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파주목사 신대곤을 파면시키고 그의 죄상에 대해서는 당해 관청을 시켜 품처하게 하소서. 아객과 군교·하례들은 신의 김영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죄의 경중을 구분하고 해당되는 법

을 적용하여 처벌하려고 합니다” 하였다.

이에 전교하기를, “아객과 지방의 아전들이 왕명을 받고 어가를 따르던 관원을 침범하고 심지어 불잡아서 끌고 다니는 것도 부족하여 행장의 물건까지 빼앗았다고 하니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아주 놀라운 일이다. 해당 권관이 내려간 지가 벌써 꽤 오래되었는데 아니 무슨 생각으로 덮어두었다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억지로 장문(狀聞)하는가. 감사의 놀라운 행위는 과직시키고 잡아다가 다스리는 것으로도 벌이 가볍지만, 다만 현재 주관하는 일이 있기에 이를 충분히 참작해 준다. 당해 감사 서용보를 무거운 쪽으로 추고하라. 사헌부 대간들을 패초하여 성문을 닫기 전에 추궁하는 편지를 발송하여 공초를 받게 하라. 이른바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평안도관찰사를 시켜 잡아다가 엄중하게 죄를 다스린 다음 마마해에 하례와 군졸로 채워 보낼 것이며 함께 말을 타고 간 여러 사람들도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라. 당해 목사는 애당초 두려워하거나 자수하지 않았고 감영의 공문서를 받은 처지에 감히 인힘을 일컫는 것은 구구절절 방자한 노릇이다. 신대곤이 휴대한 병부는 선전관을 보내어 빼앗아 오고 역시 기백을 시켜 대동강가에 크게 위엄스런 자리를 펼쳐놓고 잡아다가 엄하게 곤장을 친 다음 장계를 올리도록 하라. 그리하여 먼 지방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조정 관원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조정을 존중하는 것이 됨을 알게 하라” 하였다.

□ 수미를 퇴짜놓은 파주목사

<정조 18년(1794) 11월 16일> … 고양·파주·장단·풍덕 4개 읍의 어사 홍낙유가 서제하기를, “파주목사 조택진(趙宅鎮)은 호를 뽑는 데 누락한 것이 많아서 고을 백성들이 억울하다고 하며, 수미(需米)를 퇴짜를 놓아 거리에서 소리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견책하여 과직하는 법을 시행하

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따랐다…

이조판서 이치중(李致中)이 아뢰기를, “파주목사 조택진을 파출하고 해당 부서로 하여금 잡아다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잡아다 처리하는 것은 논하지 말고 조택진에게는 서용하지 않는 법을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속량과 귀양자의 소재 불명으로 파주목사 홍용진을 거제부에 충군하다

<정조 19년(1795) 3월 11일> 파주목사 홍용진(洪龍鎮)을 거제부(巨濟府)에 충군(充軍)하고, 고양군수 왕도상(王道常)을 기장현(機張縣)에 충군하였으며, 문장(門將)에게 엄히 신칙하여 경기감사의 소계(疏啓)를 받아 들이지 말도록 하였다.

하고하기를, “당초에는 그들도 사람인자라 필시 왕명을 받든 일인 줄을 모르고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따질 것 없이 허찮은 벼룩과 같은 여종 따위를 양인(良人)으로 놓아주는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어찌 감히 고을의 책임자라고 하면서 머리를 디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단 말인가. 뒷날의 폐단과 관계되는 일인 만큼 엄히 다스리지 않을 수가 없다. 잡아온 죄인 홍용진은 거제부에 충군하고, 왕도상은 기장현에 충군토록 하라” 하였다.

ଓ

ପ୍ରାଚୀ

제2장 파주의 사회상

1. 고변, 참서

□ 요언을 지어낸 교하 사람 김문영

<태종 15년(1415) 7월 7일> 교하 사람 김문영(金文永)이 요언(妖言)을 지어낸 죄를 한 등 감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김문영의 죄는 쳐참에 해당하고, 그를 듣고서도 고하지 않은 고을 사람 조방식(趙方朔), 호장(戶長) 김석견(金石堅)은 장(杖) 100대와 도(徒) 3년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각각 감동하여 시행하였다.

□ 이방간과 내통한 심종

<태종 16년(1416) 11월 9일> 청원군(靑原君) 심종(沈宗)을 교하에 안치(安置)하였다. 태종 13년(1413) 전라도에 강무(講武 : 단오와 추석 때 왕이 주관하여 사냥하고 무예를 닦는 것)하는 행차에 방간(芳幹)이 심종과 비밀히 서로 내통하고 생강(生薑) 상자를 주었다. 상이 알고 물으니, 심종이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자약하게 숨기고 고하지 않았다.

상이 하교하기를 “… 만일 대소인원(大小人員)이 서로 사람을 시켜

은밀히 내통하다가 탄로되면 아울러 법대로 처치하겠다” 하고는 심종의 벼슬을 떨어뜨렸다.

□ 선현을 모욕한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는 상소

<숙종 34년(1708) 5월 26일> 파주의 유학(幼學) 이중영(李重英) 등 50여 명이 상소하여, 채명윤(蔡明胤)과 임수간(任守幹)이 선현(先賢)을 모욕한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교하 천도설

<광해 4년(1612) 11월 15일> 이의신의 교하 천도에 대한 예조의 회계. 술관 이의신(李懿信)이 상소하여, 도성의 왕기(旺氣)가 이미 쇠하였으므로 도성을 교하현에 세워 순행(巡幸)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니, 왕이 예조에 내려 의논토록 하였다. 예조판서 이정귀(李廷龜)가 회계하기를, “삼가 이의신의 상소를 보건대, 장황하게 늘어놓은 말들이 사람을 현혹 시킬 뿐 무슨 뜻인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풍수(風水)의 설은 경전(經傳)에 나타나지 않은 말로 괴상하고 아득하여 본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위(讖緯)와 여러 방술(方術)의 근거 없는 말들을 주워 모아 까닭도 없이 나라의 도성을 옮기자 하니 역시 괴이합니다. 삼가 생각컨대, 한양의 도읍은 화악(華岳)을 의거하여 한강에 임하였으며 지세는 평탄하고 도로의 거리는 균일하여 주거(舟車)가 모두 모이는 중심지로서 천연적인 비옥한 토지와 굳건한 성곽 등 형세상의 우수함은 나라에서 제일이니 이야말로 전후의 중국 사신들도 모두 칭찬한 바였습니다. 우리 성조(聖祖)께서 나라를 세우려고 터를 마련하면서 여러 곳을 살펴보고 여러 해를 경영하였으나 끝내는 이곳에 정하였으니, 깊고 먼 계략을 어찌 미미한 일개 술관과 비교해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200년이 되도록 나라

는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하였으며 다스림은 융성하고 풍속은 아름다웠으니 실로 만세토록 혼들리지 않을 터입니다. 복지(福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대저 나라의 터전을 장대하게 하고 영원한 명을 비는 도리는 다만 형정(刑政)을 밝히고 취사(取舍)를 살피는 것, 백성을 사랑하고 풍속을 도탑게 하는 것, 내정을 잘 닦고 외적을 물리치는 일뿐입니다. 참으로 이 도리를 반대로 하면 비록 해마다 도읍을 옮긴다 하더라도 다만 위란만 불러들일 것입니다. 이제 그는 말하기를 ‘인사가 가지런히 되지 않는 것은 그 원인이 기수(氣數)에 있다’ 하였는데, 이는 상으로 하여금 인사를 닦지 않고 다만 기수에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망국(亡國)의 말인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답하기를 “예로부터 새로 도성을 세운 제왕이 많았으니 본디 세웠던 도성을 아주 버린다는 뜻은 아니다. 소장의 끝에 있는 회계의 일은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상의하여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 송시열을 비난한 파주 유생

<영조 1년(1725) 4월 25일> … 이의천(李倚天)이 아뢰기를, “이제까지 군흉(群凶)이 나랏일을 맡아 다스리는 동안 역적 김일경(金一鏡)의 동생 김요경(金堯鏡)이 반임(泮任)이 되어서 팔방(八方)의 향교와 서원이 모두 흉얼(凶孽)들의 근거지가 되었고, 흥론(凶論)이 겹쳐 일어나 역적 김일경을 추대하여 제1인으로 삼았습니다. 파주의 유생 정하복(鄭夏復)은 상소를 올려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을 무함하였는데, 심지어 ‘역적의 괴수, 역적의 당파는 그의 여론(餘論)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고까지 하고 또는 ‘삼수(三手)의 계모(計謀)는 그 근원을 밝게 엿볼 수 있다’고도 하였으니, 그 무리들은 이른바 흉역(凶逆)이라는 두 글자를 이미 죽은 유

현(儒賢)에게 함부로 썼습니다. 정하복을 절도(絕島)에 정배(定配)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각기 적당한 율(律)이 있으니 면 곳에 정배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2. 살인, 절도

□ 살인한 구질금을 참형에 처하다

<세종 6년(1424) 12월 22일> 형조에서 계하기를 “고의로 살인한 … 교하 죄수 구질금(仇叱金)은 율이 참(斬)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다.

□ 명화적 금음마를 의금부에 가두다

<세종 13년(1431) 5월 22일> 교하현감이 벌아현 초막의 명화적(明火賊) 금음마(今音麻)를 잡아 보냈으므로 의금부에 가두었다.

□ 사형에서 감형된 절도범 교하 관노

<세종 21년(1439) 10월 23일>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는데 형조에서 아뢰기를, “교하의 관노(官奴) 김선삼(金善三)이 절도죄를 범하였사온데 율이 교형에 해당하옵니다” 하니, 상이 특명으로 사형에서 감형하게 하자 형조참판 유계문(柳季聞)이 아뢰기를, “절도를 하고서도 중형(重刑)을 면하오면, 다시 마음대로 도적질하다가 결국에는 강도에 이르기도 하오니 법대로 논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근년에 기근으로 죽은 자가 꽤 많으며 내가 참으로 참고 볼 수가 없는데, 또 형벌로 죽이겠는가” 하였다.

계문이 다시 아뢰기를 “성상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비록 지

극하시나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중형으로 처벌해야 백성들이 다 법을 두려워할 것이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그같은 사람은 그 면죄된 것만 다행으로 여기고 징계하는 마음이 없는 자이지만, 지금은 비록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한 법을 죽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 서울의 군사로 파주 등지의 강도를 잡게 하다

<세조 9년(1463) 6월 14일> 경기도관찰사 김종순(金從舜)이 치계(馳啓)하기를, “본도(本道)에 강도가 흥행(興行)하니 경중(京中)의 군사를 내어 수색하여 잡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선전관(宣傳官) 변정(邊靖)은 경기의 양주·광주·양근·지평·천녕(川寧) 등지로 보냈으며, 부장(部將) 황기곤(黃起崑)은 풍덕·장단·파주 등지로 보내어 수색하여 잡게 하였다.

□ 파주에 정속·정역·충군한 자를 방면하다

<성종 5년(1474) 4월 14일> 사헌부에 전지(傳旨)하기를 “… 교하의 관노로 정속(定屬)된 박석산(朴石山)을 방면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 5년(1474) 4월 17일> 형조에 전지하여 “… 파주에 도년(徒年: 도형을 사는 기간)으로 정역(定役)한 이숙무(李叔武)·이차중(李次仲)과, 파주에 충군한 최산(崔山) 등을 방면하라” 하였다.

<성종 6년(1475) 2월 14일> 형조에 전지하여 “… 파주에 충군된 최산장(崔山長) 등을 방면하라” 하였다.

<성종 7년(1476) 1월 21일> 형조에 전지하여 “… 파주에 정역된 노계산(盧戒山) 등을 방면하라” 하였다.

<성종 7년(1476) 11월 24일> 의금부에 전지하여 각 역에 정속된 자들을 놓아주게 하였는데, “… 파주에 정속된 자화동(者火同) 등을 놓아주

도록 하라” 하였다.

□ 파주 관비로 정속된 보동

<성종 8년(1477) 12월 25일> 보동을 파주의 관비(官婢)로 정속시키도록 명하였다.

□ 두 번 도둑질한 사람은 교수형에 처하다

<성종 9년(1478) 9월 24일> 형조에서 삼복(三覆 :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세 번 심리하던 일)하여 아뢰기를, “… 파주의 죄수인 김효동(金孝同)이 절도를 두 번 범한 죄는, 『내전속록(大典續錄)』에 의하여 교수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양인을 살해한 노비를 교수형에 처하다

<성종 11년(1480) 1월 24일>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교하의 죄수인 사노(私奴) 김산(金山)이 양인 말경(末京)을 구타하여 죽인 죄는 교수형에 해당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파주에 정속되었던 이정을 석방하다

<성종 13년(1482) 7월 16일> 형조와 의금부에 전지하여 … 파주에 정속한 이정(李挺)을 석방하게 하였다.

□ 비밀에 부친 도적 잡기

<중종 4년(1509) 10월 5일> 영의정 박원종(朴元宗), 좌의정 유순정(柳順汀), 우의정 성희안(成希顥), 형조판서 권균(權鈞) 등이 의계(議啓)하기를, “도적을 잡는 일은 비밀로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장수들에 명하여 고

령(高嶺)·중산(中山)·홍복산(弘福山)·서산(西山)·파평산(坡平山)에서 사냥한다고 평계하고, 박영문(朴永文)과 유담년(柳聃年)을 파견하여 장수로 삼고 사졸들 역시 도적 잡는다는 뜻을 알지 못하도록 하여, 어느 곳에 진을 치고 있다가 사세의 편리 여부를 보아 각각 계책을 내어 길을 나누어 가되, 한 편은 파주 등의 고을로 가고 한 편은 인천 등 고을로 가게 한다면 거의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 형평성을 잃은 파주 장부포 쟁송

<중종 38년(1543) 11월 23일> 사헌부가 아뢰기를, “조의량(趙義良)과 김욱(金勳) 등이 파주 장부포(長富浦)의 일을 서로 쟁송(爭訟)하다가 양쪽 모두 부당하여 속공(屬公)되었습니다. 그 뒤에 조의량이 상언(上言)하매 청원에 따라 나누어주라고 판하(判下)하셨습니다. 김욱의 아들 수복(壽福)이 다시 분간하여 달라고 상언하자 한성부(漢城府)에 계하(啓下)하셨으므로, 한성부가 규례에 따라 회계(回啓)하고 바야흐로 분간합니다. 조의량이 돌려주지 않으려고 법을 어기고 상언을 올렸으므로 해당 사가 법에 의거하여 임금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양쪽이 부당하여 속공하여 이미 공물(公物)이 된 것을 어느 사람의 상언에 따라 도로 주라고 판하하였으면, 본디 오결(誤決)을 정소(呈訴)하여 다시 분간하는 예가 아닌데 한성부가 사리를 어기고 회계하였으니 다시 분간 시키지 말고 전대로 판결하여 주라’ 하셨습니다. 대저 속공한 물건을 갑(甲)이 상언하여 절수하였으면 읊이 뒤따라 정소하여 다시 분간하는 것이 세 번에 이른다는 것은 법례(法例)가 있는데, 판하해서 절수하였다 하여 분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일을 펼 길이 없고 법에도 어그러집니다. 또 조의량과 김수복은 다 같은 송자(訟者)인데, 한 사람의 진소(陳訴)는 특별히 절급하라는 명을 받고 한 사람의 진소는 영구히 분

간할 길을 막는다는 것은 도무지 임금의 크게 공평하고 지극히 정당한 도리가 아니니, 다시 판부하여 유사(有司)에 붙여 분간하소서” 하니, “한 때 상언한 뜻을 보고서 판부하였으므로 어느 때에 어느 뜻으로 판부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아뢴 바와 같거든 다시 판부하여 유사를 시켜 분간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 부하에게 모욕당한 문홍도

<선조 33년(1600) 3월 5일> 집의 문홍도(文弘道)가 아뢰기를, “동료간에 있어서 서로 사양하는 것은 체면상 당연한 일이지만 법부(法府)에 있어서는 상하의 구분이 엄격하므로 서로 무례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파주의 둔전관(屯田官) 박내성을 풍문에 의거하여 잡아 가두었더니 중국인이 영의정에게 계첩을 보내어 속히 석방시키라고 하였습니다. 영의정이 그 계첩을 신에게 보내면서 ‘중국인의 간청이니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내성은 이미 형을 받았으니 충분히 징계되었을 것이다. 모조록 동료들에게 고하여 석방시키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이 마침 기일(忌日)을 당하였으므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하리(下吏)를 시켜 이런 내용을 상에게 고하게 했습니다. 이는 신이 내성을 위하여 사적으로 도와주려 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장령(掌令) 황민중(黃敏中)이 공좌(公坐) 석상에서 드러나게 모욕을 가하였습니다. 신이 외람되어 있어서는 안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남의 업신여김을 받은 것이니 뼈뼉스럽게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을 파직시켜 주소서” 하니, 사퇴하지 말라고 답하였습니다. 문홍도가 다시 아뢰는 것은 번거롭다고 하여 물러가 기다렸다.

□ 파주산성의 군량을 훔친 김희

<광해 12년(1620) 4월 25일> 사헌부가 아뢰기를 “… 내섬시 직장(直

長) 김희(金禧)는 어리석고 외람되며 수치스러움이 없어서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라면 그밖의 것은 돌보지 않으니, 이런 사람이 무슨 악행인들 못 하겠습니까. 파주산성(坡州山城)에 쌓여 있는 군량은 한 톤이 한 곡(斛)에 맞먹을 만큼 귀한 것으로 뒷날 위급한 일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인데 무리를 이루어 많은 수를 훔쳐갔으나 다행히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형신(刑訊)할 즈음에 김희가 거짓으로 간찰(簡札)을 만들어 힘써 방면하기를 청하였으니 간악한 형상은 불을 보듯 명백하여 여론이 자자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벼슬아치의 반열에 낄 수 없습니다. 사판에서 깎아 버리소서 … ” 하였다. 답하기를 “김희의 일은 서서히 결정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 도적이 날뛰는 파주

<현종 6년(1665) 2월 2일> 경기지방에 잇따라 흉년이 들어 도적이 곳곳에서 일어나 10여 명이나 흑 7~8명씩 모여 숨어 있으면서 재물과 곡식을 약탈해 마을 사람들이 모두들 마음놓고 살지 못하였다. 이에 감사 김수홍이 장계하기를, “본도의 도적에 대한 걱정이 이와 같은데 토포사가 치우친 곳에 처해 있어 형세상 금하여 체포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원·장단·양주·죽산·파주·통진·남양과 같은 곳의 고을 원은 흑 방어사를 겸임하거나 영장(營將)을 겸임합니다. 지금부터 정식을 만들어 방어사나 영장을 겸임한 수령으로 하여금 책략을 세워 모조리 체포하게 하되 토포사가 총괄해 살피면서 신칙하게 한다면 일이 착실해질 것입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장계대로 시행하되 감사로 하여금 일에 따라 지휘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 화적과 호환이 극성을 부리다

<영조 10년(1734) 11월 13일> 사헌부 장령 윤지원(尹志遠)이 밀하기

를, “교하·파주의 사이에 화적(火賊)이 횡행(橫行)하여 북을 치면 전진하고 징을 치면 퇴각하는 것이 마치 행군(行軍)하듯이 하면서 백성을 해치고 마을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또 호환(虎患)이 극성을 부려 사람과 가축을 물어 죽이고 있습니다. 마땅히 좌우포청(左右捕廳)으로 하여금 도적을 각별히 염탐하여 체포하게 하고, 훈련도감의 포수를 보내어 특별히 호랑이를 사냥하여 잡도록 하소서” 하였다.

이에 대답하기를 “훈련도감의 포수는 능소(陵所)의 거동이나 동병(動兵)이 아니라면 징발할 수가 없다. 화적에 관한 일은 다만 토포영(討捕營)으로 하여금 뒤쫓아 잡게 하겠다” 하였다.

□ 심씨와 윤씨네의 송산사건

<영조 41년(1765) 2월 23일> 상이 밤에 흥화문(興化門)에 나아가서 전도정(都正) 심정최(沈廷最)와 전 침정(僉正) 윤희복(尹熙復)을 친문(親問) 하였는데, 양가(兩家)의 송산(訟山) 때문이었다. 애초에 고려 시중 윤관(尹瓘)의 묘가 파주에 있었는데 실전(失傳)되었다. 고 상신(相臣) 심지원(沈之源)의 묘 밑에 큰 무덤이 하나 있었는데, 윤관의 묘라고 유전(流傳)해오던 것을 심씨네가 압장(壓葬)한 것이었다. 윤씨의 후손이 묘갈 두어 쪽을 중거로 찾아서 심씨의 무덤을 이장하여 달라고 소청(疏請)하였는데, 심씨네는 역시 윤씨네의 외손이기 때문이었다. 임금은 두 집안이 각자 자기네의 무덤을 보호하고 서로 다투지 말라고 두 집안을 달래어 모두 진정시켰었다. 그런데 이때에 와서 윤씨의 후손이 모여서 심씨의 무덤 앞 계체(階砌)를 허물자 심씨네가 또 여러 사람을 이끌고 와서 두들겨 쫓아내었다. 이에 서로 잇따라 격고(擊鼓)하여 아뢰니, 임금이 ‘윤희복·심정최는 세가(世家)의 대족(大族)으로서 조정의 덕의(德意)를 몸 받지 못하고 서로 다투었으며 번거롭게 잇따라 호소하였으니, 엄하게 처치

하지 않으면 기강을 무너지게 하고 풍화(風化)를 위태롭게 하는 일을 진정시킬 수가 없다'고 하고, 드디어 친문하겠다는 명령을 내렸다.

입직한 옥당관(玉堂官) 김노진(金魯鎮) 등은 일이 사송(私訟)에 관계되므로 유사에게 회부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깊은 밤중에 임문(臨門)하여 국체를 손상시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고 먼저 체직시킨 뒤에 형리(刑吏)에게 내리라고 명하였다. 이어서 밤을 새워 두 사람을 친문하여 형을 가한 뒤 차례로 멀리 귀양보내었다. 그런데 심정최와 윤허복은 나이가 각기 70여 세였는데, 윤허복은 형을 받고 귀양가는 도중에 죽었다. 뒤에 영의정 홍봉한의 주청에 의하여 그의 직첩을 돌려주게 하였고 옥당관을 체직하라는 명령도 거두어 들였다. 입시대관(入侍臺官) 이보관(李普觀)과 윤승렬(尹承烈) 등의 주어(奏語)에 좌우(左右)로 두루 감싸준 의도가 있다고 하여 모두 파직시켰다.

또 하교하기를, “내가 가장 미워하는 것은 허풍치고 과장하는 것인데, 심정최·윤허복의 일은 역시 과장되어 그러한 것이다. 비록 이미 엄히 처치하였으나 무릇 나의 신하들은 마땅히 이로써 경계하고 각각 조심할 것을 생각하라. 이는 주문공(朱文公)이 이른바 ‘이는 비록 한 가지의 일 이지만 수단(數端)을 경계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하였다.

□ 죄인의 형을 집행하다

<정조 8년(1784) 10월 24일> 추국청(推鞫廳)을 설치하여 파주의 죄인 이규명(李揆明), 정달원(鄭達源), 이동빈(李東彬), 이지형(李之衡) 등을 신문하였는데, 이동빈은 사형을 감하여 섬으로 귀양보내고, 이규명과 이지형은 물고(物故)되었으며 정달원은 석방하였다.

3. 강상죄

□ 정부와 함께 남편을 살해한 고미

<세조 12년(1466) 7월 5일> 파주에 거주하는 별시위(別侍衛) 전치경(全致敬)의 아내 고미(古未)가 이웃 사람 만중(萬中)과 몰래 간통했는데, 전치경이 병든 것을 틈타 정부와 공모하여 죽이고는 같이 살다가 만중을 따라 도망하였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는 크게 놀라면서 말하기를, ‘법으로 마땅히 다스려야 한다’ 하고,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8도(道)에 서신을 보내어 수색·체포하되 잡은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고 도움을 준 사람은 대죄(大罪)에 처하게 하였다.

□ 파주 서녀를 놓고 재상끼리 첨 쌌음

<성종 15년(1484) 8월 19일>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 송영(宋瑛)이 와서 아뢰기를, “… 전 경차관(敬差官)이라는 파주 사람의 첨(妾)이 낳은 딸이 전에 한 재상(宰相)과 매약(媒約)이 정하여졌는데, 또 한 재상이 첨으로 삼으려고 다른 일로 휴가를 얻어 역마(驛馬)를 타고 가서 몰래 고을의 관원을 시켜 통매(通媒)하여 얻으려 하였으나, 전에 매약한 재상이 이를 알고 기일이 되었을 때 사람을 보내어 펫박하여 쫓았다. 이에 새로 혼인하려던 재상이 형세에 몰려서 담을 넘어 달아났는데 가졌던 은표주박도 빼앗겼다고 합니다. 재상이 첨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매우 천박한 풍습이므로 평시에 있어서도 옳지 않은 것인데, 더구나 국상이 있은 지 3년도 넘지 않았습니다. 신들이 실상을 조사하려 하였으나 일이 수령(守令)과 관계되므로 정상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을 듯하니, 감찰(監察)을 보내어 추국하소서” 하였다. 이에 전교하기를, “재상이 서로 처첩(妻妾)을 훔치는 것이 정(鄭)·위(衛)의 풍속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대장(臺長)을 보

내어 상세히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종 15년(1484) 8월 28일> 상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갔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안침(安琛)이 집의 조숙기(曹淑沂)의 계본(啓本)을 가지고 아뢰기를, “예성군(藥城君) 어유소(魚有沼)가 파주 사람 박자의(朴自義)의 첨이 놓은 땔 박낙양(朴洛陽)을 첨으로 삼고자 하여 약속이 이미 정하여 졌습니다. 그런데 영안남도절도사(永安南道節道使) 경유공(慶由恭)도 박낙양을 얻고자 하여 지난해 10월 사이에 소분(掃墳)한다는 핑계로 휴가를 고하고 내려갔습니다. 이 소식을 어유소가 듣고 사위 민회발(閔懷發)을 보내어 물리치게 하였습니다. 경유공이 밤에 몰래 박자의의 집에 이르렀는데 민회발이 꾸짖어 욕하자 곧 달아났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이 일은 풍속에 관계되니 경유공의 벼슬을 갈고 오거든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종 15년(1484) 11월 28일>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전 절도사 경유공이 국상 3년 안에 어유소와 중매로 기약한 여자를 빼앗아 첨으로 삼으려고 하였으니, 이것을 『대명률(大明律)』의 ‘거상가취조(居喪嫁娶條)’에 견주면, ‘무릇 부모상(父母喪)에 있으면서 자신이 시집가고 장가든 자는 장(杖) 100대이고 만약 남자가 상중에 첨을 얻는 자는 3등을 감한다’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또한 경유공은 파주 관(官)에 가서 목사와 서로 모여 객사(客舍)에 머물러 자면서 공름(公廩)을 소비하였으니, 그 죄는 『대전(大典)』에 의하면 ‘사사로이 관부(官府)에 출입하는 자는 장 100대를 친다’에 해당합니다, 이에 종중(從重)하게 하되 장 100대를 속(贖) 바치게 하고,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追奪)하소서” 하니, 고신만 거두고 외방에 부처(付處)하게 하였다.

□ 아전들을 괴롭힌 남섬원

<중종 5년(1510) 10월 12일> 사간원이 또 아뢰기를, “의천위(宜川慰) 남섬원(南燮元)이 함부로 파주의 아전들을 상해하였으니 죄주시옵소서” 하였다. 이에 전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파주목사 부인의 투기심

<중종 17년(1522) 6월 15일> … 사헌부가 아뢰기를, “허지(許遲)의 아내 유씨(柳氏)의 일은 달리 증거가 없고 또한 노비들을 증인으로 세울 수도 없으나 이는 은밀한 일이 아니어서 소문이 퍼진 지 이미 오래이므로 조정에서도 모두 아는 바이고, 또한 풍교(風敎)와 큰 관계가 있는 일이나 항거한다고 해서 추고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부녀자를 나오라 하여 추고 할 수도 없기에 취품(取稟)합니다” 하였다.

사헌부가 함문하기를 “허지의 아내 유씨는, 허지와 투기할 때 능멸하고 구욕(毆辱)하기를 사생(死生)을 헤아리지 않고 하여 벗짚으로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 사지(四肢)와 몸통을 절단하되 이것이 허지다 하며 계집 종들로 하여금 마당에서 치하(致賀)하게 하였고, 또한 허지가 사신(使臣)으로 나가게 될 때는 노비들로 하여금 문 밖에서 곡(哭)을 하여 ‘허지가 사망하였으므로 초상난 것을 알리는 것이다’ 하게 하였고, 허지가 대간(臺諫)이 되었을 적에는 감시관(監試官)으로 나오라는 명패(命牌)가 집으로 왔었는데, 허지가 마침 밖에 나갔다 돌아오자 명패를 숨기고 즉시 알려주지 아니하여 허지로 하여금 죄를 받게 하였고, 허지가 파주목사로 있을 적에는 남자로 꾸미고 담장을 쌓으면서 ‘주인 양반이 고을 사람들을 보내 담장을 쌓게 하는 것이다’ 하게 하여 죄를 입게 하였고, 또한 이웃집 수탉이 암탉을 쫓다 자기 집으로 날아들자 그 수탉을 잡아 죄를 짓기를 ‘너의 집에도 암탉이 있는데 이웃집 암탉을 쫓아다니니 이는 역

시 허지와 같구나’ 하며 즉시 날개를 뽑고 사지를 절단하였다” 하였다.

이에 전교하기를, “유씨의 행사를 보건대 상례(常例)를 무너뜨리고 인륜을 어지럽힘이 심하였으니 끝까지 추고하여 실정을 알아내야 하는데, 만일 끝까지 추고하려면 마땅히 감옥에 구금해야 한다. 그러나 간음한 일이 아니면 옥에 구금하지 못하는 법이고, 만일 추고하려고 하면 사간(事干)들이 모두 노비들이라 서로 봐주며 숨길 것이므로 추고할 수도 없고 또한 벼려 들 수도 있으니 내일 의논해야겠다” 하였다.

□ 파산부원군을 비하한 관원

<명종 3년(1548) 1월 3일> 정원에 전교하기를, “듣건대 파산부원군(坡山府院君) 윤지임(尹之任)의 분묘에 가서 제사지내던 사람이 구타를 당하고 왔으므로 불러서 물어보니, 그 분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쫓아 올라와 구타하면서 ‘이것은 끝내 부원군의 묘로 있을 것이 아니고 바로 윤서방(尹書房)의 묘가 될 것이다’고 했다 한다. 이 말이 필시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니 매우 해괴하고 경악스럽다. 제감(祭監) 곽원종(郭元宗)과 제물(祭物)을 맡아 온 아전을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문하여 통렬히 다스리도록 하라. 그리고 교하현감은 그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였으니, 경기도감사로 하여금 추고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내가 즉위한 이래 국가에 일이 많았고 또 홍년까지 만나서 파산부원군의 분묘에 한 번도 별제(別祭)를 지내지 못하였는데, 지금 또 이런 변고가 있으니 어찌 그 신령(神靈)이 놀라지 않았겠는가. 승지(承旨)를 보내서 별제를 지내는 것이 옳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원종(元宗)은 교하현의 품관(品官)이다. 국구(國舅)인 파산부원군 윤지임의 묘가 교하에 있는데 대내(大內)에서 그 제사를 주관하여 지내왔다. 원종은 제감(祭監)으로 나가 있었는데, 제물을 정갈하게

잘 차리지 못하는 것은 혹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입에 올릴 수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때 내수사(內需司)의 하인들이 방자하여 조금만 불만이 있으면 대뜸 실제로 없는 말을 지어서 상(上)께 아뢰었던 것이다. 만일 원종에게 죄가 있다면 본도에 명해서 다스리게 해도 될 것인데, 의금부에서 잡아다 국문까지 한 것은 지나친 일이다.]

□ 노비가 양반 처녀를 며느리로 삼으려 하다

<현종 5년(1664) 2월 12일> 이 시기에는 교화가 크게 무너지고 민간 풍속이 허물어져 강상(綱常)의 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 파주에서 는 사노인 충헌(忠獻)이 사족(士族) 집안의 처녀를 납치하여 자기 며느리로 삼으려다가 일이 발각될까 두려워서 강물에 빠뜨려 죽였다. 그들 모두는 자복한 후 형 집행을 당했지만 식자들은 걱정이 대단하였다.

□ 적자와 첨이 재물로 다투다

<숙종 23년(1697) 7월 12일> 사헌부에서 논하기를, “파주에 살고 있는 고(故) 주부(主簿) 장준일(張俊一)의 첨 유씨(柳氏)가 적자(嫡子)인 장위(張緯)와 서로 소송하여 억눌림을 당하였다고 호소하며 원통함을 풀어 달라고 청구하였는데, 장위가 재물을 다투어 아비를 속인 것이나 유씨가 적자를 고소한 것은 모두 풍속과 교화를 손상시킨 것입니다. 끝까지 조사하여 형률에 의거해서 죄를 주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윤허하였다.

□ 초상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이동언

<숙종 31년(1705) 1월 9일> 헌납(獻納) 이언경(李彦經)이 상소하기를, “… 파주의 이동언(李東彦) 사건은 대간(臺諫)에서 아뢴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곤바로 간힌 사람의 진술을 가지고 문목(問目)을 내었습니다. 도

신(道臣)이 어찌 조사하는 체제에 있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마는, 변명하는 일에 급급하여 이로써 치계(馳啓)하였으며 왕부(王府)에서는 마땅히 도신을 추문하고 그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도록 청해야 할 것인데도 또 이것으로 복계(覆啓)하였던 것입니다. … 빨리 법사(法司)로 하여금 엄중히 조사하고 거듭 추구하게 하며 전후에 내린 비지(批旨) 중 과중(過重)한 것은 모두 도로 거두어들이게 하여 공평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이에 답하기를, “유사(攸司)로 하여금 분명히 조사하여 품지(稟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숙종 31년(1705) 10월 20일> 형조의 계목(啓目)에 따라 승정원에 명하여, 상소한 대신인 북평사(北評事) 조태억(趙泰億)을 불러 서계(書啓)하게 하였다.

그 서계에 이르기를, “이동언이 상(喪)을 당한 처음에 이미 그러한 말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떠들썩하여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의 소(疏)에 ‘파주에 왕래한 사람이 공공연하게 전하여 말하였다’ 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사(進士) 김석우(金錫禹)는 전 목사 김두명(金斗明)의 아들인데, 우연히 그를 만났더니 말하기를 ‘가친(家親)이 파주에서 갈리고 이세무(李世茂)가 그 대신이 되었다가 얼마 안되어 죽었는데, 그 때 일을 자세히 들으니 이세무의 상은 아내(衙內)의 어떤 방에서 났고 이동언은 어떤 곳에 있었으므로 반함(飯含 : 염습할 때 시신의 입에 구슬과 쌀을 물리는 것)하는 한 가지 일을 관노(官奴)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였고 이동언은 실로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봄에 이르러 김석우가 또 말하기를, ‘다시 들으니 반함을 대행하였다는 것은 강상(江床)이라는 자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김석우는 본디 파주에 왕래한 사람이고 또 그곳 수령이었던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 말은 상세할 것입

니다. … ” 하였다.

이에 전교하기를 “어제 보건대, 형조에서 다시 조사한 각인(各人)의 공초(供招)가 이미 명백하지 않다. … 해당 부서로 하여금 물어야 할 사람을 모두 가두고, 각별히 명백하게 살펴서 반드시 실정을 알아내도록 하라” 하였다.

<숙종 31년(1705) 11월 25일> 형조에서 아뢰기를, “조태억이 물어서 아뢴 가운데에서 진사 김석우는, ‘지난 해 7월 조태억을 만났는데, 그때는 조태억이 이동언의 일을 논한 지 이미 10여 일이 지났습니다. 조태억이 물기를 ‘파주의 일에 대하여 자네는 들은 것이 있을 것이다’ 하기에, 제가 말하기를 ‘이는 대각(臺閣)에 관계된 일인데 서생(書生)이 어찌 관여하였겠는가?’ 하니, 조태억이 밀하기를 ‘이세무의 상(喪)은 어디에서 나고 상인(喪人)은 어느 곳에 있었는데, 관노를 시켜 반함을 대행하게 하였는가? 참말인가?’ 하기에, 제가 말하기를 ‘그 상은 동상방(東上房)에서 나고 상인은 방 밖에 있었다 하나 반함을 대행하였다는 말은 내가 듣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 번신(蕃臣)은 사체가 중대하므로 본조(本曹)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조태억이 끌어댄 유덕우(柳德玉)·이진해(李振海)는 조관(朝官)에 관계되므로 의금부로 옮겨서 처치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윤허하고 이어서 유집일·홍만조에게도 아울러 함문(獄問) 하라고 명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조태억이 논한 두 신하의 일은 다 천리와 인정에 벗어나는 것이고, 이동언이 당한 것은 더욱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니 … 조태억이 남을 무함한 죄는 이루 다 주벌(誅罰)하기조차 어렵거니와, 성조(聖朝)로 하여금 끝내 간신(諫臣)을 죽인 흔을 면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애석함을 금할 수 있겠는가?”]

<숙보 32년(1706) 4월 16일> 이동언의 서제(庶弟) 이상언(李尙彦)이

격고(擊鼓 : 상의 거동 때 억울한 일을 상소하기 위하여 북을 치고 기다리는 일)하여 이동언의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초사(招辭)에 대략 이르기를, “이동언이 참혹하게도 무함(謫陷)을 당한 것은 덫과 함정을 더욱 치밀하게 하였으므로 원통함이 더욱 심합니다. … 당초에 형제(兄弟)와 여러 친척이 병을 구료(救療)하고 초상을 치르는 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참여한 상황은 읍인(邑人)이 다 함께 아는 바인데, 조태억이 ‘한 번 보려고 생각하여 대신 반함을 보게 하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 대개 이동언이 여러 번 언지(言地)에 들어 가 일을 논한 것이 많았고 또 갑신년엔 귀강(貴強)한 자를 거듭 침범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이동언을 위하여 위태롭게 여겼는데, 얼마 안 가서 참혹하게 천고(千古)에 없는 무함을 당하였으니 온 세상이 모두 그가 과격한 데서 빚어지게 된 일이라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뒤에는 유득일(渝得一)·유집일(渝集一) 형제가 나쁜 말을 만들어내어 도처에 소문이 전파 되었다는 것을 쉽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갑신년 7월에는 유집일이 안가(安哥) 성(姓)을 가진 무인(武人)으로 대계(臺啓)에서 말한 것에 증거를 세우고는 다만 어떤 중신(重臣)이 있는 자리에서 말을 하였고, 지난 봄에는 유득일이 또 망측한 말로써 이동언을 어떤 재신(宰臣)의 집에서 무함하였으며, 이밖에 유가(渝家)에서 관작으로써 안두(安糾)를 유혹하려고 했다는 말이 세상에 전파되었으나, 유득일이 병조판서가 되어서는 부장(部將)에 견주어지니 온 세상의 의혹이 더욱 심하였으며, 한성우(韓聖佑)가 말한 것에 이르러서도 또한 그 한 투(套)였습니다. … 지금 이 조사하는 옥사(獄事)는 중대한 것인데, 해당 조에서 그의 의지(意旨)만 따라서 늘였다 출였다 하면서 마땅히 신문할 것을 신문하지 않아서 마음대로 처리한 것이 많습니다. 조태억이 지난날에 상소한 경우는 위협하기를 더욱 급하게 하여 다만 전에 말한 것이 시행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여러모

로 까불어대면서 ‘남모르게 떠받들고 후하게 대접한다’는 등의 말은 더욱 극히 음흉하고 참혹합니다. … ” 하니, 상이 의논하여 처리할 것을 명하였다.

<숙종 34년(1708) 5월 21일> 대신(大臣)과 의금부·형조당상(刑曹堂上)·삼사(三司)의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여, 여러 죄수를 소결(疏決)하였다. … 파주의 전수(前守) 신필청(申必淸)을 마땅히 추문(推問)해야 한다는 말을 꺼내니, 신필청은 이것이 이동언과는 원수의 집안이므로 이로 인해서 정죄(定罪)하고자 했이었다. 동의금(同義禁) 민진원(閔鎭遠)과 이만성(李晚成)이 강상(江床)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았는데, 신필청을 추문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충분히 말하니, 좌의정 이유(李濡)는 본시 이 옥사가 원통한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송언(訟言)하였다.

이에 상이 말하기를, “이동언이 진실로 반드시 정성을 다하고 반드시 삼가야 하는 곳에 스스로 마음을 다했다면, 어찌 이러한 사람의 도리에 없는 악명(惡名)을 입었겠는가? 또 그 당시에 파주목(坡州牧)이 사사로이 추문할 때 이해(利害)를 생각하고 헤아린 일이 없었는데도 이러니저러니 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실상(實狀)인 듯하다. 바로 관속(官屬)의 문초로 인하여 해당 고을 수령을 캐묻는다는 것은 일의 원칙으로 보아 비록 부당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파주목사 신필청은 붙잡아다 떼지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민진원이 말하기를, “이동언의 옥사는 강상의 초사(招辭)로써 살펴보면, 여러 번 그 말을 변경하여 어긋난 단서가 많이 있습니다” 하였다.

이에 상이 말하기를, “이동언으로 하여금 삼가게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말은 없었을 것이다. 강상이 대신 반함했다는 말이 널리 전파된 것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동언을 신구(伸救)하는 자는 매번 전거가 확실치 않은 말로써 감히 옥사를 번복할 계책을 내어 끝없이

변명하니 이것도 또한 당론(黨論)의 고질(痼疾)인 것이다” 하였다.

□ 회시에 응시한 파주 서민 김사목

<정조 14년(1790) 9월 29일> 특별히 김사목을 용서해 주고 하교하기를,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다. 이번 대사령에서 각도에 귀양보낸 죄인들을 이미 다 용서하여 놓아주었으니 파주의 서민 김사목을 특별히 용서한다. 수군(水軍)으로 초시에 합격한 자도 군역을 면제해 주는데, 서민의 아우로서 어찌 회시(會試)에 응시할 수 없겠는가” 하였다.

□ 파주목에 안치한 죄인 정치달의 처(회원옹주)가 제멋대로 이탈하다

<정조 3년(1779) 6월 18일> 정치달(鄭致達)의 아내(회원옹주)를 교동부(喬桐府)로 내쳐서 안치시켰다. 송덕상(宋德相)의 상소가 있은 뒤에 시임대신(時任大臣), 원임대신(原任大臣)과 승지, 삼사(三司)에서 청대(請對)하였다.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등이 말하기를, “삼가 살피건대 정치달의 아내가 아직도 성 밖에 있는데 신 등이 오랫동안 억제되어왔던 정성을 한 번 퍼볼 기회가 닥쳤기 때문에 이렇게 인솔하고 와서 청대합니다” 하였다.

이에 임금이 말하기를, “선대왕께서 평소 무척 사랑하였던 때문에 그 러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찌 따르지 않겠는가?” 하였다.

도승지 심이지(沈履之), 대사간 이규위(李奎緯) 등이 서로 잇따라 극력 청하니 하교하기를, “대신과 삼사의 청이 이미 이러하니, 윤종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번 상소에 대한 하답에서 나의 마음을 죄다 하유한 것은 다만 선대왕께서 사랑하던 사람을 차마 손상시킬 수 없는 뜻에서 그런 것이다. 이런 때문에 형률에 의거 조처하지 않고 있었으나 유현(儒賢)이 논한 것이 또한 이와 같으니, 그대로 도성 밖에 놓아 둘

수 없다. 정치달의 아내는 감사(減死)하여 파주목으로 내쳐 안치시키라”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또 말하기를, “파주는 도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니, 이에 다시 교동부로 고치라고 명하였다.

<정조 7년(1783) 1월 7일> 승지 조시위(趙時偉) 등이 아뢰기를, “방금 경기감사가 올린 장계를 보니, 죄인 정치달의 처가 이미 파주에 있는 그의 묘사(墓舍)에 와 있다고 하였는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가도사(假都事)와 지방관 역시 오늘의 신하입니다. 이 역적은 한 하늘 밑에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지(密旨)를 가지고 가는 것을 예사로 보아 넘겼으며 죄인을 이송하는 것을 어려움 없이 거행하였으니, 어찌하여 이 지경까지 되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경기감사의 장계에는 편히 와 있다는 것만 말하고 엄중히 지키고 있다는 말은 한 마디도 없었으니, 이는 또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지난 번 죄인이 섬에 있을 때에도 한계를 정하여 출입을 금지한 일이 있었는데, 더구나 지금 돌아온 곳은 도성과 아주 가까우니 참으로 엄중히 단속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정조 8년(1784) 10월 24일> 영의정 서명선(徐命善)이 아뢰기를, “경기감사가 밀계(密啓)를 올렸는데, 손수 쓰지도 않았거니와 또 시일도 적어 넣지 않았습니다. 극악한 역적의 집안과 서로 내통한 사람을 기두어 놓은 지 6일 만에야 비로소 임금에게 알렸는데 지방관의 죄를 청하지도 않았으니 대단히 봉매한 일입니다. 감사 이재협(李在協)을 파직시키고, 파주목사 이육(李燭)을 파면한 뒤에 잡아오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그때 정치달의 처를 파주에 안치하였는데, 경비를 엄격히 하지 못한 결과 무뢰배들이 남몰래 교통(交通)한 변고가 있었다.

<정조 10년(1786) 2월 23일> 정치달의 처를 파주의 시골집에 안치하

였는데, 병이 낫다고 하자 중사(中使)를 과연하여 문병하게 하였다. 그런데 임금이 얼핏 듣자니 목사 이문식(李文植)이 중사를 쫓아냈다고 하므로 즉시 그 자리에서 귀양 보내라고 하였다. 경기관찰사에게 명하여 엄히 조사하여 처벌하라고 하였는데, 이문식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불문에 부쳤다.

<정조 14년(1790) 9월 2일> 경기관찰사 김사목이, 내수사별제(內需司別提)의 명령을 받았다고 평계하면서 가마를 가지고 정치달의 처가 안치된 곳에 이르러 죄인을 싣고 서울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했다는 이유로 파주목사 정언형(鄭彦衡)을 법에 의해 엄히 치죄할 것을 장계로 청하니, 하교하기를, “파주목사는 그저께 할쏘기 시험을 치르는 일로 불러 대기 시켰다가 날이 저물어 하루 이틀 동안 더 기다리게 하였으니, 비록 자리 를 이탈하지 않으려고 한들 되겠는가. 더구나 올라올 때 순영(巡營)에 보고한 것도 파주목의 아전이었으니, 이 파주목사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또 더구나 파주목사는 중로에까지 달려가 죄인을 데리고 본 고을로 돌아갔다고 한다. 벼슬은 비록 낫다 하여도 역시 왕명을 수행하는 관리인데 일개 지방관이 어찌 감히 앞길을 막고 말이 끄는 수레를 함부로 막고 나선단 말인가. 이는 다만 망령되고 경솔하다고만 말할 수 없다. 파주목사 정언형도 잡아다 심문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조 14년(1790) 9월 4일> 부수찬 이의봉(李義鳳)이 상소하기를, “조지(朝紙)를 받아보니, 전 경기감사 김사목의 장계에 파주목에 안치한 죄인 정치달의 처가 제멋대로 이탈하여 떠나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 정치달 처의 범행이 어떠한데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신이 세자시강 원에 있을 때 부마도위(駙馬都尉) 매온(梅殷)의 일을 가지고 진강하던 글의 뜻에 따라 진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역적 후겸(厚謙)의 역모가 채 드러나지 않았어도 신은 일을 앞질러 염려한 나머지 서리를 밟으

면 얼음이 언다는 경계를 약간이나마 드러냈던 것입니다. 지금 역적 후
겸은 비록 처단되었으나 그 어미가 아직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국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한데,
더구나 제멋대로 이탈한단 말입니까. 감사가 막고 나선 것은 당연한 자
기 직책인데 이에 대한 처분을 과도하게 하였고, 흥문관에서 차자를 올
린 것도 또한 공정한 논의였는데 이를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400년 동안에 일찍이 없었던 일로서 삼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빨
리 취소의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네가 세자시강원에 있을 때 매온의 일을 진강하던 글의
뜻에 따라 진술한 것을 어찌 기억하지 못하겠는가. 그 글은 그때의 상황
에 맞는 일로서 너의 정성이 가상한 것이었으나 오늘에 있어서는 문제
를 벗어난 진부한 말이다. 대사령이란 명목으로 방면하면서 그 방면하는
조치가 외부의 사람에게만 미치고 가까운 친척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이 옳은 일이겠는가. 세룡(世龍)의 처를 용서하여 석방한 것도 또한
법을 존중하는 하나의 단서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이제는 일이 이미 안
정되었으니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문제삼을 것이 없다. 옥당의 차자를
세초하게 한 것은 정말 지나친 일이었다. 비답을 내리고자 한다” 하였다.

<정조 19년(1795) 3월 11일> 하교하였다. “다시 그 일에 대한 전말을
들어보건대, 파주목사의 경우는 왕명을 받든 일행이 내려가기도 전에 군
졸을 동원하여 그 빈 집을 포위했다고 한다. 그가 과연 그 속에 정치달의
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겠는가. 이 한 조목만 가지고도
그 죄가 중률(重律)을 적용 받아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왕명을
받든 일행에 대해서는 맞서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죄를 범한
것이 앞서 전교를 내린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해야 하겠다. 그런데 왕
명을 받든 일행이 돌아올 적에 그 집의 방과 마루와 문과 창을 하나하나

모두 열어두어 아무도 살지 않는 텅 빈 집이라는 것을 알게끔 하였는데 도 오히려 감히 파수를 세우고 있었던 것처럼 말을 하였다. 그가 아무리 무부(武夫)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갖추고 있을 텐데 어찌면 그토록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거제(巨濟)에 충군(充軍)시킨 것도 관대한 은전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정조 19년(1795) 3월 14일> 의금부가 정치달의 처를 파주목의 배소(配所)로 돌려보낼 것을 아뢰었다.

<정조 19년(1795) 3월 28일> 하교하였다. “나라에 있어 막중한 일로는 형정(刑政)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런데 근일 정치달의 처에 관한 일을 처음에는 법을 급히 은혜를 베풀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공(公)에 입각하여 사(私)를 억누르게 되었는데, 명색은 비록 배소로 돌려보내는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무기한 강역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다. 곁으로 드러난 형적(形跡)이 불성실하게 되고 말았으니 관계되는 바가 적지 않다.

당사자야 무슨 수로 자수를 하겠는가. 그리고 위에서도 결단코 조사 하려 하지 않았으니 의금부의 당상이나 낭관이 과연 무슨 죄가 있으며 오부(五部)의 관원과 하례(下隸)들이 또 무슨 죄가 있는가. 하루 이틀 계속 이런 식이 되면 도리어 국가의 체모만 손상되고 이를 듣는 이들이 의혹에 잠길까 두려워진다. 그래서 누차 생각한 끝에 이런 분부를 내리게 되었는데, 만약 혹시라도 쟁집하며 소란을 피우면 그때는 곧장 석방하여 서울에 있는 그의 옛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금방 내시(內侍)를 보내 정치달의 처가 있는 곳에 전하여 파주로 도로 떠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한 만큼 형벌을 한 등급 낮추어 다시 편할 대로 거주케 하는 형전(刑典)으로 고쳐서 예전대로 도성 밖에서 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공법(公法)도 신장되고 사恩(私恩)도 행해졌으며 형정(刑政) 역시 잘못되었다는 탄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4. 금표

□ 고양의 군곡을 파주로 옮기다

<연산 10년(1504) 8월 29일> 상이 경기관찰사 안윤덕(安潤德)에게 전교하기를, “고양이 금표(禁標) 안에 들어갔는데, 군의 곡식[群穀]을 어느 곳으로 옮길 것인가?” 하니, 윤덕이 아뢰기를, “파주로 옮겨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 이에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 파주 보곡현까지 금표 안에 들다

<연산 10년(1504) 11월 9일> 우찬성 이계동(李季仝)이 동·서·북 금표의 지도를 가지고 아뢰기를, “동쪽은 한강 삼전도(三田渡)·광진(廣津)·묘적산(妙寂山)·추현(槌峴)·천마산(天磨山)·마산(馬山)·주엽산(注葉山)으로부터, 북쪽은 석점(石岾)·홍복산·해유점(蟹踰岾)까지와, 서쪽은 파주 보곡현(寶谷峴)까지, 남쪽은 한강 노랑진·용산 양화도(陽花渡)까지인데, 동쪽은 70리, 서쪽은 60리, 북쪽은 65리, 남쪽은 10리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강 망원정(望遠亭) 근처를 다시 살펴보아 표를 세우라” 하였다.

□ 주위 100리에 금표비를 세우다

<연산 11년(1505) 5월 29일> 좌찬성 이계동, 경기관찰사 송일(宋軼)이 금표의 경계를 물린 지도를 바치니, 서로는 임진(臨津) 건너 편 5리쯤에 이르고, 동으로는 용진(龍津)에 이르고, 북으로는 회암(檜巖)에 이르고, 남으로는 용인현 북쪽에 이르렀다. 전교하기를, “반드시 100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매, 송일이 아뢰기를, “경기도 안의 땅이 반이 넘게 금표 안에 들어갔사오니, 충청도의 고을을 갈라서 경기에 붙이소서. 또 양주·파주의 금표 밖으로 남은 땅 및 이민(吏民)들을 이웃 고을에 옮겨 붙이



연산군 시대의 금표비(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고, 금표 안의 각 역(驛)을 금표 밖으로 설치하고, 양주진의 군정(軍丁)을 다른 고을로 옮김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 금표 안에 들어가는 자는 죽여 길가에 버리게 하다

<연산 11년(1505) 7월 1일> 상이 승정원에 문기를, “예로부터 제왕은 누구나 연회를 베풀고 놀이하는 곳이 있었다. 수(隋)에는 분양(汾陽), 당(唐)에 여산(驪山), 고려 역시 장원(長源)이 있었다. … 장의문(藏義門) 밖이 산 밖고 물 고와 참으로 한 조각 절경이므로, 금표를 세워 이궁(離宮) 수십 칸을 지어 잠시 쉬는 곳으로 하고자 하니, 의정부와 의논하여 지형을 그려서 바치라” 하자, 영의정 유순 등이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윤당

하십니다” 하였다.

이로부터 동북으로 광주(廣州)·양주·포천(抱川)·영평(永平)에서, 서남으로는 파주·고양·양천(陽川)·금천(衿川)·과천(果川)·통진(通津)·김포(金浦) 등에 이르는 땅에서 주민 500여 호를 모조리 내보내고, 내수사(內需司)의 노비를 옮겨 채우고, 네 모퉁이에 금표를 세우고, 함부로 들어가는 자는 목을 베고 그 시체를 길에 버리게 하니, 나무꾼과 목동들의 길이 끊겼다.

□ 금표 안 무덤에 제사지내려 들어가도록 허가하다

<연산 11년(1505) 7월 22일> 전교하기를, “이제부터 모든 속절(俗節) : 제삿날 이외의 차례 지내는 명절)에는, 금표 안에 무덤이 있는 자에게 2 일을 한하여 제사 지내려 들어가는 것을 허가하되, 마구 다니지는 못하게 하라” 하였다.

왕이 고양·양주·파주·광주·영평 등지의 인기를 철거하고 금표를 세우니, 쑹대밭만 멀리까지 바라보이고 인가는 볼 수 없었다. 사족(土族)·서인(庶人)이 비록 무덤에 가서 제사지내더라도 적의 지경에 몰래 들어가듯이 하여, 누구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으며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었다.

□ 동도검찰사 등에게 금표 안의 일을 검찰하도록 하다

<연산 12년(1506) 6월 2일> 전교하기를, “동도검찰사(東道檢察使)는 전 양주에, 서도검찰사는 전 파주에, 남도검찰사는 전 금천에 들어가 살면서 수쇄관(搜刷官)과 함께 금표 안의 일을 검찰토록 하라” 하였다.

□ 연산의 죄상에 대한 사신의 논찬

<중종 즉위년(1506) 9월 2일> [사신은 논한다. 연산은 성품이 포악하

고 정치를 가혹하게 하였다. 주색(酒色)에 빠져 죽어난 어미를 추승(追崇)하면서 대신(大臣)을 많이 죽였으며, 바른말로 간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여 언관(言官)을 죽이거나 귀양보냈으며, 서모(庶母)를 장살(杖殺)하고 여러 아우들을 역시 죽이거나 귀양보냈다. … 도성(都城) 사방 100리 이내에는 금표를 세워서 사냥하는 장소를 만들고, 금표 안에 들어오는 자는 기훼제서율(棄毀制書律 : 한글사용자를 극형에 처하는 법률)로 논죄했다. … 사직북동(社稷北洞)에서 홍인문(興仁門)까지 인가를 모두 칠거하여 표를 세우고, 인왕점(仁王站)에서 동쪽으로 타락산(駕駱山)까지 크게 민정(民丁)을 징발하여 높직이 돌성[石城]을 쌓았다. 광주·양주·고양·양천·파주 등의 읍을 혁파(革罷)하고 백성들을 모두 쫓아내어 내수사의 노비가 살게 하고, 혜화(惠化)·홍인(興仁)·광희(光熙)·창의(彰義) 등의 문을 폐쇄해 버렸다. 또 나루터[津渡]를 금지하고 다만 육로와 교량만 통하게 하였으므로, 나그네들이 몹시 괴로워하고 땔나무를 하기도 또한 어려웠다. …

5. 전염병

□ 황희가 유행병이 성한 원평·교하 등지를 구료할 것을 청하다

<세종 30년(1448) 10월 16일> 영의정 황희가 아뢰기를, “듣자오니 원평(原平)·교하 등지에서 황해도의 악병(惡病)과 유사한 병이 흥행(興行)하여, 이웃과 마을에 전염되어 거의 다 죽는다고 하오니, 청하옵건대 황해도의 예에 의하여 의원을 보내어 약을 가지고 가서 구료(救療)하게 하소서” 하니, 의원 임보중(任寶重) 등 두 사람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였다.

□ 악병이 성행하는 교하에 의원과 약재를 보내다

<문종 1년(1451) 4월 1일> 예조에서 아뢰기를, “경기의 원평·교하 등지는 도성(都城)에서 멀지 않은데, 지금 악병이 성행하여 이리저리 훑겨 가면서 전염되니 참으로 염려됩니다. 좋은 의원을 보내어 약재를 많이 준비하여 증세에 따라 치료하여 고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활민원을 수리하여 악병 치료소로 사용할 것을 건의하다

<문종 1년(1451) 7월 20일>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경기의 원평·교하·개성부(開城府) 같은 곳에 악병이 성행하는데, 약제와 침만으로 고쳐서는 효험을 보기 어렵습니다. 개성부의 활민원(活民院)을 수리하여 병자를 모아 놓고서 목욕·찜질의 방법을 아울러 써서 치료하되, 뗄 것과 약초 따위 물건 및 병자의 양식은 개성부가 책임지게 하고, 일을 도맡아 할 승려를 정하며, 각 소재관(所在官)이 병자에게 두루 일러서 활민원에 가도록 하되, 만약 이를 모르는 자가 있으면 수령을 죄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임금이 친히 교하 등의 악병을 구료하는 방법을 강구하다

<문종 1년(1451) 9월 5일> 상이 친히 악병을 구료하는 의(議)를 지어 은밀히 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에게 보였는데, 그 글은 이러하였다.

“듣건대, 교하·원평 등지에 악병이 전염되어 퍼지고 있다. 경기는 서울과 높고 낮은 지대에 걸친 지역이라 만일 서울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 병증이 유사한 자가 생긴다면 필시 천도(遷都)의 논의까지 이를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이 병을 구료하는 것은 급히 서둘러야 할 것이다. 혹자는 이르기를, ‘요 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약을 모아서 큰 향(香)을 만들어 환자가 있는 곳에서 주야로 이를 사르면 그 기운이 소멸하여 흩어진다’ 하고, 혹자는

‘약사여래(藥師如來)에 의하여 수륙재(水陸齋 : 바다와 육지의 여러 귀신을 위하여 올리는 재. 水陸會라고도 한다)를 법 받으면 기운이 자연 소멸 한다’ 하고, 혹자는 ‘항상 여귀(厲鬼 : 돌림병으로 죽은 귀신)에 제사지내는 예에 의하여 근신하는 사람을 보내어 제사지내면 그 기운이 자연히 흩어진다’고 한다.

나의 생각에는 비단 황해도의 병뿐만 아니라 모든 병의 전염이 모두 그런 법이니, 그 병의 초기에는 그 불길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 병세가 위중해 지면 불길이 치열하고 그 기세가 크게 번지는 것과 같아서 한 사람을 죽이고도 타인에게 접촉만 하면 곧 전염이 확대된다. 그렇다면 지금 병에 걸린 사람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인적이 끊긴 섬에 몰아 놓고 의복·양곡·약품 등을 넉넉히 주어 타인에게 더 번지지 않도록 할 것이 상책(上策)인 것이다. 다만 빠짐없이 찾아내기란 실상 어려운 것이어서 필연코 행하지 못할 것이다.

또 다른 일론(一論)이 있는데 … 물체가 있으면 반드시 신이 있다. 그러기에 물체가 크면 신도 크고, 물체가 존귀하면 신도 존귀하며, 물체가 선하면 신도 선하고, 물체가 악하면 신도 악한 법인데, 이제 이른바 악병이란 물건이 살인을 이미 많이 하고도 또 천리에 만연하니 이 어찌 귀신이 없겠는가? 만약 전장에서 죽은 원혼들의 소위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다고 하기 어려우나, 이것이 여귀의 소행이라고 한다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 여귀에 제사하는 것도 유익함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른 일론이 있다. 대개 양의(良醫)가 병을 구료함에 있어 그 환자의 마음부터 다스리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무릇 인심은 곧 천지의 마음이면 천지의 마음은 실상 조화의 근원인 것이 다. 그러한 까닭에 인심이 편안하면 천지의 마음도 편안하고, 천지의 마음이 편안하면 여기(厲

氣)가 자연 해산되고 화기가 응하게 된다. 지금 불법(佛法)이 사람들의 이목 속에 깊숙이 들어가 마치 취한 것같이 되어 있어 수륙재의 설시가 그곳 인심을 반드시 기쁘게 하고 편케 하여 이에 의뢰할 것이다. 이렇게 불 때 천지의 화기가 비록 일신의 병에까지 응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간혹은 이에서 치유되는 이치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수륙지법(水陸之法)이 비록 이단(異端)이라고 하나 정성을 드리는 것은 하나 같아서 유익한 것일는지 그 이치를 혹시 알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박절한 일은 본래 신이 들지 않는 것이 없으니 교하·원평 등지에 수륙재를 베푸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같이 협의하여 가하다 생각되면 속히 수륙재를 행하여 그곳 인심을 편케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 괴이하다고 할 수 있으니 장차 행한다 할지라도 군상(君上)으로부터 이 말이 나와서는 안되니 은밀히 예조로 하여금 이를 의정부에 통보한 뒤에 계문(啓聞)하여 행하도록 하라” 이어서 하교하기를, “마땅히 대신(大臣)과 상의한 것이로되 우선 네 의견을 밀하라” 하였다.

이계전이 아뢰기를, “귀신을 물리치는 약을 주야로 사르면 비록 그 기운을 소멸하는 이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약을 이어대기가 어려울 것이니 어찌 집집이 주야로 이를 사를 수 있겠습니까? 또 수륙재의 일이 본시 복을 기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백성의 병을 위하는 것이나 그 일이 괴탄(怪誕)에 가까우므로 반드시 대신들의 반박하는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여제는 이미 이루어진 격례(格例)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병인을 옮겨 놓는 일은 사세로 보아 필시 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정부로 가서 대신들과 의논케 하였다.

이에 좌찬성(左贊成) 김종서(金宗瑞)가 아뢰기를, “백성을 위하는 일으면 비록 천금(千金)을 흘는다 해도 아까운 것이 없는데 대향(大香)을 이어 대기 어려움을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수륙재는 군주가 복을 구하기

위하여 설시한다면 심히 불가하나 백성을 위하는 일이라면 해도 무방합합니다. 전일에 신이 함길도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가 되었을 때, 전후하여 500여 명이 전사한 곳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날이 음침하고 비 오고 습할 때는 귀신 우는 소리가 난다고 하여 이적(李迹)이 나에게 말하기를, ‘수륙재를 행하여 빌고자 한다’ 하기에 신이 금하지 않았으며, 권극화(權克和)가 황해도감사(黃海道監司)로 있을 당시 극성(棘城)에서 전몰 군사의 유골 100여 석(石)을 주워 불에 살라서 물에 띄우고 바람에 날리고는 승도(僧徒)를 청하여 수륙재를 행한 바 있습니다.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지금도 할 수 있으며 여제도 역시 행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우의정 황보인(皇甫仁)은 말하기를, “비록 이 병이 있다 해도 사족(士族)까지 서로 전염되었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전염된 자는 특히 깊주리고 부실한 사람들입니다. 수륙재와 같은 이단의 행위는 할 수 없고 다만 여제만 행하는 것이 온당하며, 대향을 사르는 것은 귀한 약품을 이어대기가 어려울 것이니 역시 하지 못할 것입니다. 환자를 옮겨 놓은 일은 가려서 옮긴다면 부모와 처자가 서로 격리되는 고통이 있을 것이요, 병이 없는 부모와 처자까지도 아울러 옮긴다면 또한 원기(怨氣)가 있을 것이므로 이 일도 역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좌참찬(左參贊) 안승선(安崇善)과 우참찬(右參贊) 허후(許訥)의 의견도 대개 황보인과 같았다.

다만 안승선은 말하기를, “대향이 비록 귀한 약이긴 하나 백성을 위한 일이라면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였고, 허후는 “비록 사족들은 아직 전염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나 황주판관(黃州判官) 신안선(申安善)의 사망을 사람들이 자못 의심하고 있어 사족은 아직 전염되지 않고 있다 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였다.

이계전이 그대로 회계(回啓)하니, 명하여 의정부를 부르고 인하여 이계전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전염된 자는 특히 굶주리고 부실한 사람들 이란 그 말은 옳지 않다. 인생 백년에 충실하기를 어찌 한 모양으로 지낼 수 있겠는가? 반드시 부실한 때가 있는 법이고, 병기운이 불으면 어찌 능히 면하겠는가? 이는 통하지 않는 의논이다. 향을 사르는 것이 약을 먹는 것만 같지 못하며, 황해도의 역질에 수륙재를 지낸다는 것은 나도 역시 들었는데, 그후에 역기(疫氣)가 약간 흩어졌다는 말이 비록 허망하긴 하나 인심의 향하는 바이니 수륙재를 지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여제는 행하여도 좋다. 다시 현의토록 하라” 하였다.

황보인 등이 현의하기를, “대향을 사르는 것은 사세로 보아 이어대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일에 명나라 창천사(昌天使)가 나왔을 때, 그 일행의 두목중에 죽은 자가 많이 있어서, 명하시어 귀신을 물리치는 약을 지어 근신(近臣)과 사신관에서 접대하는 자들로 하여금 은밀히 이를 몸에 차게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 약을 지어 환자로 하여금 가슴속에 차게 하소서. 의원의 말에 의하면 이 약을 차게 되면 병은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합니다. 환자의 심리가 반드시 나으리라고 여긴다면 혹은 병의 차도를 가져올 수 있는 이치도 있을 것입니다. 수륙재는 그 당시 권국화가 예조에 보고하여 예조에서 적당히 시행하라고 회보(回報)하였던 것이니, 그 뜻은 수륙재를 금할 필요가 없고 또한 스스로 지내도록 한 것입니다. 명하시어 경기감사를 불러 이 뜻을 유시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여제의 일은 예조로 하여금 마감토록 하소서” 하니 상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 악병엔 수륙재가 제일이라고 믿는 백성들

<문종 1년(1451) 9월 15일> 경기감사가 아뢰기를, “도내 원평·교하



기산풍속도에 보이는 수륙재를 지내는 모습

등지에 모든 잡된 질병이 전전해 전염되어 인근 군읍까지 침투되고 있는데, 비록 의약으로 치료하여도 즉시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이 주야로 생각하여도 구료의 방책을 얻지 못하여 향촌(鄉村)을 순회하면서 노인들에게 물었더니, 모두 말하기를, ‘지난번에 황해도 황주 등지에 악병이 한창 성행할 때 사람들이 이르기를, 제사 없는 원혼들의 빌미라 하여 수륙재를 베풀고 기도를 드린 연후에야 여기가 점차 그치게 되었으니, 이제 원컨대 수륙재를 베풀어 지성으로 기도하면, 병기운이 조금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노인들의 말이 비록 터무니 없다 하나 그 습속(習俗)이 이미 오래되어 이같이 하고자 하는 것도 그들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온 것이니, 원평 등지에 어느 산수 좋은 곳을 택하여 계율을 잘 지키는 승려로 하여금 수륙재를 주관(主管)하여 행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희망에 쫓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수륙재를 반대하는 양반들

<문종 1년(1451) 9월 19일>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정창손(鄭昌孫) 등이 상소하기를, “경기 교하·원평 등지의 백성들의 질병이 몹시 성행하여 절에서 수륙회(水陸會)를 베풀어 기도한다 하기에, 신 등이 이 행사의 폐지를 청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 이제 우리 주상 전하께옵서는 천성이 예지(睿智)하시고 성학(聖學)이 고명하시어 불교(佛教)·노자(老子)의 무리와 무격(巫覡)·부장(符章) 등의 일에 본시 그 시비(是非)를 통찰하여 보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 등이 참람되게 간섭하는 것은, 다만 전하의 선(善)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 성(誠)에 도달하지는 않은 것이 아닌가 두려운 것입니다. 무릇 사람의 병이란 음양(陰陽)·풍우(風雨)·회명(晦明)의 과도한 데서 생기고, 생과 사는 모두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요, 진실로 인력의 미칠 바가 아닙니다. 하물며 이제 경기·황해도의 질병은 본시 기근(饑饉)이 든 나머지 어그러진 기운의 소치이거늘, 어찌 수륙의 기도로써 능히 풀 수 있겠습니까? 대저 도(道)로써 선(善)을 해하고 정(正)을 어지럽히는 것이 이단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전하의 명철하심으로써 어찌 그 허탄하고 망령됨을 모르시겠습니까? 다만 백성을 사랑하는 간절하신 마음으로 어쨌든 구제하시려는 생각인 줄로 압니다. …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윤음을 내려서 빨리 수륙재의 일을 파하시어 한결같이 앞선 성현의 도를 좇으시고 이단들의 상도(常道)에 위배되는 말에 혼동해 듣지 마시고 선을 택하여 굳게 잡으시고 사(邪)를 버리는 데 의심하지 마시며, 이 백성을 무마하시어 감화되어 대화(大和)의 세상을 이루하시면 전하께서는 비록 공수(拱手)하시고 깊은 궁중에 계시면서 일을 지시하지 않으셔도 천지의 화기가 즉시 응할 것인데, 무슨 질병 같은 것을 족히 근심하십니까? 대저 그렇게 되면 선한 자가 항상 이기고

악한 자는 스스로 물러갈 것이며, 바른 자는 항상 신장하고 간사한 자는 스스로 굴복하게 되어, 선정도 행할 수 있을 것이요, 바라건대 전하께서 이를 채택하시옵소서” 하였다.

지평(持平) 문여량(文汝良)이 소(疏)를 써 가지고 가서 마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백성을 위해 하는 일이라 폐할 수 없다. 그밖의 말한 일들은 내 이미 너희들에게 말하였거니와 그밖의 다른 뜻은 없다” 하였다.

문여량이 다시 아뢰기를, “신 등이 감히 작은 일을 가지고 성상의 총명을 어지럽혀 실로 황공합니다. 그러나 임금의 좋아하고 승상하는 데로 백성들이 따라가므로, 이 일을 작다고만 이를 수도 없습니다. 일찍이 들으니, 황해도의 질병에도 이미 수륙회를 설행하였는데, 만약 이에 의거하여 한 예(例)를 삼게 되면 장차 뒤를 잇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계사(啓事)를 마치니 날이 이미 어두웠다. 임금이 문을 닫지 말라고 명하고, 드디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문여량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 인군(人君)의 정치가 어찌 한 경상(經常)에만 구애받아 변통(變通)할 수 없단 말이냐? 너희들이 능히 통찰하여 보지 못한다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 비난하지만, 이것은 너희들이 실상 모르고 하는 말이다. 배우는 자는 이치를 궁구하고 스스로 체득하여 시비를 명백히 변별하는 것을 지혜로 안다. 그러나 어찌 그 이치의 형체가 드러나 있어 능히 이를 보는 자가 있다더냐? 나는 그렇기 때문에 능히 통찰하여 보지 못하는 일에는 하나만 고집하여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이제 나의 이번 행동이 어찌 불법(佛法)을 정도라 하여 이에 현혹되고 또 승상하고 믿겠느냐? 근간 경기도 내의 백성들이 혹은 한 마을이 혹은 전가족이 병으로 죽은 자가 허다한 것이다. 그 가운데에는 환자를 버리고 피해서 살려고 한 자도 어찌 없겠는가마는 오로지 국가의 법령이 두려워서 감히 못한 것이니, 이는 몹시 애석한 일이다. 백성을 구제하기 위하여 수륙재를 설행하면 이는

곧 호생지덕(好生之德)이며 또한 후한 뜻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이 법은 유래가 오래 된 것으로서 역대의 제왕도 능히 다 배척한 자가 없으며, 우리나라 조종(祖宗)에 이르러서도 어찌 도(道)를 밝게 보지 못하고 학술이 정(精)하지 못하셨겠느냐? 태조 때에도 수륙의 법회가 있었으니, 대체로 어찌 모르고 하신 일이라 하겠느냐? 소장(疏章) 속에 또 말하기를, ‘백성을 무마하여 감화를 가져와 대화의 세상을 이루면 천지의 화기가 이에 응한다’고 하였는데, 대저 병이란 심리의 작용으로 짓는 것이 많다. 궁벽한 향리의 백성들이 서로 전염되어 죽어간 나머지에 이러한 수륙재를 보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국가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장차 마음속에 위안을 얻어 병기도 따라서 그치게 되고 화기도 또한 자연히 응해 올 것이다. 또 보응설(報應說)에 대하여도 나 역시 이러한 이치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령 이 일이 곧 이치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백성을 위하여 거행하는데 오히려 무엇이 부끄러우랴?” 하였다.

문여랑이 자리를 피하여 다시 말을 아뢰려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뜻은 내가 상세히 알고 있다. 다시 말하지 말라” 하니, 문여랑이 말이 없었다.

□ 교하·원평 등지의 악병이 전염된 곳에서 제를 올리다

<문종 1년(1451) 9월 20일>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 경기의 풍덕, 원평, 교하, 통진 등지에 각종 악병이 전전하여 서로 전염되어 목숨을 잃는 자가 자못 많아서 장래가 염려됩니다. 옛사람들의 재앙이 급박하면 모든 신에게 기도하는 예에 의하여 위의 항목의 각처 소재지의 수령으로 하여금 전(奠) 드릴 물품을 정결히 갖추도록 하고 조정 신하 중에서 근면하고 온후한 자를 택하여 황해도에 1인, 개성

부와 풍덕에 1인, 원평·교하·통진에 1인을 나누어 보내고, 큰 고을에는 2~3개소, 작은 고을에는 1개소로 하되 각 마을 환자의 다소에 따라 임시(臨時)하여 날을 가려서 치제(致祭)하게 하고, 집현전(集賢殿)으로 하여금 그 제문(祭文)을 짓게 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 악병에 걸린 사람을 토담집에 모아서 치료하다

<문종 1년(1451) 11월 5일> 예조판서 이승손(李承孫), 참판(參判) 정척(鄭陟)이 경기감사 박중립(朴仲林)과 회의하고, 풍덕·교하·원평 등지의 여러 가지 악병에 걸린 사람을 각각 근처에 맡겨서 토담집을 쌓고 모아서 치료할 일로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 박중립을 인견(引見)하고 직접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을 유시(諭示)하였다.

□ 1년 만에 또 전염병이 퍼지다

<단종 즉위년(1452) 6월 28일> … 원평·교하에 전염병이 퍼지다. …

□ 파주 등에 전염병이 돌자 제를 올리고 약물을 보내다

<효종 4년 2월 20일> 경기의 장단(長湍)·파주·풍덕 세 고을에 전염병이 크게 돌아 사망한 사람이 많았다. 예조가 신하를 불러 빌게 하고 또 의사(醫司)로 하여금 약물을 넉넉하게 보내게 할 것을 청하니, 따랐다.

6. 자연재해, 이변

연 대	재 해	현 황
태조 6년 8월 9일	천둥, 번개, 비	
태종 12년 4월 20일	비, 우뢰, 번개	교하현 청리암의 오얏나무가 벼락 맞음
태종 15년 9월 25일	번개, 우박, 유성	뒷박 크기의 붉은 유성이 떨어짐
세종 25년 5월 19일	벼락	교하현 사람이 벼락 맞음
연산 6년 5월 5일	우박	
연산 9년 8월 23일	지진	
연산 5년 8월 19일	우박	밤틀만한 우박으로 벼와 메밀이 손상
중종 10년 9월 21일	지진	
중종 10년 10월 1일	지진	
중종 10년 10월 11일	지진	
중종 16년 3월 15일	우박	
중종 16년 8월 4일	지진	
중종 37년 7월 21일	우박	큰 바람으로 곡식 피해
중종 36년 11월 18일	눈, 우뢰	
중종 27년 4월 3일	서리	
중종 24년 5월 17일	충해	밀·보리·조밭에 발생
중종 21년 8월 27일	우박	
중종 19년 5월 13일	충해	검은 바탕에 붉은 머리, 배는 청백색
인조 5년 7월 14일	바람, 비	곡식이 모두 쓰러짐
인조 25년 5월 23일	서리	
명종 20년 4월 19일	지진	지붕의 기와가 흔들림
명종 11년 9월 13일	천둥, 우박	
명종 11년 8월 12일	우박	
명종 10년 11월 10일	비, 우박, 천둥	
명종 1년 5월 23일	지진	
명종 3년 3년 28일	우박	
선조 16년 7월 29일	기형아	눈·귀가 넷, 코와 입이 둘, 손과 발이 넷, 자지가 들인 아이를 낳음
선조 38년 7월 24일	풍수해	
현종 6년 4월 23일	우박	밤틀만한 우박으로 보리·밀·목화가 손상
현종 10년 5월 11일	우박	비둘기알만한 크기
숙종 21년 7월 28일	서리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밤마다 서리가 내림
숙종 27년 7월 14일	충해	곡식 피해

제3장 파주의 경제상

1. 농업

□ 교하 등지의 벼가 여물지 않다

<세종 1년(1419) 7월 23일> 한평군 조연이 계하기를 “고양·교하 등지에는 벼가 여물지 않았습니다”고 하니, 상왕이 환관 최한과 신이희(申以希)를 보내어 살펴보게 하였다.

□ 교하의 혁명한 농부가 바람에 견디는 볍씨를 말하다

<세종 19년(1437) 11월 29일> 이성현감 전강(全強)이 상언하기를, “… 신이 태종 13년(1418)에 교하 고을을 맡았는데 벼이삭이 다른 해보다 곱절이나 충실하지 못했으나 간혹 열매가 충실한 벼도 있었습니다. 그 연유를 늙은 농부에게 물었더니, 모두 말하기를 ‘벼는 바람을 꺼리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오로지 볍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때는 신이 시험하지 못한 일이므로 감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근년에 농장에다 바람을 꺼리는 볍씨와 그렇지 않은 것을 심어서 시험하였더니 과연 농부의 말과 같았습니다. 만약 바람에도 견디는 이 볍씨를 바꾸어서 심게 한다면, 수년 후에는 자연히 충실하지 않는

벼가 없을 터이니 거의 백성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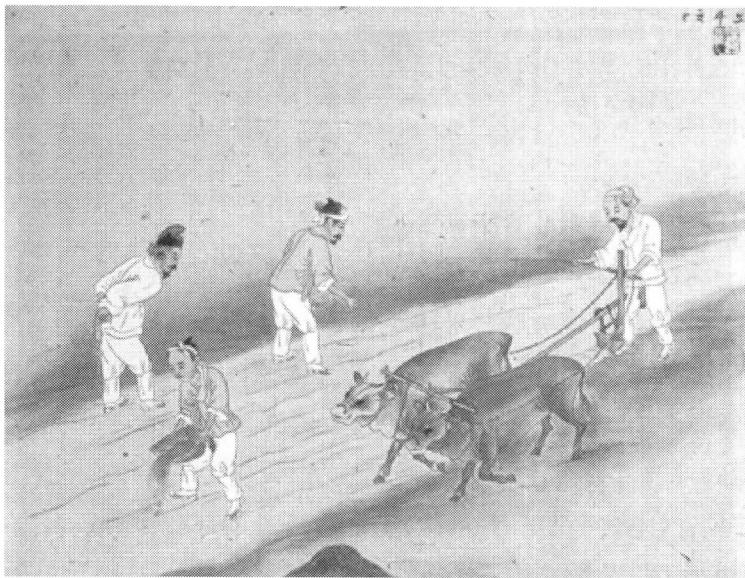
이에 여러 도의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전강의 상언이 이와 같으니, 바람에도 견디는 볍씨를 바꾸어서 우선 관가에서 심어서 시험하라. 그리고 가을 거둠을 기다려서 수량을 자세히 아뢰어라” 하였다.

□ 교하의 공수위전을 소로로 정하다

<세종 27년(1445) 7월 13일> 의정부에서 호조의 첨정에 의거하여 상신하기를, “이제 전제(田制)를 고쳐 상정(詳定)할 일과 개혁할 조건을 고사(考査) 연구하여 아래와 같이 기록합니다. … 공수위전(公須位田)은 지금 대로(大路)·중로(中路)·소로(小路)로 나누어 대로는 30결, 중로는 25결, 소로는 10결을 절급(折給)하게 하였다. 장단, 임진, 교하, 임강(臨江), 마전(麻田) … 등은 소로로 할 것” 하니, 그대로 따랐다.

□ 농번기에도 석회 굽는 데 동원되었던 교하 백성

<문종 즉위년(1450) 10월 10일> 전 현령 김승비(金承庇)가 상서(上書)하기를 “옛날에는 석회(石灰)를 구워 만드는 데는 돌이 좋고 나무가 무성한 곳을 골랐기 때문에 들어가는 힘은 적으나 이루어지는 공효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나무가 부족하고 돌이 좋지 않으므로 교하에서 백성들을 독촉하여 그 시목(柴木)을 운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 철 농사일이 바쁜 때에 파리하고 피곤한 소가 쉽게 밭을 갈지 못합니다. 그 가격으로 말한다면 1바리[駄]의 가격이 쌀 20~30두(斗)에 이르니, 부자는 좋지만 가난한 사람은 불쌍합니다. 신의 생각으로서는 도읍(都邑)을 옮긴 아래로 석회를 구워 만들었을 때에는 관(官)에서 일을 폐하는 탄식이 없었고 백성들이 나무를 운수하는 폐단이 없었습니다. 신(臣)은 다시 그 옛 곳으로 환원하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밭갈이하는 농부들, 기산풍속도

이에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능실(陵室)을 보수한다면 모름지기 품질이 좋은 석회를 써야 합니다. 만약 보통 때 나라에서 쓰는 것이라면 양주(楊州)·강화(江華)의 석회를 도로 쓰도록 하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병충해가 많은 교하

<성종 4년(1473) 7월 22일> 경기관찰사 김양경(金良敬)을 불러서 도내의 병충해를 물으니 김양경이 아뢰기를, “신이 통진·김포·금천·교하·고양 등의 고을을 두루 살펴보니 병충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심한 데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근래 듣건대 광주(廣州) 등지의 고을에는 처음으로 병충해가 있었다 합니다. 구황(救荒)하는 여러 가지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푸성귀는 신이 이미 준비해 두었고, 그 나머지 구

황하는 잡물(雜物)은 신이 마땅히 가을철을 기다려서 다시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상이 전지하기를, “경(卿)이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라” 하였다.

□ 농사가 잘 되지 않은 교하

<성종 24년(1493) 10월 29일> 호조에 전교하기를, “경기도의 교동(喬桐), 강화, 통진(通津), 김포, 양천, 부평 등의 고을은 농사가 매우 잘 되지 못하였고, 인천, 안산, 남양, 고양, 교하, 금천 등의 고을은 다음인데, 위의 여러 고을의 공신전(功臣田), 별사전(別賜田), 직전(職田)과 사사전(寺社田)의 세(稅)는 상납(上納)하지 말고, 모두 피곡(皮穀)으로 주의 관할 창고에 받아들여서 명년 종자(種子)로 준비하도록 하라” 하였다.

□ 우물이 바짝 말라버린 교하

<명종 22년(1567) 4월 12일> 경기감사 박계현(朴啓賢)이 아뢰기를 “신이 고양, 파주, 교하, 풍덕, 장단, 적성, 마전, 삭녕, 연천, 양주, 양근, 여주 등을 두루 돌아 농사를 시찰하여 보니, 봄이 지나 여름이 되도록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하천과 우물이 바짝 말랐으며, 비록 소나기가 오기는 하나 찬바람이 거세게 불면 즉시 말라버려 토맥(土脈)이 굳어서 밭갈고 김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종자를 심은 곳도 모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였고 보리와 밀은 농량(農糧)에 관계되는 것인데, 이삭만 나왔을 뿐 결실이 되지 않았거나 혹은 그대로 말라버린 곳도 있었습니다. 만약 가까운 시일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추수를 기대할 수 없으니 매우 걱정됩니다. 다만 지나는 촌락에는 식량이 떨어졌다는 보고가 없고, 도로에는 먹여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 . .”

□ 봉상시 땔나무를 파주와 금천에서 교대로 바치게 하다

<영조 5년(1729) 7월 3일>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파주에서 베어다 바치는 봉상시(奉常寺 : 국가의 제사, 謂號, 稽田의 관장을 맡았던 관청)에서 사용되는 땔나무를 금천과 함께 번갈아 베어 바치도록 명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기뭄으로 농사가 어려워진 파주

<정조 7년(1731) 7월 1일> 사관(史官) 김건수(金健修)를 보내어 경기 고을들의 농사 형편을 살펴보게 하였다. 임금이 김건수에게 이르기를, “올해의 한재(旱災)는 경기도가 심하였다. 허둥지등 다급해 하는 민간의 실정이 눈앞에 보이는 듯한데, 경기 고을 중에도 장단·파주·풍덕이 특히 더 침혹하다고 하였다. 백성들이 오두막에서 수심하고 있을 것이 염려스러워 구중궁궐(九重宮闈)이 편안하지 않다. 그대가 논밭들을 두루 다니며 농사 형편을 살펴보되, 그 중에 더욱 심한 곳에 대해서는 다른 곡식을 심게 하여 혹시라도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게 하라. 또한 백성들에게 각기 그대로 머물러 살도록 희유하여 비록 흥년이 듣다 하더라도 조가(朝家)에서 진구(賑救)하는 정책을 강구하여 혹시라도 유리(流離)하는 일이 없게 하라” 하였는데, 이런 뜻을 면전(面前)에서 거듭거듭 신칙하였다.

□ 파주목사를 불러 농사의 형편을 물어보다

<영조 21년(1745) 8월 21일> 임금이 환궁하는 도중에 어가가 신원(新院) 주정소(晝停所)에 도착하여 경기감사 서명구(徐明九)와 광주, 양주, 파주, 고양, 교하 등의 고을 수령을 불러 보고 농사의 형편을 물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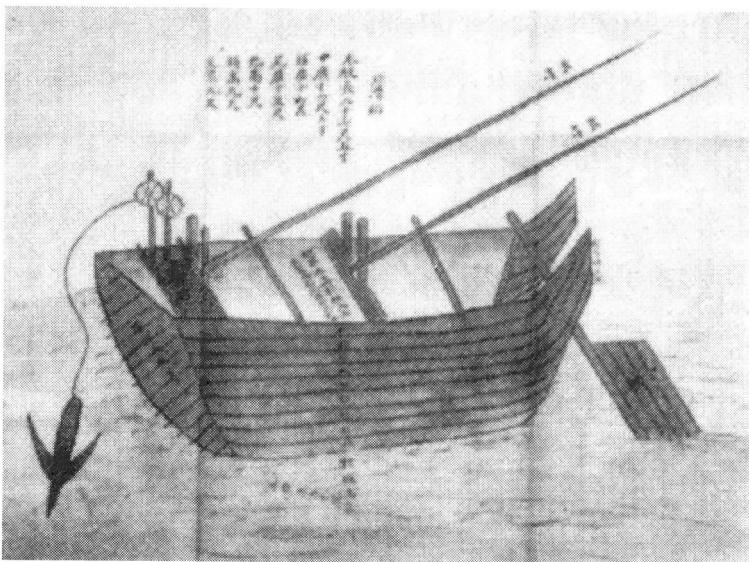
□ 양전을 하지 못한 파주

<영조 33년(1757) 5월 23일> 임금이 통명전(通明殿)에 나아가 경기감사 정홍순(鄭弘淳)에게 앞으로 나오도록 명하고 하문하기를, “…도내에 품처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니, 정홍순이 아뢰기를 “죽산과 파주 두 고을에서 타량(打量)하려고 하였으나, 신이 단지 진전(陳田)만 허락하였습니다” 하였다. 좌의정 김상로(金尙魯)가 말하기를, “도신이 완급(緩急)을 자세하게 살펴서 풍년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개량해야 합니다. 파주 두 고을에서도 모두 자원(自願)하였으면, 아울러 차례대로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양전(量田)은 중대한 일이다. 요체는 적합한 사람을 수령으로 얻는 데 달려 있으나 그 책임은 감사에게 있다” 하자, 정홍순이 인하여 밀하기를 “바야흐로 인산(因山)의 역사(役事)를 당한 데다 또 칙사(勅使)의 행차를 만나게 되었으니, 경기 내의 역(驛)들이 지탱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습니다. 본도에서 진휼하고 남은 곡식으로 도로 회록(會錄)해야 할 것 가운데 청컨대 1천 석(石)을 획급하여 역졸(驛卒)들을 구휼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특별히 허락하였다.

□ 혁파된 파주시장

<영조 37년(1761) 4월 16일> 임금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 상참(常參)을 행하였다. 호조판서 윤동도(尹東度)가 밀하기를, “봉상시의 제향(祭享)에 사용하는 시목은 파주시장(坡州柴場)을 혁파한 뒤에 호조와 선혜청에서 해마다 돈으로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그런데 사제감(司宰監)의 소목(小木)의 원공(元貢) 가운데 해마다 남는 것이 거의 10만 귄(斤)이 넘으니, 이것으로 넉넉하게 마련하여 진배(進排)하도록 하게 하고, 호조와 선혜청에서 대신 보내던 돈은 보내지 말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2. 조세



조운선

□ 전라도 조운선이 교하의 오도성 아래에서 침몰하다

<태종 17년(1417) 5월 26일> 전라도 조선(漕船) 3척이 교하의 오도성(烏島城) 밑에 이르러 풍랑을 만나 침몰하였다. 배에 탔던 사람들은 모두 익사하고 쌀·콩 2,680여 석(石)도 물에 잠겼다.

□ 파주 등지에 방출했던 군량미를 강화도로 수송하다

<숙종 8년(1682) 8월 20일> 주강(書講)에 나아갔다. 특진관(特進官) 민유중(閔維重)이 선혜청에서 추등(秋等)으로 바치는 경기의 수미(收米) 2,000여 석과 관리청(管理廳)의 군량미를 파주·연안(延安) 등의 고을에 나누어서 방출한 것 2천여 석을 강도(江都)에 수송하도록 청하였다. 상이 모두

옳게 여겼다.

□ 능역에 사역한 파주의 대동미를 감해주다

<숙종 27년(1701) 12월 20일> 임금이 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이세백(李世白)이 말하기를, “전부터 산릉(山陵)을 완역(完役)한 뒤에는, 도내의 각 고을에는 그 부역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 등을 두어 역을 감하였습니다. 이번 능역(陵役) 때에도 각 고을이 모두 이미 출역(出役)하였는데, 양주·파주 두 고을은 부근의 고을로서 그 출역이 다른 고을의 갑절이나 됩니다. 또 앞날의 능행(陵行)과 칙행(勅行) 때에도 스스로 백성을 부릴 이 없지 않을 것이니, 숙종 26년(1700)의 예에 의하여 각 고을은 올 봄의 대동미(大同米)를 각각 2두씩 감하고, 양주와 파주는 특별히 3두를 감하며, 고양은 지방관이기 때문에 가을의 대동미를 이미 완전히 감하였으니, 다시 논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로써 분부 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상이 말하기를, “전례대로 감하여 주라” 하였다.

□ 노비가 적어 사객 접대가 어려운 파주

<영조 21년(1745) 4월 5일> 상이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송인명이 경기심리사(京畿審理使) 조명리(趙明履)의 별단(別單)을 바치면서 말하기를, “… 심리사가 진달한 각 폐단 가운데에서 이천 등 열 고을의 진전(陳田)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가장 심하니, 청컨대 가을을 기다려 양전을 행한다는 뜻을 미리 엄히 신칙해야 합니다. 조선이 강으로 내려갈 때 양근·여주의 연안(沿岸) 백성들이 여울을 파는 역(役) 때문에 농사를 폐하기에 이르니, 참선(站船)에 참가해 싣는 일을 마땅히 금지해야 합니다. 양성(陽城)과 파주 등 네 고을은 노비가 매우 적어 사객

(使客)을 접대할 수가 없으니, 마땅히 다른 고을의 시노비(寺奴婢)를 적당히 헤아려 흑급해 주어야 합니다” 하였다.

□ 세를 감해준 은전의 혜택이 파주에만 미치지 않다

<영조 7년(1731) 10월 19일> 파주의 유학(幼學) 김여(金礪) 등이 상소하여 본읍(本邑)의 민폐(民弊) 두서너 가지를 진달하였다. 그 첫째는 태상사(太常寺). 제사나 贈謚에 관한 일을 보는 관아(官衙)에서 숫을 사들이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이었고, 그 둘째는 경기 백성의 세(稅)를 감해준 은전(恩典)이 유독 파주에만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으며, 그 셋째는 이제 막 천릉(遷陵)의 대례(大禮)를 겪었으니 마땅히 과거를 베풀어 위열(慰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비답하기를, “소진(疏陳)한 것을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 설과(設科)는 온천의 거동을 예로 끌어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3. 구휼

□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온 원평·교하 노인

<태종 16년(1416) 5월 7일> 원평(原平)·교하 등지의 노인 가운데 전전서(典書) 윤위(尹緯)와 김경의(金敬義) 등 10여 명이 대궐로 나아와 말하기를, “근년에 수재(水災)와 한재가 고르지 못하여 농민이 그 직업을 잃고, 금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목숨이 떨어질 뻔하였는데, 성상이 창고를 열어 구원하심에 다시 소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고 머리를 조아려 사례하니 눈물이 말을 따라 흘러나왔다. 중관(中官)에게 명하여 그들을 먹이게 하였다.

□ 교하 등지의 환곡은 유후사의 미두로 지급하다

<세종 5년(1423) 2월 22일> 호조에서 계하기를 “경기 철원, 원평, 삽녕, 장단, 임강, 마전, 연천, 통진, 교하, 안협(安峽) 등 각 고을 인민들의 환상(還上)은 부근 유후사(留後司) 창고의 미두(米豆) 각 1,600석으로 지급하라” 하니, 그대로 따랐다.

□ 매년 석회를 굽는 교하

<문종 1년(1451) 3월 17일> 전지하기를, “교하현의 석회(石灰)를 매년 구워 만드는데, 별도로 나라에 쓸 일이 있거든 임시하여 계달(啓達)하여 만들게 하라” 하였다.

□ 산전이 많은 파주

<세조 8년(1462) 3월 9일>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에서 경기관찰사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장단, 파주 동면(東面)과 양주 동면북(東面北), 양근, 지평, 영평, 가평, 포천, 연천, 마전, 적성, 삽녕, 광주 동면 등은 모두가 산전(山田)이어서 백성이 해마다 경작하지 못하고 서로 진황(陳荒)하니, 재상전(災傷田)의 예에 의하여 해마다 조사하고 분간하여 면세(免稅)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소년가장 철동

<세조 13년(1467) 11월 26일> 교하 사람 철동(哲同)이 아비가 죽고 어미가 병들어서 어린 아우 네 사람을 데리고, 혹은 장작을 지기도 하고 혹은 양식을 구걸하여서 양육하였다. 본고을에서 철동의 나이가 16세에 찼다고 하여 의금부 하급 잡역인인 조례(阜隸)로 정하니, 철동이 임금의 사냥 나가는 틈을 타서 어가(御駕) 앞에서 원통함을 하소연하였다. 형조에

명하여 현감 최이남(崔李男)을 국문(鞠問)하게 하였다.

□ 풍수해가 심한 교하

<성종 3년(1472) 7월 29일> 호조에서 아뢰기를, “금년 경기의 수재는 다른 도에 비교하여 더욱 심한데, 이제 또 바람의 변괴가 이와 같기에 이르러서 교하 등의 여러 고을은 화곡(禾穀)이 손상하여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고 구황할 사건을 갖추어 올리니 … 그대로 따랐다.

□ 능이 많아 곡식이 부족한 파주

<성종 6년(1475) 10월 24일> 호조에서 경기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 앞서 본조(本曹)에 수교(受敎)한 것에 ‘경기 여러 고을의 군량은 심히 적은데 능이 많은 파주 등의 고을과 같은 곳은 저장한 것이 더욱 적어, 각제(各祭)의 향관(享官)과 왕래하는 사신(使臣)에게 바치는 미두가 부족하니 성종 5년(1474)의 구식분급미(口食分給米)는 상납(上納)을 제(除)하고는 고을 창고에 수납(收納)하는 것을 허락한다’ 하였는데, 금년은 농사가 흉년에 이르지 않아서 군자미(軍資米)를 전부 벼로 써 수납함은 불편하니 그 수효를 3분하여 1분은 본색(本色)을 따라 쌀로 써 수납하고, 2분은 벼로써 수납함을 허락하여 다음해의 종자를 예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세를 거두는 것을 보류해 달라고 조르는 백성들

<성종 19년(1488) 1월 25일> 호조판서 정난종(鄭蘭宗) 등이 와서 아뢰기를, “경기 여러 고을의 환상곡(還上穀)은 대다수가 미납(未納)되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근래에 이따금 은혜를 베풀어서 조세의 일부를 감면해 준 일이 있으므로 백성들이 여행수를 바라고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 환상곡은 지금 서둘러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여깁니다. 지금 만약 보류한다면 파직 당하는 수령이 많을 것이고 국가에는 유익함이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윤정월 그믐으로 기한을 물려서 받아들이도록 하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호조에서 아뢴 것이 내 뜻과 부합한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지금은 이미 절기가 늦었으나 마땅히 징수해 들이는 것을 보류해야 하며, 또 근일(近日)에 이의무를 교하로 환차(還差)했을 적에 환상곡을 독촉해 들이는 것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만약 백성의 생활은 돌보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것에만 힘쓰고자 한다면 이는 국가에서 백성을 구제해주는 뜻이 없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그것을 영돈녕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 의정부의 의논을 듣고 전교하기를 “아직까지 수납하지 못한 환상곡은 가을을 기다려서 다 징수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우박 피해를 입은 교하·파주 등지로의 강무 중단을 청하다

<연산 5년(1499) 8월 19일>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납시었다. 참찬관(參贊官) 최진(崔璉)이 아뢰기를 “… 지난번 교하·파주·장단 등지에 내린 우박은 크기가 상수리 열매와 밤알만하여 벼와 메밀이 모두 상하고, 올해는 경기의 곡식이 성숙하지 않아 백성들의 고충이 막심한데, 이제 만약 강무(講武)하여 8일에 이른다면 상체(上體)가 반드시 피로하실 것이며, 군사와 군마도 휴식할 시기가 없습니다. 지금 다만 번상군사(番上軍士)만을 쓴다 할지라도 20일의 식량을 준비하느라 전지를 파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강무는 대사인데, 어찌 8도가 풍년들 기를 기다리며, 또 어찌 반드시 아래의 권하는 사람을 기다려야 하겠는

가” 하였다.

□ 공물과 조세를 주창에 바치게 하다

<연산 8년(1502) 11월 3일> 경기판찰사 김수동(金壽童)이 아뢰기를, “금년에 경기의 각 고을은 모두 실농(失農)을 해서 봄에는 적지(赤地)에 종자를 뿌리지 못했고, 여름에는 홍수가 넘쳐흘러 제방이 무너졌으니, 비단 기근이 겹쳐 이를 뿐 아니라 명년에는 반드시 종자가 한 알도 없을 것입니다. 신이 전일에 균량에 소요되는 것을 모두 피곡(皮穀)으로 거두 어들여서 종자를 지급하도록 계청했는데, 윤허하시므로 신이 각 고을의 종자와 전결(田結)의 수효를 마련해 보니 전결의 수효는 많고 곡식의 수량은 부족하여 비록 모두 지급하더라도 종자는 절반 이상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대처하겠습니까? 경기는 근본이 되는 지방이니 도리상 마땅히 후한 은혜로 구제해야 하겠지만, 온 도(道)의 공물(貢物)과 조세를 만약 전량을 바치지 않는다면 마음에 미안하므로 다만 재해가 가장 심한 고을만 골라서 아뢰옵니다. … 파주·장단은 그다지 심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이 두 고을은 네 갈래 길의 요충지에 끼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입거하는 백성들이 모두 이곳에 많이 모여들어서 백성들의 재력이 갑절이나 곤궁하게 된 데다가 명년에 중국의 사신이 오게 되면 더욱 심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파주·장단 등은 금년의 공물과 조세를 경창(京倉)으로 올리지 말고 주창(州倉)에 바치게 하여 운반하는 폐단을 없애고, 명년 종자로 지급하기를 청합니다. … 지난 을묘년에 파선된 남양의 조세는 지금 당연히 경창으로 징수해야 하겠지만, 이것을 주창에 바치게 하여 다른 고을의 종자로 지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별창이 비어버린 파주

<중종 6년(1511) 4월 25일> 유순정은 의논드리기를, “경기의 각 고을 별창(別倉)을 철거하여 양곡 보충하는 일은, 흉년이 들면 양식은 군자미로 구제할 수 있지만 종자는 오로지 별창의 저장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별창의 저장으로 백성들에게 준 것이 오래도록 미납되면 감면하는 수도 있으니, 이 때문에 줄기만 하고 늘지는 않습니다. 그중 철거하는 각 고을 별창의 저장이 더욱 넉넉하지 못하여 해마다 흉년 들면 종자의 부족도 염려됩니다. 경창의 묵은 쌀을 백성들에게 주었다가 가을에 오곡(五穀) 종자를 쌀값을 기준하여 각 고을 별창에 수납하여 부족분을 보충한다면, 관과 민에 매우 편리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묵은 것을 쓰고 새것을 저축하는 계획이겠습니다” 하고,

이계남(李季男)은 의논드리기를, “각 고을 백성들이 식량과 종자를 오로지 별창에 힘입어 살고 가고 있는데, 고양에는 전연 없고 금천, 광주, 파주, 양주, 영평, 양천 등 고을은 그 양이 매우 적으니, 여기에는 많이 저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충 저장할 계책이 없으니 관찰사가 오는 가을에 경창에서 나누어 준 환상곡을 잡곡 종자로 바꾸어 바치게 하는 계획이 매우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계남의 의논을 따랐다.

□ 경창의 곡식을 지원해 주길 요청하다

<중종 15년(1520) 3월 14일>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침찬관 이빈이 “... 근년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림에 허덕이는데, 수령이 진휼(賑恤)하려 해도 창고 곡식이 바닥이 나서 조처할 수가 없습니다. 파주의 경우 파주창(坡州倉)에 저장된 황두(黃豆)는 겨우 200곡(斛)뿐이어서, 백성에게 대여(貸與)할 수가 없으므로 백성들은 농우(農牛)를 기를 수가 없으니 경창 황두로 구제해 주소서. 경기지방도 이러한데 하물며 보고 들

을 수 없는 면 외방은 어떻겠습니까? 관찰사가 비록 규찰한다 해도 수령 중에는 태만하여 마음을 다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니, 수시로 어사를 보내 살피게 한다면 태만한 자로 하여금 근면하게 할 수 있고, 백성 역시 조정에서 항상 염려한다는 뜻을 알게 될 듯합니다” 하였다.

□ 경창의 곡식으로 파주 백성을 구휼하다

<중종 37년(1542) 5월 6일> 경기관찰사 신거관(慎居寬)의 서장에 말하기를, “파주 등 7~8고을은 지금 백성이 먹을 것이 떨어져 죽음이 아침저녁에 닥쳐 있는데도 보면서도 구제하지 못하니 매우 가엾습니다. 경창의 곡식 4,000섬을 더 제급(題給)하도록 허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전일에 경기관찰사가 치계하여 경창의 곡식을 주기를 청하였으므로 두 번 전교하였으나 호조가 방계(防啓)하였는데, 이제 또 치계하였으니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호조에 말하라” 전교하였다.

□ 춘궁기의 파주

<명종 12년(1557) 4월 18일> 경기감사 이윤경(李潤慶)에게 전교하기를, “지난 겨울 극심한 추위로 보리와 밀이 얼어죽어서 구황이 매우 급하니 여러 고을에 신척하여 조처하도록 하라. 경이 살펴본 곳 가운데 비가 알맞게 내렸는데도 파종하지 않은 데가 있으면 각별히 재촉해서 제때에 파종하게 하라” 하였다.

이에 이윤경이 아뢰기를 “파종은 거의 끝났습니다. 고양·파주는 종자가 부족한데 수원에는 곡식이 많다고 하므로 이를 옮겨다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알아보니 숫자만 헛되이 기록해놓았을 뿐 실제 곡식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간략한 대로나마 고양·파주로 옮겨다 주었습니다” 하니, “아뢴 뜻을 알았다” 고만 하였다.

□ 황정조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다

<선조 26년(1593) 3월 4일> 도체찰사 유성룡이 치계하였다. “왜적의 변란이 있은 두어 달이 지나자 성안의 백성이 차츰차츰 성안에 들어간 자가 많았는데, 적이 평양에서 패배하여 도망친 뒤로 앙심을 품고 독을 부려 정월 24일 밤 동시에 성안에서 분탕질하여 이를 셀 수 없이 많은 백성들이 도살되었습니다. 창칼을 요행히 도망쳐 중흥(中興)과 소천(小川) 등지에 흩어져 숨어 있는 자들도 매우 많은데, 굶주림과 헐벗음마저 겹쳐 죽는 자가 쌓이니 참혹함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신의 군관(軍官) 곽호(郭護)가 강화로 구출해 진구한 것이 남녀 노약 아울러 900여 명이고, 이빈의 군관 우림위 성남(成男)이 전후로 구출해 낸 것이 2천여 명이며, 그밖에 여러 진영에서 구출해 내는 것도 끊이지 않는데 기진하여 쓰러져 죽는 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 수백리 안에는 다시 남은 비축이 없으니 민생이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구제를 하자니 곡식이 없고 구제하지 않자니 차마 못할 일입니다. 각 고을에서 실어 온 황정조(荒正租) 2,000여 석이 또한 배 위에 있는데 이를 말먹이 콩 대신으로 주고자 하였으나 명장이 받으려 하지 않고 가버려서 달리 쓸 곳이 없습니다. 때문에 신이 눈앞의 참혹한 광경을 차마 보지 못하여 형편에 따라 1,000석을 덜어내어 파주, 개성부, 장단, 적성, 마전, 고양, 삭녕, 풍덕 등지의 굶주린 백성 및 서울 유민으로서 온 자들을 골고루 구휼하였습니다.”

□ 파주 피발아의 식량을 서울에서 주도록 하다

<선조 27년(1594) 4월 9일> 전교하기를 “… 장단·파주·고양에 있는 피발아(擺廢兒 : 공무로 급히 가는 사람)의 식량을 해당 사에서는 본고을로 하여금 제급케 하였는데 본고을은 어디서 그 식량을 얻을 것인가? 극히 민망하고 절박하게 여긴다고 한다. 듣건대 양주는 서울에서 제급하고 있다

하니 그 예대로 모두 서울에서 주도록 아울러 비변사에 이르라” 하였다.

□ 선혜청의 부족한 쌀을 파주 등지에서 충당하다

<인조 3년(1625) 10월 4일> 선혜청 본청에 저축된 것이 다 떨어져 장단·파주·고양 등에서 거둔 쌀을 저축해 두었다가 군량에 대비하라고 한 명의 정자를 청하니, 상이 정월을 기한으로 본 고을에 머물러 두라고 명하였다.

□ 조맥을 갚지 못해 목을 맨 파주 백성

<숙종 10년(1684) 6월 15일> 파주의 백성 양근금(梁斤金)이 경신년(1680) 봄에 조맥(耀麥) 1곡을 받았었는데, 때에 이르러 관청이 독촉하였으나 가난하여 갚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상이 이를 듣고 놀라 고 침혹하게 여겨 구휼하는 은전을 거행하게 하였다.

□ 파주목 시장의 분정을 불허하다

<숙종 28년(1720) 8월 2일> 지평 이동언(李東彦)이 상소하여 파주목(坡州牧)의 봉상시 시장(榮場)을 인근 각 고을에 나누어 정하도록 청하니, 묘당에 명하여 품처하게 하였다. 이후에 묘당에서 아뢴 바에 의해 시장 을 나누어 정하는 일은 대단히 많은 고을이 함께 그 폐해를 입는다 하여 시행하지 말도록 하였다.

□ 파주 등의 대동미를 줄여달라고 청하다

<숙종 44년(1718) 2월 1일> 지사(知事) 강현(姜鍾)이 아뢰기를, “... 양서(兩西) 지방의 여러 고을은 거듭 기근이 든 나머지 연이어 객사(客使)의 행차가 있어서 공사(公私)가 모두 탕진되었습니다. 앞으로 칙사의 행차가 있다면 실로 접대할 만한 형세가 못 되니, 마땅히 여러 고을에 환

곡을 나누어주어서 불시의 수용에 대비하게 하소서. 경지지방의 장단·파주·고양의 세 고을에서는 이러한 흉년을 당하였고 또 두 차례나 칙사의 행차를 겪은 테다가 역질마저 또 성행하여 마을이 모두 텅 비었으니, 금년 봄의 대동미는 마땅히 줄이도록 허락하여야 합니다” 하니, 세자가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

□ 파주의 환곡을 탕감하다

<영조 4년(1728) 12월 19일> 경기감사 이정제(李廷濟)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 교하에서 맡아 온 북한(北漢)의 쌀 700여 석은 본읍(本邑)에서 받아 두어 내년 봄의 위급함을 구제해야 하겠습니다. 파주는 지방관으로서 모든 책응(責應)하는 것이 다른 고을보다 10배나 더하니, 묵은 환자곡(還子穀)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는 외에 역을 면제하고 베를 줄이는 등의 일을 한결같이 가장 심한 고을의 예에 따라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특별히 탕감하여 조금이라도 지탱할 방도를 삼게 하소서”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아뢴 것을 모두 그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 파주 등지의 환곡과 모곡을 감면해 주다

<영조 16년(1740) 9월 5일> 거동할 때 지나온 파주·장단·풍덕·개성의 새 환곡과 군향의 모곡(耗穀)을 모두 감면시켰다. 경기감사와 여러 고을의 수령들을 불러서 접견하고 밀하기를, “행행을 겪은 곳의 백성들 또한 수고로웠을 것이니 의당 어깨를 내리고 쉬게 할 방도를 생각해야 한다” 하고, 이어 이러한 명을 내린 것이었다.

□ 포상 받는 파주목사와 승직되는 교하군수

<영조 30년(1754) 2월 1일> 전청(振廳)의 쌀 20,000곡을 팔아서 경기

백성의 진자(賑資)에 보태는 것을 허락하고, 파주목사 신종하(申宗夏)에게 새서표리(墨書表裏 : 임금이 주던 포상의 하나로, 새보를 찍은 유서와 관복감으로 주는 명주나 비단)를 내리고, 고양군수 이석희(李錫禧), 교하군수 유언탁(兪彦鐸)을 모두 벼슬을 올리라고 … 명하였다. 심홀사(審恤使) 한광조(韓光肇)가 아뢴 바에 따른 것이다.

□ 진휼청을 설치하여 파주 등지를 진휼하다

<정조 7년(1783) 5월 23일> 경기·호서·영남에 진휼청을 설치하였다. 1월부터 시작하여 이때에 이르러 진휼을 끝마쳤다. 경기의 관청이 진휼한 곳은 광주, 여주, 파주, 수원, 부평, 인천, 남양, 풍덕, 통진, 고양, 안산, 김포, 교하, 양천, 금천, 과천, 음죽(陰竹), 양주, 장단, 죽산, 안성, 진위, 용인, 이천, 양성, 양지, 포천 등의 고을과, 화량(花梁), 덕포(德浦), 덕적(德積), 주문(注文), 장봉(長峰) 등의 진(鎮)이었다. 총 굽주린 백성은 550,052명이었고, 진휼로 들어간 곡물은 25,200석 영(零)이었다. …

□ 파주의 대동미를 전미로 대신하다

<정조 7년(1783) 9월 22일> 윤음(綸音) 내리기를, “ … 아! 우리 경기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느냐? 무릇 백성들의 힘이 폐기 되고 백성들의 먹을 것이 유족해지게 할 바를 하나하나 구획한다. … 장단·파주·개풍(開豐)·교하 등의 대동전(大同田)에서 나오는 대미는 전미(田米)로 대신 받는다. … ” 하였다.

□ 파주 등지의 진휼을 마친다

<정조 8년(1784) 4월 20일> 경기에 진휼을 베풀었는데, 정월에서 시작하여 4월에야 이르러서 진휼을 마쳤다. 공진(公賑)으로 파주, 장단, 풍

덕, 통진, 남양, 죽산, 인천, 부평, 고양, 김포, 교하, 양천, 광주, 양주, 수원, 용인, 양지, 과천 등의 고을과, 덕포, 화량, 주문, 덕적, 장봉 등의 진에, 총 기민(飢民) 34만 3,838구(口)이며 진곡(賑穀) 3만 632석이었다.

□ 진휼에 공이 큰 파주목사에게 말을 내리다

<정조 8년(1784) 4월 21일> 경기 도신(道臣)이 진휼을 마친 장계를 올리고 수령 및 원납인(願納人)에게 상 주기를 청하니, 진휼청 당상, 이조 판서, 병조판서가 연석에 와서 품처하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파주 목사 이윤빈(李潤彬)은 가까이 있던 반열을 나가 정성을 다해서 봉공(奉公)하였으니 말을 내리라” 하였다.

□ 환곡 기일을 물려주다

<정조 8년(1784) 8월 19일> 파주와 고양의 묵은 환곡과 창고의 군향, 산성의 군향을 정지시키고, 교하의 정조 6년(1872)의 묵은 환곡도 또한 기일을 물려주도록 하였다.

□ 이재민에게 훌전을 베풀다

<철종 14년(1861) 7월 7일> 태풍에 무너진 파주목의 가호에 훌전을 베풀었다.

□ 파주목의 전세를 대납하도록 하다

<고종 4년(1867) 1월 25일> 파주목의 전세(田稅)를 대납(代納)하도록 제정하고 대동미는 저장하여 두었다가 전량을 떼어 넘겨 이전대로 장리로 늘어난 모곡을 받으며 군량 가운데서 축낸 것은 다시 5년을 기한으로 하여 특별히 뒤로 물려줄 것을 지시하였다. 파주가 지금 군사를 두고 무

예시험을 보이고 있는 데다 장수들과 군사들에게 줄 봉급을 형편상 미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제의한 것이었다.

□ 수해를 입은 파주·장단에 조세징수를 연기하라

<고종 19년(1882) 9월 10일> 차대(次對)를 하였다. 흥순목이 아뢰기를 “… 경기감사가 보고하기를 ‘장단과 파주 두 고을의 장부에만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는 땅이 없는 면적에 대하여 특별히 10년 동안 조세를 중지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한이 찼으나 다시 개간할 곳은 없고 최근 몇 해째 내려오면서 장마에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도리어 더 떨어져나갔는데 없는 토지면적에서 생판으로 조세를 징수하는 것은 차마 할 수 없습니다. 장단부(長湍府)에서 그전에 물에 떨어져나간 논 면적은 79결 45부 6속이고 새로 떨어져나간 논 면적은 9결 65부 6속이며, 파주목에서 떨어져나간 논 면적은 86결 1부 5속입니다. 다같이 10년 동안 더 조세를 바치는 것을 중지하게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지금 이 두 고을의 둑은 밭으로 된 부분[陳結]에서 생판으로 조세를 징수하는 것[虛徵]이 백성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되었기 때문에 10년 동안을 기한하여 조세를 중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한은 이미 다 찼지만 아직 전결(田結)이 생겨난 곳은 없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이 요청하는 것으로서 대개는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백성들의 숨은 고통과 관계되므로 돌보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계의 요청대로 다시 5년 동안 더 연기하여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ও

ঁ

제4장 임진왜란 · 병자호란과 파주지역

1. 임진왜란과 파주 전투상황

□ 임진강 전투

<선수 25년(1592) 5월 1일> 이산보(李山甫)를 이조판서로, 이항복(李恒福)을 이조참판으로 삼고, 한응인(韓應寅)을 제도순찰사(諸道巡察使)로 삼아 임진에 나아가 주둔하게 하였다.

적이 경성에 들어와서 며칠 동안 군사를 휴식시켰는데, 이것이 와전되어 ‘왜인들이 멀리서 오느라 발이 부르트고 피곤해 쓰러져 있으니 봉등이를 가지고도 격퇴할 수 있다’ 하였다. 행조(行朝)에서 이 말을 믿은 나머지 김명원을 재촉하여 임진을 건너 나아가 싸워 경성을 회복하도록 하였으나 명원이 감히 하지 못하였다.

때마침 한응인이 주청사(奏請使)로 연경에서 돌아왔고, 서계(西界)의 토병(土兵) 1,000여 명도 도착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오랑캐들을 상대해 본 정예병(精銳兵)이었으므로 응인을 장수로 삼아 임진에 나아가 주둔하면서 기회를 보아 진격하도록 하고, 명원의 통제를 받지 말도록 하였다. 그러자 응인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파주를 지나면서 명원을 만나지 않고 임진의 입구에 달려가 여러 장수들을 모은 뒤 진격할 것을 재촉하였다. 신활 등이 임진강을 건너 왜적을 공격하다가 크게 패하여 죽자

김명원과 한응인 등이 임진을 버리고 퇴주하였다.

당초 명원이 여러 장수들을 배치하여 신할(申皓)·유극량(劉克良)·이빈·이천(李薦)·변기(邊機) 등에게 임진의 모든 여울을 지키도록 하였으므로 방비가 점차 완비되었다. 그래서 적병이 남쪽 언덕에 도착하여 서로 버틴 지 8~9일이 지나도록 건너지 못하였다. 하루는 적이 여막을 불태우고 퇴각하여 도망하는 모양을 보이며 아군을 유인하였다. 신할은 날래기는 하나 지모가 없어 적이 실제로 퇴각하여 도망하는 줄로만 알고 강을 건너 추격하려고 하였는데, 경기감사 권정의 의견도 신할과 같았다. 명원은 그래도 어렵게 여겼는데, 이날 응인이 도착하여 모든 무리를 거느리고 건너려 하였다. 토병 가운데 몇 사람이 응인에게 고하기를 ‘군사들이 멀리서 와서 피곤한데다 기계(器械)도 정비되지 못하고 적의 정세도 아직 살피지 못했으니 조금 쉬게 하였다가 내일 형세를 살펴서 진격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응인이 작전을 지연시키는 발언이라 하여 몇 사람을 참하였다. 유극량은 나이가 많고 군사에 노련하였으므로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된다고 극력 말하자, 신할이 또 그를 참하려고 하니 극량이 말하기를 ‘내가 소싯적부터 종군(從軍)하였는데 어찌 죽음을 피할 마음이 있겠는가. 그렇게 말한 까닭은 국사(國事)를 그르칠까 싶어서이다’ 하고, 분개해서 나가 그의 소속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건너가서 적을 만나 순라하는 기병 몇 명을 참하였다.

신할의 군사가 모두 건넜는데 적은 먼저 산 뒤에 군사를 매복시키고는 산을 의지하여 진을 정돈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신할이 진에 나아가 휩박하니, 적이 일시에 함께 일어나 총과 칼로 접전을 벌이자 여러 군사가 마침내 허물어졌다. 극량이 신할을 부르며 진을 거두어 퇴각하려고 하였으나 신할이 응하지 않고 끝내 죽었다. 극량이 말에서 내려 땅에 앉아 말하기를 ‘여기가 내가 죽을 곳이다’ 하고 활을 당기어 적을 쏘다

가 화살이 떨어지자 죽었다. 군사들이 달아나 강 언덕에 이르렀는데 적이 뒤따르면서 사살하였다. 혹 목을 빼어 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졌는데 마치 바람 속에 낙엽이 어지러이 날리는 듯하였다.

명원과 응인이 그것을 바라보고 기운을 잃었으며, 상산군(商山君) 박충간(朴忠侃)은 군중(軍中)에 있다가 말을 타고 먼저 도망하였다. 군사들이 바라보고 원수(元帥)가 도망간다고 부르짖자 여러 여울을 지키던 군사들이 모두 흩어졌다. 명원과 응인이 모두 퇴각하여 행재소로 가고 적은 마침내 강을 건너 서쪽으로 향하였다[이달 17일이었다]. 원수종사관(元帥從事官) 전적 홍봉상은 본래 활쏘기를 좋아하며 병법을 안다고 자처하였는데, 이날 자청하여 전투에 참여했다가 죽었다.

□ 파주와 양주를 왕래하는 왜군

<선조 25년(1592) 5월 23일> 상이 대신(大臣) 최홍원·윤두수, 우찬성 최횡(崔滉), 예조판서 윤근수(尹根壽), 호조판서 한준(韓準), 병조판서 김응남(金應南) 등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파주에도 적이 있는가?” 하였다. 윤두수가 아뢰기를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적이 파주와 양주를 적이 왕래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 상이 이르기를 “나는 이미 종묘 사직의 죄인이 되었으나 경들만은 조종(祖宗)을 생각해서 수복에 충력을 기울여 달라” 하였다.

□ 방자한 의병들을 통제하게 하다

<선조 25년(1592) 9월 21일> 비변사가 아뢰기를, “태평 세월이 오래 되어 기강이 풀어진 끝에 전쟁이 일어났으므로 무장(武將)으로서 고을을 맡아 지키는 자 대부분이 모두 적을 만나기만 하면 패하였습니다. 이에

뜻이 있는 자들이 의병을 규합하여 스스로 한 부대를 만들고서는 의를 명분으로 내걸고 제도(諸道)에서 창도한 까닭에 조정에서는 그들을 가상하게 여기고 모든 논상에서 다른 군인들에 비해 특별히 우대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름을 군부(軍簿)에 두고 있으면서도 난을 피해 도망하여 흘어져간 자들까지 각기 폐를 지어 관가(官家)에 매이기를 기피하면서 이로 우면 싸우고 강적을 만나면 흘어지는데, 이기면 높은 상을 받고 패하여도 죄를 받지 않습니다. 각 부대가 뿔뿔이 흘어져 제멋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조정에서 지금 가부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대(沈岱)의 장계를 보건대, 장단과 삭령의 의병은 이정암(李廷醜)의 통제를 받게 하고, 이천·여주·음죽·죽산의 의병은 성영(成泳)의 통제를 받게 하고, 통진(通津)·양천(陽川)의 의병은 김천일(金千鎰)의 통제를 받게 하고, 파주·양주·광주의 의병은 심대의 통제를 받게 하여 동서(東西)가 힘을 합하여 경성을 협공하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그 계책이 유익하며 일의 계획도 깊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내용으로 제장에게 하유하소서” 하니, 왕이 따랐다.

□ 파주에 주둔해 있던 적이 경성으로 떠나다

<선조 26년(1593) 1월 30일> 경기순찰사 권징이 치계하였다. “제독의 대군이 이달 23일에 개성부에 도착하였고 파주에 주둔해 있던 적은 이 달 23일 경성을 향하여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화(金化)·금성(金城)의 적은 17일부터 이틀간 잇따라 올라와 동대문 밖에 진을 치고 여자 15명을 사로잡아 갔다가 모두 포천현 앞길에다 버렸습니다. 성(城)에 있는 적들도 나와서 동대문 밖과 남대문 밖의 사한리(沙漠里)와 한강 등에 진을 쳤고, 사대문 밖에는 녹각(鹿角 : 사슴뿔 모양의 바리케이트)을 많이 설치하고 경성의 젊은 사람들은 머리를 깎게 하고 노인들은 모두 죽였

으며 짐바리를 잇따라 한강 건너편으로 내보낸다고 하였습니다.”

□ 파주 대흥산성에서 싸우지도 않고 물러간 왜군

<선수 26년(1593) 2월 1일> 전라도순찰사 권율(權慄)이 적병을 행주(幸州)에서 격파하였다. … 권율이 파주의 대흥산성(大興山城)으로 옮겨 진을 치자 적병이 또 침입해왔으나 모두 싸우지 않고 물러갔다. 제독이 이 소식을 듣고는 갑작스레 회군(回軍)한 것을 자못 후회하면서 장세작(張世爵)으로 하여금 이덕형(李德馨)과 함께 도로 개성에 가서 군량을 비축해 놓고 기다리게 하였다.

□ 위관이 반적 김덕희 등을 공초한 내용을 아뢰다

<선조 26년(1593) 2월 21일> 위관이 아뢰기를, “반적 김덕희를 압슬하여 적의 정세 및 병기를 제작하는 제도와 적장 중 누가 살았고 누가 죽었으며, 수길의 생사 여부 및 수길의 지휘 등에 관한 일을 일일이 사실대로 공초하게 하니, 공초하기를 ‘적의 정세는 자세히 알지 못하나 일본의 사정은 군사가 모두 나와 국내가 텅 비어 변란이 일어날 단서가 있다 고 왜적의 졸개들이 저희들끼리 말하였다. 수길은 지금 생존해 있으며 병기는 별로 제조한 적이 없어 제도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 평양에 온 적장은 한 사람도 사망한 자가 없이 다 살아 있는데 오직 중국군과의 싸움에서 이름을 모르는 평행장(平行長)의 동생 한 사람이 죽었을 뿐이다. 다른 나머지 장수들에 대해서는 나는 평양 한곳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의 왜적들 생사는 전혀 듣지 못했다. 왜적이 나는 왜어(倭語)를 잘 알고 응관은 한어(漢語)를 잘 알기 때문에 상국을 범할 때에 데리고 간다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김응관을 압슬할 때 공초하기를, 당초 파주에 이르러 포로가 된 뒤에

오랫동안 군중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 행장이 거느리고 온 왜장들 중에 이번 중국군의 싸움에서 네 명이 죽었는데 모두 긴요한 장수들은 아니다. 나는 본디 왜어를 해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은 것들은 모두 덕회가 말하는 것을 들었을 뿐이었다. 또 적이 평양에 있을 때 현소(玄蘇)에게 물기를 ‘너희들은 상국을 범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다시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고 했더니, 현소가 답하기를 하기에 ‘상국에는 꼭 들어갈 것이고, 국왕이 있는 곳도 끝까지 추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기에 ‘국왕은 요동으로 갈 것이니, 너희들이 추격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자 현소가 ‘그렇다면 그대로 상국을 범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고 하였습니다.

김서남을 암슬할 때 공초하기를 일본에서 온 왜적이 ‘관백이 너희들은 전쟁에 이기지 못하면 본국에 돌아오더라도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고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왜노에게 침탈 당한 파주

<선조 26년(1593) 6월 5일> 경략이 물기를 “본국의 팔도 중에 어느 도 어느 읍은 왜노가 점거하였고, 어느 도는 침범당하였으며, 어느 도는 아직 침범받지 않았고, 어느 곳 어느 도는 전혀 지경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하는 사실을 세세히 갖추어 기록하여 자복(咨復)하도록 하십시오” 하였다. 회자(回咨)하기를, “경기도의 경우 광주, 여주, 파주, 양주, 수원, 부평, 이천, 인천, 장단, 남양 등 부진과, 양근, 풍덕, 가평, 안산, 삭령, 안성, 마전, 고양 등의 군, 그리고 용인, 진위, 영평, 양천, 김포, 지평, 포천, 적성, 과천, 금천, 통진, 교하, 연천, 음죽, 양성, 양지, 죽산 등 현은 모두 분탕을 겪었고 또한 점거된 일도 있었다. … ” 하였다.

□ 김응남이 도성 주변 상황 등을 아뢰다

<선조 26년(1593) 9월 2일> 대사헌 김응남이 서계하기를, “신이 처음 경성에 도착하여 살펴보니 종묘(宗廟)·사직(社稷)과 궁궐은 모두 불타 허물어졌고 큰 집과 일반 민가들도 거의 무너져 있었으며 대가는 아직 진주(進駐)하지 않으셨고 창고에는 저축된 곡식도 없었습니다. 진제장(賑濟場)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으로서는 짚주린 백성을 구제할 수가 없어서 하루에 죽는 백성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 그리고 경성 주위의 수백 리 지역은 초목이 우거져 새와 짐승이 노는 장소가 되었으며, 어떤 백성은 파괴된 곳에 돌아와 거접(居接)하였다가 중국 군의 뒷바라지와 빈번하게 오가는 사신들의 접대에 시달려 고혈(膏血)이 모두 말라서 다시 회생할 가망이 없으므로 하늘을 원망하고 울부짖으며 죽으려 해도 못하고 있는가 하면, 숲속에서 목매어 죽기도 하고 말 앞에 뛰어들어 밟혀 죽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그러한 실정이니 나라의 형편을 알 만합니다. 그 중에 양주, 포천, 파주, 고양, 교하, 풍덕, 양천, 김포, 부평, 금천, 과천, 용인, 죽산, 광주가 더욱 심하게 판탕되었습니다. 그러한 고을들은 경기감사에게 하문하여 특별히 수습 대책을 강구하여 조처한다면 나머지 백성을 살릴 수가 있을 것은 물론 경기도를 보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성과 용산의 창고에 있는 쌀은 1만여 곡(斛)밖에 되지 않는데 중국군과 우리의 백관(百官)들이 모두 그것에 매달려 먹고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중국군의 식료(食料)는 진실로 줄이기가 어렵겠습니까만 우리나라의 쓸데없이 먹는 사람에 대해서는 급히 태거(汰去)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특별히 배려하시고 백성의 괴로움을 곡진히 살피시어 그 중에 줄일 수 있는 것은 반쯤 줄여서 백성을 염려하시는 뜻을 보여주신다면 더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진교하기를, “비변사에 내려서 의논하여 조처도록 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삼가 김옹남의 계사(啓辭)를 보니 … 매우 염려됩니다. 도성과 경기의 구황책에 있어서는 이미 진휼사(賑恤使)와 구황어사(救荒御史) 등의 관원이 있으나 대체로 곡물이 결핍되어 마치 밀가루도 없이 수제비를 만들려는 것과 같습니다. … 이런 뜻을 아울러 수성대장(守城大將) 유홍(俞泓)에게 하유하여 형편에 따라 재량하여 줄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상(進上)에 관한 일은 현재 성상께서는 좋은 옷을 입지 않고 좋은 음식도 들지 않으면서 한결같이 절약하고 백성을 극진히 걱정하고 계신데 사방에서는 긴요하지 않은 공물을 줄이지 않고 전의 법규대로 백성들의 고혈(膏血)을 짜내어 천리 길을 운반해 오고 있으니, 이것은 물건을 낭비하는 데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예조로 하여금 참작하게 하여 그 가운데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2. 명나라 군사의 주둔

□ 벽제관 전투

<선수 26년(1593) 1월 1일> 제독 이여송(李如松)이 파주에 진군하여 벽제역(碧蹄驛)에서 싸우다가 불리해지자 후퇴하여 개성에 주둔하였다.

<선수 26년(1593) 2월 1일> 당시 관군(官軍)이 경기도 내에 나누어 웅거하면서 권율의 군사를 위시하여 들락날락하며 적을 치니, 적이 멀리 나가서 땔나무를 할 수 없었다. 창의사(倡義使) 김천일, 전라수사(全羅水使) 이빈, 충청수사(忠淸水使) 정걸(丁傑)이 수군을 이끌고 경강(京江) 어구에 진격하였으며, 하삼도(下三道)의 관군과 의병이 적의 길을 차단하니 적의 기세가 점점 꺾였다. 그런데 명나라 군사가 이미 멀리 물러가서

대대적으로 진공(進攻)할 수 없었으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유성룡이 왕필적에게 글을 보내기를, “적이 바야흐로 험고한 지대에 웅거하고 있으니, 쉽게 공격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대병(大兵)이 파주에 진주하여 그 후미를 끌어내어 끓어두고, 별도로 남병(南兵) 1만 명을 뽑아 강화로부터 한강 남쪽에 진출시킨 뒤 여러 둑을 공격하게 하면, 둑치고 있는 적의 형세가 약화되어 있으므로 쉽게 격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성에 있는 적은 돌아가 길이 차단되고 보면 반드시 용진(龍津) 쪽으로 향해 달아날 것이니, 후병(後兵)으로 강진(江津)을 쓸어버린다면 일거에 소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왕필적이 기책(奇策)으로 여기고 그 계책을 쓰려고 하였으나 제독이 따르지 않았다.

□ 명군이 벽제에서 패하여 파주로 퇴진하다

<선조 26년(1593) 2월 6일> 도체찰사(都體察使) 우의정 유홍(俞泓)이 치계하였다. “이날 27일 이제독이 군사를 거느리고 발행했는데 ‘사부총(查副摠)과 고언백이 같이 적을 정탐하러 나갔다가 마침 적병 6~700을 만나 적 400여 급을 참획(斬獲)했으나 많은 적이 무수히 나오므로 부총병이 벽제로 물러갔는데 적도(賊徒)가 추격해 온다’는 말을 듣고, 제독이 즉시 벽제로 가서 이미 도착한 정병(精兵)을 뽑아 거느리고 포진하여 접전했으나 포수와 모든 군사가 뒤에 처져 있었으므로 병력이 약하여 적을 격멸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휘하의 두 파총(把摠)만 잃고 해 저물녘에 파주로 퇴진했습니다. 이달 28일 동파(東坡)로 돌아가려고 하므로, 체찰사 유성룡과 도원수 김명원이 대면하여 퇴군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말하였으나, 마초가 부족하고 지세가 불리하니 돌아가서 며칠간 쉰 뒤에 크게 거병하려고 한다고 하고는,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출발하여 돌아

가고 사부총도 벽제에서 떠나 파주를 지났다고 합니다.”

□ 명군이 혜음령에서 패하여 동파로 퇴진하다

<선조 26년(1593) 2월 10일> 도체찰사 풍원 부원군 유성룡이 치계하였다. “26일 제독이 개성부를 경유, 임진의 얇은 나루를 건너 파주에 군사를 주둔시켰습니다. 27일 제독은 이도독(李都督)과 같이 가정(家丁 : 집에서 부리는 남자종) 100여 명을 거느리고 경성을 정탐하기 위해 벽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날 새벽 사총병(查總兵)이 방어사 고언백과 말을 달려 창릉(昌陵) 근처에 이르렀는데 적이 산골짜기에 많이 매복해있고 먼저 수백여 명이 나와 유인하였습니다. 총병이 군사를 거느리고 엄습하자 적들은 당하지 못하고 흩어져 달아나다 거의 다 참획되었고, 고언백의 군대도 사살한 것이 많았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후퇴하려고 할 때에 적의 후군 대부대가 이어 이르렀습니다. 제독이 혜음령(惠陰嶺)에 이르렀을 때 적병이 있다는 말을 듣고 말을 달려 돌진하다가 중로에 말이 넘어지면서 추락하여 왼쪽 뺨에 약간 상처를 입었습니다. 한참만에 일어나 적진으로 돌진하였는데 적의 무리는 중국군의 선봉보다 몇 배나 많고 중국군의 후속 부대는 미처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군이 적에 쫓기자 제독이 뒤를 막으며 후퇴했는데 대군이 점차로 후퇴하여 파주에 주둔했습니다. 중국군의 사상자는 수십 명이고 제독의 가정 중 매우 신임하는 자 1명도 죽었는데 제독이 말 위에서 통곡하였습니다.

28일 이른 아침에 명군이 동파로 물러나 주둔하려 하므로 신 등이 나아 군사를 후퇴시키는 것은 불가하다는 사유를 극력 진달했습니다. 제독은 뜰의 중앙에 나와 서고 여러 장수들은 좌우에 둘려선 뒤 신들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 군사는 어제 왜적을 이겼을 뿐 별달리 패배한 것이 없다. 지금 동파에 가 머물려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

만 이곳에는 마초가 부족하고 뒤에는 강물이 있어 화포와 기계, 남방 포 수 역시 쉽게 도착할 수 없기 때문에 동파로 돌아가 머물면서 군사들을 며칠간 쉬게 했다가 다시 전열을 정비하여 진격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일제히 끓어앉아 '중국군이 이미 전진했는데 만약 한발짝이라도 물러나면 적의 기세는 승세를 탈 것이고 민심은 동요할 것이니 이번 기회가 매우 중요하다. 또 남쪽의 의병(義兵)과 각처의 장수들이 중국군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이미 한강에 도착했고, 군량도 지금 한창 계속해서 수송되고 있는데 어찌 급급히 도로 물러나려 하는가? 이곳에 남아 있는 백성들은 왕사가 온다는 말을 듣고 각자 서로 가속(家屬)을 이끌고 옛집을 찾아드는데 지금 또 버리고 가면 반드시 모두 적에게 해를 입을 것이니 이러한 일을 어찌 차마 하겠는가'라고 했더니, 제독이 말하기를, '나는 본래 정탐하려고 온 것이다. 지금 돌아가 주둔하는 것은 다른 계책이 있어서가 아니고 군사들을 휴식시켰다가 다시 오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힘껏 간쟁하여 마지않자 제독이 손에 들고 있던 병부(兵部)에 보고하는 글을 보여주었는데, 대개 '경성에 있는 적병은 거의 20만이나 되지만 이군은 단지 몇 만뿐이고 또 사상자가 많다'고 하고 인하여 중원과 군량 운반을 청한 다음 말단에는 또 몸에 병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신이 손가락으로 지적하면서 고하기를, '성중에 있는 왜적은 많아야 1만여 명을 넘지 않는데 어찌 20만에 이른다고 하는가?' 하니, 제독이 '당신네 나라 문서 중에 말한 것이 그와 같다' 하기에, 신이 또 고하기를, '어떻게 적병이 20만이나 될 리가 있겠으며, 본국 문서에 어찌 이러한 말이 있겠는가?' 하니, 제독이 '문서에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찌 알겠는가?' 하였습니다.

절도사 이빈이 바로 그들 앞에서 끓어 엎드려 청하였으나 제독은 온화한 말로 깨우치기를 되풀이하므로 신들은 부득이 도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명군은 이날 즉시 행군하여 동파로 물러나 머물렀습니다.”

□ 접반사 윤근수가 중국군의 진퇴 상황을 아뢰다

<선조 26년(1593) 2월 16일> 접반사 윤근수가 아뢰었다. “신은 ‘부장(副將) 양원(楊元)이 봉황성(鳳凰城)에 가서 경략(經略)과 병사(兵事)를 의논하고, 왕래할 적에 통총병(侈摠兵)을 다 만나보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일관은 곧 통장군의 찬획(贊畫)이라 필시 그 내용을 참여해서 알 것이므로 신이 어제 구련성(九聯城)에 가서 서일관을 보고 물었더니 ‘양장군은 함경도의 왜적이 서쪽으로 향하여 중도에서 양도(糧道)를 끊을까 우려되기 때문에 그 수하 군사들을 거느리고 평양으로 돌아와 지키고, 이 제독 및 부장 이여백(李如栢), 부장 장세작 이하는 모두 그대로 개성에 머문다’ 하고, 또 말하기를 ‘지난 25~26일에 사(査)·이(李) 두 장수가 연일 적을 토벌하여 참획한 것이 매우 많았다. 27일에 또 진군하다가 왜적의 복병을 만나 중국군 3백여 명이 손실되었으나 죽인 왜적 또한 3백으로 살상이 엇비슷하다. 또 금 투구에 금 갑옷을 입은 왜장 하나를 죽였다고 하는데 그 자가 대장이라서 왜적이 시체를 가지고 달아났으므로 목을 베지 못했다. 그리고 개원위(開原衛)·심양위(瀋陽衛)·해주위(海州衛) 등지의 병마 3천을 뽑아 함경도의 왜적을 막을 것이다. 양원의 말이 ‘저번에 계속 비가 와서 도로가 진흙탕으로 무릎까지 빠져 말을 타고 돌격할 수가 없었다. 지금 만약 곧장 진격한다면 반드시 마군이 많이 상할 것이니 당분간은 평양 등지의 마초가 있는 곳에서 먹이면서 쉬게 하고, 보병은 개성·파주 등지를 방어하다가 군량과 마초가 비축되고 도로 또한 한 마르며, 또 후속 병마를 기다려서야 진격하여 소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제독도 ‘평양에 돌아가 머무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하였다. ‘경성의 왜적은 8~9천 명에 불과할 뿐이고 그 나머지 10,000여 명은 모두 그 대 나라 사람으로 왜적에게 투속(投屬)한 자들이다. 접전할 때 화살 맞은 우리 가정(家丁) 및 마필을 보니 모두 그대 나라 화살이었고, 싸움터에서 벤 수급(首級)도 태반은 두발(頭髮)이 있었다’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애양(愛陽)·청하(青河)·광녕(廣寧)·요동(遼東) 등지의 보병 12,000명이 올 것이다. 그대 나라에는 마초가 없으니 기병은 뽑아 올 수가 없다. 유정(劉繼)의 군대 역시 보병이다. 그리고 들으니 왜적은 경성 남쪽에 웅거하고 그대 나라 사람들은 북면에 있는데 지금 북쪽의 인가를 모두다 불태우고 남쪽의 가옥은 그대로 있다고 한다’ 하였습니다.”

□ 운암원에서 이덕형 등이 명군의 회군 등에 관해 아뢰다

<선조 26년(1593) 2월 19일> 오후 1시에서 3시사이에 상이 운암원(雲巖院)에 나아가 지중추부사 이덕형, 우승지 유몽정(柳夢鼎), 주서 심언명(沈彦明), 대교 조수익(趙守翼), 검열 조유한(趙維韓)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제독이 무엇 때문에 회군하는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군량과 마초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황해도는 비록 분탕되었어도 남은 곡식이 조금은 있으나 경기는 모두 분탕되어 마을이 폐허화하여 보기에 참혹했습니다.

정월 27일, 조승훈(祖承訓)·사대수(查大受)·장언충(張彦忠)·이영(李寧) 등이 3천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벽제로 갔는데 적과 마주쳐서 한 사람이 60급(級)이나 40급을 참하기도 하여 총계가 1,000여 급이나 되었습니다. 사대수가 제독에게 와서 적의 형세를 보도록 청하니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제독이 단기로 달려갔습니다. 신이 혜음령에 나아가 종사관 및 군관 1명에게 먼저 벽제에 가서 지공(支供)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관

군이 급히 돌아와서 하는 말이 ‘수많은 왜적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군사들의 후미에서 바라보니 적병의 수는 중국군의 10배나 되어 무려 수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신이 크게 놀라 달려가 보니 제독의 말이 넘어져 다리를 다쳐 한참 만에야 일어났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제독만 혼자 가고 장세작 등은 따라가지 않았는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세작도 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접전 할 때에 경이 보았는가? 적이 활을 가지고 있던가, 총통(銃筒)을 가지고 있던가? 기병이던가, 보병이던가? 접전할 때 먼저 무슨 병기를 사용하던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제독이 봄을 빼어 혼자 나아갔기 때문에 화포 등 기구는 모두 운반해 가지를 못하여 신기전(神機箭)만 발사했는데, 적은 포를 쏘며 먼저 진격해 왔습니다. 중국군이 바로 돌격해 격전하자 적이 조금 물러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적이 좌충우돌하며 일시에 진격해 오자 중국군이 대적하지 못하여 한편으로는 여러 장수들에게 군사 를 거느리고 진을 치게 하고 한편으로는 피로한 병졸들을 먼저 후퇴시켰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 군사들은 가지 않았는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이번은 신원(新院) 근처에 있었고, 도원수는 1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중국군의 후방에 있었습니다. 중국군이 후퇴할 때에 군량과 기기를 낭자하게 버려 말이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이 혜음령에 올라가 보니 제독과 여러 장수들이 싸우면서 후퇴하는데 중국군 300여 명이 왜적과 육박전을 하다가 패퇴할 즈음 파발의 독촉으로 남병(南兵)이 와서 구원 했습니다. 만약 이 군사들로써 진격했더라면 승첩할 형세였습니다. 그런데 제독은 수하의 많은 가정(家丁)들이 전사하고 이문승(李文升) 또한 전사했기 때문에 통곡하며 슬퍼하여 진격하지 않고 피주로 군사를 되돌렸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군이 버린 물건을 주워 모은 것이 있는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이번의 군사가 군량 약간과 갑옷 200여 벌을 주워 제독에게 바치니 제독은 갑옷 10여 벌만 남기고 그 나머지는 되돌려 주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군의 전사자는 얼마나 되는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적과 사상한 숫자가 서로 엇비슷하여 거의 5~6백 명에 이릅니다. 제독이 파주에 도착하여 세 대장과 의논하기를 ‘이곳은 전장으로 부적당하고 군량의 운반 또한 이어지지를 않으니 동파에 물려가 주둔하려 한다’ 하고 다음날 동파로 물려가 주둔했습니다. 사람과 말이 끓주리고 또 비가 올 징후가 있었으므로 개성부로 회군했습니다. 군색한 일이 많았지만 제독은 이미 우리나라가 분탕된 것을 알고 허물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조치한 군량이 얼마나 되는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천리의 거리에 군량을 운반하게 되니 궁핍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형세인데 조정에서 잘 처리하지 못하여 군량과 마초가 잊달지 못하고 심지어는 회군하기에 이르게 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동·강화·통진 등 고을의 마초를 모은다면 충족시킬 수가 있는데 권징은 자신은 순찰사라고 하면서 절제만 할 뿐이고, 감사는 권징이 군량과 마초 등 의 일을 관장한다고 하며 서로 미루면서 마련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강화에는 여유 있는 양곡이 수천 석 있는데 권징이 모두 사용(私用)했다 합니다. 제독이 개성부를 떠날 때에 인민들이 길을 막고 통곡하고 신역시 울면서 머물러 있기를 청했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행군이 안성참(安城站)에 이르렀을 때, 도원수가 보고하기를 중국군을 청하여 왜적을 공격하려 한다고 하기에 신이 그 서장을 제독에게 품하니, 제독은 ‘주린 군사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승전보가 이르렀기에 또 제독에게 드리니 여러 장수들이 모두들 ‘조선인들은 속임수가 있어 이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다가 사대수(査大受)의 첨보를 보고서야 비로소 기뻐하는 기색을 보이면서 즉시 정병 3천 명을 선발, 가서 임진을 방어하게 했습니다. 제독이 용천(龍泉)·안성 등지에 군량과 마초가 많이 쌓인 것을 보고는 '만약 개성부에서도 이와 같았다면 여러 군사들이 어찌 굶주림을 하소하며 물러가기를 청했을 리가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하였다.

□ 권율이 도성을 버리고 파주로 진을 옮기다

<선조 26년(1593) 2월 23일> 전라감사 권율이 치계하기를 "신이 주둔한 곳은 용산(龍山)과의 거리가 15리도 안되는데, 흉악한 적들이 보복할 계책으로 한강 이남의 진들을 불러모아 합세하여 다시 침범하려 한다는 소문이 경성에서 도망해온 사람들에 의해 여러 번 발설되었으며, 지금 용산에 진을 친 곳이 12개소라고 합니다. 도성 안의 왜적이 얼마나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중국군이 진격할 기약도 없고 또 성원하여 서로의 지할 진도 없이 단지 반분한 남은 군사를 그대로 위험한 지역에 머물게 했다가 혹시 차질이라도 있게 되면 관계되는 바가 중할 뿐만이 아닙니다. 이곳 역시 죽기로써 지켜야 할 곳이 아니므로 진을 파주로 옮겨 중국군과 연합할 계획입니다." 하였다.

□ 병졸에게 중국군의 옷을 입혀 남방으로 보내다

<선조 26년(1593) 2월 25일> 사간원이 아뢰기를, "북적이 재를 넘어 경성으로 들어와 합세할 형세에 있습니다. 중국 장수는 물러나 주둔하고 있어 진군할 기약이 없고, 권율은 지금 또 파주로 진을 옮겼으니 적이 만약 허를 틈타 남하한다면 오합지졸인 관군이나 의병의 형세로는 지탱하기 어려울 텐데 양호를 한 번 잊게 되면 대사가 글러질 것입니다. 만약 중국 장수에게 포수 일대(一隊)를 빌리고, 또 맹장(猛將) 및 재능 있고 용

감한 사관(士官)을 선발, 정예한 병졸들을 많이 거느리고 중국군의 복장을 입혀 급히 남방으로 보낼 것을 해당 관아로 하여금 상의하여 시행케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유성룡이 경성의 포위 상황을 아뢰다

<선조 26년(1593) 2월 25일> 도체찰사 풍원부원군 유성룡이 치계하였다. “경성에 있는 적의 무리가 12일의 행주전투로 인하여 사망자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15일에 충청수사 정걸(丁傑)이 수군을 이끌고 곧바로 용산창(龍山倉) 아래에 다다라 왜적을 향하여 포를 쏘았는데, 강변에 진을 친 왜병의 거의 20,0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한강 이남은 사평원(沙平院)에서부터 왜적의 분탕질이 전보다 더욱 치열하여 죽산까지 미쳤으며, 충주·음성·죽산 지경의 적세가 아주 큽니다. 원주의 적은 충주에 와서 모였는데 군량과 마초를 다량 운반하다 탄금대(彈琴臺) 건너편에 쌓아 두었다고 합니다. 16일에 전라도관찰사 권율이 적병이 재차 침범하려고 계획한다는 소문을 듣고 급히 진을 옮겨 파주로 와서 도원수와 연이어 진을 쳤습니다. 양천(陽川) 이남의 군사는 충청감사 허우(許頃)과 전라 병사 선거이(宣居怡)인데, 물러나 수원의 독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개 중국군이 물러나 주둔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동요를 면하지 못하여 분분히 모두 물러나니 이는 좋은 계책이 아닌 듯합니다. 신은 재차 권율을 독려하여 돌아가 행주산성을 지키게 하고 싶었으나 목책과 영루(營壘)가 이미 모두 타버려 군사들이 웅거할 곳이 없으므로 부득이 임시로 파주 뒷산에 머물러 이빈·고언백 등과 고기 비늘처럼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임진 이남 지역을 굳게 지키는 한편 기회를 보아 경성의 동서를 습격하여 공취할 계획입니다.

충청·호남 일로는 비록 사소한 의병은 있으나 관군은 모두 경도에 모

여 있기 때문에 양호는 텅 비었습니다. 적병이 곧바로 남하한다면 양호의 군현들은 결코 지탱할 형편이 못 되니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은 충청도순찰사로 하여금 군사를 나누어 본도의 요충지를 지키게 했습니다. 또 중국 장수 사총병(查總兵)이 동파에 머물러 있고 왕필적(王必迪)과 이영(李寧) 이하는 개성부에 있는데, 신이 도원수 김명원과 날마다 사정하면서 매번 대장에게 품의해도 결단하려 들지 않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 제독은 지금 봉산(鳳山)에 머물며 자못 후회하는 빛이 있고 군사를 돌려 남쪽으로 향하려 한다고 합니다. 만약 왜적들을 쫓아 여러 왜적들이 합세하기 전, 우리측의 군량이 그다지 떨어지지 않았을 때에 대군을 다시 전진시킨다면 큰 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상께서도 잇따라 충신을 보내어 지성으로 간청하여 대사를 이루게 하소서.”

□ 경성 주둔 왜장들, 군사를 이끌고 남하하여 해상으로 돌아가다

<선수 26년(1593) 4월 1일> 경성에 주둔하던 왜장(倭將)들이 군사를 이끌고 남하하여 해상으로 돌아갔다.

송옹창(宋應昌)이 막하의 채사(策士)인 사용재(謝用粹)·서일관(徐一貫) 등으로 하여금 중국 사신으로 가장하여 적영(賊營)에 들어가서 행장 등을 개유하게 하고, 심유경에게 말하게 하기를, “제독이 괴주에 진주하여 유격장 척금(戚金)·전세정(錢世禎)으로 하여금 유성룡 등을 타이르게 하기를 ‘적을 속여 도성을 나가게 한 연후에 진격하여 섬멸하겠다’고 하였다 한다” 하였다. 이달 19일에 수가 등이 대군을 철수하여 한강을 건넜는데, 창미(倉米) 2만 석을 남겨 두어 제독의 차관(差官)인 심세현(沈世賢)에게 인계하였다. 청정은 두 왕자 및 재신과 중국 관원인 사용재·서일관 두 사람을 데리고 갔으며, 심유경은 처음부터 행장을 따랐다. 여러 적장들은 곧장 조령(鳥嶺)을 넘었는데 도중에서 풍악을 울리고 노래부르고

춤추면서 해상에 이르렀다.

□ 중국군의 쇄마 요구로 서울과 경기의 고을들이 어려움을 겪다

<선조 26년(1593) 10월 3일> 병조가 아뢰기를, “거가(車駕)가 환도하였지만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초 대군(大軍, 중국군)이 나올 때 본래 쇄마[骟馬]의 규정이 없었지만 중국에서 사정에 따라 요청해 오면 우리나라에서는 형편대로 요청에 응해준 것이 그대로 규례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왕래하는 중국군들이 모두 쇄마를 요구하므로 일로의 각 고을들이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고, 서울의 경우는 하나의 둉 빈 폐허가 되어 모든 것이 편탕되어 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경기의 인근 고을들이 윤번으로 쇄마를 세우는데 한 번 중국군에게 주고 나면 영영 도로 찾을 길이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을 가진 조관(朝官)이나 사서(士庶)로서 중국군에게 빼앗긴 자들이 전후 셀 수 없는데, 이들이 말 값을 그날의 윤번인 고을에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고을에서는 또한 민간에게 책임지워 거두어 내는데 가포(價布)로 받기도 하고 미곡(米穀)으로 말 주인에게 갚기도 하는 실정이어서 매우 한심한 일입니다.

오늘 이전에 각처에서 말을 잃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법이 제정되어 있으니 마땅히 종전대로 값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오가는 중국군으로서 파주·장단에서 쇄마로 온 사람들은 용인·과천 등지에서 말을 갈아타게 하고 서울에서는 일체 침책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사유를 갖추어 유총병(劉總兵)에게 물어 왕래하는 중국군들이 쇄마를 요구하지 못하게 함이 온편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3. 파주산성

□ 행주산성보다 공략하기 힘든 파주산성

<선조 27년(1594) 11월 18일> 도원수 권율이 치계하기를, “김해(金海)에 주둔한 왜적의 부장(副將) 나강계저모차(羅江戒底母此)라는 자가 행장(行長) 등의 서신을 휴대하고 서로 만나볼 기일을 결정할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다음날 우병사(右兵使) 김옹서(金應瑞)가 그를 접견하였습니다. … 병사가 ‘당신들이 경성에 있을 때 대패한 곳이 있는데, 그때 왜인이 죽은 자는 얼마나 되는가?’ 하니, 왜사가 ‘경성 서쪽 20리 밖에서 접전하여 승리하지 못하였는데, 전사자가 많았고 부상자도 많았다. 그 당시 장수가 분을 이기지 못하여 각기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며 서로 맹세하고 기필코 다시 싸워 보복하려고 근처에 있는 왜병 10여 만 명을 불러모아서 날을 택하여 거사하려고 하였는데, 그때 조선 장수가 파주로 진을 옮겨버렸다. 파주산성은 공략하기가 행주산성보다 더 어려웠기 때문에 행군하다가 중도에서 되돌아왔다’ 하니, 병사가 ‘파주에 진치고 있는 군사도 그 수가 많지 않았는데 당신들의 10만 병력으로 무엇 때문에 중도에서 파하고 돌아갔느냐?’ 하니, 왜사가 ‘행주는 진 밖에 암석이 간간이 있어 위에서 돌을 굴리면 바위 사이에 꾀신하여 혹 죽음을 면한 경우도 있었지만, 파주의 진은 돌을 피할 곳이 조금도 없어서 이것이 염려되어 결국 싸우지 못하였던 것이다. 조선 장수가 높은 봉우리에 진을 치고 돌무더기를 많이 쌓아 놓는다면 우리 군사는 가까이 다가갈 리가 만무하다’ 하였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 군사요충지, 파주산성

<선조 29년(1596) 11월 26일> 사시(巳時)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갔



파주산성

다. 우승지 기자헌(奇自獻), 주서(注書) 조즙(趙濶),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최동식(崔東式), 검열 강주(姜籀)·심액(沈訥)이 입시하였다.

우참찬 신접(申礪)이 아뢰기를, “사세가 위급하니, 감히 생각하는 바를 아뢰겠습니다. 근래 조정에 있는 신하가 다들 성을 지키고 친정(親征)할 것을 말하는데, 말은 다 매우 곧으나 형세로 보면 매우 어려우니 형세가 어려울 경우 막다른 상황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영남이 적을 당하지 못하면 호서가 당해야 하겠으나, 호서가 당하지 못할 경우 경성(京城)도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성이 버티기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해서(海西)가 관방(關防)이 되어야 하는데, 해주(海州)·평양(平壤)·영변(寧邊)·강릉(江陵)에는 저축한 것이 아주 없고, 의주(義州)는 대처(大處)인데도 두어 달의 양식마저 얻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임진년에는 그래도 근근히 대가(大駕)가 머무를 수 있었으나 이제는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무

쪼록 대처에서 미곡(米穀)을 거두어 저축함으로써 뒷날 대가가 머무를 계책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뜻은 어떠한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잡이 비변사(備邊司)에서 자주 이 일을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거행하는 것이 옳겠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 황해도 강음(江陰)은 한 도의 요충으로 저탄(猪灘)에 중병(重兵)을 둔 쳐 지킨다면 해서로 쉽게 몰려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에 장운익(張雲翼)이 군사를 보내어 와서 말하기를 ‘이 땅은 형세상 지키지 않을 수 없는데, 둔 쳐 지키는 곳이 있다면 강화에 도달할 수 있고 연안(延安)·배천(白川)이다 내지(內地)가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위로는 권율이 군사를 둔친 파주산성이 가장 좋은데, 임진에서 5리쯤 떨어진 곳에 파주가 있으니, 이것으로 서로 형세를 만들면 적이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는 쇄마(刷馬)의 일로 백성이 감당하지 못하니, 매우 답답합니다. 전면(前面)의 방수(防守)가 가장 중요하니, 조령(鳥嶺)·죽령(竹嶺)은 문호(門戶)와 같고 한수(漢水)가 가장 중요한데도 조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적이 한두 해 동안 움직이지 않는다면 민심을 수습하여 수어(守禦)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모든 일은 거행할 만하면 거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만두어야 하지 의논만 하고 말아서는 안된다” 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거행할 만한 일은 예단(睿斷)하여 재결하셔야 합니다. 성패(成敗)와 이둔(利鈍)이야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하였다. …

□ 파주산성을 되살리다

<선조 36년(1603) 10월 17일> 비망기(備忘記)를 내렸는데 “… 용진(龍津)·파사성(婆娑城) 같은 곳은 당초에 해당 부서가 마음과 힘을 써서

계획하고 조치하였는데 그 뒤에 폐기하였으니, 어찌 애석치 않겠는가. 이제 예전 규모대로 군사를 나누고 장수를 정하여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파주산성에 대한 일도 거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경도(京都)의 형세가 좋아질 것이다 … ” 하였다.

□ 목사를 교체하여 파주의 군기를 강화하다

<선조 36년(1603) 10월 23일>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교하신 말씀을 보건대, … 파주산성에 대해서도 아울러 거행해야 된다는 점을 본사 역시 늘 유념하고 있었으나 바야흐로 죽주산성(竹州山城)의 일이 급하였으므로 한꺼번에 품처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경도의 후면은 파주산성이 제일 긴요하나, 염려되는 것은 경기의 물력이 탕잔(蕩殘)되었으므로 비록 방책을 세우고 규획하더라도 쉽게 성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전일 산성의 사면 10리에 대해서만이라도 세공(稅貢)과 모든 잡역을 면제하여 먼저 백성을 불러모으는 데에 힘쓸 것을 청한 것은, 먼저 이 기들을 마련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땅한 수령을 얻어야 모든 일을 착수할 수 있을 것인데 목사 이원(李瑗)은 적임자가 못되니, 체차(遞差)하고, 그 후임자를 이조로 여금 엄선하여 보내게 하소서” 하였다.

이에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반드시 마음과 힘을 다하여 극진히 조치해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계사(啓辭)를 감사에게 하유(下諭)하라. 조치를 계을리 하면 감사를 책망할 것이다” 하였다.

□ 왕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주등지에 산성을 쌓아야 한다

<선조 37년(1604) 10월 12일> 경기감사 김수(金睵)가 아뢰기를 “왕도(王都)의 보호의 대해서는 특별히 조처해야 합니다. 수원·죽산·파주 등지의 산성을 점차 수축하자는 의견도 실은 여기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죽주는 동남간에 있고, 독성은 서남간에 있고, 파주는 서북간에 있고, 강화는 서쪽의 큰 진관으로서 수로(水路)를 가로막고 있으니, 공제하는 형세가 제대로 되었다고 할 만합니다. 다만 본도(本道)의 경계 중 북로(北路)에는 막을 만한 보장(保障)이 없는데, 들헌대 철원(鐵原)에 산성을 수축할 만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 곳이 있어 이를 보장의 지역으로 만든다면 위급할 적에 믿을 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조치하는 제반 일은 전부 본도에 책임지워도 충분히 마련해 낼 수 있습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맹자(孟子)가 ‘거리가 인화(人和)만 못하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사람은 인화에는 힘쓰지 않고 산성을 축조하는 것으로만 나라를 보존시키는 계책을 삼고 있다. 정유년 이전에 상신(相臣) 유성룡이 스스로 편견만을 믿고 4도(道)의 민력을 다 동원하여 헛되이 산성과 포루를 축조하였지만 왜적이 이르자 군량과 군기를 모두 버린 채 달아나고 말았다. 지금 온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경기도내 도로에는 주려 죽은 시체가 잇따랐고 국문(國門) 밖에서는 강도질이 끊이질 않는데도 김수가 망령되어 산성 축조할 의논을 아뢰어 전일의 일을 답습하려 하니, 그 또한 잘못된 일이다.]

□ 비변사에서 파주산성의 보수를 청하다

<광해 2년(1610) 1월 17일> 비변사가 아뢰기를, “3경기지방의 산성이 무려 17곳이나 되는데 적이 물러간 뒤로 점점 폐지되고 오직 수원의 독성만이 꾸준히 수리되어 왔습니다. 지난날 본사에서 중수할 일을 의논할 때에 먼저 수원과 파주 등 세 곳의 산성을 거론하였고, 그 나머지 인천·용진·광주·고양 등 네 산성은 앞으로 점차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8개 읍의 산성은 앞으로 본도 감사로 하여금 방어사와 회동하여 형세를 살펴보아 수리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본사가 뜻을 두고 요리하여 차례대로 수축하고 보완함으로써 폐기되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라” 하였다.

□ 파주의 상번 군사에게 번을 서는 것을 면제해 주다

<광해 10년(1618) 6월 14일> 병조가 아뢰기를, “비변사가 파주산성을 새로 만들어 방비하는 일과 관련하여 본주의 상번(上番) 군사는 우선 본진(本鎮)이 조치되는 기간에 한하여 상번을 면제해 주고, 근처 고을의 군사는 수원의 예에 따라 번(番)서는 일을 면제해 주도록 본도 감사와 수사에 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 경기·강원 군사에게 파주산성을 지키게 하다

<광해 10년(1618) 6월 16일> 전교하였다. “양남(兩南)의 군병은 강도에 들어가 지키게 하고, 공홍도(公洪道)의 군병은 남한산성에 들어가 지키게 하고, 경기·강원의 군병은 삼각산성과 파주산성에 들어가 지키게 하라. 그러면 오랑캐 군대가 어찌 이렇듯 각 읍에서 협준함을 의지하여 성을 지키고 있는 것을 벼려둔 채 그 속을 뚫고 지나오겠는가. 당상무신(堂上武臣)을 엄선하여 경계를 나눠서 각처의 산성을 굳게 지키도록 하는 일을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해 처리케 하라.”

□ 파주산성 등의 방비를 위해 군량을 조달하다

<광해 10년(1618) 6월 19일> 비변사가 아뢰기를, “비망기로 각도의 병사를 나누어 들여보내 지키게 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강도(江都)야말로 보장(保障)으로 삼을 지역이고 남한산성과 파주산성 등도 꼭 지켜야 할 곳이니 군사를 나누어 들여보내 지키도록 하신 성상의 분부가 참으로 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 그리고 수원의 독성과 파주의 임진도 꼭

지켜야 할 곳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해처에 군병과 기계를 나누어 보내는 것도 지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군량을 조달하는 문제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대책이 없으니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곡식을 어떻게든 확보하는 것이 오늘날의 급무인데 따로 규정을 만들어 다방면으로 곡식을 모집한다면 약간의 도움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 ”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파주산성 등의 수비상태를 점검하다

<인조 1년(1623) 11월 10일> 비변사가 아뢰기를, “본사 당상 한 명을 보내어 평산 및 덕진·파주 등 성의 수비상태를 살피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 별장 한 사람을 정해 파주산성을 수비하기를 청하다

<인조 5년(1627) 1월 17일> 장만이 아뢰기를, “적이 만일 대로(大路)를 따라 곧장 나온다면 반드시 중간에서 서로 만나게 될 터인데 단지 군관만을 대동하고 간다면 형세가 매우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어영군(御營軍) 가운데서 정포(精砲) 100명을 선발하고 개성부와 장단의 군병을 모조리 조발하여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파주산성이 비록 보수가 완전하지는 못하나 그런 대로 위급한 상황에 들어가 수비할 수는 있습니다. 장단·교하·적성 등 관청의 올 봄 작미(作米)를 조속히 수봉하도록 하고 별장 한 사람을 정하여 파주목사와 함께 협력하여 들어가 수비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 어영군은 아직 데리고 가지 말라” 하였다.

□ 파주산성의 병력을 줄이다

<인조 6년(1628) 9월 29일> 김류가 아뢰기를, “신이 각도 병력의 다 과(多寡)와 거리의 원근, 방어의 긴급성 여부를 헤아려 신지(信地)를 나누어 정해서 별단(別單)으로 서계드립니다. …

파주산성은 임진으로 통하는 길을 통제하고 있고 강도의 올타리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깊이 들어온 적을 차단하여 막는 곳으로는 이 성 만한 데가 없어 본주와 장단 등 6읍의 병력 및 경상도 1영(營)의 병력으로 나눠 지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투를 벌이다보면 상황이 일정하게 전개되지 않아 임기 응변하여 진퇴하게 될 것이니 오늘날 나눠 지키는 계책처럼 모두 꼭 들어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제로(諸路)의 군병이 어디로 향해 갈지를 모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파주산성에 분정한 병력이 많은 듯하니 적당량을 줄이라.” 하였다.

□ 우물이 부족한 파주산성

<인조 6년(1628) 10월 12일> 도체찰사 김류, 총융사 이서, 찬획사 이경직 등이 여러 산성을 순시하고 나서 도형을 그려 올리며 아뢰기를, “파주산성은 우물이 부족한데, 남북의 언덕에는 다 솟는 샘이 있습니다. 만약 각각 200여 보를 물려 쌓는다면, 샘이 밖에 있으나 화살이 닿는 곳이라 적이 감히 접근할 수 없어 물을 길을 수 있습니다. … 교하의 오두성(烏頭城)은 한 개의 봉우리에 홀로 서 있는데, 남쪽에 큰 강이 있고 형세가 대단히 험하나 또한 많은 무리를 용납할 곳이 없습니다. 이곳은 결코 요새를 설치하여 군사를 둘 곳이 아닙니다. … 파주산성의 경우는 이미 완성된 것이니, 본주 목사에게 전적으로 맡기어 수축하게 하고 군량

과 기계는 비변사에서 헤아려 보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파주산성의 지도를 그려 올리다

<숙종 1년(1675) 5월 25일> 주강에 나아갔다. … 유혁연이 개성부와 강화와 평산과 파주의 네 성(城)의 지도를 올렸다. 지도를 가지고 개성부와, 강화, 평산의 성에 대해서 아뢴 후 파주의 지도를 가리키면서 아뢰기를, “여기에 성을 쌓고 또 저기에 성을 쌓으면 실지로 강도를 성원(聲援)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 파주산성 축조를 허락하지 않다

<정조 15년(1791) 6월 9일> 파주목사 이사령(李師濂)이 상소하기를, “본주에 방어영을 설치한 것은 오로지 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조 26년(1593)에 고 상신 유성룡이 그 지형이 험준한 것을 보고는 도원수 권율과 순변사 이빈에게 군대를 합쳐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때 왜적이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공격하려고 하다가 지형이 험준한 것을 보고 감히 접근하지 못하여 감히 직로로 지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조정의 의논이 이 곳을 중시하여 특별히 순찰사 유희량(柳希亮)에게 우도방어사(右道防禦使)를 겸임시켜 성을 수리하여 새롭게 만들 것을 명하였고, 명나라 유격 조우(趙佑)가 ‘천연적으로 이루어진 뛰어난 지형이고 도성 서쪽의 중요한 관문이다[天設形勝國西重門]’라는 8자를 직접 써서 현판으로 걸었습니다. 갑신년(1764)에 방어영을 이리로 옮긴 것은 이 때문이었으나 역사(役事)가 미치지 못하여 아직도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판서 홍억(洪億)과 전 참판 이형원(李亨元)이 이 고을의 목사로 있을 때 모두 실행에 옮기려고 결심은 하였으나 미처 위

에 알리지를 못하였습니다.

대체로 이곳은 하늘이 만든 험준한 바위산으로 지형이 가파르고 근처에 마주 대한 산이 없어 그 안을 엿볼 수 없으며 위 둘레는 거의 1,000걸음에 가깝습니다. 동쪽은 철원, 서쪽은 갑진(甲津), 남쪽은 행주, 북쪽은 송경(松京)으로서 한 곳도 막힌 곳이 없어 역력히 굽어볼 수 있습니다. 꼭대기에는 큰 우물이 있는데 깊이가 3장 정도이며 그 아래 우물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은 황폐해졌지만 흙을 파내면 물줄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 아래 사방에도 다 샘이 있으니, 금성탕지(金城湯池)라고 할 만합니다. 돌로 쌓은 성벽은 완연하지만 반쯤 허물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일은 오직 서너 계단의 성가퀴와 몇십 칸의 창고와 사방 주변의 문루(門樓)를 새로 짓는 일뿐입니다.

신이 온 고을의 인사들과 의논해 보았더니 모두 하는 말이 ‘6~7,000냥 정도의 돈만 있으면 손을 쓸 수 있겠다’ 하였습니다. 본 고을에 군량 5,000석이 있으므로 해마다 그 이자를 가져다가 장수와 군졸들에게 주고 그 중에 800포를 1년 기한으로 꾸어 준다면 신이 여러 방면으로 주선해 보겠습니다. 요행히 일이 이루어지면 방어영을 헛되이 설치한 것을 면하게 될 것이고 중요한 관문은 충분히 적의 침략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임진과 장산(長山)에는 이미 돈대(墩臺)를 만들어 놓은 데다가 수목이 올창하고 임진나루 상류에서 10리쯤 되는 곳에 고랑진(高浪津)이 있어 또한 하나의 큰 길이 되고 있으니, 만약 위급한 일이 있을 때는 차단하여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곳입니다. 별도로 진(鎮)을 하나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 감히 쉽게 논의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이 진의 근처에는 총융청의 둔전이 많아서 해당 군영의 감독관이 해마다 와서 농사 수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곳의 남쪽 기슭 한 곳에다 총융청으로 하여금 진의 청사를 지어 놓고 해당 군교와 병졸들이 겹하여 살펴보고 감독하게 한

다면 국가의 회계에 있어서는 재정을 허비하는 일이 없고 요충지에는 공고한 방비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 군데의 진으로 하여금 함께 힘을 모아 거행하게 하면 앞으로 10년 안에 잡목이 빠빠하게 들어서서 거의 목책(木柵)과 다름없게 될 것이므로 방어하는 방도로 보아 완벽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대신과 장수들에게 널리 물어서 조처하소서” 하였다.

이에 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을 묘당으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게 할 것을 허락한다” 하였다.

그러나 비변사가 복주하기를, “파주산성은 지역은 요충지이고 형세는 자연의 요새이므로 다시 축조하자는 말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만이 아닙니다. 다만 성을 축조하는 것은 큰 공사이므로 반드시 재물을 미리 비축해 두어 비용이 모자라는 일이 없어야만 비로소 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소문에서 말한 필요한 비용은 대략 6~7,000냥 정도이고, 청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군량미 800섬입니다. 그런데 이 800섬의 쌀로 6~7,000냥의 재물을 만들고 꾸어간 쌀 800섬은 그 수량대로 오는 가을 까지 갚겠다고 하는데 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설령 요행히 성사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백성들에게 폐단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은 장래의 일에 속하고 백성들의 원망은 당장 눈 앞의 일이니, 그 요청대로 시행을 허락할 방도가 없습니다. 고랑진에 총융청에서 둔전을 설치하는 것이나 3진에서 나무를 심는 문제는 그곳이 꼭 훗날 힘을 얹을 곳이 된다고 할 수 없으니, 서둘러 설치하는 것은 속 절없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상소문 가운데 여러 조항을 우선 그대로 두기 바랍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제5장 외국의 사신들이 오가는 길목에 있는 파주

1. 명의 사신들, 그리고 파주

□ 명의 사신을 위해 재인과 백정을 부르다

<세조 14년(1468) 5월 7일> 임금이 5월 11일에 홍복산 등지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며 명의 사신을 맞아 위로하려고 하여, 승정원으로 하여금 경기의 양주, 광주, 포천, 적성, 장단, 파주, 고양, 양천, 과천, 금천, 양근, 용인, 부평, 김포, 통진, 영평, 연천 등의 고을에 치서(馳書)하게 하기를, “재인(才人)과 백정(白丁) 등을 불러모아라” 하였다.

□ 선위례를 행하지 못한 우의정 홍응

<성종 10년(1479) 윤10월 12일> 사신이 서둘러 벽제역을 지나가니 우의정 홍응(洪應), 공조판서 유지(柳軒), 동부승지(同副承旨) 노공필(盧公弼)이 선위(宣慰)하는 예절을 행하지 못하였다. 해가 저물어 파주에 도착하였는데, 잔칫상의 큰 고기를 가리키면서 고을의 관원에게 부탁하기를 “모름지기 이 고기를 벽제역의 재상에게 보내어 제가 들어가지 못한 무례한 죄를 사과하여야 되겠습니다” 하였다. 삼경(三更)에 개성부에 도착하니 선위사(宣慰使) 이승원(李崇元), 별선위사(別宣慰使) 김승경(金升卿),

유수 박숙진(朴叔蓁)이 통사 장자효(張自孝)로 하여금 문안하게 하고, 이어서 선위할 일을 말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내가 올 때에는 전하의 안색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재상을 보내어 이곳에서 선위하도록 했지만, 지금 이미 전하를 대면하고서 보내지 말도록 아뢰었으니 어찌 다시 선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며 마음속으로 받지 않으려고 하니, 이승원 등이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대인(大人)이 하루도 머물지 않고 돌아갔다고 하여서 우리들에게 명하여 이곳에 와서 위로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자, 사신이 그제야 받았다.

□ 병중인 명나라 사신을 모화관에서 배사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성종 14년(1483) 9월 29일> 상사(上使) 정동(鄭同)이 관반(館伴)에게 말하기를 “내가 병이 있어서 모화관(慕華館)에서 배사(拜辭)할 수 없으나, 전하께서 반드시 작별하려고 하시면 내가 마땅히 관대(冠帶)를 갖추고 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상이 명하여 영돈녕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과 윤호(尹穀)가 의논하기를, “중국 사신이 병중에 있어 기거하기가 어려우니 그 말에 따르는 것이 편합니다” 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상사의 병이 낫지 않는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니, 과연 말한 바와 같이 작별하는 예가 심히 어려울 것이니, 내신을 보내어서 그 이유를 진술하고 두세 번 문안하여 위로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였다.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상사의 병 중세가 가볍지 아니하니 그 말이 진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다만 부사(副使)와 더불어 작별하고 별도로 사람을 파주에 보내어서 은근한 뜻을 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의논이 들어가자 전교하기를, “상사가 나를 모화관에서 작별하지 못

하는 것은 병이 중한 까닭이니 괴이할 것이 없다. 상사가 중국에 돌아가게 되어 시말(始末)을 갖추어 말하면, 중국 사람이 반드시 의심하지 아니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길에서 죽게 되고 중국 사람이 내가 친히 죽였지 않은 것을 듣게 되면, 나를 박정(薄情)하다고 아니하겠는가? 전일에 곡청(谷清)도 ‘박대하였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중국 사람이 헐뜯는 의논이다. 다시 사람을 시켜서 간절히 청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다시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이에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사신의 일행 중 두목(頭目)들의 수가 적지 아니하여 정성의 후하고 박한 것을 여러 사람이 모두 아는 바인데, 어찌 박대한다는 것으로써 혐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청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중국 사신이 떠나기 전에 모 화관에 거동하시어, 나가 기다리며 청하시기를 ‘대인이 나오지 말기를 청하면서 전별하는 말이 심히 박절(迫切)하나 마음에 매우 미안하여 친히 전별하기를 원한다’고 하여, 저로 하여금 후의(厚意)를 알게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홍옹은 의논하기를 “마땅히 다시 청하되, 만약에 전과 같이 굳이 사양하면 형세가 억지로 청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극 배는 의논하기를 “다시 청하는 것은 무방하나, 저이가 만약 굳이 사양한다면 두목들이 모두 본 바이니, 반드시 박대한다는 의논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 중국 부사가 상사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전하다

<성종 14년(1483) 10월 3일> 부사가 파주에 이르러 두목 복감(伏鑑)으로 하여금 반송사(伴送使)에게 말하기를, “상사가 만약 죽으면 조정에 주문(奏聞)하여 정탈(定奪)을 기다려서 행해야 하므로 요동의 군인이 반드시 본국에 오래 머무를 것이니 어떻게 지공(支供)하겠습니까? 제가 이미

명을 받아 여기에 있으니 마땅히 강상(江上)까지 싣고 가서 주문하겠습니까” 하였다.

□ 조서를 맞이하는 절차를 논의하다

<성종 19년(1488) 3월 12일> 문례관 권경우(權景祐)가 와서 복명하고 아뢰기를, “신이 의주(儀註)를 가지고 파주에서 중국 사신을 뵈었더니, 중국 사신이 신에게 말하기를 ‘전하께서 말을 타고 조서를 맞이하는 일을 그대는 알고 있는가?’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의주 안에 전하와 두 사신이 중정문(中正門)으로 해서 들어가는 일과 전하를 고치어 국왕이라고 일컫는 등의 일은 이미 전하께 아뢰어 모두 고쳐 써서 왔습니다만, 그 말을 타고 조서를 맞이할 수 없음은 전하께서 신으로 하여금 두 대인에게 진달하게 하였습니다’고 하니, 정사(正使)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는가?’고 하기에 신이 사목(事目)의 뜻을 가지고 자세하게 갖추어 개설(開說)하였더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연을 타고 말을 탐을 전하께서 임의(任意)대로 하신다면 우리들은 마땅히 도보(徒步)로서 행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도보로 행하는 데 전하께서 연을 타고 조서를 맞이하면 조정(朝廷)에서는 스스로 시비(是非)가 있을 것이다’고 하기에, 원접사(遠接使) 허종(許琮)이 곁에서 묻기를 ‘중조(中朝)의 제왕(諸王)과 포정사(布政司)의 조서를 맞이하는 절차(節次)는 어떻습니까?’고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제왕(諸王)은 문 밖에 나가 도보로 행하며 맞이하고, 포정사는 성곽 밖에 나가 말을 타고 맞이합니다’고 하므로, 허종이 또 묻기를 ‘고황제(高皇帝)가 제례(制禮)할 적에 어찌 포정사는 말을 타고 맞이하고 번왕(藩王)은 도보(徒步)하여서 맞이하겠습니까? 이것은 인정(人情)에 맞지 않습니다’고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해외의 제(制)는 다름이 있습니다’고 하기에, 허종이 말하기를 ‘왕자(王者)도 밖[外]이 없거늘 어

찌 내외(内外)에 사이가 있겠습니까?” 하니, 두 사신이 고집하면서 끝내 연을 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였다.

□ 반당을 줄이고 군역으로 충당하다

<중종 10년(1515) 10월 3일> 유순(柳淳), 정광필(鄭光弼) 등이 의논하기를, “… 경중(京中) 및 경기의 각품(各品) 반당(伴尙 : 수행원 또는 헤드렛일 도와주는 사람)이 매우 많은데, 이것의 3분의 2를 줄여서 모두 군역(軍役)으로 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 하고, 또 아뢰기를 “… 상께서 ‘앞으로는 수를 한정해서 주고자 한다’고 분부하셨으나, 그러면 군액이 곧 많아지지 않으니 … ” 하였다.

전교하기를, “반인(伴人)의 일은 … 군액이 많아질 때까지 조금씩 줄이면 군인이 보인(保人)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만약에 이미 낸 것을 덜어서 준다면 억울해서 소란이 일어날 듯하니, 앞으로 점차 더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다. 그러자 대신 등이 다시 아뢰기를 “반인의 일은 경기의 조례(阜隸 : 서울의 각 관아에서 부리던 하인의 이름)·나장(羅將 : 郡衙의 사령중 하나)의 수를 채울 수 없어 그 이웃 동리 사람들이 다 달아나기까지 하니 3분의 2를 줄여야 합니다. 이미 내어준 것을 던다고 한들 누가 불평하겠습니까? … 또 천사(天使)가 왕래하는 길에 있는 장단·파주·고양 등과 같이 인리(人吏)가 더욱 부족한 각 고을에서는 또한 몽땅 줄여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다 알았다 … ” 하였다.

□ 조선과 명의 상례 차이

<중종 16년(1521) 4월 28일> 승지 서후(徐厚)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파주에 가서 온 뜻을 말하게 했더니 상사와 부사가 한참 상의한 다음 말하기를 ‘우리들도 서후가 온 것을 보았다. 그러나 당신은 이미 소복(素

服)을 입고 있고 우리들은 길복을 입고 있어 만날 면목이 없다’ 하기에, 신이 ‘왕명을 받고 온 것이니 분수에 넘친 과찬은 받을 수 없다’ 말하고 그들을 만났습니다.

신이 들어가서 말하기를 ‘탕침(湯畠) 사람들이 상복 입은 것을 보고 우리나라 압해관이 물으니 황제가 봉했다고 하기에 깜짝 놀라 성안으로 들어가 지휘(指揮)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휘도 상복을 입고 있었고 덧붙여 말하기를 지난 3월 17일 황제가 봉했고 애서(哀書)가 어제 도착했다고 하였습니다. 압해관이 이러한 사실을 의주목사(義州牧使)에게 통보해왔고 목사가 이를 다시 전하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문(禮文)에는 부음(訃音)을 듣는 그날로 거애(舉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께서 백관을 거느리고 즉시 애례(哀禮)를 거행했는데, 이 사실을 두 분 대인께 알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신을 시켜 알리게 한 것입니다’ 하니, 상사와 부사가 말하기를 ‘우리들의 충성이 어찌 너희 나라 사람만 못하겠는가? 우리들은 너희 나라의 경사를 받아 가지고 오는 길이고 또 애서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칙서를 받아 나눠준 뒤에 거애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너희 나라에서 먼저 발상(發喪)했으니, 이는 우리들을 천하에 용납할 수 없는 죄인으로 만든 것이다’ 하면서 노기 가 등등했었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명의 사신이 온 다음 그들에게 ‘전에 대인들이 넌지시 일러 주어 우리나라에서도 황제가 봉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대인들도 요동에서 전해들은 것이므로 즉시 거애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가 요동 관원들이 상복을 입었다는 말을 듣고서야 그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예문에 부음을 듣는 그날로 즉시 거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거애한 것이다’ 하도록 하라” 하였다.

□ 길례를 따라야 한다는 명 사신

<중종 16년(1521) 4월 28일> 문례관(問禮官) 임추(任樞)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파주에 가서 통사를 시켜 신이 온 뜻을 전하게 했더니, 답하기를 ‘승지가 이미 내 말을 듣고 갔는데 네가 다시 무슨 말을 하려는가?’ 했습니다. 신이 답하기를 ‘직접 듣고 돌아가 아뢰려 합니다’ 했더니, 답하기를 ‘효종의 상(喪) 때는 황후를 맞았기 때문에 3일간 길례를 행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루에 불과할 뿐이니 길례를 따라야 한다. 돌아가서 다시 의논하여 우리가 벽제에 이르거든 와서 말해달라’ 했습니다” 하였다.

□ 박장련의 일을 삼공과 의논하다

<중종 39년(1544) 2월 17일> 대신에게 전교하기를, “요즘 박장련의 취복(取服)을 기다리느라 여러 날 동안 귀결시키지 못하였다. 비록 승복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은에 관한 일을 추문해야 하기 때문에 장련만 추문해 가지고는 쉽게 귀결되지 않을 것이라서 장련과 직임이 같은 상통사는 반드시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울러 수금하라 하였다.

그 중에서도 이거는 어긋난 단서가 매우 많다. ‘주사가 준 단자를 직접 받아 주사 앞에서 직접 펴보았고, 중문 밖에 나와서도 또 보았다’고 하는데, 두 번씩이나 펼쳐보고서도 대답하기는 ‘펴보지 않고 장련에게 주었다가 파주에 이르러서야 처음 알았다’고 하니, 이 말은 장련의 초사와는 아주 다르다. 그 외에 의심스러운 단서를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마땅히 전지(傳旨)에다 아울러 열거하여 추문하여야 할 것인데 부실한 점이 이미 드러났으니 그것을 먼저 추문해야 한다. 박장련이 봉서(封署)하지 않은 중요한 문서를 가지고 왔으니 같은 직임의 상통사도 반드시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의금부에서 상례로 추문하게 되면 여

려 달이 되어도 사실을 캐기 어려울 것이고, 이들 몇 사람과 이밖에 의심 할 만한 사건(事干)까지 잡다하게 신문하게 된다면 필시 말이 엇갈려 관계되는 바가 중대할 것이다. 대신, 대간, 의금부 당상, 승지 등이 국문에 참여한다면 곧 귀결될 것인데 이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이에 삼공이 회계하기를 “이거와 박장련의 시비를 추문하기 위하여 삼성교좌(三省交坐)까지 하게 된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딥하기를 “이 일은 경중과 순서가 있다. 동지사 등의 행차 연월을 통사들이 그 자취를 없애려고 첫 장의 글씨가 쓰인 부분을 찢어버렸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 또 그 자취를 엄폐하기 위해서 보고서도 못 보았다고 가 탁하여 박장련에게 책임을 돌리려 한 간특한 자취를 조정에서 다 안다. 이 일은 매우 중대하여 먼저 이 사건을 귀결시킨 뒤에 은을 사용한 사실을 추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중대한 사건을 먼저 분별하지 않고 은을 사용한 일 때문에 삼성교좌까지 하게 된다면 순서가 전도된 것이 아닌가? 먼저 어떤 행차인지를 귀결시킨 뒤에 일행들을 추문하는 것만 못하다. 이 행적은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알 일인데 조정을 무시하여 기망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 죄가 또한 중대하지 않은가? 더구나 재상 2명도 간혀 있으니 삼성교좌로 하지 않으면 실정을 쉽게 캤 수 없을 것 같다. 내 생각에는 먼저 이 사건을 분별한 뒤에 은을 사용한 사람들을 추문하는 것이 순서로 보아도 그럴 것 같다” 하였다.

삼공이 회계하기를 “박장련은 그 간특한 실정이 이미 드러났고 이 사람들[한숙(韓淑) 등임]은 그와 관계가 있는데 그 때문에 삼성교좌한다고 하면 지나친 듯합니다. 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강상(綱常)의 큰 변이나 국가에 관계되는 큰 일이 아니면 삼성교좌한 일이 없었다]을 지금에 와서 단서를 열어놓기가 미안하므로 감히 아립니다” 하니, “중대한 일은 속히 귀결시키지 않을 수 없는데 귀결시키기가 쉽지 않으므로 특별히

의논했더니 경들은 ‘은을 가지고 간 사전을 추문하려면 삼성교좌해도 옳겠으나 이 일 때문에 삼성교좌까지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듯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경중과 순서가 다를 듯하다. 은에 관한 일은 의금부로 하여금 자세히 추문하게 하고, 만약 귀결되지 않거든 다시 의논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 중국 사신과 칙서를 받드는 예에 대해 아뢰다

<명종 13년(1558) 2월 22일> 문례관 김귀영(金貴榮)이 복명하였다. 상이 사정전에서 인견하고 이르기를, “예모에 관한 일을 어떻게 말하던가?” 하니,

김귀영이 아뢰기를 “오늘 중국 사신이 파주에 들어왔는데 신이 고하기를 ‘전일 초록(抄錄)하여 준 의주는 바로 영조례(迎詔禮)이므로 남향하여 유제를 칭하나, 영칙(迎勅)에는 남향하는 일이 없다. 우리나라의 의주는 다 중국의 예에 따라서 만들어 있으므로 전의 사신도 처음에 의심을 갖기는 하였으나 마침내 따라서 행하였으니 그 유래가 오래 되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조서와 칙서는 일반인데, 어찌하여 다르게 보는가? 고쳐서는 안된다’ 하기에, 신이 『번국의주(藩國儀註)』로 그 의심을 풀어주고자 하여 원접사에게 의논하였더니, 상께서 말을 탄다는 말이 있으므로 난처할 염려가 있으니 내어 보여서는 안되겠다고 하므로 말로만 쟁론하였는데, 중국 사신의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억견을 가지고 고집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행하였더라도 어찌 잘못을 본들 수 있겠는가?’ 하기에, 신이 성을 낼까 염려되어 그만두었습니다.

이어서 또 고하기를 ‘동쪽과 서쪽에서 마주 향하는 일은, 전에도 두 사신이 나온 때가 있었으나 다 동쪽에 섰었는데, 이제 동서로 나누어 서려는 것은 의주에 위배됨이 있으니 구규를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동쪽과 서쪽에서 마주 향하는 것이 더욱 마땅한 예이다. 황제의 칙서를 용정(龍亭)에 봉안하고 좌우에서 모시는 것이 어찌 위를 섬기는 예의에 맞지 않겠는가’ 하고, 이어서 신에게 묻기를 ‘이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가, 마땅하지 않게 여기는가? 나는 고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또 중국 사신이 전에 통사에게 말하기를 ‘세자가 나와서 접대하는가?’ 하므로 나이가 어려서 나와 접대하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는데, 또 신에게 말하기를 ‘나는 책봉을 위하여 왔는데 의주 가운데에 어찌하여 세자가 나와 접대하는 예가 없는가?’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국본(國本)을 일찍 정하였으나 나이가 아직 어리므로 나와 접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에도 이러한 예의가 없었다’ 하니, 얼마 후에 사신이 또 말하기를 ‘국왕이 나와 서로 대하면 세자가 나와 접대하지 못하는 뜻을 말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사신이 자기 소견을 이와 같이 고집하니, 예에 크게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가 바라는 대로 수시로 조처해야 하겠다” 하였다.

□ 파주에서 전사한 천총과 중국군에 대한 예를 청하다

<선조 26년(1593) 2월 7일> 예조가 아뢰었다. “파주에서 전사한 천총(千總) 및 중국군은 평양에서 전사한 군사의 예에 따라 경기감사 이정암(李廷鑑)에게 하서하여 입관해서 호송하게 하고, 제문은 예문관으로 하여금 지어 올리게 하며 주재하고 있는 각 고을에 보내어 전(奠)을 올리게 하소서.”

□ 파주 등지의 전투 결과를 보고하다

<선조 26년(1593) 2월 23일>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덕형의 장계를

보니 중국 장수가 며칠 사이에 송경으로 출발할 것이라고 하니 매우 기쁘고 다행한 일입니다. 다만 그곳에 군량과 마초가 즉시 집결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전과 같이 부족하여 재차 낭패하게 되면 다시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 뜻을 신속히 도체찰사 유성룡에게 하유하여 백방으로 재촉, 군량과 마초 및 염장(鹽醬)과 친물(饌物)을 일제히 완비한 뒤에 그 결과를 속히 치계하게 하여 시기에 임박하여 그르치는 폐단이 없도록 하소서. 또 별도로 사신을 파견하여 청병하지 말라는 것은 어제 이미 계 하하였습니다만, 이제 이덕형의 장계를 보니 정동지(鄭同知)와 조지현(趙知縣)이 말하기를 ‘개성부와 파주에서 참수한 것 및 그대 나라의 남병들이 참획한 수급을 속히 보고하지 않을 수 없으니 모름지기 주본(奏本)을 만들어 치계하라’고 했다 합니다. 중국 장수의 의도가 크게 방해되는 것 이 아니라면 뜻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신을 파견하여 주달하는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개성과 파주에서의 첨보를 주달하는 것은 비록 번거로운 듯하나 족히 황제의 은혜에 사례하고 제독의 공을 친양할 수 있으니 그래도 가하나, 남병이 참획한 수급까지 주달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을 듯하다. 하물며 송시랑(宋侍郎)을 전너 뛰어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의논하여 조처하라” 하였다.

□ 조공과 강화를 청해 온 왜군

<선조 26년(1593) 4월 20일> 도체찰사 유성룡과 도원수 김명원이 치계하기를 “신들이 어제 파주에 가서 권율과 군사(軍事)를 약속하고 있는데, 참장(參將) 주홍모(周弘謨)와 기패관(旗牌官) 주조원(朱朝元)이 군사 300여 명을 거느리고 군악대를 앞세우고 도착하였습니다. 신들이 종사관 유희서(柳熙緒)·이귀(李貴) 등을 시켜 문안하게 하고 또 가는 곳을 물

으니 ‘성중(城中)으로 가서 왕자 및 포로로 되어 있는 여러 신하들을 맞 이해 오려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파발아 송호한(宋好漢)을 시켜 ‘기패(旗牌)가 이곳에 도착하면 배신은 반드시 들어가서 고두례(叩頭禮 : 경의를 나타내려고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하라’고 하기에, 신들은 ‘기패에 고두례를 올리는 것은 감히 사양할 수 없으나 이것은 단지 적중(賊中)으로 가는 기패인데 우리들이 어떻게 먼저 고두례를 올릴 수 있단 말인가. 또 우리는 왜적과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강화를 허락할 리가 없으니 더욱 고두례를 올리라는 명을 받을 수 없다’ 하니, 참장(參將) 등이 매우 성을 내며 계속하여 재촉하였습니다. 신들이 끝내 들어가지 않자 이어 다시 경략이 준 패문(牌文)을 꺼내어 보여주었는데, 그중 한 조항에 ‘조선국과 왜적은 참으로 불공대천의 원수이나 이제 이미 저들이 조공할 것을 애결하고 강화를 요청하니 우선 본부(本府)의 회보(回報)를 기다려야 한다. 만일 적에게 보복을 가하여 사건을 일으키는 자가 있으면 참형에 처하겠다’ 하였습니다. 신들은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이 패문을 보면 이것은 우리 병사들로 하여금 왜적을 죽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어찌 이런 도리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더욱 명을 받을 수 없다’ 하고, 반복해서 논쟁하다가 끝내 고두례를 올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신들이 어제 또 제독에게 글을 올렸는데 그의 답변은 진정에서 우러나온 것 같았습니다만 그의 조서는 이와 같고, 매양 ‘군기(軍機)가 새어 나가면 곤란하다. 너무 애태우지 말라’는 등의 말로 위로하는 한편 경략에게로 평계를 대고 있으니 그의 의향이 어떤지를 모르겠습니다. 대개 심유경이 적중에 들어가서 돌아오지 않은 지가 이제 6~7일이 되었으니 그 일이 매우 황당하며, 모든 일을 우리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으니 이 때문에 그동안의 상황을 더욱 듣지 못했습니다. 적의 계책을 추량하기 어려운데 시일은 지연되어 낭패스러움

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니, 제독은 신들에게 이처럼 간곡히 말하고 있으나 이 역시 믿기 어렵습니다. … ” 하였다.

□ 조시를 만나고 온 유희분의 보고

<선조 39년(1606) 4월 10일> 문례관인 홍문관 전한 유희분(柳希奮)이 아뢰기를, “신이 어제 유시(酉時) 말에 파주로 달려갔더니 조사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즉시 의주(儀註)를 양사에게 올렸더니, 정사가 답하기를 ‘먼길에 자주 왕래하느라 노고가 많다. 국왕을 뵙고 사례해야 하겠다’ 하고, 부사는 말하기를 ‘의주를 보고 난 뒤에 서서히 답을 내려주겠으니 우선 기다려라’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작별을 고하니, 답하기를 ‘의주는 알았다’ 하고, 또 말하기를 ‘국왕과 왕비에게 각각 사례(賜禮)해야 하니 채여(彩輿)와 횡복(黃袱) 등의 물건을 2가지 준비하고 대기하라’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따로 거쳐하고 싶어하는 두 차관

<광해 5년(1613) 8월 29일> 접대소가 아뢰기를, “방금 부 차관의 접반관(接伴官)이 보낸 장계를 보건대, 부 차관의 언급 안에 ‘이 차관은 나 이가 어리고 일의 체모를 알지 못하는데 망령되게 스스로를 존대하고 있다. 나는 이 차관과 사처를 함께 쓰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합니다. 그러자 해당 부서가 ‘남별궁은 조사(詔使)가 머무는 관소일 뿐만 아니라 품계가 낮은 차관은 들어가 머물 수 없습니다. 양 도감이 현재 사처를 시설하고 있는데, 만약 뜯어낸다면 공사가 커서 쉽게 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섬시의 경우는 상직방(上直房) 외에는 주방이나 원역(員役)들이 거쳐 할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려 역관으로 하여금 말을 만 들어 한 사처에 함께 들어가게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는 내용으로

이미 회계했습니다. 그래서 태평관(太平館) 동서의 상방(上房)과 협방(挾房) 그리고 주방 및 여러 방들을 모두 수리하여 배설하였습니다.

지금 접반관의 장계가 이와 같으니 한편으로는 감역관으로 하여금 빨리 사섬시를 수리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방과 원역들이 거처할 방의 경우는 미처 수리해 내지 못할 것이니 위속(委屬)들이 염려 됩니다.

태평관 동서편 사이에 장랑(長廊)이 있는데, 중간에 하나의 문을 설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누어 들게 하소서. 그러나 부 차관이 만약 따르지 않고 굳이 다른 사처에 들기를 원한다면, 차관에게 오늘은 파주에서 응당 묵어야 하니 시급한 공사를 속히 완수하도록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차관을 극진히 대우할 것을 명하다

<광해 12년(1620) 10월 5일> 전교하였다. “차관(差官)이 비록 출발하려고 하더라도 마땅히 좋은 말로 잘 개유하여 하루 이틀 더 묵어가게 했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쉽게 떠나 허술한 파주에서 하루를 묵기로 했다니 극히 잘못된 일이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잡인들을 기찰하는 일 같은 것은 각별히 살펴서 해야 할 것이고, 영조(迎詔)하는 날은 미리 밤을 무릅쓰고 일찍 출발하지 말도록 접반관에게 상세한 유시를 내리라” 하였다.

2. 청과의 외교

□ 파주 승려 세명이 명의 국세회복을 빌다가 사형 당함

<인조 25년(1647) 11월 10일> 청 사람 정명수가 파주에 이르자, 세명(世明)이란 승려가 길가에 엎드려 대통관(大通官)을 불러 고하기를 “주황제(朱皇帝) 조모의 이름은 추덕(秋德)인데, 그의 묘가 길주(吉州)의 설봉산(雪峰山) 밑에 있다. 북경이 지금은 비록 청에게 빼앗겨 있지만 10년이 지나면 마땅히 남경에서 다시 빼앗을 것이다” 하니, 정명수가 그를 파주에 가두게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처치할까를 묻자, 정명수가 “이 것은 본국에 달려 있다”고 하므로 국경에서 목을 베었다.

□ 병으로 사신을 영접하지 못하다

<현개 11년(1670) 1월 29일> 청 사신이 파주에 도착했다. 호조판서 권대운(權大運)을 보내어, 상이 편찮으시어 교외에 나아가 맞이하지 못한다는 뜻을 말하게 하였다.

□ 발가락에 병이 있어 절을 하지 않은 왕

<현종 11년(1670) 2월 1일> 좌의정 허적이 홍제원(弘濟院)에 가려 하면서 입으로 전하여 아뢰기를, “신이 권대운이 파주에서 보낸 편지를 보니, 칙서를 전할 때 상께서는 전후에 네 번 절하는 예식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께서는 발가락에 병이 있으니 결코 이 예를 행할 수 없습니다. 신이 지금 홍제원에 가서 기체가 편치 않아 네 번 절을 하는 예를 행할 수 없다는 뜻을 힘써 말해, 결말을 지어 오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홍제원으로 가서 통역관을 통해 칙사에게 말하기를, “상께서 질병이 있어 네 번 절하는 예를 행하기 어려우니, 편전(便殿)에서 접

견하게 해 주십시오” 하니, 칙사가 허락하였다.

□ 파주에 와 있는 사신을 청대하는 대신들

<숙종 6년(1680) 9월 21일> 영의정 김수항(金壽恒), 병조판서 김석주(金錫胄), 호조판서 민유중(閔維重)이 청대하였다. 임금이 항간에 역질이 성하여 장차 성문 밖에서 맞이할 수가 없다고 하여, 정재승(鄭載嵩)을 송도에 보내어 청나라 사신에게 이것을 청하게 하였으나, 청나라 사신이 허락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날 여러 신하들이 청대한 것이다. 또 민유중을 파주에 보냈는데, 민유중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청나라 사신이 허락하지 아니하니, 청컨대 영의정과 더불어 다시 홍제원에 가서 쟁론(爭論)하게 하소서” 하였다.

□ 칙사가 편전에서 칙서를 받도록 허락하다

<숙종 11년(1685) 11월 20일> 남구만(南九萬)이 파주에 달려가서 교영하는 일을 허락하지 말라는 일로 여러 번 칙사(勅使)에게 청하였지만,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우의정 정재승을 보내어 두세 번 힘써 청하니, 칙사가 비로소 편전에서 칙서를 받도록 허락하였다.

□ 늙은 신하의 마지막 배행길

<인조 18년(1640) 4월 1일> 우의정 강석기가 상소하기를, “신이 내일 세자를 모시고 가 벽제에서 지송해야 됩니다만, 몸이 몹시 연로하여 머지않아 죽을 것입니다. 이 다음에 비록 세자께서 다시 돌아오는 경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자의 모습을 보는 것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상께서 은혜를 내려 저로 하여금 앞서서 파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신이 비록 갑자기 죽게 되더라도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제6장 파주의 인물

1. 청백리, 충신

·황희



에 노력하였고, 법전을 정비하여 『경제육전(經濟六典)』을 편찬하는 등, 조선 왕조의 명재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문종 2년(1452) 세종의 묘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익성공(翼成公)이다.

방촌 황희(彪村 黃喜, 1363~1532)는 고려 우왕 2년(1376) 음직(蔭職)으로 관직에 진출하였다가 공양왕 1년(1389) 문과에 급제하였다. 태조 1년(1392) 조선 왕조가 들어서자 두문동(杜門洞)에 은거하였으나, 태조 3년 조정의 요청과 두문동 동료들의 천거에 의해 조선 조정에서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세종 13년(1431) 영의정이 되어 18년간 세종과 함께 국정을 다스려 각종 문물제도의 정비에 큰 공로를 세웠다. 특히 농사법의 개량

□ 교하로 돌아가는 황희

<태종 18년(1418) 5월 11일>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황희(黃喜)에게 명하여 전리(田里)로 물러가게 하였다. 김상녕(金尙寧)이 황희를 입궐시키니, 대언(代言) 등에게 명하여 황희에게 물었다.

“옛날에 내가 김한로(金漢老)의 계문(啓聞)으로 인하여, 구종수(具宗秀)가 담을 넘어 세자전(世子殿)에 들어가서 기이한 잡기(雜技)와 음흉한 계교(計巧)로써 세자의 마음을 방탕하게 하여 국본(國本)을 그르치게 하였음을 알았으나, 내가 종사(宗社)가 중하므로 어찌 할 수가 없었다. 생각해보니, 내가 혼자 알고 있었다면 방(房)에 두고 매를 때려서라도 오히려 제어(制御)할 수가 있었겠지만, 이미 대신(大臣)에게 알려져서 이미 계문을 행하였으니, 비록 이를 덮어두려고 하더라도 그리 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이원(李原)과 경(卿)을 불러서 들은 바를 갖추 설명하게 하였더니, 이원이 말하기를, ‘의당 국문하여야 마땅합니다’고 하였으나, 경은 손으로써 수염을 만지작거리면서 말하기를, ‘구종수의 한 짓은 매와 개의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세자의 잘못이라면 나이가 어린 탓입니다’고 하여, 이와 같이 말한 것이 두 번이었다. 세자를 감싸주어 말하기를 꺼리고 사연(辭緣)이 공정(公正)하지 못하고 다시 다른 말이 없었으니, 그것은 필시 지신사(知申事)였을 때 민씨(閔氏)와 원수가 되었으므로, 세자에게 아부하려는 계책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공신(功臣)이 비록 많지만 어찌 사람마다 정사를 의논할 수 있겠으며, 비록 공신이 아니더라도 승선(承宣) 출신인 자는 보기를 공신과 같이 한다. 경 같은 자는 오랫동안 나를 섬겨서 나의 마음을 알 것이다. 나는 항상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리라고 생각하였더니, 그 물음에 대답한 것이 정직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때 마음이 아파서 듣고서 눈물을 흘렸는데, 경은 그것을 잊었는가?”

황희가 말하였다. “그때 신이 대답하기를, ‘세자의 나이가 어린 소치 (所致)입니다’고 하였는데, 이제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으시니, 신의 얼굴이 붉어지고 출출 눈물이 납니다. 신의 마음으로는 세자를 위하여 감개(感慨)하여 그리 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기억할 수 있으나, 그때와 개의 일은 신은 능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 신은 포의(布衣)에서, 성상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에 이르렀는데, 무슨 마음으로 전하를 저버리고 세자에게 아부하겠습니까?”

대언 등이 이를 듣고 자세히 아뢰었다. 왕이 황희에게 전지(傳旨)하였다. “인군(人君)이 된 자는 신하와 더불어 변명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대답하니, 내가 이원으로 증인을 삼겠다. 경은 어찌하여 숨기는가? 잘못은 경에게 있으니, 마땅히 국문하여야 하나, 나는 인정을 끊어버릴 수가 없으므로 불러서 묻는 것이다. 당초에 경의 말을 들은 뒤에 전(殿)에 앉아서 정사를 볼 때 경이 서쪽에 있었는데, 내가 경에게 눈짓하여 말하기를, ‘지금의 인심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따르는데, 늙은 자를 버리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또한 어찌 옳겠는가?’ 하였다. 경은 그때 반쯤 몸을 굽혀 얼굴을 숙이고 바깥을 향하여 이를 들었다. 내가 그날의 말을 너를 위하여 발설하는 것이다. 옛날 어떤 대신(大臣)이 너를 가리켜 간사하다고 하였다. 네가 이조판서를 거쳐 공조판서가 되었다가, 공조판서를 거쳐 평안도관찰사로 나간 것은 너의 간사함을 미워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임기가 차자 형조판서에 임명하였으나, 육조는 조계(朝啓)의 임무가 있으므로 내가 너의 얼굴을 보기를 싫어하여 판한성부사에 임명한 것을 너는 어찌 알지 못하는가? 너의 죄를 마땅히 법대로 처치하여야 하나, 내가 오히려 차마 시행하지 못하여 논죄하지 않는 것이다. 너는 전리로 물러가 살되, 임의대로 거주하여 종신토록 어미를 봉양하도록 하라.” 황희가 곧 교하로 돌아갔다.

□ 황희를 교하에서 남원부로 옮겨 안치시키다

<태종 18년(1418) 5월 28일> 황희를 남원부(南原府)에 옮겨 안치(安置)하였다. 형조와 대간(臺諫)에서 상소하기를, “황희가 성상의 은혜를 받아 지위가 재보(宰輔)에 이르렀으나,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성상의 은혜에 만의 하나라도 보답하기를 생각하여야 마땅합니다. 난적(亂賊) 구종수는 대저 사람들이 함께 주멸(誅滅)하여야 할 바인데, 황희는 이에 가볍게 논하여 상달(上達)하였고, 또 주상이 친문(親問)할 때를 당하여 바른 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충직한 마음이 없는 것을 결단코 알 수가 있습니다. 전하가 특별히 차마 죄 주지 못하는 마음으로 다만 직첩(職牒)만을 거두고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드니, 그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하는 의리에 있어서 어찌 되겠습니까? 전하는 황희의 불충(不忠)하고 곧지 못한 죄를 법으로 처리하소서” 하였으므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이어서 사헌감찰(司憲監察)이자 황희 누이의 아들인 오치선(吳致善)을 보내어 황희에게 선지(宣旨)하기를, “나는 네가 전일에 근신(近臣)이므로 친애(親愛)하던 정을 써서 가까운 땅 교하에 내쳐서 안치하였는데, 이제 대간에서 말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남원(南原)에 옮긴다. 그러나 사람을 보내어 강제로 끌어 가게 하지는 않을 것이니, 노모를 거느리고 스스로 돌아가라” 하였다.

□ 황희 등 고급 인물을 평가하게 하는 세종

<세종 13년(1431) 9월 8일> 임금이 안승선을 불러 보고 말하기를, “황희가 교하수령 박도(朴道)에게 토지를 청하고, 도의 아들을 행수(行首)로 들여 붙였으며, 또 태석균(太石鈞)의 고신에 서경하기를 청하였으니 진실로 의롭지 못하였으매 간월이 청하는 것이 옳았다. 그러나 이미 의정대신(議政大臣)이며, 또 태종께서 신임하시던 신하인데, 어찌 이런

일로써 영영 끊으리오. 임인년에 태종께서 소환하시던 날에 내게 이르시기를, ‘양녕이 세자로 있을 적에, 구종수의 무리들이 의탁하고 아부하며 불의한 일을 많이 행하여, 양녕으로 하여금 길을 그릇 들게 하였다’ 하시고, 희에게 의논하며 ‘어떻게 처치할까’ 하고 물었더니, 희가 아뢰기를, ‘세자께서 연세가 적어서 매나 개를 가지고 노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므로, 당시에 말들하기를, ‘희는 중립(中立)하여 일이 되어 가는 꼴을 보고만 있다’고 하여 밖에 내쳤는데, 이제 생각하면 희는 실로 죄가 없었다. 태종께서 또 한원제(漢元帝) 때의 사단(史丹)의 사실을 인용하여 말씀하시고 인하여 눈물을 흘려 우셨으니, 그 희의 재주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기를 지극히 하셨으니 내가 어찌 신진(新進)한 간신(諫臣)의 말에 따라 갑자기 끊을 수 있으랴. 경은 이런 뜻을 간원(諫員)에게 갖추 말하라” 하니, 승선이 아뢰기를, “교하와 석균의 일은 진실로 희의 과실이옵니다. 그러나 정사를 의논하는 데 있어 깊이 계교하고 멀리 생각하는 데는 희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도다. 지금의 대신으로는 희와 같은 이가 많지 아니하다. 전에 지나간 대신들을 말하자면, 하륜·박은·이원 등은 모두 재물을 탐한다는 이름을 얻었는데, 륜(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를 도모하는 신하이고, 은(貞)은 임금의 뜻을 맞추려는 신하이며, 원(原)은 이(利)만 탐하고 의(義)를 모르는 신하였다” 하였다.

승선이 아뢰기를, “참으로 하교(下敎)와 같습니다. 당시 사대부들이 말하기를, ‘윤이 본래부터 아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주머니 속에 간직하였다가 정방(政房)에 들어가서 뽑아 쓰되, 결원이 혹 적으면 도로 집어넣었다가 뒷날에 또 이와 같이 하며, 혹 집에 있을 적에는 쪽지에 써서 보내어 태종께 올리면, 태종께서는 마음에 자못 즐겨하지 않으시나 그래도 마지못하여 죽으셨다’고 하옵니다” 하였다.

다시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대로 그려하였다. 태종께서 희를 지신 사로 삼고자 하여 윤에게 의논하시니, 윤이 말하기를, ‘희는 간사한 소인 이오니 신용할 수 없습니다’고 하였으나, 태종께서는 듣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제수하셨는데, 이로부터 윤과 희는 서로 사이가 나빠서 매양 단점 을 말하였다. 조말생은 윤의 편인데, 윤이 집정(執政)하자 말생에게 집의(執義)를 제수하매, 그때 희가 대사헌으로 있어서 고신(告身)에 서경(署經)하지 아니하니 윤이 두 번이나 희의 집에 가서 청하였으나 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윤이 항상 스스로 말하기를, ‘태종께서 희를 지신사로 삼기를 의논하시기에 내가 혈어 말하였더니, 희가 이 말을 듣고 짐짓 내 말을 이처럼 듣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희의 과실이 사책(史冊)에 실려 있는 것을 내가 이미 보았다” 하였다.

임금이 고금 인물의 옳고 그름을 평론하고 한참 동안 조용히 있다가 승선에게 이르기를, “양홍달(楊弘達)은 의술(醫術)로 국가에 공로가 있었고, 또 아들 양제남(楊濟南)은 태종께서 보호하기를 오래 하셨으며, 양희남(楊淮南)은 나를 잡제(潛邸) 때부터 따랐으니, 비록 천인에 속하였으나 이미 천인을 면하고 양인이 되었으므로, 내가 제남을 3품으로 올리고자 하며, 유한(柳漢)은 공주를 양육(養育)한 은혜가 있어 갚고자 하여도 할 길이 없었는데, 이제 그 고신을 도로 주고자 하나 국론(國論)이 두려워 감히 못한다. 한(漢)은 경에게도 친척이 된다” 하였다.

승선이 아뢰기를, “한은 그 형 유기(柳沂) 때문에 연좌되어 죄를 입었사오나, 한이 기와 더불어 평일에 심히 불화하여 은혜도 없고 또 죄도 없사오니 진실로 가엾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고신을 주는 것이 마땅할 듯하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연좌의 죄에 어찌 형제간 화목하고 불화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하니, 승선이 아뢰기를, “중국에서는 형제가 같이 살아야만 연좌죄를 당하게 되옵는데, 본국에서는 형제간이면

으로 연좌하게 되오니 정리(情理)에 합당치 못한 듯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윤향(尹向)과 윤목(尹穆)에게도 연좌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논하였다” 하니, 송선이 아뢰기를, “하고가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의빈(懿嬪)이 박신(朴信)을 소환하라고 청한 것이 하루만이 아니었으나, 또한 듣지 아니하였다. 신(信)의 죄인즉, 무술년(1418)에 북경에 갔다가 돌아올 적에, 통사 허초(許楚)가 의금부에서 심온(沈溫)을 잡아 온 일을 누설하였는데 신(信)이 듣고도 그 사실을 아뢰지 아니한 것인데, 매우 교활하였으나 태종께서 그대로 두시고 묻지 않았더니, 뒤에 선공제조(繕工提調)가 되어 윤인(尹麟)과 더불어 싸우자 태종께서 신을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다가 무술년(1418)의 일을 추론(追論)하게 되어 죄를 문책하고 내쳤던 것이다. 이제 소환하고자 하니, 경은 위의 세 가지 일을 세 의정과 비밀히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이에 송선이 아뢰기를, “신이 무오년(1438) 대옥초록(大獄抄錄)을 보온 즉, 심온의 말에, ‘신이 무반(武班)이기 때문에 병권(兵權)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하였으나, 이 말은 이미 온의 참뜻이 아닐 것이옵고 형벌을 두려워하고 형세에 휩박되어 할 수 없이 납초(納招)한 것이며, 또 대변(對辯)하지도 아니하였사오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태종께서 사제(賜祭)하시고 또 예장(禮葬)을 명하셨사오니, 국모(國母)의 친아버지를 죄안(罪案)에 기록하여 두개 함은 신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선조 때에 있었던 일이나 뒤에 고칠 수는 없다. 또 온의 말에, ‘강상인(姜尙仁), 이관(李灌), 박습(朴習) 등이 집에 와서, 군사 일은 한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기에, 대답하기를,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하니, 이 말로써 논하면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다” 하였다.

이에 송선이 아뢰기를, “금지옥엽(金枝玉葉)이 대대로 이어나가서 만

세 후에도 오히려 죄인이라고 일컬게 함이 가하오리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말하지 말라. 내가 기필코 듣지 않겠다” 하였다.

송선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이해(李賀)의 고신을 도로 주시기를 청하였더니 윤허함을 얻지 못하였사오나, 신의 뜻으로는, 하가 처음 그 아들 이승지(李崇之)를 온의 집에 보낸 것은 진실로 죄가 있사오나, 그 아들이 이미 벼슬을 받았사온데 아비의 고신을 주지 아니함은 과하지 않사오리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왕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과 더불어 혼인을 하였으니, 죄가 진실로 작지 아니한 바에 어찌 도로 줄 수 있으리오.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송선이 아뢰기를, “신이 거듭 생각하오니, 국모(國母)의 아버지를 죄적(罪籍)에 이름을 기록한 것은 심히 불가하옵니다. 만약 태종 대왕께서 오늘날에 계시었으면 반드시 이와 같은는 아니하셨을 것이옵니다. 후세에서 전하를 융통성이 없다고 이를까 깊이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엇이 융통되지 않는단 말인가. 선군(先君)께 득죄한 사람을 내가 어찌 감히 가볍게 용서하리오” 하였다.

말하기를, “예전에 변계량이 내게 말하기를, ‘무술년(1418)에 의금부에서 큰 옥사(獄事)를 국문할 때에, 허지(許遲)가 형조판서로 있으면서 암술형(壓膝刑)을 가할 것을 먼저 발언하였는데, 지가 오래지 않아서 죽으니 신도(神道)가 과연 헛되지 않다’고 하더라” 하니, 송선이 아뢰기를, “이같은 일은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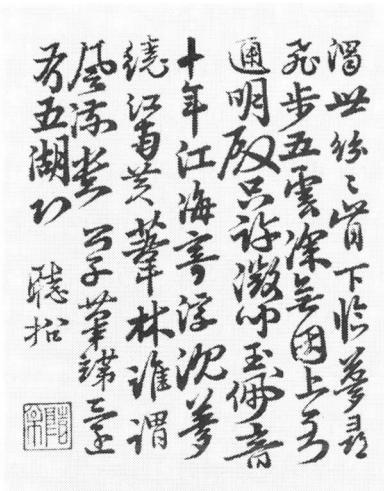
송선이 물러나와 세 의정들과 비밀히 의논하니, 양제남과 희남에게 3 품을 제수하는 일에 대하여 맹사성·권진 등을 가하다고 하고, 황희는 불가하다고 하며, 유한의 고신을 도로 주는 일에 대하여는 모두 가하다고 하고, 박신을 소환하는 일은, 희와 사성은 가하다고 하고, 진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 황보신의 속공 과전을 황희의 과전으로 바꾸어 주다

<세종 23년(1441) 8월 20일> 영의정 황희가 승정원에 글을 올렸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의 자식 황보신(黃保身)이 범죄하였사온데, 받은 바의 과전(科田) 내에 조모(祖母)의 밭과 바꾸어 교하현의 15결(結)을 받았는데, 예(例)로써 속공(屬公)되게 되었사온바, 신의 전장(田莊)이 있는 곳이며 또 신의 어미와 외조(外祖)의 분묘가 가까움으로 신의 과전과 아뢰어 청하여 바꿀까 하와 즉시 글을 갖추어서 이미 승정원에 올렸으나, 신의 자식 황치신(黃致臣)이 와서 말하기를, ‘여러 동료들에게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이 일은 분명히 전례(前例)가 있다고 합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사건이 보신(保身)에게 관계되었으므로 마음에 부끄러워서 이내 상문(上聞)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종용(從容)하게 잘 아뢰어서 신의 과전으로 바꾸어 주는 것을 허락하시어, 세업(世業)을 잃지 아니하고 자손에게 전하여 길이 분묘를 지키게 하오면, 신이 죽는 날에도 유감이 없겠나이다” 하였다. 승정원에서 아뢰니 이에 허락하였다.

·성수침

성수침(成守琛, 1493~1564)은 조선 중종·명종 때의 성리학자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호는 청송(聽松)·죽우당(竹雨堂)·파산청운(坡山清隱)·우계한민(牛溪閑民)이다. 아우 수종(守琛)과 함께 조광조(趙光祖)의 문인으로 중종 14년(1519)에 현량과(賢良科)에 천거되었으나,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와 그를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처형 또는 유배당하자 벼슬을 단념하였다. 1541년 유일(遺逸)로 후릉참봉(厚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처가가 있는 우계(牛溪)에 은거하였다. 죽을 때에는 집안이 가난하여 장례를 지낼 수가 없었다. 이에 사간원의 상소로 국가



성수침 글씨. 『명가필보』에서

에서 관과(棺槨)과 미두(米豆)와 역부(役夫)를 지금하여 주고 사현부 집의에 추증하였다. 그의 문하에서 아들 혼(渾)을 비롯 많은 석학들이 배출되었다. 좌의정에 추증되었으며, 파주 파산서원(坡山書院)과 물계(勿溪)의 세덕사(世德祠)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청송집』이 있으며, 글씨를 잘 썼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 경기감사가 파주에 은거하는 성수침의 등용을 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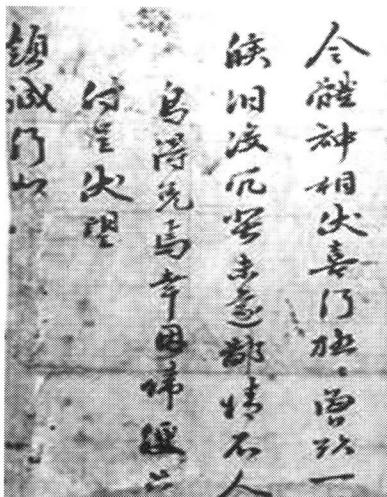
<명종 6년(1551) 12월 21일> 경기감사 유진동(柳辰仝)이 파주에 거주하는 성수침(成守琛) 등이 학문과 조행이 훌륭하다는 것으로 장계를 올렸는데, 상이 벼슬에 서용할 것을 명하였다. 장계에 성수침은 효행이 뛰어나고 학문은 경전(經傳)과 사기(史記)를 널리 통달했으며 이록(利祿)에 마음을 두지 않고 조용히 살면서 스스로 도를 즐기니 비록 옛날의 은일(隱逸)에 비교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 이조에서 성수침의 등용을 건의하다

<명종 7년(1552) 7월 11일> 이조가 아뢰기를, “유일(遺逸)인 사람을 팔도에서 찾아보고 보고하게 했었는데, 경상도·충청도·경기도는 이미 도착하였고 다른 도의 계본(啓本)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작아서 만일 쓸 만한 사람이라면 환히 알 수 있으니, 오늘 서계(書啓)한

자를 우선 먼저 서용하소서.” 파주에 사는 성수침은 효행이 탁이하고 청렴으로 자신을 지켰으며, 학문은 경사(經史)에 통달하였다. 한가히 지내면서 홀로 즐겼고 과거에 나아가지 않았으니, 비록 옛 일민(逸民)에 견주어도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 하니, 주부(主簿)에 제수하라고 전교하였다.

·백인걸



백인걸 글씨. 『근묵』에서

건에 다시 연루되어 유배되었다. 명종 6년에 풀려 나와 고향에서 은거하다가 소윤의 거두 윤원형이 죽자 복직되어 명종 22년 71세로 홍문관 교리(校理)가 되었다. 선조 때 직제학(直提學)·대사간(大司諫)·대사헌(大司憲)을 거치며 권신(權臣) 등을 논핵(論劾)하다가 사직하였다. 양주목사로 있을 때 정치를 잘하여 양주백성들이 백인걸을 위하여 축수(祝壽)의 시를 지어 올리면서 노래를 지어 부르기도 했다. 선조 때

휴암 백인걸(休庵 白仁傑, 1497~1579)은 수원 백씨로 조광조의 제자이다. 중종 14년(1519) 훈구과에 의해 조광조 등 신진 사류가 축출된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스승과 동지를 모두 잊고 마음 아파하며 금강산에 들어갔다. 그후 돌아와 중종 32년(1537) 문과에 급제한 후 검열(檢閱), 예조좌랑(禮曹佐郎), 남평(南平)현감, 호조정랑(戶曹正郎), 지평(持平) 등을 역임하였다. 명종 즉위년(1545) 을사사화(乙巳士禍) 때 소윤(小尹)에 의해 파직되고 1547년 양재역(良才驛) 벽서(壁書) 사

청백리(淸白吏)로 뽑혀 기록되었으며 학문에도 뛰어났다. 파주의 파산서원, 남평의 봉산서원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 백인걸이 병을 이유로 파주로 귀향하다

<선수 1년(1568) 7월 1일> 백인걸이 병을 이유로 파주로 귀향하였다. 인걸은 지기(志氣)가 보통이 아니었고 과감한 말을 잘하였다. 당시에 기대승(奇大升)·심의겸(沈義謙)이 명망이 있었는데 인걸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기대승은 너무 자신만만하여 반드시 나랏일을 그르칠 것이다. 심의겸은 외척(外戚)으로서 어떻게 정사에 간여할 수 있는가? 지금 선비들이 대개 의겸과 서로 좋게 지내고 있는데, 외척의 권세를 너무 키워서는 안될 일이다’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자들이 인걸이 공격할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선비들은 인걸을 일러 선(善)을 질시한다고 떠들어댔으므로, 인걸이 벼슬을 버리고 귀향하게 된 것이다. 혹자가 인걸에게 ‘왜 물러가느냐’고 묻자, 인걸은 ‘나의 학술(學術)이 부족하여 나아가더라도 어찌해볼 수가 없다’ 하였다.

□ 백인걸이 벼슬을 그만두고 파주로 돌아가다

<선수 4년(1571) 7월 1일> 백인걸이 벼슬을 그만두고 파주로 돌아갔다. 이 당시 사류가 청요직을 차지하고 있긴 하였으나 대신들은 모두 세속을 따라 목전의 안일만 구하여 사류와 서로 논의가 맞지 않았는데, 구신(舊臣)으로서 뜻을 얻지 못한 자들은 틈이 벌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오겸(吳謙)과 박충원(朴忠元)이 논박을 받자 용렬한 대관(大官)들은 모두 불평을 품고 있었다. 백인걸은 평소에 이준경(李浚慶)의 사람됨을 존경하면서 항상 사류가 대신에게 부합되지 않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이따금 말하기도 하였다. 또 기대승과 심의겸을 인

정하지 않고 항상 남에게 그 과실을 들추었으므로 사류가 심히 의심하였다.

이원경은 준경의 재종제(再從弟)로서 실직되어 불만을 품고 조정에 일이 벌어지기를 깊이 바라고 있었다. 왕의 외삼촌 정창세(鄭昌世)는 덕흥군(德興君) 부인의 아우로서 은택을 입고 벼슬을 얻어 내사복시의 말단직원이 되었는데, 그 또한 권세를 잡고자 서로 비밀히 모의하여 박순(朴淳)·이후백(李後白)·오건(吳健) 등 10여 인을 공격하려 하였다. 원경은 인걸과 준경을 후원 세력으로 삼아 늘 인걸을 찾아가 박순 등의 과실을 비방하였는데, 인걸은 노쇠하여 그 자세히 살피지 않은 채 범범하게 듣고 예사로 답하면서 옳다 그르다 하는 일이 없었다. 원경은 늘 준경의 말을 가탁하여 인걸을 움직였는데, 어느 날 준경의 뜻으로 인걸에게 말하기를, “상께서 이후백과 박순을 매우 싫어하시니 제거하기가 쉽습니다” 하니, 인걸은 그렇겠다고 예기고 민기문(閔起文)에게 말하였다. 기문이 노수신(盧守慎)을 찾아가 볼 때 원경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기문이 말하기를, “백사위(白士偉)가 허튼 일을 하려고 하니 공이 중지시키십시오” 하니, 원경이 말하기를, “백인걸이 사생을 돌아보지 않고 거사하려 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중지하겠습니까” 하였다. 기문이 일어나 간 뒤에 원경이 수신에게 말하기를, “민기문은 믿을 만한 자가 못 됩니다. 오늘 나와 함께 백공의 말을 듣고서도 공에게 중지시키라고 말하니, 이런 사람이 어찌 믿을 자이겠습니까” 하였다.

얼마 후 인걸이 수신에게 말하기를, “사람 중에 나이 어리고 기가 높은 자를 내가 억제하려고 합니다” 하니, 수신이 중지시켰다. 이준(李濬)이란 자가 원경이 정창세에게 보낸 편지를 입수하여 심의겸의 형 인겸(仁謙)에게 보였는데, 그 대략에, “앞서 영추(領樞)를 보고 다음에 사위(士偉)를 보았는데 이 일이 오늘내일 사이에 터질 것이니, 서로 내통하여 빨

리 도모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조정의 논의가 떠들썩 해져 모두 인걸이 장차 사람을 해칠 것인데, 그 일을 준경이 주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택(李鐸)이 그 소문을 듣고 크게 미심쩍어 그의 족친 박수(朴受)에게 그 까닭을 묻고 또 중지시키게 하였는데, 인걸이 놀라 말하기를, “내가 어찌 사람을 해치겠소. 다만 방숙(方叔)을 온당치 않게 여길 뿐이오” 하였다. 박수가 말하기를, “남곤(南袞) 무리의 신무문(神武門) 일을 공이 어찌 담습하려 하십니까” 하자, 인걸이 크게 놀라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그렇게까지 의심합니까?” 하였다. 권철(權轍)도 사람을 보내 인걸을 중지시켰는데, 인걸이 권철과 박순을 차례로 찾아가 스스로 해명 하였다. 그러나 사대부들이 놀라지 않는 자가 없었는데, 인걸이 이로 인하여 벼슬에서 물려나 돌아갔다.

이 당시 백인걸·노수신·김난상(金鸞祥)·민기문이 을사사화 때 살아남은 선비들로서 명망과 실체가 다 높아 청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높은 지위를 으스대고 있었다. 그리고 또 후학을 멸시하여 과격함을 험오하는 점은 이준경과 뜻이 맞았다. 이 때문에 실직한 잡다한 무리들로서 이들에게 명함을 들이밀고 선동하며 문제를 야기하여 기회를 타서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자가 셀 수 없이 많았다. 이에 사람이 모두 장차 큰 사화가 닥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줄을 이어 벼슬을 그만두었다. 백인걸 등도 조정에 편히 있지 못하였으나, 오직 노수신만은 그 뜻이 어느 한 쪽에 기울지 않았고 왕의 은총이 날로 용숭하였기 때문에 예나 다름없이 그대로 벼슬하였다.

□ 백인걸에게 식물을 내리다

<선조 8년(1575) 10월 16일> 왕이 호조에 전교하기를 “전 대사헌 백인걸이 파주 땅으로 물려갔으니, 고을에서 그의 식물(食物)을 하사하라”

하였다.

<선조 11년(1578) 2월 29일> 경기감사의 서장에, “파주에 사는 동지(同知) 백인걸이 빙궁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 식물을 내려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왕이 전교하기를, “내 생각에도 백인걸에게 식물을 하사하라고 명하려던 참이었다. 식물을 내려 내 뜻을 보이라” 하였다.

□ 백인걸이 식물을 내려준 일을 감사하고 조광조의 문묘 종사를 청하다

<선조 11년(1578) 4월 15일> 파주가 사는 동지 백인걸이 상소를 올려 내려준 식물에 대하여 사례하고 또 조광조를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왕이 답하기를 “우연히 하찮은 물건을 내린 것이니 경은 사례하지 말라. 문묘에 배향(配享)하는 일은 관계되는 바가 중하니 때문에 지금 경솔히 의논하기가 어렵다. 경은 그리 알고 있으라” 하였다.

□ 이이가 윤문한 상소를 백인걸이 올리다

<선수 12년(1579) 7월 1일> 양사가 이이의 죄를 다스리자고 청하려 하였으나 뜻대로 하지 못했다. 지난해 겨울에 이이가 파주에 있었는데 백인걸이 서울에 있으면서 상소하여 시사(時事)를 극론하고 겸하여 동·서의 당론을 화합시킬 계책을 올리려 하였다.

그러나 그 사연이 자기의 뜻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까 염려되어 이를 통하여 그 내용을 잘 다듬게 하였다. 그러자 이이는 그의 나라 걱정하는 정성을 가련히 여겨 그의 말에 따라 대략 한 편의 문자를 만들어 보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백인걸이 비로소 상소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가 논한 동·서에 대한 한 조목은 이이의 문자를 많이 사용했는데 백인걸도 이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았다.

허엽(許暉)·이문형(李文馨)이 백인걸을 찾아가 말하기를 “동·서를 논한 조목은 어찌 이이가 올린 상소와 그 뜻이 서로 같은가?” 하니, 백인걸은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그러자 사류들은 이 사실을 시끄럽게 소문냈다. 이이는 당시의 인망을 받고 있었는데 동인들은 이이가 반드시 동인의 형세를 불들어 주리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상소하여 동인을 나무라자 동인들이 크게 성을 냈다.

정언 송옹형(宋應洞)은 응개(應澇)의 아우인데 사람됨이 경솔하고 무식하였다. 그는 이이가 사류에게 거스름을 당하고 있는 것을 엿보고는 기회를 틈타 공을 세우려고 명류들과 굳게 교제를 맺었는데, 드디어 팔뚝을 걷어붙이고 이이를 공격하면서 논의를 일으켜 탄핵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대사간 권덕여(權德輿) 등이 모두 말하기를, “이 일의 허실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설혹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이것이 죄과가 되겠는가. 그리고 벼슬을 그만두고 물리가 있는 사람을 또한 치죄하기는 곤란하다” 하였다. 이에 대해 송옹형이 강력하게 다투었으나 권덕여 등이 끝내 그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니 응형이 피협하며 아뢰기를, “백인걸이 상소를 올려 시사를 논한 한 조목은 바로 이이가 대신 지은 것입니다. 백인걸은 칠십이 넘은 늙은 사람이니 나무랄 것이 없으나, 이이는 경악(經懼)의 신하로서 젊어서부터 유자라는 명망을 자부하고 있으니 물리가 산야에 살고 있더라도 생각한 바가 있으면 숨김없이 곧바로 진달해야 할 일이지 무슨 의심하고 꺼릴 것이 있기에 감히 자기의 자취를 숨기고 우회하여 대신 지어 천청(天聽)을 의혹시키려 한단 말입니다. 이는 실로 곧은 도리로 임금을 섬기는 의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이 놀라움을 견딜 수 없어 그의 잘못을 탄핵하여 신하로서의 궤비(詭秘)하고 정직하지 못한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였는데 동료들에게 저지당하였

으니, 신의 소견이 잘못된 것입니다. 관직에 있을 수 없으니 체직시켜 주소서” 하니,

권덕여 등도 동료를 테리고 피험하기를, “백인결의 상소에 시사를 논한 한 조목이 과연 이이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이는 참으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조정이 한창 화평을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이 일로 인하여 논핵하기에 이른다면 시끄러움이 더욱 심해질까 걱정스러웠기 때문에 송옹형과 논의가 합치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취를 숨기고 궤비한 행동을 했다고 이이를 책했는데 신들의 뜻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와 소견이 각각 달랐던 것입니다. 직에 있을 수 없으니 체직시켜 주소서” 하였다.

대사헌 이식(李栻) 등도 아뢰기를, “이이가 상소를 대신 지은 사실은 이미 경연 석상에서 발론되었습니다. 신들에게는 말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니 신들을 체직시켜 주소서” 하였다.

홍문관이 장차 양사를 처치하려고 하였는데 교리 김우옹(金宇顥)이 말하기를, “송옹형이 기회를 틈타 군자를 무함하려 하니 반드시 소인일 것이다. 마땅히 사헌부와 함께 체직시켜야 한다” 하였으나, 동료들이 그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우옹이 계속 극론하기를, “이번 처치가 합당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들도 반드시 소인이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어찌 송옹형 한 사람만 소인이 되겠는가” 하였으나,

부제학 이산해(李山海), 응교 이발(李灝)은 양쪽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면서 두 편을 다 보전하려고 하였다. 이산해가 초(草)한 차자에, “전파된 말이 혹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며 송옹형의 소문 역시 명백한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이는 스스로 소문을 믿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권덕여 등이 그의 의논을 따르지 않은 것은 참으로 공변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송옹형이 탄핵하고자 한 것도 폐단은 있을지라도 그 역시 다른 뜻

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이식 등이 말하지 않은 것도 신중히 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무슨 잘못된 것이 있겠습니까. 모두 출사하게 하소서” 하였다.

상이 이문형을 불러서 하문하기를, “과연 그런 일이 있는가?” 하니, 이문형이 아뢰기를, “저번에 우연히 백인걸에게, 상소의 뜻이 이이의 상소 내용과 같은데 어떤 까닭이냐고 물으니, 백인걸이 ‘이이와 서로 통하여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밖에는 달리 들은 것이 없습니다” 하자, 상이 홍문관에 답하기를, “사람을 시켜 소장을 올리게 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뜻이 비록 화평을 귀히 여겨서 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리상 그의 죄실(罪失)을 염폐하기는 어렵다. 출사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권덕여 등이 재차 피험하기를, “이이가 대신 소를 지었다는 말은 혹자들이 운운하고 있으나 그 사이의 곤질은 죄다 알 수가 없습니다. 신들의 뜻은 망령되어 화평만을 주장했고 또 송옹형의 말이 지나쳤기 때문에 감히 그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도리어 억제했다는 비난을 받았으니 이제 구차하게 합치할 수가 없습니다. 신을 체직시켜 주소서” 하였다.

옹형이 또 피험하기를, “이이의 일은 실로 해괴한 것이기에 신의 뜻은 다만 그가 실수한 것을 논핵하여 망령된 행동을 경계하고자 한 것일 뿐이었는데 소신이 경솔하고 망령되어 말하는 사이에 과격한 병통이 있어서 이미 동료들과 서로 의견이 다르게 되었고 또 옥당의 기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을 체직시켜 주소서” 하였다.

이에 왕이 답하기를, “모두 사직하지 말라” 하였는데, 모두 물리가 물론을 기다렸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송옹형이 이이를 논핵하고자 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아닌데 권덕여 등이 따르지 않았으니, 형세가 서로 용

납하기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송옹형은 출사하게 하고 권덕여 이하는 모두 체직시키소서” 하였다.

이에 사헌부에서 이이를 먼저 탄핵하려 하였는데 지평 기대정(奇大鼎)이 더욱 힘써 스스로 감당할 것을 주장하였다. 백인걸이 그 말을 듣고 놀 랍고 부끄럽게 여겨 상소하여 스스로 변명하기를, “이이가 과연 신의 상 소를 수식(修飾)하고 윤문(潤文)하기는 하였습니다. … 이런 따위의 일을 선유들도 일찍이 해 왔던 것이기에 신은 이이의 글을 차용하는 것을 혐 의스럽게 여기지 않았으며 사람들을 향해서도 숨김없이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전하는 자들이 모두 이이가 신을 유도하여 상소를 올 리게 했다고 한 것입니다. 신이 비록 형편없는 자이기는 하나 어찌 감히 신의 본래 의사가 아닌 것을 남이 시키는 것만을 따라 이 상소를 하였겠 습니까. 늙은 신하가 죽을 나이에 다다라 감히 거짓을 꾸며서 전하를 기 망하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왕이 비로소 그 사실을 알고 답하기를, “경의 상소를 살펴보고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은 안심해도 좋다” 하였다. 그렇게 되자 홍문관은 사헌부가 처치를 잘못한 것을 가지고 왁자지껄 그르게 여 기니, 이식 등이 드러나게 비난을 받았다는 이유로 체직을 청하고 물러 가 물론을 기다렸다.

홍문관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들도 참으로 전파된 말이 혹시 사실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송옹형은 경솔하게 소문만을 믿고 부정(不靖)한 사단을 열고자 하였으며, 이식 등은 정당하지 않은 처 치를 하였으니, 전혀 회평케 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모두 체차하소서” 하 였다. 이리하여 양사가 모두 다 체직되었다.

좌상 노수신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사헌부가 만약 이이를 공격한다 면 우리들도 당연히 사헌부의 실책을 논계 할 것이다. 어찌 공론이라고

하면서 군자를 해칠 수가 있는가” 하였다. 그리고 수신이 동몽훈도(童蒙訓導) 박형(朴炯)에게 묻기를, “송응형이 이이를 공격하고 있는데 바깥의 의논은 어떠하던가?” 하자, 박형이 말하기를, “시론(時論)이 비록 이이를 헐뜯고 있지만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문하에 교유하고 있는 학도들이 3백~4백 인이 되는데 내가 그들의 뜻을 시험하고자 하여 여러 사람에게 묻기를 ‘이이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그를 군자라고 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후일의 사림입니다. 한때 어떤 사람이 망령되게 헐뜯는다고 하더라도 후일의 공론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하니, 노수신이 참으로 그렇게 여겼다.

그뒤에 경연 석상에서 박순과 더불어 상에게 아뢰기를, “이이는 인품이 분명히 군자입니다. 비록 소탈한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걱정하는 정성에서 나온 것이니 헐뜯는 의논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사람들이 이이가 백인결을 유도하여 상소하게 했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나도 그를 그르게 여겼다. 그런데 지금 그 사실을 들어보니 서로 의견만을 통하였을 뿐이었으니, 이것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하였다. 이때 동인들 중에 부박한 자들이 기필코 이이를 해치려고 하였는데, 대신과 김우옹이 큰 소리로 그들의 기를 꺾었기 때문에 끝내 자행하지 못했다.

□ 파주의 유생 정재간이 백인결·이이·성흔 등의 사당 문제를 상소하다

<정조 14년(1790) 2월 13일> 파주의 유생 정재간(鄭在簡) 등이 상소하기를, “백인결과 이이와 성흔 이 세 선현(先賢)은, 같은 세상에 함께 태어났고 이미 죽은 뒤에는 각기 두어 칸 되는 사당이 건립되었습니다. 백인결을 제사하는 곳은 월룡산(月籠山) 휴암(休巖) 아래에 있습니다. 이이는 선대(先代)의 묘소가 자운산(紫雲山) 자락에 있고, 성흔은 일생 동안 은거

하던 곳이 곧 파산촌(坡山村) 안이었습니다. 이에 각기 그들이 살았던 곳에다가 높여 제사하는 도리를 다하고 있었는데 사당의 기둥이 세워진 후에 일부 선비들이 중간에 새로운 의견을 제기하면서 ‘성수침·백인결·이이·성흔 네 선생이 훌륭한 덕망을 지니고 같은 고을에서 함께 태어난 것은 우연치 아니한 일이다. 한 사당에 합사(合祀)하는 것이 예법에 맞는다’고 하여, 마침내 본주(本州)에 있는 호계(虎溪)의 한 구역을 잡아 사당을 세우고 차례대로 모실 계책으로, 월룡산에 별였던 역사(役事)를 중지하고 서원을 호계로 옮겨서 지었습니다. 그때 이이와 백인결은 호계서원에 합사하기로 하였으나, 성수침·성흔 부자의 사판(祠版)에 대해서는 자손들이 의논하기를, ‘파산(坡山)은 바로 생전에 살던 곳이므로 옮겨 모실 수 없다’고 하여, 마침내 함께 제향(祭享)하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호계서원이 무너지게 되자 사론(土論)이 또 ‘네 선현을 이미 함께 제사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각기 옛터에 짓는 것이 낫다’고 하여, 이이의 위판(位板)은 자운산에 있는 사당으로 옮겨가고, 백인결은 예법상 월룡산의 옛터로 옮겨가야 했으나 힘이 미치지 못하여 우선 임시로 파산서원 안에 봉안(奉安)하였습니다. 이에 성수침과 동서(東西)로 마주앉아 빈주(賓主)의 위치를 이루었으니, 이것이 바로 송시열(宋時烈)이 정한 예법입니다.

백인결을 처음에 호계에서 제사하다가 나중에 파산으로 옮긴 것이, 비록 한 고을의 선현을 함께 제사하는 의리에 해롭지는 않지만, 옛날에 살던 자운과 파산 두 서원에다 따로따로 모시는 것에 비하면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지난 을사년(1785)에 성수침의 아우인 절효공(節孝公) 성수종(成守琮)을 파산서원에 추배(追配)할 때, 그 새로 제사하는 서열(序列)로 보자면 응당 성수침의 다음 자리에 있어야 하긴 하였으나, 그 위판(位版)을 배정(排定)할 때에 가서는 이내 백인결의 윗자리에다 올리어, 빈주와 사우(師友)의 좌차(座次)를 거꾸로 두어 성수침이 정한 예법을 준행

하지 않았습니다. 신들이 소를 올려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목을 대략 모아 월봉(月峰) 아래의 옛 터에다 두어 칸의 집을 짓고 선생의 사판(祠板)을 옮겨 모시고자 춘조(春曹)에 글을 올렸더니, 춘조에서도 아주 합당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명(聯名)으로 호소하는 바이니, 부디 유사(有司)에게 명하시어 특별히 두 글자의 현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이에 왕이 비답하기를, “중건(重建)하는 것은 처음 창건(創建)하는 것과는 다른 법이다. 합사(合祀)하던 것을 어째서 갑자기 갈라서 설치하였으며, 위치(位次) 또한 어찌 지레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한편으로는 이미 반포한 수교(受敎)를 어긴 셈이 되고, 한편으로는 이미 정해진 정론(正論)이 아니다. 원우(院宇)를 제멋대로 뜯어고친 두 서원 유생들의 일은, 모두 분수에 지나친 죄과를 범한 것이다. 해당 수청(首昌) 유생은 모두 정거(停擧)하고, 충숙공 백인결은 이전대로 합사하되, 위치는 종전처럼 하라” 하였다.

·성흔

우계 성흔(牛溪 成渾, 1535~1598)은 서울 순화방(順和坊, 현 순화동)에서 태어났으나 5살이 되던 해인 중종 34년(1539) 파산(坡山)의 우계(牛溪), 즉 지금의 경기도 파주로 이사하여 자랐다. 성흔의 호도 그가 자란 지명을 따서 ‘우계’라고 하였다. 성흔은 명종 5년(1551) 초시에 급제하였으나 더 이상 과거에 나가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백인결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우고, 명종 9년(1554)에는 같은 피주고을에 살던 이이(李珥)와 사귀게 되면서 평생의 벗이 되었다. 그러나 백인결은 이황의 학설을 이어받아 이이와는 선조 5년(1572)부터 6년에 걸쳐 사단칠정(四端七情)에 대한 논쟁을 벌여 유학계의 큰 화제가 되었다. 선조 초부터 여러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나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에 있는 성훈 묘(경기도 기념물 제59호)

아가지 않다가 이이의 권유에 의해 벼슬에 나아가 선조 27년(1594)에는 좌참판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시 영의정 유성룡과 함께 일본과의 화의를 주장하다가 선조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고향인 파주로 돌아가 학문에 전념하다가 파산사당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선조 35년(1602) 기축옥사와 관련되어 삭탈 관직되었다가, 인조 11년(1633)에 복관되었으며, 파주에 있는 파산서원 등에 제향되었다. 묘는 경기도 기념물 제59호로 지정되어 있다.

□ 문하생을 잘못 둔 죄로 해직된 성훈

<선수 22년(1589) 10월 1일> 정여립의 시체를 군기사(軍器寺 : 조선시대 군기의 제조를 맡아보던 관청) 앞에서 다시 극형을 가하였는데 백관을 차례대로 서게 하였다. 정여립은 동래정씨(東萊鄭氏)로 아버지 정희증(鄭希曾)이 문과에 올랐으나 벼슬은 첨정(僉正)에 그쳤다. 정여립은 장성하면서 체구가 장중하였는데 7~8세에 아이들과 장난하고 놀면서 칼

로 까치를 부리에서 발톱까지 도막내었다. 아버지인 정희종이 누가 한 짓이냐고 꾸짖으며 묻자 그의 집 어린 여종이 여립을 가리켜 말하였는데 그날 밤 여립이 그 아이를 칼로 찔러 죽였다. 온 마을 사람이 모여 구경하고 있는데 여립이 말하기를, “이 아이가 나를 일러 바쳤으므로 내가 죽였다” 하는데, 말씨가 태연하였다고 한다.

여립은 아비 슬하에 있으면서도 항상 모든 일을 제 마음대로 결단하였다. 아비가 익산군수(益山郡守)로 있을 적에는 아랫사람을 형장(刑杖)으로 때렸으나 아비는 금지하지 못하고 허를 차며 속으로 두려워할 뿐이었다. 과거에 오르게 되어서는 파주의 성훈과 이이(李珥)의 문하에 왕래하였다. 총명하고 논변을 잘하여 성훈과 이이 두 사람이 조정에 천거, 현양시키니 이발(李灝) 등과 교분을 맺었다. 그런데 성훈의 문인 신옹구(申應集)·오윤겸(吳允謙) 등은 같이 거처하며 그가 하는 일을 보고서 마음씀이 불측하여 소원하게 대하였으나 감히 사문(師門)에서 칭찬이나 헐뜯는 일을 하지는 못하였는데 이이는 그의 인품을 깨닫지 못하였다. … 결국 여립의 옥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학사(學士)와 대부들이 억울하게 화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후진의 제생(諸生)도 유학으로 이름 삼기를 부끄럽게 여겼다. 그리하여 풍속이 크게 무너졌으니 이는 모두 정여립이 역적질한 빛미였던 것이다.

<선수 22년(1589) 11월 1일> 성훈이 소명을 두 번이나 사양하자 상이 하교하기를, “나라에 큰 변고가 있으니 경은 시골에 물러가 있을 수 없다” 하자, 성훈이 이에 소명에 응하여 서울에 들어왔다. 그러나 또 계사(啓辭)를 올려 사직하고 죄를 아뢰기를, “신은 아둔하여 사람을 알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적신 정여립이 10여 년 전부터 파주에 있는 신을 찾아온 것이 거의 3~4회에 이르렀고 안부와 학문의 서찰에 대해 신이 모두 답하였는데, 선조 17년(1584)에 그만두었습니다.

다. 듣건대, 신료 중에 한 번 서찰을 통하고서 해직된 사람이 있다 하는데, 신은 더욱 심한 자입니다. 신의 죄를 다스려 조정의 기강을 엄하게 하소서” 하였다.

□ 임금을 모시지 않았다고 모함받은 성훈

<선수 27년(1594) 3월 1일> 성훈은 병으로 호종(扈從)하지 못하다가 뒤따라 이르렀었는데, 누차 상소하여 사직하니 최후에 상이 답하기를, “전란 초에 경의 집 앞을 지나갔는데도 경이 나와 보지 않았으니 나 자신도 그 죄가 무겁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였다. 성훈은 또 상소하여 스스로 탄핵하고 처벌을 기다렸다.

대개 상이 서쪽으로 파천할 당시에 있었던 일은 다음과 같다. 성훈의 집은 파주 파평산 밑 우계(현재 파평산 뒷자락 근방)에 있었는데 큰길에서 20리 가량 떨어져 있었다. 따라서 상이 한밤에 갑자기 임진강을 건넜으므로 성훈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상이 호종하는 관원에게 이르기를, “성훈의 집이 어디에 있는가” 하자 병조좌랑 이홍로(李弘老)가 임진강 가에 있는 고(故) 찬성(贊成) 이이(李珥)의 가정(家亭)을 가리키며 아뢰기를, “바로 저 집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째서 나와 보지 않는 것인가?” 하니, 이홍로가 아뢰기를, “이런 때에 성훈이 어찌 상을 뵙 리가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상이 몹시 괴이하게 여겼다.

성훈이 상의 행차가 있다는 것을 듣고 뒤따라 임진강가에 이르렀으나 나룻배가 이미 끊어져 건널 수가 없어 어가(御駕)를 따르지 못하게 되자 그대로 산속으로 들어갔다.

왕세자가 이천(伊川)에서 영을 내려 부르니, 성훈이 처음에는 병으로 사양하다가 차자를 올려 학문의 일을 가지고 진계(陳戒)하였고 또 군국(軍國)의 편의에 대해 15조목을 진술하였는데, 왕세자가 그것을 받아들

였다. 그리고 이정형(李廷馨)과 함께 군부(軍府)의 일을 보도록 명하니, 성훈이 명을 받고 곧 달려갔다. 가을에 이르러 왕세자를 성천(成川)에서 뵙고, 또 성천에서 의주(義州)의 행재소(行在所)로 들어가 상을 뵈었다. 이에 참소하는 자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를, “성훈은 처음부터 기꺼이 난에 달려가지 않았다. 그가 입조(入朝)한 것은 내선(內禪 : 임금이 살아있으면서 그 자제에게 양위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하니 상은 더욱 의심을 가졌다. 성훈이 계획한 일은 모두 배척당했는데, 그가 이런 엄한 전교를 받게 되자 그를 거리는 자들이 앞을 다투어 공격하였다. 성훈은 해직을 요구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항상 병을 이유로 사진(仕進)하지 않았다.

<선조 35년(1602) 2월 15일 > 사현부가 아뢰기를, “… 성훈은 간홍인 정철과 교분이 깊고 정이 친밀하니 모든 모의에 참여해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선조 23년(1590) 무렵에 정철이 중외에 통문을 내어 쌀과 포목을 수합하여 성훈의 아비 성수심(成守深)의 청송당(淸松堂)의 옛터에 큰 집 한 채를 지어놓고는 정철이 그의 도당을 거느리고 날마다 모여서 성훈의 지휘를 들으며 흥모를 자행하였으니, 성훈은 곧 정철의 모주(謀主)입니다.

또 선조 24년(1591) 무렵에 정철이 강계(江界)로 귀양갈 때는 성훈이 파주로부터 송도(松都)에까지 따라가서 이틀밤을 자며 작별인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선조 25년(1592)에 적이 경성에 접근했을 때는 성훈은 재상의 반열에 있는 신하로서 경기의 하룻길 거리에 있었는데도 변란의 소식을 듣고 달려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가(大駕)가 그가 사는 곳을 지나갈 때에도 나와서 뵙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뒤 왕세자가 이천에 머무를 때에 성훈이 멀지 않은 곳에 피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여러 번 불렀으나 끝내 오지 않았고, 성천으로 이주(移

駐)할 때에야 맨 나중에 왔습니다. 왕세자가 북쪽에 있는 적이 장차 장치(獐峙)를 넘어온다는 말을 듣고 용강(龍岡)으로 급히 옮겨가니, 성훈은 앞 서거나 뒤쳐지거나 하여 모시고 가지 아니하다가 용강이 적에 가깝다 하여 지레 의주로 항해 갔습니다. 당시 대신이 선인(善人)은 천지의 기강이라 하여 승질(陞秩)시키기를 계청하였는데 선인의 도가 진실로 이와 같은 것입니까. 이미 죽었다 하여 그 죄악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훈의 관직을 삭탈하도록 명하소서 … ” 하였다.

이에 양사에 답하기를, “성훈에 관한 일은 조정에서 시비가 올바로 가려졌으니 삭탈 관직할 필요가 없다 … ” 하였다.

□ 성훈의 원통함을 풀어주길 청하는 상소가 이어지다

<광해 즉위년(1608) 4월 8일> 관학 유생 이목(李榮) 등의 상소하기를 “ … 고 성훈은 우뚝이 홀로 서서 일평생을 조용히 지내면서 학문에 힘쓰고 영화에는 마음을 끊어버려, 나가기를 어렵게 하고 물러감을 쉽게 하여 조정에 있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더러 소명(召命)을 따라 서울에 들어가 당시 정사를 잡은 사람과 별였던 논의는, 사물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군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논자들이 이를 당을 위한 일이라 한다면 또한 무고(誣告)가 아니겠습니까.

선비를 죽였다는 말에 있어서는 더욱이 터무니없습니다. 당초 최영경(崔永慶)의 옥사는 전라감사 홍여순(洪汝淳)의 계문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성훈은 애초부터 간섭한 단서가 없었으며 뒤에는 오히려 구원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했으면서 선비를 죽였다는 죄를 받은 자는 없습니다. 당시 사대부들 사이에 그의 죽음을 좌시한 채 한마디의 말도 변명하지 않은 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어떻게 하고 도리어 구원한 자를 죽인 자로 만들어 버렸으니, 너무나 사리에 어긋난 일

이 아니겠습니까.

성흔은 파평산 아래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의 집에서 직로(直路)와의 거리는 가까운 곳도 몇십 리가 되었습니다. 이날 새벽 도성문을 떠난 거가(車駕)는 저녁때 쯤 임진강을 건넜는데 수령들도 비밀히 하고 전해주지도 반포하지도 않았습니다. 깊숙이 가려진 곳에 살고 있는 성흔의 형세로 보아 듣지도 알지도 못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전하께서 덕 있는 말씀을 내리시어 원통한 자는 씻어주고, 놀린 자는 펴주고, 폐기된 자는 등용하고, 귀양간 자는 풀어주는 오늘날에, 유독 성흔만은 사문의 영수(領袖)로서 오히려 죄명을 갖고 있으니, 아래서 신들은 억울한 마음으로 원통을 가리는 일에 급하게 서두르는 것입니다. … 전하께서 밝은 지혜로 살피시어 속히 깨끗하게 씻어주라는 명을 내리시어, 여러 선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신다면 사문에 더없는 다행이며 국가에 더없는 다행이 되겠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답하기를, “소장의 내용은 잘 알겠다. 다만 이 일은 전조 때 이미 정해진 것으로 지금에 와서 함부로 논의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였다.

<광해 즉위년(1608) 4월 10일> 관학 유생 이목 등의 재상소하기를 “성흔은 큰 어진이로서 어찌 어려움에 처했을 때의 군신의 의리를 알지 못하여 대가가 자기의 사는 곳을 지나는데 모르는 척하며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적에 성흔은 초야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전하는 말이 ‘대가가 서쪽으로 떠난다’ 하였는데 성흔이 종을 보내어 사실을 알아본 결과 이미 친히 싸우시겠다는 분부를 내리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성흔은 전에 들었던 말들은 헛소문이라 여기고 스스로 궐하에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흔은 사악한 당의 영수로 지목되어 비난을 받고 있던 중이므로, 나가는 것이 거취의 의리에 손상될까 염려하여 주저하고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적병이 가까

이 밀려오자 급작스럽게 도성을 버리고 떠나야 했기 때문에, 길을 치우라는 영이 먼 곳이나 가까운 곳 없이 미치지 못하여 조정에 있는 신하들과 서울에 있는 백성들도 미처 알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파평산에 있던 성흔의 집은 읍내와의 거리는 30리이며, 임진강과의 거리는 20리였으니, 까마득히 소문을 듣지 못했던 것은 당연합니다. 실정이 이와 같았던 것인데, 나와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대가가 파주를 지날 적에 대가의 뒤를 따르던 이홍로는 길가에 있던 성흔의 시묘살이 여막을 가리켜 성흔이 사는 집이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홍로의 속임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원통하지 않습니까. 성흔의 처형 사평(司評) 신식(申拭)은 대가를 뒤쫓아 임진강에 이르렀는데, 배들이 이미 치워져 끝내 건너지 못하고 성흔의 집을 찾아가 말하기를 ‘오늘 대가가 이미 임진강을 지났는데, 길가는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수레를 빨리 달려 바로 관서로 향하였다고 한다. 길마저 통행되지 않아 결코 뒤쫓아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성흔은 신식과 서로 통곡하고 헤어졌는데 대가가 송도에 머물 것이라고는 성흔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으니, 성흔이 달려가 문안을 드리지 못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실정이 이와 같이 된 것인데 달려가 문안드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대저 성흔은 사문(斯文)의 영수로서 세상 사람들의 사표(師表)가 되어 인륜을 밝히고 의리를 세웠습니다. 불행히도 소인들의 무고로 비방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난리에 인군을 벼렸다는 죄로 지목하여 아직까지 원통을 씻어주는 은전이 내리지 않아 오래도록 사람들의 통탄이 되고 있습니다. … 전하께서는 원통함을 씻어주라는 명을 내리신다면 사문이나 국가에 더 없는 다행이 되겠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답하기를, “나의 뜻은 이미 하유하였다. 너희들은 물러가 뒷날

을 기다리도록 하라” 하였다.

<광해 즉위년(1608) 11월 22일> 광주목사 신응구(申應梧)의 상소하기를 “… 신이 삼가 성흔을 공격하는 자들의 말들을 살펴보니, 첫째는 ‘간악한 자의 당이다’는 것이고, 둘째는 ‘임금을 벼렸다’는 것입니다. 성흔은 선왕조에서 세상에 없는 대우를 거듭 입어 해마다 부름과 제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가난한 생활을 분수에 달게 받아들이며 평소의 지조를 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번 선조 16년(1583)에 이이를 신구(伸救)하면 서부터 크게 시론(時論)에 거슬려 혈뜯는 의논이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성흔이 간당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정철이 최영경을 얹어 죽인 것으로 여기는데, 성흔과 정철이 서로 친하였기 때문입니다. 성흔이 정철과 친하게 지냈으나, 본디부터 조정에 서서 일을 함께 하려는 뜻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최영경을 끝까지 신구한 사실이 있는데, 말할 게 있겠습니까.

신은 들헌대, 정철이 인대하는 날 영경을 위해 효성과 우에 그리고 기절(氣節)이 있다고 진달하였고, 또 익명시(匿名詩)에 대해 추고할 때도 그를 위해 구원해 풀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정철과 영경은 본래 평생 동안 모르고 지내는 사이인데도 이같이 신구했던 것은, 어찌 성흔이 편지를 보내 구원을 청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선조 27년(1594)에 정철을 논의하던 때에 바로 ‘얽어 죽였다’고 말하지 않고 ‘겉으로는 구원해 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빼뜨렸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선조 35년(1602)에 이르자 다시 이 말을 성흔에게 사용하여 소장을 올려 구하지 않은 것을 성흔의 허물로 삼았습니다. …

정철이 위관에서 체직된 뒤에 이별의 80세 된 어머니와 열 살된 아들 까지도 곤장 아래서 죽었으니 그의 원통함을 행인들도 모두 말했는데, 그 당시의 추관들 역시 법을 인용하여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기축옥사의

변고가 일어나자 정철이 성훈에게 보낸 편지에 오로지 사대부의 화를 구원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이발과 원수지간이라는 것은 온 나라 사람들 이 알 정도였으나, 당초 국문에서는 힘써 구원해 북도에 정배되었다가 역적 무리의 횡설수설하는 공초로 인해 중도에 도로 불집혀 돌아와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철이 성훈을 보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언신에게 사사하란 명이 내려지던 날에도 추국하던 여러 신료들이 입을 다물고 한마디 말도 꺼내지 못했으나, 정철이 회계 할 것을 주창해 두 차례까지 회계하여 사형을 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성훈이 이것들을 어떻게 그의 본심이 아니라고 여겨 그를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선조 25년(1592)에 주상을 미처 맞이하고 수행하지 못했던 연유는, 당시 의논들이 바야흐로 성훈을 정철의 당이라고 하였으므로 성훈이 시꼴에서 대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스스로 대궐에 나올 수 없었고, 성훈이 사는 곳은 그 고을의 소재와 30리나 떨어져 있었으므로 어가가 이미 임진강을 지난 뒤에야 비로소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며, 또 소문에 이미 난병(亂兵)이 일어나 사람들이 모두 적을 피해 마을들이 모두 비었다고 하자, 성훈이 병든 몸을 이끌고 산중으로 들어갔는데, 어가가 송도에 머무르리라고는 실로 성훈이 예상하지 못했던 바입니다. 성훈의 집이 산 중에 외따로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자들은 어가가 그의 집 가까이 지나가는 데도 피하고 나와 보지 않았다며 임금을 버렸다고 지목하였으니, 전혀 맞지 않은 말입니다.

성훈에게는 젊어서부터 고질병이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며 신고를 겪은 테다가 이질까지 앓아 삭녕(削寧)의 여승(女僧) 집에 우거해 있었습니다. 이때 전하게서 나랏일을 임시로 맡아보라는 명을 받고 이천에 나와 머무르시며 글을 내려 그를 부르셨는데, 성훈

이 병으로 즉시 나가지 못하고 먼저 차자를 올려 제왕의 학문과 시무(時務)에 마땅한 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지나 병세가 조금 수월해지자 바로 병든 몸을 이끌고 길을 나서 삭녕의 서쪽 지경에 당도했을 때, 전하께서 다시 글을 내려 성혼으로 하여금 삭녕의 의병을 주관하게 하였으므로, 부득이 중도에서 돌아와 김지(金瀆) 등과 의병을 불러 모았습니다. 또 부르는 명이 내리자 성혼이 안협(安峽) 지경에 당도하였는데, 적병이 이천을 습격하였으므로 전하께서 급히 성천으로 끌기셨고, 성혼은 적병이 꽉 차 있어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이때에 마침 명령이 내려 이정형과 협력해서 군사를 모집토록 하였으므로, 성혼이 마침내 이정형의 군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라고 보면 성혼이 전후로 나가지 못했던 것은 모두 전하께서 군사를 모집하라는 명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자들은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불렀는데도 끝내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 또한 무고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9월에 이르러 다시 소명이 내리자 성혼이 비로소 나와 10월에 성천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혼이 이때에 감히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하직하고 서쪽으로 들어갔던 것은 그의 마음에, 먼저 임시조정[分朝]에 갔고 또 그 즉시 임금이 있는 곳[大朝]으로 달려가 안부를 묻지 않아 의리에 온당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탑전에서 말씀드리니 전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다음날 장치의 변보(變報)가 갑자기 이르자 전하께서 안주로 끌기셨는데, 성혼도 뒤따라 안주에 이르렀습니다. 전하께서는 용강으로 갈 계책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성혼은 일찍이 성천에서 하직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감히 다시 번거롭게 조정에 하직 인사를 드리지 않고 그곳에서 서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자들은 '성혼이, 용강이 적병과 가까이 있다고 하여 바쁘게 의주로 향했다'라고 하였으니, 또한 무고가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임금을 벼렸다고 한 것

은 전혀 실정과 가깝지 않은 말입니다.

의논하는 자들이 또 말하기를, ‘외척의 권세에 의지해 출세했다’ 하였는데, 이른바 외척의 세력이란 심의겸(沈義謙)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심의겸이 공부하던 시절에 명현들의 문하를 왕래하였는데, 일찍이 파주에 사는 성훈의 아버지 성수침을 방문하였으므로 성훈이 이로 인해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훈은 평생 동안 함부로 성시(城市)에 발길을 들여놓은 적이 없었으며, 그가 부름을 받고 서울에 이르렀을 때도 의겸이 세력을 잃은 지 이미 오랜 뒤였습니다. ‘외척의 세력과 뭉쳤다’라고 한 말은, 무슨 근거로 말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의논하는 자들이 또 말하기를, ‘역적이 한때 중한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모두 성훈이 길러 부추긴 것으로 말미암았는데, 그만 역적과 어울린 죄를 면했다’고 합니다. 당초 역적이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물러가 글을 읽기로 명분을 내세우고서는 이이와 성훈이 한 시대 유림의 어른이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학문을 물었습니다. 이이와 성훈이 그의 기질이 거친 것을 단점으로 여기었으나, 벼슬을 버린 점 때문에 벗들에게 그를 칭찬하였습니다. 이이와 성훈이 학문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역적이 학문을 묻는 것으로 속인 것입니다. 이이가 죽자 역적이 수찬이 되어 서울에 들어왔었는데, 당시 의논이 크게 변해 이이를 공격하는 것이 이로웠기 때문에, 헐뜯으며 아울러 성훈까지 공격했습니다.

의논하는 자들이 또 말하기를, ‘성훈이 초야에 자취를 숨기고 문도들을 모아 스승과 제자라 칭하면서, 날마다 경박한 무리들과 정사를 논하고 인물의 시비를 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훈은 본디 산중의 한 선비입니다. 그의 아버지 성수침은 조광조(趙光祖)의 문하 출신으로 높은 풍도와 아름다운 덕이 한 시대에 존경을 받았으나 파주에 은거하면서 학자들이 그를 청송선생(聽松先生)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성훈의 학문은

대체로 집에서 성취된 것인데, 효도·우애·충성·신의와 자신을 반성하여 간절히 구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비방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신은 애달프고 애석한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성흔이 배척을 입은 뒤로 학문을 강론하는 일이 세상에 큰 금물이 되고 말았으니, 어진이가 무고를 입은 것이 문인 한 사람만의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다행히 선왕의 날카로운 지혜로 살펴주신 데 힘입어 실정에 가깝지 않은 죄를 주지 않고자, 죄명을 결정짓는 날 특명으로 ‘영경을 얹어 죽이고 역적을 길러냈다’라는 등의 말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흔이 선왕에게 인정받은 것이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지금 왕위를 이어받은 초기에 전일 죄를 입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크고 작은을 막론하고 모두 씻어주는 온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성흔 혼자만 지하에서 원통함을 품은 채 씻어질 기약이 없으니, 신이 어찌 성흔의 마음과 자취를 성상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답하기를, “모두 잘 알았다. 스승을 높이려는 정성에 대하여 참으로 가상히 여기고 감탄하였다. 다만 이는 선왕조에 있었던 일이므로 3년 안에는 가벼이 의논할 수가 없다.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자가 담지하고 있으니 사체를 손상할까 염려된다. 내 이 때문에 두렵게 여긴다” 하였다.

<광해 즉위년(1608) 11월 25일> 전 서부참봉(西部參奉) 배홍중(裴弘重)이 상소하기를 “이미 작고한 신의 스승 성흔은 한 시대 유림의 사표였는데, 온갖 참소에 말려 이름이 죄적(罪籍)에 들어 있으므로 많은 선비들이 원통해 하고 있습니다.

성흔이 임진왜란 때 삭녕의 김지 군중에서 전하의 부름을 받고 성천에 들어갔다가 이어 의주로 나갔으니, 성흔과 김지가 똑같다고 하겠는데 참소하는 자들이 떠들어대었습니다. 죄영경을 얹어 죽였다는 말과 임금을 저버렸다느니 간악한 자와 한패가 되었다느니 하는 논의들이 또 어

찌하여 나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경의 옥사는 처음에 전라감사 홍여순의 장계에서 시발된 것이고 보면 그 당시의 위관(委官 : 죄인을 추국할 때 의정대신 가운데서 임시로 뽑아서 임명하는 재판장)들에게 죄를 떠넘긴 것도 억울한 것 같은데, 더구나 영경은 성흔의 오랜 벗이었으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영경이 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는 아들을 보내 위문하였고, 그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는 쌀을 보내 부의함으로써 옛날 친하게 지냈던 정리를 온전히 하였습니다. 그런 그를 두고 얹어 죽였다고 하는 게 사실에 가깝습니까? 우리 선왕께서 잘못된 내용임을 통찰하고서 성흔의 죄를 결정하는 날에 ‘영경을 얹어 죽였다’는 한 조목을 특별히 삭제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가지고 그의 죄목을 구성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저버렸다느니 간악한 자와 한패가 되었다느니 하는 말들이 뒤따라 터져나온 것입니다.

성흔이 임진왜란 때 그가 사는 곳이 매우 외떨어진 데다가 어가가 번개처럼 지나가 미처 알지 못하였고 나루가 끊겨 뒤따라가지도 못하였는데, 이를 가지고 임금을 저버렸다고 말하는 것이 옳단 말입니까?

또 성흔이 정철의 친한 벗이었으나, 그들의 출처(出處)가 제각기 달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간악한 자와 한패가 되었다고 말하니, 매우 괴이합니다. 당시의 여론들이 영경을 얹어 죽인 것을 정철에게로 떠넘기고 이어 그를 간악하다고 하였는데, 정철이 위관이었기 때문입니다만, 성흔은 위관도 아니었고 또 정철과 일을 함께 한 자취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간악한 자와 한패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흔이 선왕조에서 세상에 없는 융숭한 예우를 입었는데, 한 번 연루되자 거짓말로 참소한 바람에 엄한 전교가 여러 차례 내려지고 준엄한 논의가 제기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흔이 비록 초야에 물러나 있었

으나 두려움과 근심 속에 길이 대죄하고 있었습니다. 죄인으로 임종을 맞아 그 아들에게 유서(遺書)를 주었는데, ‘내가 임금에게 죄를 지었는데, 미처 죄를 받지 못해 황공하게 죽는다. 내가 죽으면 무명옷을 입히고, 종 이로 만든 이불로 염(斂)하고, 띠를 엮어 관을 덮고, 소달구지로 실어다 장사하되, 대략 흙으로 가리우고 예를 갖추어 장사지내지 말라 …’고 하였는데, 이는 지하에서 대죄하겠다는 뜻입니다.

아, 성흔이 먹은 마음은 하나같이 성(誠)에서 출발되어 충효와 큰 지조가 천지를 감격시킬 만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비방이 죽은 뼈까지 녹일 정도로 쌓였으나 억울함을 씻을 기약이 없습니다. 선왕 말년에는 큰 간 특한 사람이 국정을 잡아 시기하는 것이 풍조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하늘이 명철한 자를 명해 공론이 차츰 전개되면서 모든 사람이 성흔의 죄를 마땅히 씻어주어야 한다고 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성균관에서부터 밖으로는 여러 도(道)의 유생들까지 거의 거르는 달이 없이 대궐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게서는 갈수록 들어줄 기미가 없으니, 신은 민망하고 답답합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게서는 신의 이 상소를 내려보내 널리 조정의 공론을 수집하여 원통을 씻어 주소서” 하였다.

이에 답하기를, “선왕조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의 제자들과 학도들이 연이어 상소를 올려 마치 다그치는 듯이 하고 있으니, 자체에 손상될까 염려된다” 하였다.

<광해 즉위년(1608) 12월 20일> 교리 최기남(崔起南)이 상소하기를 “… 태학의 유생들이 성흔의 억울함을 씻어주기를 청하자, 상께서 내린 비답에, ‘옛날 임진왜란 중 선왕의 어가가 성흔이 사는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도 성흔이 길에 나와보지 않았고 또 어가가 유숙한 곳에도 달려와 문 안드리지 않았는데, 군신 사이에 어려울 때 서로 돌보이주는 의의가 이같

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하였다 합니다. 신도 성흔의 이런 일들에 대해 또 한 일찍이 의아하게 생각되었으므로 그 이유를 깊이 추적해 본 끝에 그 곤절을 자세히 알아냈습니다. 청컨대 신이 들은 말을 가지고 분변하겠습 니다.

성흔과 정철은 오랜 친구입니다. 이로 인해 한때 많은 비방을 샀으며 임진 연간에는 죄를 입을 처지였으므로, 고향에서 대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발발하였는데, 대죄 중인 사람으로 감히 스스로 대궐에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가가 서쪽으로 떠나시는 날에 이르러서는, 성흔의 집은 파평산 아래 외진 곳에 있어 소재지와는 30리나 떨어져 있고 임진강과는 17~18리나 떨어져 있는데다가 관가에서도 불러들이는 명령이 없었으므로, 막연히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성흔의 손윗동서 신식(申拭)이 성흔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어가가 이미 임진강을 건넜으며 평상 시보다 배나 빠르게 달려 곧바로 요동(遼東)으로 갈 것이라고 하였는데, 오늘밤은 어느 곳에 머무르셨는지 모르겠다. 또 어가가 나루를 건너 뒤에 동쪽 언덕에 있는 집들을 철거시켜 나루를 통행치 못하도록 명하였고, 어가가 지나간 뒤로 도로에 이미 적병이 나타나 사람들이 통행할 수 없다' 하고는, 이내 성흔과 신식이 마주보고 통곡만 하였습니다. 다음날 이 되자 이웃사람들이 모두 달아나 온 마을이 텅 비자 성흔도 외딴 산골 짜기로 이사를 갔는데, 어가가 송도에 머물 것이라고는 성흔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가가 지나실 날은 만일 미리 나와 기다렸더라면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미리 나오지 못한 것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흔이 서울에 종을 보내어 소식을 탐지케 하였더니, 그의 말에 '또 상께서 성을 등지고 한바탕 싸우겠다고 전교를 내렸다'고 하였으므로, 민간에서 떠돌

고 있는 서쪽으로 거동하신다는 말도 사실 여부를 알 수가 없게 되었으며, 또 그의 생각에도 ‘어가가 만일 서쪽으로 떠나시게 된다면 당연히 관가에서 부르는 명령이 있을 것이니, 민간에서 반드시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고 여겼습니다. 이 때문에 성훈이 또 미리 나가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가가 처음 도성을 출발할 때도 창황중에 결정된 일이라서 서울에 있던 신료들 중에도 미처 알지 못한 자가 간혹 있었는데, 더구나 성훈의 집은 소재지의 30리 밖에 있는데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훈이 선왕의 준엄한 전교를 받은 뒤로는 매번 죄인으로 자처하면서 자신의 묘지(墓誌)를 초안하였는데, 그 대략에 ‘내가 세상을 속이고 나라의 은혜를 저버렸으니 신하로서 누가 나처럼 은혜를 저버렸겠는가. 내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하였고, 또 죽을 무렵에 아들에게 남긴 글에 ‘내가 임금의 처벌을 기다리다 횡공하게도 죽음을 맞이했으니, 너는 무명옷을 입히고 무명 이불로 염하고 띠풀로 관을 덮어 소달구지에 싣고 가 장사지내되 대충 흙으로 덮도록 하라’ 하였으니, 그 심정이 애닮기도 합니다.

아, 성훈은 대대로 초야에 살면서 도학(道學)을 스스로의 책임으로 알아 사람의 높은 명망을 받으며 한 시대의 유림의 종장(宗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친구 때문에 연루되어 전전하다가 뜻밖에 사실 아닌 비방을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돌아보건대, 그가 무함을 입게 된 원인은 유영경(柳永慶)이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삼사의 벼슬아치들이 혹은 사직소를 내기도 하고 혹은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삼사가 텅 비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끝내 그 논의에 찬성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단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서 그랬을 뿐이지, 반드시 모두가 성훈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훈이 죄를 입은 것에 대해 지극히 통탄스럽게 여기는 것은 백성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우리 전하께서 새로 즉위하여 맨 먼저 어진이를 높이는 은전을 시행 하시어 모두들 성흔의 억울함이 밝게 셧길 날이 머지않을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오늘날 내린 전교는 도리어 이렇게 나오고 말았으니, 유림들이 어찌 실망을 금할 길이 있겠습니까. 신이 성흔에게 글을 배운 은혜는 없으나 구구한 마음에는 실로 간절히 우러러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우러러 사모한 이유는, 사실 성흔의 학문이 충효를 근본으로 하고 있어 한 시대의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임금을 저버렸다는 것으로 끝까지 이처럼 임금에게 의심을 사고 있으니, 어찌 마땅히 분변해야 할 점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그의 지극히 가슴 아프고 더없이 억울한 사연을 깊이 살피시고 풀어주신다면 사문의 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답하기를 “성흔의 일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사체를 생각지 않고 협박하는 태도가 현저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온당치 않은 일이다. 잠시 뒷날을 기다리더라도 늦을 게 뭐가 있겠는가” 하였다.

<광해 3년(1611) 3월 29일> 부사용(副司勇) 한교(韓橋)가 상소하기를, “돌아간 신의 스승 고 성흔은 유명한 아비의 자식으로 대대로 시골에 살면서 가학(家學)을 전해 받았습니다. 효제와 충신으로 유년 교육을 단정히 닦았고 독서하고 이치를 궁구하여 몸에 돌이켜 실천하였으며, 또 이 이와 더불어 도의의 사귐을 맺어 절차강마하였으니, 그의 조예가 더욱 깊어져 세상의 유종(儒宗)이 되었습니다. …안으로는 관학에 있는 많은 선비와 밖으로는 초야에 있는 제생들이 해를 가리는 구름을 밀치고 대궐에 상소하여 그 원통함을 호소한 자가 부지기수이며, … 비록 부르고 임명하고 발탁하심이 거의 한 해도 거른 적이 없었으나 애써 반열에 나아가 직에 이바지하고 녹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 계미년의 경우는 병조참지로서 서울에 들어가 은명을 사례하다가 마침 이이가 병조판서

로 삼사의 탄핵을 받는 것을 보고 상소하여 논구하였고, 이이가 죽은 뒤에는 세상을 피해 산골에서 살면서 더욱 영원히 벼슬하지 않을 뜻을 굳혔습니다.

임진년 난리에 서쪽으로 피난하시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이르러 임금의 행차가 아침에 도성문을 나와 저녁에 임진강을 건넜는데 혼이 살고 있는 곳은 매우 외져 임진강과의 거리가 거의 20리나 되었으니 어떻게 미처 알아서 맞이하여 배알할 수 있었겠습니까.

임금의 행차가 막 임진의 행전(行殿)으로 거동하셨을 때 묻기를 ‘성흔의 집이 어느 곳에 있는가.’ 하자 이홍로가 상의 앞에 있다가 손으로 임진강 상류의 남쪽 언덕에 있는 시골집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성흔의 집이 저기에 있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그런데 어찌하여 와서 배알하지 않는가.’ 하였는데, 이홍로가 말하기를 ‘이때를 당하여 어찌 와서 배알하고 싶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이 말은 장단 품관(品官)인 남응시(南應時)가 그 당시에 수라감관(水刺監官)으로 행전의 앞에 엎드려 있다가 직접 그 말을 듣고 신을 위하여 낱낱이 말해준 것입니다.

병신년 가을에 신이 파평의 집으로 성흔을 찾아갔었는데 성흔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말하기를 ‘내가 임금에게 죄를 얻었는데 아직까지 벌을 받지 못하고 벼젓이 세월을 보내면서 마치 죄가 없는 자처럼 하고 있으니 내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내가 일찍이 사서(史書)를 읽다가 한(漢)나라 신하가 북궐 아래에서 자결한 대목에 이르러서 무리하다고 여겨 강구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일리가 있는 것 같다. 군신의 의리는 천지간에 도망칠 곳이 없으므로 만약 임금에게 죄를 얻고서 책망과 벌을 받지 않았다면 살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말이 슬펐습니다.

임종할 때 자기 아들에게 유서를 남겨 장례를 박하게 치르도록 하였으니, 이는 비록 지하에 들어가서라도 임금에게 대죄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헤아려 본다면, 죽은 뒤에라도 죄를 받는 것이 바로 그의 바라던 바였으며, 사라지지 않는 것은 죽은 뒤에도 존재하는 법이니 어찌 마음에 기꺼워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유현(儒賢)이 무함을 당함에 세도가 점차 어그러져 식자가 놀라고 사론(士論)이 더욱 울적하니 삼가 바라건대 명철하신 성상께서는 살펴주소서.

흑자가 밀하기를 ‘그의 벗인 정철이 기축년 역변에 추관으로서 무겁게 죄를 얻어 먼저 유배되고 나중에 관작을 삭탈당하여 간흉으로 지목되었지만 혼이 절교하지 않았으니, 간흉과 파당을 지은 죄를 더욱 면할 수 없다.’라고 하니, … 신묘년 정철의 죄를 재론할 때에 어찌하여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10년이 지난 임인년에야 비로소 이미 죽은 사람에게 연좌율을 적용하였으니, 참소하는 자들이 꾸며낸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갑오년과 을미년 사이에 조정에서 흑 상의 하교로 인하여 성혼에게 별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의 영상 유성룡이 극력 저지하였고, 임인년에 이르러 유영경이 정권을 잡은 후에 영남 유생 문경호(文景虎) 등이 서울에 와서 상소하여 성혼이 죄영경을 무함하여 죽였다고 하자, 이에 시론이 다투어 일어나고 안팎에서 부화뇌동하여 거의 깨뜨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영경의 옥사는 성혼이 파주로 돌아간 지 한참 뒤에 일어났고 또 종종 엄폐하기 어려운 다소의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왕께서 그것이 무함이었다는 것을 살피어 관작을 삭탈하고 단지 옆에서 나온 얘기에 근거하여 성혼의 죄를 정했는데, 유성룡이 극력 저지하였던 말과 유영경이 부화뇌동한 자취는 모두 신이 듣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홍로가 처음 그 말을 지어냈고 영경이 마침내 그 죄를 만들었으니 어찌 유림의 통탄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게서는 속히 성혼의 원통함을 씻어주소서. 그러면 유독 사문의 다행일

뿐만이 아니요, 경대신·체군신·자서민의 도리에 있어서도 반드시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소의 내용은 모두 살펴보았다. 성흔의 일은 사람마다 쉽게 말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한교의 이 상소는 논한 것이 힌두 가지가 아닌데 성흔의 원통함을 호소한 한 대목이 가장 상세하였다. 대개 한교는 일찍이 성흔의 문하에서 유학하였기 때문에 성흔의 일에 대해 매우 자세히 알고 있었다. 아, 성흔은 세상에 혼하지 않은 명유로 학문에는 연원이 있고 행실은 순정하여 학자들의 존중을 받았다. 그러나 불행히 불우한 때를 만나 살아서는 배운 것을 펴서 이 세상을 윤택하게 하지 못하였고 화망의 더함이 지하에까지 미쳤으니, 성흔이 수립한 바에 있어서 비록 해될 것은 없다고 하나 세도로 논한다면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는가.]

□ 성흔이 드디어 관직을 회복하다

<인조 1년(1623) 3월 25일> 상이 문정전에 나아가 상참을 행하고, 이어 조강에 『논어』를 강하였다. … 이정구가 아뢰기를, “기묘사화를 겪은 후부터 사람들은 학문에 뜻을 두지 않았는데, 성흔이 차분히 학문하여 사람의 창도자가 되었습니다. 선조께서 유일(遺逸)로 발탁하여 참찬을 제수하기까지 하시었습니다. 뒤에 정인홍의 무고를 입어 관직을 삭탈 당함에 이르렀으므로 사람이 지극히 분노하였습니다” 하였다.

윤겸이 아뢰기를, “인홍의 탄핵은 그럴 만한 까닭이 있으니, 성흔이 일찍이 인홍의 옳지 못한 점을 말하였고, 또 최영경의 처신이 옳지 못함을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못하는 짓 없이 모함하였습니다. 영경이 죽음에 이르자 성흔 또한 원통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아들 성문준(成文濬)을 시켜 위문하게 하였습니다. 성흔은 곧 이이의 친구입니다. 이이와 성흔은 이황(李滉) 이후 일인자로서 그 학문을 펴지 못하고 뜻을 이

루지 못한 채 죽었으니 애석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정구가 아뢰기를, “선조의 즉위 초에 특별한 예우를 받아 심지어 이·
흔(珥渾)의 당(黨)이 되고 싶다는 하교까지 있었는데, 끝내는 당론으로 쫓
겨나 영원히 뜻을 펴지 못하였으므로 지금까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근
래 유자로서 문로의 올바름이 이이와 성훈 같은 이가 없으니, 국가에서
의당 사제(賜祭)하는 일이 있어야 하겠기에 아립니다” 하였다. 이에 상이
이르기를, “성훈이 죄를 입은 것은 선왕조의 일이기 때문에 망설이는 것
이다” 하였다.

윤겸이 아뢰기를, “새로 즉위하신 때라 의당 호오를 분명히 보여야 하
니, 시비를 잘 살펴 조치해야 하지, 어찌 선왕조 때의 일이라 하여 망설
이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정구가 아뢰기를, “선왕조의 초정(初政)에
는 즉시 명묘조(明廟朝)의 위훈(僞勳)을 혁파하였으니, 이것 또한 선왕 때
의 일이 아니었습니까” 하였다. 이에 상이 이르기를, “공론이 이와 같다
면 그 관직을 회복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성훈은 자질이 순수하고 조행이 확고하였다. 어려서
부터 가정의 훈계를 받아 학문을 닦는 데 전심하였고, 또 이이와 사귀어
절차탁마의 도움이 있었다. 학문과 실천의 공효를 함께 이루었고, 평소
의 언행이나 집안 다스리는 의법을 한결같이 『가례』·『소학』에 의해 행
하였다. 파산에 은거하여 영달을 구하지 아니하며 일생을 마치려 하였는
데, 선묘께서 그 명성을 듣고 여러 차례 초빙하여 은총과 예우가 극진하
였다. 신묘사화(辛卯土禍)가 일어나자 평소 정철과 친했다는 이유로 연
좌되고, 최영경의 죽음을 구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편당의 지목을 받았
다. 임진왜란 때 선조께서 임진강에 이르러 성훈의 집을 물었을 때 이홍
로가 근처 강변의 민가를 가리켜 대답하였기 때문에 선묘의 노여움을
격발하기도 하였다. 선조 35년(1602)에 정인홍이 그 무리를 사주해 상소

하여 지난 일들을 들추어내며 모함함으로써 끝내는 관작이 추탈(追奪)되기까지 하였다. 앞서 영경이 옥에 갇혔을 때 성훈이 정철에게 편지를 보내 매우 강력하게 구제하니, 정철이 드디어 입대하여 영경의 구제를 극언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상의 노여움이 조금 풀렸었다. 뒤에 와서 도리어 영경을 모함한 것이라고 죄목을 만들었으나, 이는 군소배가 평소 성훈의 높은 명망을 시기하여 반드시 모함해 해치고자 한 것이다. 선조와의 만남에 유종의 미를 보지 못한 것 또한 이홍로의 참소 때문이었다. 이제 와서 드디어 복관을 명하고 이어 제사를 내리며 시호를 주었으므로 많은 선비들이 경하하였다.]

□ 성훈의 문묘종시를 청하는 상소가 이어지다

<인조 13년(1635) 5월 13일> 관학 유생 송시형(宋時鑒) 등이 상소하기를 “… 선왕 때 문묘 종시를 계청한 지 40여 년 동안에 선조께서 완강히 거부하면서 윤허하지 않고 준엄한 비답을 내리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사대부와 선비들은 한 목소리로 선현을 위하여 변명하였지, 언제 성상의 전교가 그렇다는 이유로 발의된 공론을 중지하였습니까. 오직 두 선현을 헐뜯는 정인홍의 무리만 들고일어나 팔을 걷어붙이고 구실거리로 삼았는데, 이것은 선비들이 다 같이 분노하는 바입니다. 성훈이 선조의 지우를 받고 있을 적에 높은 총애와 남다른 은수가 천고에 없던 바여서 심지어는 ‘나도 이이와 성훈의 무리에 들어가고 싶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필경에는 그 좋던 지우의 만남이 끝까지 온전히 유지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참소로 인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들은 후생이어서 두 유신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를 외고 그의 글을 읽으면서 그의 도학 연원이 문묘에 종사된 선현에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감히 가슴속의 진정을

진술하였던 것입니다.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마음을 비워 밝게 살피시고 사정(邪正)을 분별하시어 속히 신들의 소청을 윤허하시어, 도맥을 길이 보전하고 사설을 잠재우소서” 하였다.

그러나 상이 답하기를, “문묘 종사의 예는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너희들은 물러가 학업이나 뒤고 무익한 말을 하지 말라” 하였다. 시형 등이 다섯 차례나 소를 올리자, 다시 답하기를, “따르기 어렵다는 뜻은 이미 다 말하였으니 너희들은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인조 13년 6월(1635) 19일> 황해도 생원 윤홍민(尹弘敏) 등 48인, 파주 유생 유옹태(兪應台) 등 36인, 경기 유생 신희도(辛喜道) 등 33인이 모두 소를 올려 양현(兩賢)의 문묘 종사를 청하고, 또 성혼이 모함을 입은 실상을 개진하였는데,

상이 홍민 등에게 답하기를, “두 신이 아무리 어질다 해도 문묘 종사란 그 예가 매우 중대하다. 함부로 논할 수 없다” 하고, 응태 등에게는 답하기를, “신원과 증직이란 곧 포승(褒崇)의 은전이다. 문묘 종사의 예는 함부로 논할 수 없다” 하고, 희도 등에게는 답하기를, “나의 생각은 이미 관학 유생들에게 하유하였다” 하였다.

그 뒤에 평안도 유생 홍선(洪璣) 등 33인도 소를 올려 청하니, 답하기를, “몸을 수양하고 글을 읽는 일이 곧 너희들의 업이다. 알지도 못하는 일을 굳이 논하여 남의 비웃음을 사는 일은 하지 말라” 하였다. 이때 지방 유생들의 상소는 모두 관학 유생들이 선동하여 편 것이라고 하는 유언비어가 있었기 때문에 상의 비답이 이와 같았다.

사학 유생 윤숙거(尹叔舉) 등 140여인이 상소하기를, “채진후(蔡振後) 등이 이론을 내세우고 나가버린 일은 관학 유생이 아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상께서는 몰아내었다는 말씀으로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권적(權蹟)의 상소는 오로지 모함하기만 일삼고 있으니,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도로 돌려주라고 명하였다.

그뒤에도 개성 유생 고형(高淳) 등 50인, 풍덕 유생 최시달(崔時達) 등 15인, 전라도 유생 김시길(金時暉) 등 195인, 충청도 유생 민여기(閔汝耆) 등 50인이 잇달아 소를 올렸으나, 모두 따르지 않았다.

<현개 즉위년(1659) 12월 1일> 관학(館學) 유생 윤흥(尹抗) 등이 문성공(文成公) 이이와 문간공(文簡公) 성훈을 문묘에 종사(從祀)할 것을 청하니, 상이 답하기를, “선조 때 허락하지 않았던 일을 경솔하게 처리할 수 없다” 하였다. 소를 다섯 차례 올리고, 파주 및 황해도 유생들도 누차 소를 진달하여 청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현개 4년(1661) 6월 20일> 응교 이민적(李敏迪) 등이 상차하기를, “삼가 김강(金鋼) 등의 상소를 보건대, 선정신 이이와 성훈을 혈胤에 공공연하게 무함하고 더럽히며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후생이 선배에 대해 보통으로 어진 사대부라 할지라도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이 두 어진 신하의 도덕과 학문은 앞을 빛내고 뒤를 이어주는 근대의 참된 유학자입니다. 사람의 양심이 몰락되고 사악한 말이 마구 넘쳐흐르고 있으니, 방탕한 말과 폐덕한 말에 대해서는 변론할 것조차도 없습니다만, 교묘하게 모함하는 정상에 대해서만은 간략하게 진달하고자 합니다. … 성훈이 국란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설에 있어서는 적신(賊臣) 이홍로의 읊험한 참소의 말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성훈은 임진란이 일어난 초기에 당적(黨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의리상 부르지 않으면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애초 그의 뜻에는 어가가 서쪽으로 거동하면 길에 나와 맞이하고 곡하려고 하였는데, 충주에서 폐했다는 보고가 이르자 어가가 그날로 서쪽으로 떠났습니다. 성훈의 집이 관로(官路)에서 20리 밖에 있어서 뒤늦게야 어가가 이미 임진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로가 끊어졌으므로 파주에서 나와 의병의 군중에 종사하였고, 또 군중으로부터

분조로 불려 나아가고 분조로부터 행조(行朝)로 불려 나아갔습니다. 어가가 파천할 때에 길에 나아가 절하고 맞이할 수 없었던 것은 집이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있어 형세상 미칠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부르는 명이 내려지자 온갖 죽을 고비를 겪으며 행조로 달려 나아갔으니, 그의 나아가고 물러난 대의에 대해서는 본래 논의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어가가 임진나루를 건널 적에 선조께서 신하에게 물기를 ‘성훈의 집은 어느 곳에 있는가?’ 하자, 이홍로가 손가락으로 가까운 언덕에 있는 작은 마을을 가리키며 거기에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나와 보지 않는단 말인가?’ 하니, 홍로가 아뢰기를 ‘이런 때에 그가 어찌 나오려 하겠습니까’ 하였는데, 간흉이 때를 틈타 교묘하게 무함한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뒤에 정인홍·문경호 무리들이 모두 그 설을 조술하였습니다. 인조 1년(1623)에 곧 신원해 주라는 명을 내리셨는데 지금까지도 무함하는 자들이 여전히 홍로의 의논에 불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있으니,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습니까. …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분명히 분별하고 결단을 내리시어 속히 양사의 청을 따르소서.” 하였다. 그러나 상이 듣지 않았다.

□ 성훈의 사람됨을 물은 효종

<효종 8년(1657) 11월 12일> 상이 홍문관의 강관을 불려 『심경(心經)』 강론하였다. … 상이 이르기를, “성훈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송준길이 아뢰기를, “성훈은 이이의 친구입니다. 산림의 중망을 입고 선비들의 종사(宗師)가 되었으며, 박순(朴淳) 등과 한 무리의 사람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훈도 벼슬한 적이 있는가?” 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선묘(宣廟)께서 특명으로 병조참지에 제수하는 등 정성껏 대우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홍로의 참소를 받아 조정에 용납되지 못하였으니, 매

우 안타깝습니다. 선묘께서 서쪽으로 거동하실 적에 파주를 지나면서 홍로에게 묻기를 ‘성흔의 집은 어디인가?’ 하였는데, 홍로가 길가의 시골집을 가리키며 아뢰기를 ‘이 집이 바로 성흔의 집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선묘께서 이르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나와서 나를 보지 않는가?’ 하니, 홍로가 아뢰기를 ‘이런 때에 성흔이 어찌 나와 배알하려 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뒤에 성흔이 서쪽 길로 뒤쫓아 달려가 이어 동궁을 호가(扈駕)했습니다. 그러자 홍로가 또 유언비어를 펴뜨리기를 ‘성흔이 세자를 위해 내선(內禪)을 도모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소하고 해치는 말이 얹히고 설키었으니 참혹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신이 없을 때라서 비록 호기는 못했다 하더라도, 서울로 달려와 문안을 했더라면 옳았을 것이다” 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서울을 떠나는 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으니, 밖에 있는 사람은 형세상 미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은 단지 어진지 간사한지를 살펴보고 등용하거나 물리칠 따름이요, 당론(黨論)을 가지고 미리 아랫사람들을 의심해서는 안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찬선은 공정한 마음으로 말을 하니, 감히 유념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조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매번 당론으로 말을 하는데, 이미 그 잘못을 알았으면 어찌하여 이 당론을 버리지 않는가” 하자, 준길이 아뢰기를, “이황은 바로 당론이 있기 전의 사람이고, 이이는 비록 당론이 일어난 뒤의 사람이지만 반드시 당론에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 성흔을 문묘에 배향하고 파주로 예관을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다

<숙종 8년(1682) 5월 20일> 예조의 종사(從祀)하는 절목(節目)은 이러하였다. “여섯 현인의 위판(位版)은 봉상사(奉常寺)로 하여금 명륜당(明倫

堂)에서 만들게 하고, 본조(本曹)의 당상관과 성균관의 당상관이 입회하여 살핀 후 기일에 앞서 길일(吉日)을 택한다. 제위판(題位版)하고, 이어서 임시로 안치한 후에 장차 문묘에 합사(合祀)하는 뜻으로써 제사를 지내어 송나라의 네 현인에게 미리 고한다. 이이의 신주(神主)는 해주지방에 있고, 성흔의 신주는 괴주지방에 있으므로, 각기 그 집의 사당(祠堂)에서 문묘에 배향하는 사유로써 예관(禮官)을 보내어 교서(敎書)를 내려서 제사를 지내되, 제관(祭官)과 예모관(禮貌官) 각 1명[員], 향배충찬위(香陪忠贊衛)는 배향하는 공신(功臣)의 집에서 치제(致祭)할 때의 예(例)에 의거하여 말[馬]을 주어서 내려보낸다. 독교관(讀敎官)·전교관(展敎官)·재랑(齋郎)·축사(祝史)·거안집사(舉案執事) 각 1명은 본도의 수령으로 하여금 임명해서 정하게 하고, 제물(祭物)도 본도로 하여금 일체 사제(賜祭)할 때의 예에 의거하여 거행하도록 한다. 교서는 수향(受香)할 때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본가(本家)에 전해 주게 하고, 예(禮)를 거행할 때 그 집 자손은 대문 밖 길의 왼쪽에서 공손히 맞이하고 공손히 전송한다. … ”

무릇 축문(祝文)은 모두 예문관(藝文館)으로 하여금 짓게 하였다. 성균관에서 계청(啓請)하기를, “승배(陞配)하는 날 본관(本館)의 당상관이 관관(館官)을 거느리고서 나아가 참여하고, 예조의 여러 당상관도 함께 나아가서 행사(行事)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웃게 여겼다.

□ 성흔의 묘를 치제하다

<영조 127, 영조대왕 행장> 영조 16년 9월에 왕께서 제릉(齊陵)·후릉(厚陵)에 거동하시는 길에 괴주에 있는 문간공 성흔의 묘를 지날 때에 왕께서 교자(轎子)를 멈추고 식(式)하여 경의를 나타내고 관원을 보내어 성흔과 문성공 이이의 묘에 치제(致祭)하게 하셨다.



파주 파평면 늘노리에 위치한 파산서원 전경

□ 성훈의 아버지 성수침과 작은아버지 성수종이 파산서원에 배향된다

<영조 16년(1740) 9월 26일> 파주 유생 이익명(李翼明) 등이 상소하여 청하기를, “파산의 명유(名儒) 성수종을 그의 형인 성수침의 서원에 함께 배향하게 하여 주소서” 하니, 상이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

<정조 9년(1785) 2월 25일> 파주의 유학(幼學) 조중길(趙重吉) 등이 상소하여 증 직제학 성수종을 파산서원에 다시 배향할 것을 청하였다. 성수종은 성수침의 아우인데 기묘명현(己卯名賢)이었다. 영조 16년(1740)에 많은 선비들이 글을 올려 호소하여, 이 서원에 배향하도록 하였는데, 영조 17년(1741)에 사적으로 배향한 것을 모두 철폐하라는 조정의 명령으로 인하여 예조의 당상관이 잘못 알고 아울러 철폐하였다. 이때에 이 르러 조중길 등이 다시 배향할 것을 청하니, 예조에서 복주(覆奏)하여 이를 시행하였다.



율곡 이이(栗谷 李珥, 1536~1584)는 조선 중기 학자·정치가이다. 본관은 덕수(德水)로, 강원도 강릉 북평춘의 외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증좌찬성 이원수이며, 어머니는 사임당 신씨(師任堂 申氏)이다. 대사헌, 대재학, 호조·병조·이조판서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십만양병설’을 주장하였고 공부를 쌀로 납부할 것을 건의하는 한편 사창의 설치에 노력하였다.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동호문답』, 『성학집요』, 『격몽요결』 등을

지었으며 『기자실기』를 편찬하였다. 성호과 이기·사단칠정·인심도심 등을 논하였고 유학에 있어서 이황과 쌍벽을 이루는 학자로서 이황과 서경덕의 설을 결충하여 일원론적 이기이원론을 주장하였다. 기호학파를 형성하여 후세의 학계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세상을 떠난 후 파주 자운산 선산에 묻혔다. 묻묘에 제향되었으며 파주의 자운서원, 강릉의 송담서원 등 20여 개의 서원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 병으로 사직하고 파주로 귀향하다

<선수 7년(1574) 4월 1일> 이이가 병으로 사직하고 귀향하였다. 이이가 대사간을 사직하여 체직되었다가 다시 승지에 제수되었는데, 또 병으로 사직하고 파주로 돌아갔다. 떠날 때 사우(士友)들이 많이 만류하였는데, 최영경이 이이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지금 조정을 떠나 물러가니 벼

술한 기간이 짧다’ 하니, 이이가 말하기를, ‘반 년 동안이나 머물렀는데 어찌 충분하지 않은가’ 하였다. 영경이 말하기를, ‘스스로의 처신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겠지만 시사는 어찌할 것인가?’ 하니, 이이가 말하기를, ‘스스로의 처신이 미진하고서 능히 시사를 구하는 자는 없다’ 하였다. 노수신이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이가 경연 석상에서 상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많이 하므로 일을 내지 않을까 염려되어 내가 저지하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하였는데, 이이가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물러가면 말하는 자가 없어서 소재(蘇齋)가 걱정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소재는 노수신의 자호(自號)이다.]

□ 선조가 이이에게 성훈의 등용을 상의하다

<선조 8년(1575) 10월 25일> 사정전(思政殿)에서 소대하였다. 이이가 이미 파주에서 돌아와서 입시(入侍)하여 학문을 논하다가 아뢰기를, “옛 날에는 학문이란 이름이 없었습니다. 일상적인 인간의 도리는 사람들이 모두 당연히 해야 할 바이므로 따로 명목(名目)을 붙이지 않았고, 군자(君子)들이 자기가 당연히 해야 할 것만을 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세에는 도학이 밝지 못하여 인륜의 도리가 폐지되어 당연히 행해야 할 바를 학문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학문이란 이름이 생겨난 뒤엔 도리 어 세상 사람들의 지목(指目)을 받아 일부러 허물을 들추어내어 위학(偽學)이라고 지목하고, 선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숨기고 눈치를 보며 학문하는 사람이란 이름을 꾀하게 하였습니다. 군주는 모름지기 학문을 주장하여 세속으로 하여금 학문하는 사람은 비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이에게 이르기를, “산소에 가서 제사지낼 때 성훈을 만나보았는가? 그의 병은 어떠하며, 끝내 벼슬할 수 없던가?” 하였다. 승지 이현

국(李憲國)이 아뢰기를, “성흔은 벼슬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병이 있어서 벼슬할 수 없을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방관도 할 수 없느냐?” 하였다. 이이가 아뢰기를, “지방관의 수고로움이 경관(京官)보다 심하니 병자(病者)가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래도 학도(學徒)를 교수(敎授)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하였다. 이이가 아뢰기를, “그것도 병 때문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가하게 있으면서 교수하게 하면 좋겠다” 하였다. 이이가 아뢰기를, “진실로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병 때문에 할 수 없으니, 한스럽습니다” 하였다.

□ 파주에서 시폐 상소를 올리다

<선조 11년(1578) 5월 28일> 파주에 사는 이이가 시대의 폐단에 대해 올린 상소를 입계하였다. 이에 상이 답하기를 “상소를 살펴보니, 그의 충직스러움이 매우 가상하다” 하였다.

□ 병조판서에서 물러나 파주로 돌아가다

<선수 16년(1583) 6월 1일> 상이 삼공에게 하교하기를, “경들이 이이를 머물러두고 쓰도록 청하였으나 이이는 출사할 리가 전연 없고 병무(兵務)가 매우 급하니, 우선 체직시켜 그 마음을 편안케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 북방 지역의 변보가 한창 급하여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때 조정이 혼란스러워서 어질거나 간사한 자가 분변되지 않으니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겠는가. 이 문제는 내가 나중에 처리하겠지만 본부(本府)로 하여금 의계(議啓)하도록 하라” 하였다. 양사가 즉시 전교의 뜻으로 인협하여 사직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영의정 박순(朴淳)이 의논드리기를, “이이가 어찌 끝까지 출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선

체직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김귀영(金貴榮)은 의논드리기를, “병무가 바야흐로 급하니 이이가 진퇴 문제를 어렵게 여긴다면 체직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정지연(鄭芝衍)은 의논드리기를, “이이가 끝내 출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일이 많은 때를 당하여 체직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뒤의 일에 대해서 상께서 공평한 마음으로 대처하시면 조정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신이 이렇게 우려하는 것은 조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이의 영명(令命)도 보전해주고 싶어서입니다” 하였다.

답하기를, “병조판서를 속히 체직시키라. 이이가 이미 나라 일을 그르친 소인의 죄목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영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상의 의논은 어찌 그렇게도 우활한가. 그 마음에 의도하는 바를 나는 정말 헤아리지 못하겠다. 내가 혼암한 임금이라고는 하나 소인과 같이 일하고 싶지는 않다. 이이가 향리에 돌아가 훈 구름 속에 은거하면 그 누구라서 얹어매겠는가” 하였다. 이이는 이 하교를 본 즉시 물러나 파주로 돌아갔다.

□ 선조가 벼슬을 시양하는 이이를 안타까워하다

<선수 16년(1583) 9월 1일> 이이는 병조판서와 판돈녕부사에서 체직된 뒤 파주에 물러가 있다가 그 길로 해주로 돌아갔다. 이때에 와서 상소하여 스스로를 탄핵하고 이어 경연·문형 등의 겸직을 파직하고 전후 외람되게 받은 자급들을 모두 삭제해 줄 것을 간청하였는데 말뜻이 매우 간절하였다.

상이 답하였다. “경의 상소를 보니, 아, 하늘이 우리나라를 평치(平治) 하려 하지 않으신인가. 어찌하여 경과 같은 인물이 시대에 뜻을 얻지 못한단 말인가. 생각건대 이는 하늘이 경의 심성(心性)을 단련시켜 능하지 못한 점을 더 보충하게 함으로써 장차 후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책임

을 맡기려고 함일 것이니, …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은 한번 웃어 넘길 가치도 없는데, 경은 어찌하여 이를 마음에 껴림칙하게 생각하여 성급히 사직하겠다고 하는가. … 경은 속히 와서 나를 보고 품고 있는 생각을 모두 말하라. 많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이번 결음에 달려 있으니, 경은 다시 굳이 사양하지 말고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라.”

□ 사직한 이이를 다시 불러 올리고자 하는 선조

<선조 16년(1583) 9월 5일> 이이가 파주에서 사직 상소를 올렸는데, 답하였다. “아아, 하늘이 우리나라를 태평의 치세로 만들고 싶지 않으신 것일까? 어찌하여 경과 같은 사람이 때를 얻지 못한단 말인가? 아마 하늘이 경으로 하여금 마음을 다그치고 참을성을 길러 아직 부족한 점을 닦게 하여 장차 이 나라가 곤경에 처했을 때 구원해낼 책임을 맡기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남들이 떠드는 말은 한바탕 웃음거리도 안되는 것으로 마음에 들 것이 무엇이며, 그 때문에 사직하겠다는 말을 한대서야 되겠는가. 경은 속히 와서 나를 보고 회포(懷抱)도 겸하여 아뢰라. 뭇 사람의 뜻을 위안시키는 것은 이번 한 결음에 있으니 속히 역말을 타고 올라오라.”

□ 이이의 장례와 유가족들을 챙기는 선조

<선수 17년(1584) 3월 1일> 영상 박순이 경연에 입시하여 아뢰기를, “이이는 목숨이 다하도록 성의를 바쳐 나랏일을 처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죽고 말아 임금을 사랑하고 시대를 걱정하는 그의 뜻을 펼쳐 시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포상하는 은전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하니, 상이 다른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대신이 모두 박순의 계사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니, 답하

기를 “이이의 사람됨은 내가 환히 알고 있으니, 아래에서 다시 주달할 것이 없다. 벼슬이 찬성까지 이르렀다면 품계도 끝까지 갔다고 하겠는데 추증한다고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다만 그 처자가 파주로 갔다가 다시 해주로 간다고 하니, 본도로 하여금 가는 길을 호송하게 하고 장례하는 모든 일도 보살펴 주도록 하리” 하였다.

□ 제자들이 스승 이이의 무함을 고하는 상소문을 올리다

<선수 20년(1587) 3월 1일> 성균 진사 조광현(趙光竑)·이귀(李貴) 등이 상소하여, 스승 이이가 시배(時輩)들에게 무함(諷陷)당한 정상을 극력 논하였다. 이때 조정 논의가 성훈·이이와 조금이라도 가까이한 자는 차례로 배척당하였다. 그래서 성훈·이이를 위하여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관학유생이 오현(五賢)의 종사(從祀)를 청하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유생들을 불러모으고는 상소 끝머리에 ‘정도(正道)를 그르치고 진리를 어지럽히며 이름을 낚고 성예(聲譽)를 구하였다’는 등의 말을 몰래 첨가하여 성훈·이이를 공격하였는데, 전일 성훈·이이를 존중하던 무리들도 모두 알지 못하고서 거기에 서명하였다. 이귀의 이름도 거기에 들어 있었으므로 이귀가 성내어 동료를 거느리고 소장을 갖추어 이를 변명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이 화를 두려워하여 흩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유독 조광현과 소장을 지어 동서(東西) 논의의 수말(首末)을 두루 진달하는 한편 조현(趙憲)의 논의가 치우쳤음을 말하고 힘써 손순(遜順)하여 중도에 맞게 하려 하였는데 조광현은 그것은 감히 하지 못하였다. 이귀가 이에 이경진(李景震)을 시켜 별도로 상소하게 하고 그가 지은 소장도 올렸다. 그 소장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신이 지난 번에 상소를 올려 죽은 스승을 위하여 원통함을 송변(訟辯)하였으니, 스스로 천위(天威)를 범하여 죄가 용서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일이 국론(國論)에 관계되고 비방이 사문(師門)에 미친 것을 보게 되어서는 죽은 스승의 마음을 밝히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요즘 공주 제독(公州提督) 조현이 소장을 올려 일을 말하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윽고 그 소장을 얻어 읽어보고는 한숨을 쉬며 크게 탄식하여 ‘조현은 우리 당(黨)의 선비인데 그 말이 중도에 맞지 않고 사실에 어긋남이 이리함에 이르렀으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죽은 스승이신 이이는 평생 봉당(朋黨)을 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힘을 다해 사류(士類)를 보합하여 시세의 어려움을 구제하려고 하였는데 뜻을 품고서 성취하지 못하고 불행히 마음과 힘을 다해 애쓰다가 죽었습니다.

죽은 스승은 평일 학자들과 말을 할 적에는 의리의 문자에 관한 것이 많았고 조정의 시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후생들 사이에는 혹 죽은 스승의 의논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현의 말에 이르러서는 사문의 종지와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론(士論)의 거조에도 해로움이 있었으니, 문생이 된 자로서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죽은 스승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지·후생들 몇 명과 각기 듣고 본 바를 참고하여 죽은 스승이 평생 조정에 벼슬하면서 했던 언론과 심적(心跡) 가운데 현저하여 알 수 있는 것을 대강 기술하였습니다. 먼저 죽은 스승의 지극히 공정한 논의를 진달하고, 다음에 조현의 일방적인 말을 설파하여 기어코 세상에 드러내어 밝히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도 반드시 듣고 싶지 아니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소장이 이미 작성되자 다시 수정자(守靜者)의 말에 동요되어 의논이 귀일되지 않아서 그만두었습니다.

신들의 의견으로는 지금 수정(守靜)하자는 말에 동요되어 그만둔다면 의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는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신들은 ‘목숨이 불어 있는 한 죽은 스승의 심사(心事)를 기어이 드러내어 밝히고야 말겠

다. 그렇게 해야 죽은 스승의 평일의 논의를 신명시킬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원하건대, 전하게서 불쌍히 여겨 재결해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 이때 정철이 자못 떠도는 말에 의혹되어 처음에는 이이가 동인을 사적으로 두둔한다고 의심하였는데, 이이의 서찰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의심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심의겸의 제배들은 이이를 의심하여 마지않았습니다. 만일 그뒤에 다시 이이의 심사를 깨닫지 못하였다면 서인이 이이를 치는 것이 반드시 오늘날 동인의 소위에 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 이이의 자운서원에 합향했던 김장생과 박세채의 배향에 대한 논의

<숙종 39년(1713) 5월 28일> 파주 유생 조익주(曹翊周) 등이 상소하여 김장생(金長生)을 파주에 있는 이이의 자운서원에 배향하고, 박세채(朴世采)의 합향(合享)을 폐지하여 배향으로 강등시킬 것을 청하였다. 이는 박세채가 일찍이 이미 자운서원에 합향되었는데, 김장생이 이제 또 배향하게 되면 박세채의 합향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예조판서 김우항(金宇杭)과 참판(參判) 민진원(閔鎮遠)이 아뢰니, 시행하라고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파주 유생 문후창(文後昌)이 상소하기를, “당초에 박세채를 이이에게 배향을 시켰다면 불가할 것이 없지만 병향한 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하루아침에 지위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출향(黜享)이나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하고, 이어서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가 아울러 향사된 예(例)를 낱낱이 들어서 밀하기를, “조익주 등의 의도가 과연 김장생을 높여서 향사하려는 데 있다면, 어째서 스승과 제자를 병향에는 예를 버리고 이에 도리어 배열(配列)에 급급하여 박세채의 오래된 신위를 변동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본주(本州)의 남계(南溪)는 바로 박세채가 은거하며 거닐던 곳이니, 이 곳에다 따로 사원(祠院)을 세워서 이리로 옮겨 봉안(奉安)을 하는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 하였다.

상소를 예조에 내리니, 김우항과 민진원이 연명(聯名)하여 사직소를 올려 말하기를, “자운서원은 이이를 위하여 설립한 것인데, 문인인 김장생 같은 이가 향사에 참여되지 못했다는 것은 흠이 되었습니다. 이미 추향(追享)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어깨를 나란히 하여 병열하는 것은 미안(未安)한 바가 있고, 박세채가 비록 이미 합향이 되었지만 이제 김장생을 위하여 배위(配位)를 옮기는 것이 위차(位次)로 보아도 적당하고, 정례(情禮)로 보아도 유감이 없습니다. 이제 문후창 등이 그 폄강(貶降)을 의심하여 이렇게 비난하였습니다. 처음에 이미 복주(覆奏)를 잘하지 못하여 반박하는 의논이 있게 만들었는데, 이제 어찌 그 당초의 의견을 변경시킬 수가 있으며, 또한 어찌 감히 그대로 답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당초에 복주한 것은 진실로 의견(意見)이 있었으니, 다사(多士)의 상소를 어찌 반드시 불만족하게 여길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뒤에 해당부서에서 문후창의 상소에 대해 복주하기를, “따로 의견을 낸 것은 진실로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종전의 처리한 바에 따라 강배(降配)토록 하고, 사우[祠]가 건립되기를 기다려 위판(位版)을 옮겨 봉안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옛 신하를 그리워하는 임금

<영조 16년(1740) 8월 30일> 상이 파주에서 출발하여 도중에 선정선 성혼의 묘를 보고 가마 안에서 허리를 굽혀 예(禮)를 표하고 직접 제문(祭文) 두 구(句)를 지었으니, 말하기를, “지금 나의 고심(苦心)은 곧 선정의 마음이다. 길가 교자 안에서 허리 굽히니 감개한 마음 한없이 깊도다” 하였다. 이를 치제(致祭)의 제문(祭文)에 넣으라고 명하였다. 박석현(朴石峴)에 이르러서는 부로(父老)들을 모아 농사의 형편을 하문하고 나서 탄식하기를, “벼이삭이 된서리에 손상되어 빈 껍질만 남았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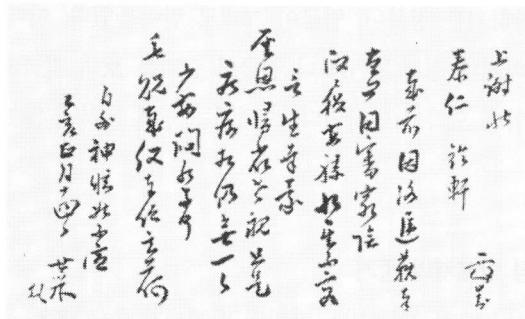
그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고, 한참 동안 가엾게 여겼다.

임진에 이르러 교리 김한철(金漢喆)이 아뢰기를, “이곳은 서로(西路)의 요충지입니다. 앞으로는 삼면(三面)에 천연의 요새가 있고 또 긴 강이 가로막고 있어 버리기 아까운 곳입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이는 스스로 덕정(德政)을 닦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지세가 협준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듣지 못했는가?” 하였다.

부교(浮橋)를 건너 북쪽 언덕에 이르러서는 선정신 이이의 화석정(花石亭)의 옛터를 하문하니, 승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아뢰기를, “저 남쪽 언덕 위에 소나무와 전나무가 있는 가운데 날아갈 듯이 드러나 있는 것이 그 정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까는 우계(牛溪)의 묘를 보았고 지금은 선정이 거처하던 곳을 바라보니, 덕용(德容)을 접한 것 같아 창연(愴然)한 마음이 배나 간절하다” 하고, 또 직접 제문 두 구(句)를 지어 치제하는 제문에 첨입하도록 명하였다.

·박세채

박세채(朴世采, 1631~1695). 조선 중기의 학자·문신. 본관은 반남(潘南), 호는 현석(玄石)·남계(南溪). 1649년에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갔으나 2년 만에 과거공부를 포기하였다. 1651년 김상현(金尙憲)과 김집(金集)에게서 배웠다. 1659년에 천거로 익위사세마(翊衛司洗馬)가 되었는데, 5월에 효종이 죽어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기년설(朞年說)을 지지하여 서인측의 이론가적 인물이 되었다. 1674년 숙종이 즉위하고 남인이 집권하자 박세채는 관직을 삭탈당하고 양근·지평·원주·금곡 등지로 유배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680년 경신환국으로 그는 다시 등용되어 사헌부 집의로부터 대사헌·이조판서·우참찬 등을 거치며 송시열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였다. 그러나 노·소 분열 이후에는 윤증(尹拯)을 두둔하



박세채의 글씨. 『근묵』에서

고 나아가 소론계 학자들과 학적인 교류활동을 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 때에는 다시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서 아인생활을 하였는데 이때가 그의 생애에 있어서 큰 업적을 남기는 학구적 시기로 많은 저술을 남겼다. 1694년 갑술옥사 이후에는 정계의 영수격인 송시열이 죽고 서인 내부가 노론과 소론으로 양분된 상태였으므로, 박세채는 우의정·좌의정을 두루 거치며 이른바 소론의 영도자가 되었다. 그는 남구만(南九萬)·윤지완(尹趾完) 등과 더불어 이·성혼에 대한 문묘종사 문제를 확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대동법의 실시를 적극 주장한 바 있다.

□ 좌의정 박세채가 파주에 가서 나오지 않다

<숙종 20년(1694) 11월 25일> 좌의정 박세채가 파주로 갔다. 이어 그의 아들 박태은(朴泰殷)을 시켜 비밀상소문을 올리기를, “아픈 몸을 겨우 참아 왔기에 오래 지탱할 수 없었거니와, 북쪽 사신(使臣)이 장차 오게 되어 있으므로, 만일 ‘아무가 정승이리는데 어찌하여 마중 나오지 않느냐?’고 한다면, 큰 일이므로 앞당겨 도성을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하고, 이어 차자를 올려 해직해 주기를 바랐다.

승지 윤이도(尹以道)·이동우(李東郁)·서종태(徐宗泰)·이징명(李徵明)이 청대(請對)하니, 상이 인견하였다. 윤이도 등이 성의와 예의를 다하여 박

세채를 소환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때 영의정 남구만도 세 차례나 정고(呈告)하니 임금이 승지를 보내 격려하도록 하고, 이어 그와 함께 오라고 명하였다. 박세채는 명에 응하지 않고, 남구만은 출사했다.

□ 좌의정 박세채의 졸기

<숙종 21년(1695) 2월 5일> 좌의정 박세채가 졸(卒)하니 나이 65세였다. 박세채의 자는 화숙(和叔)으로 금계군(錦溪君) 박동량(朴東亮)의 손자이다. 자품이 순수하고 덕성이 온순하여, 20세에 진사에 합격하였다. 효종조에 태학(太學)의 여러 유생을 인솔하고 상소하여 이이와 성훈을 문묘에 배향할 것을 청하니, 상이 받아들이지 않고 미안(未安)하다는 비답이 있었다. 드디어 과거공부를 중지하고 오로지 성리서(性理書)에 뜻을 기울여 이학(理學)에 침잠(沈潛)하고, 예서(禮書)를 정밀히 연구하여 상례(常禮)·변례(變禮)의 의심나고 불분명한 것에 대해 많은 고증(考證)이 있었으므로, 많은 학도들이 모여들어 일세(一世)의 유종(儒宗)으로 추존하였다. 저서가 매우 많아 수십 종에 달하니, 사람들이 그 해박한 학식에 탄복하였다. 현종께서 누차 세자시강원 대사헌으로 불렀으나 역시 명에 응하지 않았다. 임금이 많이 부르니, 결국 조정에 들어오게 되었다. 전후에 걸쳐 부름을 받고 나온 것이 세 차례인데, 계해년(1683)에는 입조하여 요악한 무녀(巫女)에 대해 논하였고, 무진년(1688)에는 역종(逆宗)을 논하였으며, 갑술년(1694)에는 명의(名義)를 제창하고 윤기(倫紀)를 부식하였다. 또 송준길(宋浚吉) 등 여러 현인들과 뜻이 같고 도가 부합하여, 반드시 춘추(春秋)의 존왕양이(尊王攘夷)의 의리를 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조정에서 벼슬을 제수하는 고신(告身)에 특별히 청나라의 연호를 쓰지 않음으로써 그 의지를 펴도록 하였다. 처음에 현석(玄石)에 거주하니 학

자들이 현석선생이라 일컬었으며, 나중에 파주의 남계(南溪)에 거주하니 이내 남계선생이라 일컬었다. 작년 겨울에 조정에서 물러나 시골로 돌아가자, 여러 번 소명(召命)을 내렸지만 끝내 조정으로 돌아오지 않고 출하니 사람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박세채는 계해년 이후로 의견이 송시열과 자못 맞지 않았다. 그런데 송시열을 위해 가마(加癡: 소렵 때 상제가 처음으로 수질을 쓰는 것)하자 윤중에게 큰 원한과 분노를 샀으나, 사론(土論)은 그의 마음가짐의 공평함을 훌륭하게 여겼다.

부고(訃告)가 전해지자, 임금이 전교하기를, “좌의정 박세채는 일세(一世)의 중망(重望)을 짊어지고 사립의 영수가 되었다. 평생의 언행은 반드시 예법을 따랐고, 재상의 지위에 오르자 정색(正色)을 하고 조정에 섰다. 연석(筵席)이나 장주(章奏)에다 간절히 아뢴 것은 모두가 속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내가 의지하기를 주석(柱石)과 같이 할 뿐만이 아니었는데, 지난 겨울에 마침 사고(事故)로 인하여 처지를 남겨놓고 서울을 떠났다. 바야흐로 승지(承旨)를 보내어 나의 지극한 뜻을 타이르고, 마음을 바꾸어 조정에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한 번 걸린 병환이 더욱 위중해져 흉한 소식이 문득 들려오니, 슬픔을 억제하기 어렵다” 하였다. 해당부서에 명하여 제수(祭需)를 넉넉히 주도록 하고, 녹봉도 3년 동안 그대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히 도승지를 보내어 조문하였다. 시호는 문순(文純)이다.

□ 박세채를 자운서원에 합향하다

<숙종 21년(1695) 5월 20일> 파주 유학(幼學) 정수하(鄭綏夏) 등이 상소하여 박세채를 이의의 자운서원에 합향할 것을 청했다. 해당 조에서 복계(覆啓)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2. 효자, 효부, 열녀

□ 예조에서 교하현의 효자에 대한 포상을 주청하다

<세종 13년(1431) 10월 28일> 예조에서 아뢰기를, “경기도 … 교하현에 사는 황염(黃欖)은 부모가 죽자 6년을 연달아 무덤을 지키면서 채식(菜食)하고 죽을 먹으며, 거적자리에 자고 흙덩이를 베고 올기를 그치지 않았다. … 위의 항목(項目)의 효자(孝子)·절부(節婦) 가운데서 포상(褒賞)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예에 의거하여 복호(復戶)하고, 효자로 재주가 벼슬할 만한 사람은 재주를 헤아려 서용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윤페상이 부모의 분묘 배알과 조부모를 근친하는 것을 돋게 하다

<세조 10년(1464) 12월 12일> 동부승지(同副承旨) 윤페상(尹弼商)이 강음(江陰)에 가서 부모의 분묘(墳墓)를 배알(拜謁)하고 파주에 가서 조부모를 근친(觀親)하고자 청하니, 임금이 명하여 옷 1령(領)을 내려주고, 승정원에 명하여 황해도와 경기의 관찰사에게 치서(馳書)하여 부모의 분묘에 치제하고 조부모에게 잔치를 내려주게 하였다. 윤페상이 오랫 동안 형옥(刑獄)을 맡았는데, 모든 아뢰고 대답하는 바가 모두 임금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이 더욱 무거웠다.

□ 효행이 큰 윤희경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명종 15년(1555) 5월 24일> 정원에 전교하였다. “신하의 선행(善行)은 충효보다 큰 것이 없다. 참으로 충효하고 우애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중한 상을 내려야 할 것이니, 비록 사람은 죽었을지라도 잊어서는 아니된다. … 윤희경(尹希慶)[충의위(忠義衛)]이다. 평소 효행이 있는 사람이다. 조모가 죽자 심상(心喪) 3년을 지냈고, 그 어미가 죽어서는 파주

에서 묘를 지키면서 3년 간을 한 번도 여막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며, 새 벽과 저녁으로 산소에 올라가 분향하고 슬퍼 울었고 조석으로 몸소 전 을 올렸으며, 머리띠과 허리끈을 풀지 않고 종일 무릎 끓고 앉아서 『소학』과 『가례』만을 읽었고, 제사는 반드시 예문을 따랐다. 복을 마치자, 그가 나이 9세 때 아비를 여의고 상복을 입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겨 3년 간의 추복(追服)을 모친상 때와 똑같이 하였다. 그리하여 40여 세에 머리가 모두 백발이 되었다. 복을 마치고 재산을 분배할 적에는 그의 여동생에게 ‘나는 선대의 음덕(陰德)으로 빙궁하더라도 천역은 면할 수 있으나 너는 가난한 선비의 아내가 되었으니, 땔나무를 지고 물을 길어오는 천역을 면하기 어렵다’ 하고, 노비와 전답을 두 배로 주니 온 고을이 모두 탄복하였다]에게 관직을 제수(除授)하라고 이조에 이르라. 그리고 효우(孝友)의 명성을 얻은 자는 처음에 상직(賞職)을 주었더라도 뒤에 현직(顯職)에 등용하지 않으면 계을러져서 국가에서 가상(嘉賞)하는 의미가 없어질 것이니, 이와 같은 사람은 종신토록 발탁하여 등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공도(公道)는 사라지고 사정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이번에 충효 있는 자를 이처럼 발탁하여 등용하라고 명하였는데도 전조를 맡은 자들이 등한히 하여 거행하지 않았으니, 어찌 주의(注擬)하는 즈음에 먼저 뇌물의 많고 적음을 보아서 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매우 애석한 일이다.]

□ 파주의 열부 문씨를 정려하다

<영조 39년(1763) 2월 29일> 파주의 열부(烈婦) 문씨(文氏)를 정려(旌閭)하였다. 열부 문씨는 천인(賤人)인데, 어떤 자에게 강제로 겁박을 당하여, 온 몸이 난자(亂刺)되어 배가 찢어져서 창자가 튀어나온 지경에 이르

렸으나 끝내 굴하지 않고 죽었다. 대신(大臣)들의 상소로 인해 본도(本道)로 하여금 조사해 보고하게 하고는 특별히 정문을 세워주는 은전을 베풀었던 것이다.

□ 효자들과 열녀에게 정문을 하사하고 호역을 면제해 주다

<정조 10년(1784) 11월 11일> 효자와 열녀에게 정문을 하사하였는데, … 파주 열녀인 사인(土人) 홍우주(洪宇周)의 처 이씨 등의 호역(戶役)을 면제해주었다.

□ 임진왜란 때 전사한 전 파주군수를 표절사에 제향하다

<순조 6년(1806) 7월 13일> 예조에서 각도의 유생이 상언한 것으로 인하여 조사한 뒤에 … 아뢰기를, “파주의 고(故) 군수 이몽태(李夢台)를 표절사(表節祠)에 배향시키소서. 임진년 난리 때 이몽태가 안성군수(安城郡守)로 감사(監司) 심대와 함께 삭녕 지방에서 전사하였기 때문입니다. … ”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파주 김한규의 처 조씨 등이 열녀정려질에 오르다

<순조 12년(1812) 3월 13일> 예조에서 ‘각 식년(式年)의 경외(京外)의 충·효·열의 문서’를 정부에 보고했는데, 등급을 나누어 초계(抄啓)하였다. … 열녀정려질(烈女旌閨秩)에 파주 고 사인 김한규(金漢奎)의 처 조씨(趙氏)를 비롯해 89명이 올랐다.

3. 파주에 머문 사람

□ 교하현 사람 전 도총제 노필의 졸기

<세종 9년(1427) 6월 25일> 전 도총제 노필(盧弼)이 졸하였다. 노필은 교하현 사람으로서, 고려 공민왕 21년(1372)에 별장(別將)에 임용되고, 여러 번 승진하여 삼사우윤(三司右尹)을 거쳐 판전농사재시사(判典農司宰寺事)를 역임하고, 상호군으로 가선대부 공조전서에 제수되었고, 우리 태조 7년(1398)에 판전중시사(判殿中寺事)와 공조·예조의 전서(典書)가 되었다가, 해주목사와 우군총제로 나가서 우군도총제로 승진하였는데, 세종 4년(1422)에 병이 들어 벼슬을 사절하고 요양하기 6년 만에 이날 세상을 떠나니, 나이 73세이었다. 부음(訃音)이 들리니, 사흘 동안 조회를 열지 않고 제사와 부의를 내리었다. 시호를 양간(良簡)이라 하였으니, 온랑하여 약을 좋아함이 양(良)이요, 평이하여 잔말 없음을 간(簡)이라 한다. 아들은 넷이니, 신의(信義)·신례(信禮)·신제(信悌)·신충(信忠)이었다.

□ 파주에 있는 강희백 어미의 무덤의 길흉을 알아보게 하다

<세조 8년(1462) 1월 4일> 임금이 고양 뒤의 고개에 거동하여 장지를 상지(相地) 땅의 생김새를 보고 길흉을 판단하는 일)하고 … 이르기를 “이 산에는 쓸 수가 없다” 하고, 정인지·정창손·권남·황수신과 계양군(桂陽君) 이중(李增),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이순지(李純之), 이조참의 임원준(任元濬), 좌부승지(左副承旨) 이문형(李文炯) 등에게 명하여 파주에 가서 강희백(姜淮伯)의 어미 무덤을 상지하게 하고 어가를 돌이켰다.

□ 역적에 연좌된 이계량의 가솔들을 교하에 안치하다

<성종 12년(1481) 1월 16일>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역적에 연좌된

… 난신 이계량(李季良)의 삼촌 조카 석을동(石乙同)은 교하에 … 안치시 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김안로를 파주보다 멀리 귀양보내길 청하다

<중종 19년(1524) 11월 17일> 대간(臺諫)이 아뢰기를, “김안로는 죄가 무거운데, 파주에 부처(付處)한다 하니, 이것은 공론을 채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 모름지기 멀리 귀양보내어 공론에 따르소서” 하고 두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파주 지나는 길에 있는 윤은로의 묘에 치제하도록 전교하다

<중종 29년(1534) 8월 1일> 정원에 전교하기를 “증판서 윤은로의 묘가 파주의 지나는 지역에 있는데, 은로는 정현왕후(貞顯王后)의 친족이니 감사에게 명하여 그 지방 수령으로 하여금 치제(致祭)케 해야 할 것이다.

□ 동궁의 나인 사랑금을 파주에 유배하다

<중종 39년(1544) 7월 6일> … 전교하기를, “정유년에 사랑금(思郎今)을 파주에 배소(配所)를 정하게 하라” 하였다.

□ 은대의 배소를 파주보다 더 먼 곳으로 옮기게 하다

<중종 39년(1544) 7월 10일> 사간원이 아뢰기를, “은대(銀代)의 죄는 중하여 목숨을 보전하기가 어려웠는데 위에서 대신이 아뢴 바에 따라 끝내 외방에 귀양보내는 데에 그치고 배소를 장단으로 정하였습니다. 장단은 경기도 안의 가까운 고을이므로 외방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 문외 출송(門外黜送)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극악한 사람을 지극히 가까운 도하(都下)에 둘 수 없으니, 멀리 귀양보내도록 명하소서. 은

대의 죄악은 귀양에 그치는 것도 매우 다행인데, 의금부가 위에서 계속 감싸시는 뜻을 알아차려 그 배소를 경기도 내의 하룻길에 정하였습니다. 바라는 대로 하라는 분부가 있었더라도 이미 외방으로 귀양보내라고 명 하였으니, 외방으로 귀양보내는 것은 경기도를 뜻하는 것이 아닌데, 공론을 업신여기었으니 파면하소서” 하였다.

이에 답하기를 “은대의 죄는 문외출송하는 것이 온편하지 못한 듯하므로 외방에 유배하였다. 전에 동궁(東宮)의 내인 사랑금(思郎今)을 유배 할 때 외방으로 보내라고 전지를 내리기는 하였으나 그 배소는 파주에 그쳤다. 더구나 장단은 이틀길이니 이름은 기전이나 또한 외방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제 어지러이 고칠 것 없다” 하였다.

□ 파주에 유배된 윤강원을 풀어주다

<선조 0년(1567) 10월 15일> 전교하기를 “을사년 이후에 죄를 받은 사람들은 허물이 없는데도 걸린 자들이 매우 많다. 모두들 그 당시의 공신인 이기(李芑)와 윤원형(尹元衡)의 무리들이 선왕(先王)께서 어리신 것을 틈타 아주 작은 원망이나 터럭만한 혐의만 있어도 반드시 그 기회에 터뜨린 데 연유했던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은전을 베푼다. … 파주에 이배(移配)된 급제 윤강원(尹剛元)은 방송하여 직첩을 되돌려 주고 서용하라” 하였다.

□ 파주에 머물면서 근신했던 전 청양군 심의겸의 졸기

<선수 20년(1587) 9월 1일> 전 청양군(青陽君) 심의겸(沈義謙)이 졸하였다. 심의겸은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었으나 천성이 엄하고 근신하여 밖으로는 조사(朝士) 가운데 선류(善類)를 부호하고 안으로는 궁금(宮禁)의 사적인 길을 막았으니 일시의 사부(士夫)가 이로써 중하게 여겼다. 그

러나 공척(攻斥)하는 자는 또한 이것을 구실로 삼아 그가 전천(專擅)함을 논하여 양기(梁冀)와 두현(竇憲)에 비하였으나 팀오(貪汚)한 명칭을 가하지는 않았다. 명경(名卿)과 현사(賢士)로서 일찍이 그와 서로 사이좋게 지낸 자는 모두 연루당하여 간당(奸黨)으로 지목되었지만, 모두 차마 버리지 못하고 전처럼 사귀고 가까이 지냈다. 심의겸이 파주 촌사(村舍)에 몰려나 있으면서 시론(時論)이 더욱 준엄함을 듣고 매양 집안 사람에게 말하기를, “밥상에 조복(條鯛) 요리를 올리고 입으로 사론(士論)을 말하였으니, 남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대개 조복은 금중(禁中)의 특이한 반찬으로 외척에게 나누어 보내는 것이다. 심의겸이 시종 사론과 주선하였으므로 처음 청명(清明)할 때를 드러낼 만한 과악(過惡)이 없었으나, 권세의 혐의를 피하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임금의 은총을 받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화(禍)의 우두머리가 됨을 면치 못하였으니, 그가 받아들여 죄로 삼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 파주에 묻힌 황보인의 관작을 추복시키다

<영조 22년(1746) 12월 27일> 유신을 불러들여 『제법(帝範)』을 강하고 나서 단묘조(端廟朝)의 상신 김종서(金宗瑞)·황보인(黃甫仁)·정분(鄭苯)의 관작을 추복(追復)하라고 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황보씨와 김씨의 후손이 상언하여 신원을 청구하니 사안을 대신들에게 내려보내어 의논하게 하였는데, 대신들이 윤허하는 것이 좋다고 헌의하였으나 임금이 정난(靖難)의 공훈에 광묘(光祖)가 간여되었다는 이유로 난처해하였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아뢰기를, “옛날 태종께서는 정몽주(鄭夢周)를 죽이고 나서 곧바로 시호를 내려 포장하는 은전을 베푸셨는데, 두 상신의 일은 정몽주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김종서·황보인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정난의 거사를 이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광묘께서 어쩔 수 없이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종을 훈계함에 이르러서는, ‘나는 고난을 주었지만, 너는 태평을 주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예종께서 대리(代理)청정하게 죄자 당시 연좌되었던 모든 사람을 다 석방하셨으니, 그렇다면 당시에도 대개 이 두 상신을 역적으로는 보지 않았던 것이고, 선조(先祖)에서도 또한 신원하자는 의논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장애가 있어 신원의 일은 중지되었지만 그 자손들을 녹용하라는 명이 내려졌으니, 성의(聖意)를 가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상께서 훈적(勳籍 : 훈신의 업적을 기록한 문서)을 가지고 의문을 품으십니다만, 광묘께서 정극(正極)하신 이후 공훈을 어찌 논할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성삼문(成三問) 등의 추복에 있어서도 또한 당시의 훈적에 대하여 혐의를 두지 않았는데, 유독 이 두 상신에게만 무슨 혐의를 둘 것이 있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황보인의 묘가 파주에 있는데, 비석의 앞면에 ‘영천 황보공지묘(永川皇甫公之墓)’라고만 쓰여 있고 관작과 이름은 쓰여 있지 않다고 하니 더더욱 슬픈 일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결단코 시행하여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고 … 다른 여러 대신들도 다 같이옳다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성삼문 등 여러 사람들의 일은 광묘의 정위(正位) 이후에 있었으니 이는 바로 군상을 침범한 일이거니와, 두 사람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볼 때 두 사람의 일은 매우 가벼운 데 속한다 하겠다. 그러나 다시 상량하여 보겠다” 하고는 … 중전교를 써서 황보인·김종서 등의 관작을 추복시켰다.

그러자 병조판서 원경하(元景夏)가 또 아뢰기를, “정분은 후사가 없어서 청원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은명(恩命)이 그에게만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같이 죽은 세 사람은 일체로 신원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이에 정분의 관작도 함께 추복시키게 하였다.

ও

ৰ

제7장 파주의 유적

1. 행궁(行宮)

- <세조 6년(1460) 11월 2일> 임금이 파주목 행궁에서 유숙
- <현종 8년(1842) 3월 10일> 임금이 파주목 행궁에서 유숙
- <현종 13년(1847) 2월 21일> 임금이 파주목 행궁에서 유숙
- <현종 13년(1847) 2월 22일> 임금이 장릉에 들러 전배, 파주목 행궁에서 유숙
- <철종 1년(1850) 3월 10일> 임금이 파주목 행궁에서 유숙
- <철종 5년(1854) 3월 10일> 임금이 파주목 행궁에서 유숙
- <철종 6년(1855) 8월 4일> 임금이 파주목 행궁에서 유숙
- <고종 9년(1872) 3월 1일> 임금이 제릉과 후릉 행차한 후 파주목 행궁에서 유숙
- <고종 9년(1872) 3월 7일> 임금이 파주목 행궁에서 유숙

□ 태조가 교하에 행차하다

<태종 15년(1415) 9월 24일> 의정부찬성 유정현(柳廷顯)과 육판서 박은(朴恩) 등이 상왕(上王) 태조의 행행(行幸)을 정지하도록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대가는 강원도에 순행(巡幸)하는데 상왕은 교하에 나아갑니다. 교하 등지에 흥년이 더욱 심하여 비록

소채의 공급도 판비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신 등은 청컨대, 상왕전에 나가서 면전에서 진달하겠습니다.”

임금이 “그러지 말라. 상왕이 연로하니 출행(出幸)하는 것이 몇 번이나 되겠는가?” 하고, 인하여 병조에 명하여 말을 갖추어 제공하게 하였다.

□ 대가가 파주에 머물다

<세조 6년(1460) 10월 5일> 대가가 파주에 머물렀다. 파주목사 남윤(南倫), 사금(司禁) 최청강(崔清江)·이염의(李念義)·윤오(尹塢)·이번(李蕃)·홍순(洪純)이 늙어서 능히 검찰(檢察)하지 못하였으므로 아울러 이를 국문하게 하였다.

□ 행사 진행을 잘못해 곤장을 맞은 목사

<숙종 19년(1693) 8월 28일> 임금이 장차 풍덕의 후릉(厚陵)을 전일하고 새벽에 어가가 출발하여 저녁에 파주의 행궁에 유숙하였다. 여러 승지(承旨)가 청대하고 입시(入侍)하여 아뢰기를, “승정원, 홍문관, 약방(藥房), 여러 각 사를 모두 호위하는 포장(布帳)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으니, 파주목사가 일의 체모를 모르는 것이 심합니다. 추고(推考)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에 상이 목사 여의제(呂翼齊)에게 곤장을 집행하도록 명하였다.

□ 왕의 행차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교하현감 등을 벌하다

<성종 10년(1479) 10월 6일> 상이 거동하였는데 구름과 안개가 사방에 가득하였으므로 지척을 분별하지 못하여 호종하는 군사들이 길을 잊고 대오를 이탈하는 자가 많이 있었다. 상이 노여워하여 거화좌사원(炬火左使員)인 용인현령(龍仁縣令) 안요경(安堯卿), 교하현감 송선충(宋宣忠), 연천현감(漣川縣監) 원양보(元良輔)에게 장(杖) 100대를 쳐서 외방에

부처하도록 명하였다. …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유현(瞞峴)을 넘어 사장(射場)에 이르니, 이조판서 박중선(朴仲善)을 불러서 정승들과 의논하게 하여 이계남(李季男)을 풍덕군수(豐德郡守)로, 윤수천(尹壽天)은 용인현령으로, 황사충(黃事忠)은 진위현령(振威縣令)으로, 조호지(曹好智)를 교하현감으로, 홍계(洪悌)를 연천현감으로 삼았다.

□ 파주 등지의 노인과 효자에게 음식을 내리다

<중종 30년(1535) 9월 19일> 오전 7시 경에 어가가 출발하여 … 오전 11시에 대가가 친경천(親耕川)에 도착하여 점심식사를 하고, 2시 정각에 통제원 숙소에 도착하여 양주·파주·장단·고양의 노인과 효자들에게 음식을 먹였다.

□ 왕에게 올릴 수리를 하인들이 먹어버리다

<선수 25년(1592) 4월 1일> 평명(平明)에 거가가 모래재[沙峴]를 넘었다. 이날 많은 비가 내렸는데 경기감사 권징이 뒤따라 와서 입고 있던 우의(雨衣)를 바쳤다. 일행이 비를 맞으며 벽제역에 이르러 조금 쉬고 곧 출발하였는데, 따라가던 뜻 관원 중 다수가 도로 도성으로 들어가 가족을 데리고 피난하였으며, 대각(臺閣)의 문관으로 수행한 자는 아주 적었다. 따라가던 궁인(宮人)의 말이 진흙에 빠져 가끔 뒤떨어지기도 하여 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벽제역에 이르러 윤두수(尹斗壽)를 불러 차고 있던 칼을 풀어 그에게 주면서 이르기를, “경(卿)의 형제는 나를 떠나지 말라” 하였다. 행차가 임진강에 이르러 상이 홀로 이산해·이항복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넜다. 날은 어두워지고 비는 쏟아져 앞뒤로 길을 분간 할 수 없었는데, 임진강 남쪽 언덕의 승정(丞亭)에 재목(材木)을 쌓아 두었으므로 그것을 태우도록 명하였다. 그리하여 불빛이 원근(遠近)을 환

하게 비춰 마침내 길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밤이 깊어서야 동파역(東坡驛)에 도착하였다. 파주목사와 장단부사가 어주(御廚 : 수라간)를 미리 설치하여 수리를 준비하여 올리려고 할 때에 호위하던 하인들이 난입하여 음식을 빼앗아 먹었으므로 상이 들 것이 없게 되자 장단부사가 두려워하여 도망하였다. 국조(國朝)가 태평을 누린 이래로 내병(內兵)을 없애기 를 힘써 숙위(宿衛)하는 장수와 군졸에 있어서까지 기율로 단속하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위태로운 시기에 임하여 흘어지는 것이 적을 본 군사들 보다 심했다. 이 어찌 은덕과 형벌이 모두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 파주 행궁에서 유숙하고 제사를 행하다

<영조 7년(1731) 9월 27일> 어가가 파주로 향하였다. 저녁에 사묘(私墓)의 행궁에 나아가 그대로 유숙하고, 의식대로 제사를 행하였다. 신원(新院)에 이르러 각기 일을 맡은 차원(差員)을 불러 보고 백성들의 괴로움을 물은 뒤 북한산성에 바칠 군량의 절반을 본읍(本邑)에 보관하여 전수(轉輸)의 수고로움을 덜게 하였다. 저녁에 환궁하여 각영 군병(軍兵)으로서 어가를 수행한 자들을 노문(勞問)하였다.

□ 후릉에 나아가기 위해 파주에 이르다

<영조 16년(1740) 8월 29일> 임금이 후릉에 나아가기 위해 판부사(判府事) 김홍경(金興慶)을 유도대신(留都大臣)으로 명하였다. 청담(淸潭)에 이르러 길가의 벼이삭을 가져오라고 명하여 직접 살펴보고 하교하기를, “동풍(東風)에 이삭이 말라죽었구나. 이삭이 말라죽었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는가?” 하였다. 저녁에 파주에 주차(駐次)하였다.

□ 파주부의 환곡 이자를 특별 탕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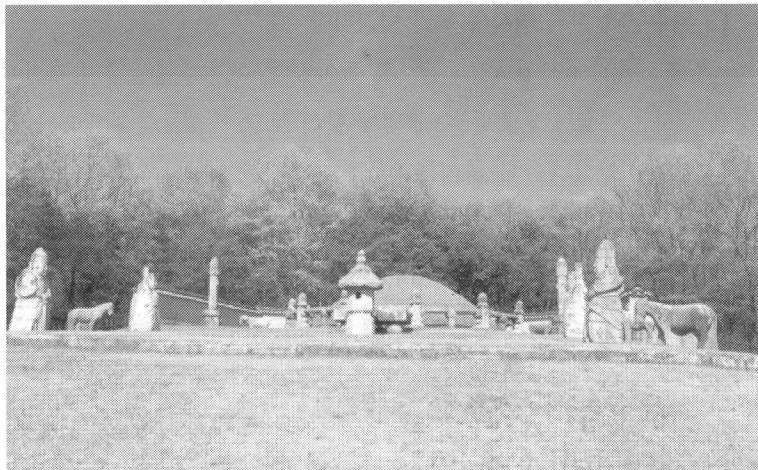
<정조 4년(1780) 9월 4일> 궁으로 돌아왔다. 어가가 출발하기 직전에 고을에 사는 부로(父老)들을 수레 앞에 불러 보고, 백성들의 폐막과 농사에 대해 물어보았다. 하교하기를, “왕릉을 참배하기 위하여 본부에 머물러 유숙하였으니, 마땅히 은혜를 베푸는 도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파주부의 금년 환곡 이자를 특별히 탕감해 주도록 하라. 부역(賦役)을 견감해 주는 혜택이 어찌 서로 달라서야 되겠는가? 고양군도 파주의 사례에 따라 견감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

□ 파주 행전에서 장관들에게 활과 총 쏘기를 시험하고 시상하다

<정조 13년(1789) 2월 13일> 대가가 파주에 이르러 행전(行殿)에서 각 영의 장관(將官)들에게 활 쏘기와 총 쏘기 시험을 보이고서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 파주에 환곡과 군량미를 지원하고 둑은 환곡을 탕감하다

<정조 13년(1789) 2월 14일> 파주 행전에 나아가 본주의 부로들을 불러 접견하고, 전교하기를, “숙배 단자를 봉하여 내리는 것은 바로 옛부터 있던 예로써 경의를 널리 표하는 아름다운 법을 받들어 따르는 뜻이다. 수령들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어찌 이 지방에 사는 백성들에게 은혜가 미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부로들을 불러 접견하고 이미 고통을 물었다. 백성들이 비록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어찌 모르는 체하겠는가. 더구나 본목은 방어사가 있는 병영으로서 체모가 각별하니 환곡·군량미가 넉넉지 못하리라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다. 묘당으로 하여금 곡물 6천 석을 떼어 향곡에 보태도록 하고, 임인·계묘년 이전의 둑은 환곡은 모두 탕감하도록 하라. 그리고 언제나 대가가 지날 때면 한 번 치제하고 싶었지만



순릉(사적 제205호)

하지 못하였다. 같은 시대의 덕있는 이로서 원(院)과 묘(墓)가 또 같은 고장에 있으니 우연한 일이 아닌 듯하여 감회가 더욱 깊다. 승지를 보내 문성공(文成公) 이이와 문간공(文簡公) 성흔의 묘에 치제하라. 제문은 직접 짓겠다” 하였다.

2. 순릉(順陵)

조선 제9대 성종(成宗)의 원비(元妃)인 공혜왕후(恭惠王后) 한씨(韓氏)의 능이다. 공혜왕후는 상당부원군 한명희의 딸로 공릉의 장순왕후와는 자매지간이다. 1467년 (세조 13) 11세에 가례를 올렸고 성종 즉위와 더불어 왕비가 되었으나 성종 즉위 5년(1474) 자식없이 춘추 18세로 승하하였다. 순릉은 조선전기의 능 형태를 따르고 있는데 돌기둥 난간을 둘렀으며 봉분 앞에 상석과 장명등을 배치하고 양쪽으로 문인석과 망주석을 두었다. 또 석양, 석호 각각 2필씩을 두어 능을 호위케 하고 있다.

□ 공혜왕후를 파주 을산에 장사지내고 순릉이라 하다

<성종 5년(1474) 6월 7일> 신시(申時)에 공혜왕후(恭惠王后)의 관을 묻으니 입주전(入主奠)을 거행하고, 집으로 신주를 모셔온 온 뒤에 안릉 전(安陵奠)을 거행하였다.

그 지문(誌文)에 이르기를, “왕후 한씨는 서원(西原) 한씨로 한명희(韓明渾)와 민씨(閔氏)의 딸로 세종 3년(1457) 10월 11일에 연화방(蓮花坊)에 있는 사제(私第)에서 태어났다. 왕후께서는 나면서 총명하였으며 조금 커서는 온화하고 아름다우며 공손하였다. 세조 13년(1467)에 세조께서 우리 주상전하(主上殿하)를 자산군(者山君)으로 봉(封)하고 배필을 가리실 때에 왕후께서 덕용(德容)을 지녔음을 알고 불리 보고서 혼인을 정하시어, 그해 정월 12일에 예를 이루었다. … 상께서 등극하시어 왕비로 책봉되셔서는 더욱 스스로 경외(敬畏)하여 삼전(三殿 : 왕대비전, 대전, 중궁전)을 극진한 효도로 받들었으며, 후궁(後宮)을 대접함에 있어서는 너그럽고 대범하여 중도(中道)에 맞으셨으며, 양로(養老)·세원(歲元) 같은 내전(內殿)의 행동도 모두 법도에 맞으셨으므로, 궁중이 다 바라보고 감탄하였다. 서사(書史)에 뜻을 두고 여전(女傳) 같은 것을 읽는 일을 일과로 삼으셨다.

성종 4년(1473) 7월에 왕후께서 병환으로 한명희의 집으로 옮겨 거처 하시니, 상께서 하루 걸려 거동하여 애써 약을 드리도록 이르셨다. 병환이 나아 궁으로 돌아오셨으나 12월에 병환이 도지시니, 성종 5년(1474) 3월에 구현전(求賢殿)으로 옮겨 거처하도록 명하고 상과 삼전께서 날마다 거동하여 보살피시고 종묘·사직과 뜻 사(祠)에 기도하고 또 죄인을 사면 했다. 상께서 한명희에게 명하여 부인과 함께 때때로 들어와 병환을 돌보게 하였는데, 왕후께서 흥서(薨逝)하기에 임박하여 한명희와 부인이 여러 날 먹지 않는 것을 보고 명하여 밥을 먹게 하고, 더불어 결별하여

이르기를, ‘죽고 사는 데에는 천명이 있으니 영영 삼전을 여의고 끝내 효도를 다하지 못하여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는 것을 한탄할 뿐이다’ 하시고 드디어 흥서하시니, 이날이 4월 15일이었다.

전하께서 왕비를 잊었음을 애통하시고 삼전께서도 슬퍼 목메시어 며칠 동안 음식을 폐하셨고, 모든 신하들이 호곡(號哭)하였다. 상께서 봇신하에게 명하여 시호를 의논하게 하여 시호를 내려 공혜(恭惠)라 하였고, 6월 7일에 파주 공릉(恭陵)의 동쪽 을산(乙山)의 묘좌유향(卯坐酉向)의 언덕에 장사하여 순릉(順陵)이라 하였다” 하였다.

3. 공릉(恭陵)

조선 제8대 예종(睿宗)의 원비(元妃) 장순왕후(章順王后·추존) 한씨(韓氏)의 능이다. 장순왕후는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호(韓明澮)의 딸로 1460년(세조6) 16세로 세자빈에 책봉되어 인성대군(仁城大君)을 놓고 이듬 해 17세의 나이로 승하하였으며 1472년(성종 3)에 왕후로 추존되었다. 공릉은 당초 왕후릉이 아닌 세자빈묘로 조성된 관계로 초석과 난간이 생략되고 봉분앞에 상석(床石)과 8각의 장명등을 세우고 좌우 양 쪽에 문인석 2기를 세웠다. 또, 봉분주위로 석마(石馬), 석양(石羊), 석호(石虎) 각각 2필씩을 두어 능주변을 호위하고 있다. 문인석은 손에 흘(笏)을 쥔 양식으로 웃주름 등이 조선전기 문인석양식을 따르고 있는데 조각 수법이 서툴러 전체적인 선이 유연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 장순왕세자빈을 파주 보시동에 장사지내고 공릉이라 하다

<세조 8년(1462) 2월 21일> 그 애책문(哀冊文)에 이르기를, “유(維) 천순(天順) 5년 12월에 왕세자빈(王世子嬪) 한씨(韓氏)가 사제(私第)에서 졸(卒)하여 마침내 빈전(賓殿)에 모셨다가, 다음해 2월 경인에 파주의 보시



공릉(사적 제205호)

동(普施洞) 언덕에 장사지냈습니다. 널을 실은 수레를 밤중에 차비하여 빈전을 새벽녘에 열었습니다. 명정(銘旌)은 바람에 나부끼고, 만가(挽歌)는 구성지게 목매어서 달빛에 하소연합니다. 주상전하께서는 세자께서 짹을 잃으신 것을 슬퍼하시고 원손(元孫)의 어진 어머니를 잃은 것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아득한 저 세상에 계실 것을 더욱 슬퍼하시며, 법령을 상고하여, 이에 정숙한 의식을 드높여 거행하게 하였습니다. … ” 하였다.

<세조 8년(1462) 2월 25일> 장순빈(章順嬪)을 파주에 장사지냈다.

□ 파주 백성의 적곡을 감해 주다

<숙종 20년(1694) 10월 19일> 당초에 좌의정 박세채가 … 파주 백성은 공릉(恭陵)의 행행(行幸)을 치렀으므로 마땅히 측은하게 여기는 돌봄이 있어야 함을 진달하니, 답하기를, “ … 파주 백성에 관한 일은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겠다” 하고, 드디어 경오년(1690)과 임신년(1692) 두 해의 바치지 않은 적곡(糴穀)을 감해 주었다.



영릉(사적 제205호)

4. 영릉(永陵)

조선 영조의 맏아들인 효장세자(孝章世子, 眞宗 추존)과 그 비 효순왕후(孝純王后) 조씨(趙氏)의 능이다. 진종은 숙종 45년(1719)에 태어나 영조 즉위(1724)와 더불어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나 영조 4년 10세로 세상을 떠나 시호를 효장이라 하였다. 영조 38년 영조는 둘째아들인 사도세자(思悼世子)를 폐위한 뒤 그 아들인 왕세손(훗날 정조)을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시켰다. 효장세자는 정조 즉위 후 진종으로 추존되었고 능호도 옮겨 영릉(永陵)이라 하였다. 효순왕후 조씨는 풍릉부원군(豐陵府院君) 조문명(趙文命)의 딸로 영조 3년(1727) 13세에 세자빈에 책봉되었으나 다음해에 세자가 죽자 홀로 되었다가 영조 27년 37세로 세상을 떠나 왕후로 추존되었다.

□ 파주에 묻힌 어린 세자

<영조 5년(1729) 1월 26일> 효장세자(孝章世子)를 장사지냈다. 임금이 시민당(時敏堂)에 나아가 망곡(望哭)을 하였고, 백관(百官)들은 집영문(集英門) 밖에서 곡하였다. 묘는 파주의 순릉 원쪽 언덕이다. 영조 4년(1728) 12월 9일에 역사(役事)를 시작하여 15일에 옹가(翁家)를 짓고 21일에 금정(金井)을 열었다. 정월 26일에 묘소의 찬실(櫯室 : 발인 때까지 관을 안치하는 곳)을 열었다.

왕이 어제(御製)를 내리기를 “… 아! 통탄스럽다. 1728년 11월 16일 창경궁(昌慶宮) 진수당(進修堂)에서 흥서(薨逝)하였으니, 나이 겨우 10세로 왕세자에 오른 지 4년 만이었다. 같은 해 2월 2일 시호를 의정(義定)하여 ‘효장(孝章)’이라 하고, 1729년 정월 26일 예를 갖추어 파주 조리동(條里洞) 순릉의 원쪽 산동성에 장사지내다. 아! 세자는 재주가 뛰어나고 성품이 또한 매우 어질었기에 동방(東方)의 복이 될 것을 바랐는데, 어찌 나이 겨우 10세 만에 이 지경에 이를 줄 생각이나 했겠는가? … 아! 슬프도다” 하였다.

□ 교하 백성들에게 1000냥을 내리다

<영조 7년(1731) 5월 17일> … 도승지 송성명(宋成明)에게 윤음(綸音)을 전하여 경기 백성 및 교하 백성들에게 가서 윤음을 알리게 하기를, “이번 원릉(園陵)을 옮겨 모시는 것은 사람의 아들된 자의 통박(痛迫)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데 새 능을 오랫동안 자리잡지 못해 더욱 민망스러웠다. 이제 좋은 곳을 이미 정했으니 슬픔과 다행한 마음이 교차된다. … 다만 근년 아래에 경기도의 백성들이 연달아 나라의 역(役)을 만나 조잔(凋殘)함이 특히 심하였고, 이제 또 고을을 옮기는 일이 있게 되었으니 내가 매우 민망히 여긴다. 아! 왕자의 효(孝)는 계술(繼述)하는 것이 큰 것

인데 교하의 백성인들 어찌 우리 성조(聖祖)의 적자(赤子)가 아니겠는가? 이제 은(銀) 2,150냥을 내리노니, 1천 냥은 교하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어 끓기는 비용을 돋고, 1천 냥은 경기도 관영에 주어 천봉(遷奉)하는 역을 도우며, 150냥은 교하현에 주어 관사(官舍)를 뜯어다 끓기는 비용으로 쓰고, 어사(御史)에게 적발된 관동(關東)의 재목 역시 묘당으로 하여금 적당히 해아려 나누어주어 관해(官廨) 짓는 것을 돋게 하여 성조께서 평일에 백성 돌보는 덕의(德意)를 체득하도록 의당 가서 유시하여 모두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 효순왕후, 37세로 효장세자의 뒤를 따르다

<영조 28년(1752) 1월 21일> 빈궁(賓宮)의 노제(路祭)를 행하였다. 예장도감(禮葬都監)에서 상여와 혼백거(魂帛車), 요여(腰輶), 향정(香亭) 등을 중문(中門) 밖에 대기시켜 놓고 영여(靈輶)는 외문(外門) 밖에 대기시켜놓았으며, 길의장(吉儀仗)은 혼백거 앞에 진설하여 놓고 흥의장(凶儀仗)과 명기(明器)는 영여 앞에 진설하여 놓았다. 여집사(女執事)가 찬물(饌物)을 영좌 앞에 진설하였다. 여관(女官 : 궁중에서 임금을 가장 가까이 모시던 내명부)이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향안(香案) 앞으로 나아가서 향을 올리고 술을 따르니, 궁인들이 곡을 그쳤다. 수칙(守則)이 축문을 읽고 나니 여관이 애책안(哀冊案) 앞으로 나아가 서쪽을 향하여 끓어앉았다. 이어 책함(冊函)을 받들고 중계(中階)를 거쳐 올라가 향안 앞으로 나아가 끓어앉아 안상(案上)에 놓았다. 여관이 책함을 열고 애책을 펴서 읽기를, “유세차(維歲次) 1751년 11월 14일에 효순현빈(孝純賢嬪) 조씨(趙氏)가 창덕궁(昌德宮)의 건극당(建極堂)에서 졸(卒)하였다. 다음해 정월 22일에 파주 효장세자(孝章世子)의 묘에 합장하게 되었다. 우리 주상전 하께서는 아름다운 덕행을 지니고 일찍 운명하였음을 슬퍼하여 이에 고

전(古典)을 상고하여 그 아름다운 자취를 선양(宣揚)한다” 하였다.

그후 애사(哀詞)를 읽고 나자 애책을 도로 함에 넣어 영좌 앞에서 조금 동쪽에 있는 안상에 밭들어 놓은 다음 본래의 위치로 돌아왔다. 궁인들이 슬프게 죽(哭)하였다. 여집사가 찬물을 치우고 나서 축문을 밭들어 향로에다 테웠다. 드디어 발인(發引)하였다.

□ 영릉에 제사를 지내고 파주에 머문 정조

<정조 4년(1780) 9월 3일> 임금이 영릉에 친히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파주에 머물렀다.

□ 갑옷을 입고 영릉에 제사지내러 간 정조

<정조 8년(1784) 8월 16일> 임금이 장차 영릉(永陵)을 배일하고자 하여 … 저녁에는 파주목에서 머물렀다. 임금이 갑옷과 투구 차림을 하고, 훈련대장 구선복(具善復), 어영대장 서유대(徐有大), 경기관찰사 심이지(沈履之), 개성부유수 정창성(鄭昌聖), 강화부유수 엄숙(嚴壽), 충용사 이창운(李昌運), 금군별장 조규진(趙圭鎮)에게 명하여 깃발을 들고 복을 치면서 영접하도록 하였다. 어목현(禦牧軒)에 나아가 여러 장수들의 군례(軍禮)를 받았다. 부로들을 소견하고 질고(疾苦)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 능군의 폐단

<정조 10년(1786) 4월 26일>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경기관찰사가 고양군수 유증양(柳曾養)의 첨정(牒呈)으로 인해 말하기를 ‘근래에 능군(陵軍 : 각 왕가의 능에 소속되어 수릉관 밑에서 잡일을 맡아보던 일꾼. 수릉군)의 폐단이 갈수록 심해져서 한 번 능군에 들어갔을 경우, 음관과 구족(九族)에게까지 그 혜택이 가는가 하면 그들이 사사로이 모집한 보인



어기행렬(경기도 문화예술·관광사진대전, 조경종, 여주영릉)

(保人)까지 요역을 면제받습니다. 보인의 자손은 어린아이라고 하여 지방관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원래의 호수 가운데 본군 구릉(九陵)의 묘호(墓丘)·보인(保人)과 파주 삼릉(三陵), 양주 구릉(九陵)의 원묘(園墓) 보인 중 본군에 거주한 사람들이 1,450호인데 원래의 호수는 200호도 채 차지 않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러한데 고을을 어떻게 다스리겠으며,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원군과 보인은 본디 등급이 있습니다만, 보인의 자손들을 지방관들이 손을 대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한계가 없습니다. 보인 자손의 과외 명색과 보인을 일가붙이로 하지 않고 사사로이 모집한 자와 정원수 외에 더 정한 것은 본도로 하여금 해당조와 의견을 교환하여 정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능으로 가는 길에 파주의 민폐를 살피는 정조

<정조 16년(1792) 2월 24일> 상이 영릉에 가는 도중 파주목에서 대가(大駕)를 멈추고 목사 이민보(李敏輔)를 불러 백성의 병폐를 물어보니 답하기를, “본 고을의 전결(田結) 중에는 옛날부터 애초 조세의 명목이 붙어 있지 않은 전결이 있어 해마다 계속되어 온 것이 50결에 가깝습니다. 수령된 자가 차마 강제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으니 영영 감면해주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승지에게 명하여 파주목사와 더불어 장용영(壯勇營)의 우사(右司) 후초군(後哨軍 : 부대 뒤쪽에 있는 초소의 병사)과 파주목의 장수와 군졸에게 활과 포 쏘는 시험을 보인 뒤에 차등 있게 상을 주도록 하였다.

□ 영릉·순릉·공릉에 제사지내고 파주 행궁에 머문 순조

<순조 8년(1808) 8월 9일> 영릉에 나아가 전일(展謁)하고 친히 제사하였다. 이어서 순릉과 공릉에 나아가 전일하고 파주의 행궁에서 유숙하였다.

5. 장릉(長陵)

장릉은 조선시대 16대 임금인 인조(仁祖)와 그 비 인열왕후(仁烈王后) 한씨(韓氏)의 합장릉이다. 인조는 선조의 다섯째 아들인 정원군(定遠君. 추존元宗)의 맏아들로 능양군(綾陽君)에 봉해졌는데 광해군 15년(1623) 인조반정을 통해 왕위에 올랐다. 인조는 27년 동안의 재위기간 중 이괄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은 후 삼전도(三田渡)에서 청나라 태종에게 항복하고 소현(昭顯)·봉림(鳳林) 두 아들을 인질로 보내는 치욕을 당하였다. 또한 정치적으로 당파간의 싸움이 격화되어 사회가 혼란스



장릉(사적 제203호)

러워짐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인조 27년(1649)에 승하하였다. 인조의 비 인열왕후 한씨는 한준겸(韓浚謙)의 딸로 1610년 능양군과 혼인하였고 인조 즉위와 더불어 왕비가 되었다. 효종과 소현세자, 인평대군(麟坪大君), 용성대군(龍城大君)의 4형제를 낳았으며 42세의 나이로 승하하였다. 장릉은 당초 문산읍 운천리에 있었으나 영조 7년(1731) 석물 틈에 뱀들이 집을 짓고 극성을 부려 지금의 위치로 옮겨 합장하였다.

□ 세자가 장릉을 참배하다

<인조 22년(1644) 1월 18일> 세자가 파주에 이르러 장릉을 전알하였다.

□ 인조대왕의 묘지문

<인조 050 부록> “기축년(인조 27) … 9월 20일에 인조를 장릉 묘좌 유향(卯坐酉向)의 언덕에 장사지내니, 파주 소재지로부터 북쪽 20리에 있다. 인열왕후(仁烈王后)의 장사 때 왕이 명하여 곡장(曲牆)이 한 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자각(丁字閣)도 중앙에 짓고 모든 상설(象設)의 제도도 다 효릉(孝陵)을 본떠 백성을 거듭 번거롭게 하지 말게 하셨다. 소박한 것을 숭상하고 뒷걱정을 하신 것이 지극하셨으니 한문제(漢文帝)가 패릉(霸陵)을 검소하게 모두 와기(瓦器)로 치장하였지만 어찌 이보다 낫겠는가.

왕은 체모가 침착하고 엄숙하며 도량이 깊고 넓어서 동정 하나하나가 모두 법도에 맞고 가인(家人)·자제를 대하여도 게으른 모습이 없이 숙연 하셨으니, 참으로 이른바 위의(威儀) 있는 임금이셨다.

학문을 좋아하시어 왕위에 오르시기 이전부터 하루도 글을 벼려두고 보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 즉위하셔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닦아 일으키되 삼대(三代)와 같게 하려고 생각하여 현준(賢俊)을 맞아들여 등용하고 미천한 자 중에서도 채용하셨으며, 세월이 모자랄 듯이 경연에 부지런하여 하루에 세 번 인접하셨다.

성효(聖孝)를 다하시는 것은 이러하였다. 원종대왕(元宗大王)과 인현왕후(仁獻王后)께서 위독하실 때에 손가락을 베어 피를 내어 바치고 3년 동안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사모하여 게을리 하지 않으셨다. 인목왕후(仁穆王后)께서 성품이 엄하셨으나, 또한 왕이 더욱 공경하고 더욱 효성한 데 감동되어 10여 년 동안 편안하고 참소가 감히 이간하지 못하였다. 신미년 정월 인목대비의 병이 위급할 때에 왕이 근시(近侍)를 보내어 산천에 기도하고 원옥을 심리하게 하셨는데, 얼마 후에 대비께서 병이 나아 이르기를 ‘왕의 효성이 아니면 내 병이 위태로웠다’ 하셨다. 임신년(1632)에 이르러 대비의 병이 다시 심해졌을 때에 왕이 약시중을 들되 늘 옷을 벗지 않으셨고 약은 반드시 친히 맛을 본 후에 드렸으며 종사와 산천에 기도하는 것이 전보다 더하셨다. 대비께서 승하하시어 인경궁(仁慶宮)에서 경덕궁(慶德宮)으로 의장을 옮길 때에 왕이 소여(小輿)를 물리치고 걸어서 따라가신 것도 옛 임금이 행한 적이 없는 일이다.

구족(九族)을 친목하시는 것은 이러하였다. 능원대군(綾原大君) 이보(李備)와 우애가 깊으셨는데 그에게 집이 없는 것을 염려하여 특별히 이현(梨峴)의 별궁(別宮)을 내리셨다. 부마(駙馬)와 종실(宗室) 집 남녀 중에 정축년 난리 때에 잡혀간 자가 있었는데 많은 값을 내어 속(贖)하였다. 친척 중에 부고가 있으면 행소(行素)하되 편찮다 하여 그만두시지 않았다. 인홍군(仁興君) 이영(李瑛)이 어머니의 복을 입었을 때 그대로 품록(品祿)을 내려 국가에서 왕자를 대우하는 도리를 구별하시고,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의 자손도 거두어 돌보셨다. 광해(光海)와 폐동궁(廢東宮)에게 다 서녀(庶女)가 있었는데 어릴 때에는 녹봉을 주어 기르게 하고 자라서는 출가시키되 전토와 노비를 많이 주어 편안하고 부유함을 누리게 하셨다.

대신을 공경하시는 것은 이러하였다. 이원익(李元翼)이 늙고 병들어 잘 걷지 못하니 지팡이를 내리고 명하여 수레를 타고 대궐에 나오게 하고 소헌(小宦)을 시켜 부축하여 전(殿)에 오르게 하셨다. 그가 치사해서는 현관(顯官)에게 명하여 집을 지어 주게 하고, 베이불과 베요를 내려 그의 뜻에 맞게 하셨다.

직신(直臣)을 용납하시는 것은 이러하였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정온(鄭蘊)이 곧기는 곧으나, 전하를 접때에 견주었으니, 신하의 의리에 어그러집니다’ 하였는데, 왕이 이르기를 ‘옛사람의 경우 걸주로 임금을 견준 자가 있었는데, 정온의 말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셨다. 이명준(李命俊)이 곧바로 궁인(宮人)을 지적하여 상소한 말이 매우 강경하였는데, 왕이 특별히 칭찬하셨다. 유백중(兪伯曾)·강학년(姜鶴年) 등이 바르게 말하기는 하였으나 지적한 것이 맞지 않았는데, 왕이 용납하고 또한 죄주지 않았다.

절의(節義)를 포장(褒獎)하시는 것은 이러하였다. 정묘년 난리 때에 남

이홍(南以興)·김준(金浚)이 안주(安州)에서 죽고 최몽량(崔夢亮)이 의주(義州)에서 죽었는데, 포증을 더하고 그 자손을 녹용하셨다. 병자년의 난리 때에 상신 김상용(金尙容), 도정(都正) 심현(沈顥), 장령 이시직(李時稷) 등이 잇따라 충렬(忠烈)을 행하였는데, 왕이 명하여 그 문려(閨閣)에 정표하고 묘액(廟額)을 내려 충렬이라 하셨다. 김옹하(金應河)의 충성을 생각하여 그 집에 은 수백 냥을 내리셨다. 판서 김상현(金尙憲), 참판 정온이 국난에 임하여 의분이 북받쳐 칼로 찔려 죽으려 하였는데, 왕이 낮빛이 변하여 의관(醫官)을 보내어 약을 가져가서 구원하게 하셨다. 홍익한(洪翼漢)·윤집(尹集)·오달제(吳達濟)가 죽는 것을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듯이 하였는데, 왕이 가엾게 여겨 마지않고 그 집을 특별히 돌보셨다.

형옥(刑獄)을 삼가시는 것은 이러하였다. 번번이 역옥이 일어나면 왕이 이르기를 ‘백성이 원망하여 반역하는 것은 내가 데미 없기 때문이다’하고 그 우두머리만을 주벌하고 협박 때문에 따른 자는 다스리지 않고, 사죄에 들어갔더라도 정상이 애매하면 이미 승복한 자도 많이 형을 감하거나 없애주셨다. 이 때문에 반역이 여러 번 일어났으나 나라 안에 원망하는 백성이 없었다.

천위(天威)를 두려워하고 백성의 고통을 돌보시는 것은 이러하였다.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의 일에 부지런하신 것이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는데, 재이를 당하면 반드시 내 허물이다 하시고 반드시 조정의 신하를 시켜 과실을 죄다 아뢰게 하고 원옥을 심리하게 하셨다. 일찍이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민망히 여겨 거친 베옷을 입고 앓아 뭇 신하를 불러 각각 말을 다하게 하고 자책도 매우 진실하게 하셨는데, 말이 끝나기 전에 비가 크게 쏟아졌다. 왕이 일찍이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먹는 것은 백성의 하늘이라 하여 내 몸이 다친 듯이 돌보고 때맞추어 부리셨는데, 산릉(山陵)의 일과 칙사(勅使)의 수요일지라도 오로지 민간에 요구하지 말게

하고 각 사의 저축을 비워서 쓰고 때로는 내부(內府)의 저장으로 돋게 하셨다.

검덕(儉德)을 숭상하고 교회를 도타이 하시었다. 사대(事大)하는 정성으로 말하면 한결같이 선조를 모범 삼아 귀복(歸服)하는 일념은 잠시 위급한 때라도 바꾸지 않았다.

신하로서 우리 대행대왕(大行大王)을 가까이 모신 지 20여 년 동안에 뛰어난 문덕(文德)을 입고 일월(日月)의 빛을 가까이한 것이 또한 많거니와, 삼가 천지를 헤아리고 고금에서 살펴보면 대행 대왕의 공덕과 규모는 은(殷)나라와 주(周)나라 때보다 나을 만하다. 불행히 병자년·정축년의 험난을 당하셨으나, 그것이 어찌 우리 대행 대왕의 흄이겠는가. 말년에 더욱이 뒤를 잇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 전하를 얻어 200년의 종통을 맡겼는데, 그 귀에 대고 말하고 면전에서 명하여 간절히 가르친 방도는 인심(人心)·도심(道心)에 관한 요(堯)·순(舜)·우(禹)가 서로 전수한 심법(心法)으로써 먼저 하고 은감(懇鑑)이 멀지 않고 혼조(昏朝)에 있다는 것으로 거듭하고 도이(島夷)는 죽이기를 좋아하여 전세가 짙다는 것으로 끝냈으니, 그 간절히 반복하여 경계한 말씀은 성인이 서로 전수하는 사이에 세 가지 뜻을 전한 것이다. 대저 어찌 험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면 성인의 대지(大知)를 볼 수 있었겠는가. 한(漢) 소열제(昭烈帝)가 선이 작다 하여 하지 않거나 악이 작다 하여 하지 말라 한 것은 어지럽게 셈할 것도 못 된다.

일국의 신민이 누구나 다 반드시 오래 사시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도리어 성인보다 모자라고 설용(泄庸)과 종려(鍾蠡)같은 보좌가 지금에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하늘에 허물을 돌리는 것은 본디 당연하겠으나, 임어(臨御)하신 27년 동안 깊은 인애와 두터운 은택이 사람들의 피부와 뼈에 스며들어 향기를 빚어낼 것이며 깜깜해진 세상에 강상을 분명하게 제시

하여 해와 달처럼 늘 밝을 것이니, 어찌 나라를 오래 다스려 왕자(王者)가 되고 패자(霸者)가 되려 피한 뜻 임금이 여기에 미칠 수 있겠는가. 아, 아름다우시다.

왕의 원비(元妃) 한씨(韓氏)는 세 아들을 낳으셨다. 맏이는 소현세자 이왕(李渢)인데 일찍 졸하였고, 다음은 금상전하(今上殿하)이시고, 다음은 인평대군(麟坪大君) 이요(李漬)이다. 귀인(貴人) 조씨(趙氏)는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았다. 아들 중 맏이는 송선군(崇善君) 이징(李澂)인데 승지 신익전(申翼全)의 딸을 취(娶)하였고, 다음은 낙선군(樂善君) 이숙(李瀟)이며 딸은 효명옹주(孝明翁主)인데 낙성위(洛城尉) 김세룡(金世龍)에게 하가(下嫁)하였다. 소현세자에게 세 아들과 세 딸이 있다. 아들 둘은 죽었고 하나는 어리며 세 딸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다. 우리 중전 장씨(張氏)는 우의정 신풍부원군(新豐府院君) 장유(張維)의 딸님이신데, 세 아들과 다섯 딸을 낳으셨다. 아들 왕세자 휘(諱) 모(某)는 처음에 세손에 봉해졌다가 이제 저위(儲位)에 올랐으며 딸 중 맏이는 숙안공주(淑安公主)인데 익평위(益平尉) 홍득기(洪得箕)에게 하가하였고, 다음은 숙명공주(淑明公主)이고 그 다음 세 공주는 다 어리며 아들 둘은 일찍 졸하였다. 인평대군은 증 영의정 오단(吳端)의 딸과 혼인하여 다섯 아들을 낳았다. 맏이는 이숙(李柟)이고, 다음은 이정(李楨)인데 의창군(義昌君)에게 출계(出繼)하였고, 그 아래 세 아들은 다 어리다.”

□ 인조대왕 행장

<인조 050 부록> “… 계유년(1633)에 한인급(韓仁及) 등을 보내어 장자(長子) 휘(諱)를 세자로 봉하기를 청하고 아울러 추봉(追封)을 사례하게 하였는데, 갑술년(1634)에 황제가 태감(太監) 노유령(盧維寧)을 보내어 세자의 고칙(誥勅)과 채단(綵段)을 가져와 칙서를 내렸는데, 그 대략에 이

르기를 ‘왕은 대대로 동번(東藩)을 지켜오며 예를 지키고 의를 따랐으므로 공순한 전통을 반드시 능히 이어받을 것인데 봉강(封疆)에 일이 많으니 빨리 주무(綢繆)해야 할 것이다. 이에 지금 이미 세자를 세웠으니, 이 가르침을 명시하여 전례를 따르고 변하지 말아서 국가를 보전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을해년(1635) 12월 9일에 왕비가 승하하셨다. 왕비는 정정(貞靜)하고 인명(仁明)한 덕이 있고 왕을 모시되 완곡한 표현으로 왕의 잘못을 지적하신 것이 많았다. 장릉 유향(酉向)의 언덕에 장사하였는데 파주 북쪽에 있고, 그 사적은 본릉(本陵)의 지문(誌文)에 자세하다.”

□ 장릉에 은 광맥이 있다

<효종 2년(1651) 7월 10일> 파주에 사는 전 사평(司評) 이원(李源)이 파주에 은혈(銀穴)이 있다고 상소하여 시험삼아 캐낼 것을 청하니 조정에서 파주로 하여금 병줄을 보내 채굴하도록 하였다.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은혈이 장릉의 산맥을 침범한다고 말하자, 상이 관상감제조(觀象監提調) 여이징(呂爾徵)을 보내어 상지관(相地官)을 거느리고 가서 살펴보게 하였다. 여이징이 형상을 그려서 바치니, 상이 “파들어 가는 구멍이 점점 넓어지면 필시 농 뒤 산맥을 손상할 것이다” 하고, 그 공사를 그만 두도록 명하였다. 이어서 파주로 하여금 흙을 메우고 나무를 심어서 영구히 금지하는 지역으로 하게 하였다.

□ 홍산의 유학 방숙제가 장릉을 옮겨야 한다는 뜻을 상소하다

<숙종 12년(1686) 12월 7일> 홍산(鴻山)의 유학(幼學) 방숙제(方叔齊)가 장릉을 옮겨야 한다는 뜻의 소(疏)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풍수(風水)의 술(術)이 심히 불분명하나 분묘를 정하고 집터를 잡는 일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가만히 오늘날의 일

을 헤아려 보니, 기해년 이후 재화(災禍)의 빌미가 많으니 혹시 파주 땅의 장릉이 그 적지(適地)를 얻지 못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비록 그러하나, 그림을 손으로 문지르는 것은 진짜 얼굴을 맞대고 앉는 것만 못하며, 지자(智者)가 먼 곳에서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는 것만 못하니, 전하께서는 곧 신(臣)으로 하여금 장릉에서 대죄(待罪)하게 하여 산수의 추향(趨向)과 풍기(風氣)의 순잡(純雜)을 자세히 살피게 하여 그 개장(改葬)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결정하소서” 하였는데, 소(疏)가 승정원에 이르자 승정원에서는 방숙제가 숙령 되어 능침(陵寢)을 논하였다고 하여 유사로 하여금 잡아들여 죄를 다스리고, 그 소는 돌려주도록 청하였다. 또 한편의 의논은 방숙제의 소가 소견이 없지 않은데도 승정원에서 지레 잡아들여 죄를 다스리자고 청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하니, 승정원에서는 외부 여론으로 인해 대죄(待罪)하였다. 임금이 그 소를 가져오라고 명하고 이에 옮겨 모실 것인지의 여부를 대신들에게 물으니,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은 말하기를, “세상의 여론이 떼지어 일어나 대부분 옮겨 모시자는 설을 주장하니, 성상께서는 널리 자문을 구하여 대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우의정 이단하(李端夏)는 말하기를, “산릉의 사체(事體)는 지극히 중대하니 어찌 풍수의 허탄(虛誕)한 설로써 구원(久遠)의 침원(寢園)을 함부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민간의 사대부 집안으로써 말하면 근래에 천장(遷葬)의 폐단이 지극히 어지럽게 일어나 이로 인해 화재(禍敗)를 만나는 자가 많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단하의 의논에 따랐다.

□ 장릉에 행행한 숙종

<숙종 13년(1687) 10월 9일> 임금이 장릉에 행행했다. 임금이 파주까

지 갔을 때 도승지 최석정(崔錫鼎)이 아뢰기를, “전 대사헌 박세채가 이 길 근방의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박세채는 본래 조가(朝家)에서 예우(禮遇)하던 신하이니, 마땅히 행궁(行宮)으로 불러오도록 명하시고 산릉에 관한 큰 일도 자문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산릉에 나오게 유시하도록 명하고, 이어 말을 내어주도록 했다. 박세채가 명한 대로 받드니, 임금이 박세채가 월음을 듣고서 숙사(肅謝)를 그만두도록 명하고 인견하였다. 박세채가 요사이 회노(喜怒)가 마땅함을 잊어버린 것을 가지고 더 힘쓰시도록 청하고, 또 자신에 대해 아뢰기를, “앞서의 해에 낭패(狼狽)하고 물러났기에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면유(勉諭)하니, 박세채가 아뢰기를, “마땅히 물러가서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이어 물러나왔다.

□ 술사의 투서

<숙종 065 부록/ 숙종대왕 행장>

… 무진년 어떤 술사(術士)가 상소를 올려 “쌍유병결의 혈(穴)을 구하거나 아니면 일강상하(一岡上下)의 땅을 골라 장릉을 옮겨 모시어 두 능이 구역을 같이하는 계획을 세울 것”을 청하니, 왕이 말하기를, “직접 살펴보고 단정할 일이며 지금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다” 하였다. 뒤에 대계(臺啓)로 인해 그 사람을 처벌하였다.

□ 장릉에 뱀이 나타나다

<영조 7년(1731) 3월 16일> 대신과 예조당상(禮曹堂上)에게 지사(地師) 및 남원군(南原君) 설(稿)을 데리고 장릉에 가서 봉심(奉審)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이날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는데, 좌의정 이집(李集)이 말하기를, “파주의 장릉은 선조(先朝) 때 농을 옮기려는 의논

이 있었으나 의논하다가 곧 중지하였습니다. 근래 듣건대 능침 사이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변이 있어 가끔 출몰한다고 하니, 어찌 놀랍지 않겠습니까? 세간에서 전해 오기를, ‘이 능을 처음 개광(開墳)할 때에 뱀의 변이 있었으나 총호사(摠護使) 김자점(金自點)이 숨기고 그대로 능을 봉했다’고 합니다. 고(故) 판서 윤강(尹絳)이 감여설(堪輿說)을 이는데 ‘우두혈(牛頭穴)에 장생파(長生破)’라는 말을 그의 아들 고 상신(相臣) 윤지선(尹趾善)에게 말하였고, 윤지선이 또 그의 사위인 판부사 민진원(閔鎮遠)에게 말했으며, 민진원이 또 신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백년 된 선침(仙寢)을 하루아침에 뚫겨 모시는 것은 일에 마땅히 어려워하고 신중함을 더해야 할 것이나 변이 이미 망극하니 뚫겨 모시는 것을 의논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다.

예조판서 신사철(申思喆)이 말하기를, “속담에 ‘그때 한 중이 있어 광중(廣中)을 다지면서 소리치기를, 정혈(正穴)을 버리고 사혈(蛇穴)을 쓰는 구나하더니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하고, 우의정 조문명(趙文命), 좌참찬 서명균(徐命均), 호조판서 김동필(金東弼), 병조판서 김재로(金在魯), 이조판서 송인명(宋寅明)은 모두 말하기를, “풍수설(風水說)이 비록 황망(荒茫)하나 뱀의 변은 듣기에 아주 놀라우니, 신들도 어찌 다른 의논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풍수설에 미혹되지 말라는 선조의 가르침이 만세의 교훈으로 내려 왔으니 망령되어 의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더러운 물건이 지극히 경건한 땅에서 나왔다 하니, 듣기에 아주 놀랍고 가슴 아프다. 밖이 오히려 이리하니 안에도 어찌 반드시 없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더욱 두렵다. 더군다나 오래된 능침을 뚫겨 모시는 것은 극히 어렵다. 대신과 예관으로 하여금 봉심하게 하고, 또 밖에 있는 대신에게도 물어 중의(衆議)를 널리 채납하라” 하였다.

□ 어가가 장릉에 이르다

<영조 7년(1713) 8월 17일> 어가가 파주를 향하여 가다가 낮에는 분수원(分水院)에서 휴식하고 파주 행궁으로부터 장릉에 이르렀다. 도승지 박문수(朴文秀)에게 민폐를 알아보도록 명하니, 백성들이 ‘개천이 뒤집혀 모래가 뒤덮인 재양과 백골에게 군포(軍布)를 징수하는 억울함과 옛 환자(還子)의 납부를 독촉하는 괴로움’이라고 답하였다. 임금이 ‘마땅히 진휼하겠노라’고 하유(下諭)하고, 이어서 세 고을의 죄질이 무거운 죄수로서 사건의 결말이 나지 않아 오랫동안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석방하여 흄휼(欽恤)하는 뜻을 보일 것을 명하였다.

□ 옛 장릉터를 개간하도록 허락하다

<영조 40년(1764) 11월 9일> 임금이 주강을 행하고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 영의정 홍봉한이 말하기를, “… 구 장릉은 장산(長山)의 산줄기와 연해 있는데, 그곳 토지가 기름지고 폭이 매우 넓습니다. 지금 방어하는 영(營)을 파주로 옮겨 설치해야 할 것이니, 그때에 화소(火巢)의 범위를 줄여주어 개간하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면 곡식을 생산하고 백성을 모여 살게 하는 방안에 도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예조의 당상에게 명하여 가서 살펴보게 한 다음에 그의 청을 허락하였다.

□ 장릉의 잣나무 세 그루를 특별 관리하다

<정조 13년(1789) 2월 13일> 대가가 교하 군재를 출발하여 노차에서 본군의 부로들을 불러 접견하고서 특별히 금년 조세의 절반을 견감해주고 임인·계묘년(1782·1783) 이전의 묵은 환자곡을 탕감하였다. 그리고 사람은 많고 곡식은 적다 하여 택지부로 하여금 곡물의 필요한 양을 계

산하여 그것으로 영구히 여유 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경내의 사서인 중 나이 70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음식물을 급여하고, 80세 이상으로 거동을 세 번 겪은 사람에게는 각각 한 자급식을 주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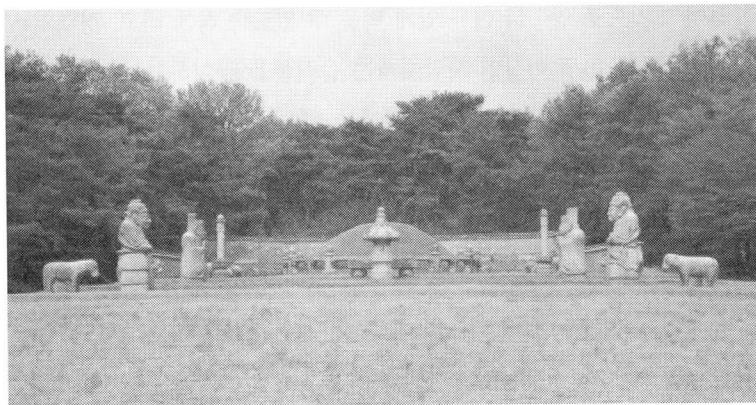
그리고 이어 장릉으로 가서 작현례를 행하고 전교하기를, “고향의 나무도 오히려 공경하는 것인데 하물며 손때가 묻은 나무이겠는가. 선왕조 신해년(영조 7)에 파주에서 본 능으로 이장하고서, 효종께서 옛 능소에다 손수 소나무와 삼나무를 심으셨던 고사를 따라 이 나무를 심으셨던 것인데 지금 저렇게 울창하다. 만약 이 나무에 표지를 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나무에 대부(大夫)의 명호를 붙인 것은 옛날에도 그렇게 하였는데 하물며 더 소중한 이 나무이겠는가. 어의궁(於義宮)·용홍궁(龍興宮)의 소나무에도 자급(資級)을 주라고 명하였으니, 이 역시 선대 왕의 뜻을 이어받는 한 방법인 것이다. 선왕이 손수 심으신 잣나무 세 그루에 구리로 울타리를 치고 수식(手植)이란 두 글자를 새겨놓는다면 뒤에 이 능을 전알하고 이 나무를 보는 자가 누가 감히 공경하고 감격하지 않겠는가. 이 전교를 능지(陵誌)에다 기재하라” 하였다.

□ 현종이 장릉을 침배하다

<현종 13년(1847) 2월 22일> … 장릉에 들러 전배(展拜)하고 도로 파주목에 있는 행궁에 나아갔다.

6. 희릉(禧陵)

조선 제11대 중종의 계비 장경왕후(章敬王后)의 능이다. 왕후는 윤여필(尹汝弼)의 딸로 중종 즉위년 대궐에 들어와 숙의(淑儀)가 되고 신비(慎妃)가 쫓겨난 뒤 왕비로



희릉(사적 제200호. 서삼릉 안에 있다)

봉해졌고 중종 10년(1515) 인종을 낳은 뒤 산후가 좋지 않아 25세로 승하하였다. 왕비가 돌아가자 처음에는 능을 경기도 광주 현릉(獻陵) 안에 정하였으나 20여 년 뒤인 중종 32년 희릉광자(禧陵廣低)에 큰 돌이 깔린 채 그대로 공사를 마쳤다는 설을 들어 능을 옮기자는 설을 의논하였다. 그러나 왕이 움직이지 않자 풍수설에 큰 돌이 광저에 깔리면 불길하다고 아뢰서 왕의 뜻을 움직이게 되었다. 이 일은 김안로 등이 정광필 남곤등에게 중죄를 주려고 이용한 것으로 총호사(摠護使)였던 정광필 이하 지관(地官) 및 공사에 관계했던 관리들이 대역죄에 연좌되었고 그들의 고신(告身)이 발탈 또는 추탈(追奪)되는 옥사가 일어났다. 그리하여 새로이 길지(吉地)를 찾아 현재의 위치에 옮기게 된 것이다. 그 8년 뒤 중종의 정릉이 희릉에 정해지며 정자각을 양릉 중간에 옮기고 동원이강(同原異岡)의 형식을 취해 왕의 능호(陵號)를 쓰더니 명종 17년 문정왕후가 왕릉을 선릉(宣陵) 곁에 옮기게 되자 다시 희릉으로 칭하게 되었다.

□ 세 군데 길지를 심사하다

<선조 33년(1600) 10월 1일> 해원부원군 윤두수, 영의정 이항복, 좌의정 이현국, 우의정 김명원, 해평군 윤근수, 예조판서 홍진(洪進), 공조판

서 이충원(李忠元), 좌윤(左尹) 성영(成泳), 관상감제조 정구(鄭述)가 아뢰기를, “이번 동쪽과 서쪽으로 살펴본 산들은 매우 많았으나 의견들이 각기 달라 신들이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 다만 술관들이 토의를 거친 후 … 교하현 뒷산과 평구(平丘)의 박원종네 묘산, 포천 가차리(加次里)가 길지(吉地)라고 하였으며, 이문통(李文通)도 그렇다고 하였다니 이들 세 곳은 재심(再審)할 대상 중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들 세 곳을 가지고 우열을 따져보면, 평구와 포천 두 곳이 가장 길지인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인들의 술업(術業)은 서로 같지 않은데 지금 마침 중국인에게 재심케 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우선은 이문통이 평구를 재심하기를 기다린 뒤에라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교하현 뒷산과 포천 가차리 두 곳이 후보지로 떠오르다

<선조 33년(1600) 10월 2일> 이항복·이현국·김명원 등이 아뢰기를, “이문통이 손수 쓴 글을 보았더니 ‘박중선네 묘산은 좋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중국 사람의 술업을 당초에 취하지 않았다면 모르거나와 이미 살피라고 하였고 또 말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우리나라 술관들이 비록 길지라 하였더라도 그대로 쓰기에는 또한 매우 미안스럽습니다.

어제 신들이 의정(議定)하였던 곳은 평구·포천·교하 세 곳이었는데, 지금 남은 곳은 단지 교하현과 가차리뿐입니다. 교하현 뒷산도 이미 쓸 만한 곳이라고들 하였으며, 문통이 서쪽으로 돌아갈 때 교하를 들러보겠다고 했다 하니 비록 그곳을 살펴보게 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통사(通事) 이민성(李民省)과 지리관 박상의(朴尙義)를 내일 문통과 함께 보내 살펴보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담당 관원이 없는 점이 온당치 않은 듯합니다. 관상감 제조 정구가 거느리고 가는 것도 좋을 듯하여 감히 아

립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교하현이 길지로 떠오르다

<선조 33년(1600) 10월 5일> 윤근수가 아뢰기를, “이문통이 어제 교하현의 아문 뒤 자수산(子水山)의 동쪽 저현(猪峴)이라는 곳을 보고서는 말하기를 ‘매우 좋은 자리이다. 안산은 평천관(平天冠 : 임금이 쓰는 관) 모양이고 주봉(主峰)은 바로 어좌(御坐)이다. 자리는 해룡(亥龍)으로 임좌 병향(壬坐丙向)이다’ 하였습니다. 박상의는 이곳을 매우 좋은 곳이라고 칭찬하였지만 다른 술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모두 다 알았다. 그의 말을 채택하든 안 하든 간에 왜 술관들의 서계가 없는가? 문통이 본 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술관들도 당연히 서계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 교하현의 세 산 중 한 곳을 결정하기로 하다

<선조 33년(1600) 10월 7일> 이항복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성영(成泳)의 서계를 보았더니, 교하현의 세 곳 산이 모두 쓸 만한 듯하다고 하였습니다. 전날 아뢴 대로 신들이 내일 예조판서 이정구 등과 함께 가서 다시 살펴보고자 하여 아립니다” 하니, 답하기를, “비록 세 곳이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중국 사람이 정한 곳으로 써야겠다. 다른 혈(穴)은 쓸 수 없다” 하였다.

□ 모두 제각각인 의견

<선조 33년(1600) 10월 9일> 이항복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어제 교하현에 가서 바로 이문통이 점찍은 저현산(猪峴山)에 이르러 자(尺)로 채어 보았더니, 앞쪽의 보토(補土)할 곳의 길이가 대략 80자쯤으로 아주 높

아 객토(客土)가 너무 많이 들어야 하니 좋지 않은 듯합니다. 또 이문통의 법은 옛 투식을 따르지도 않고 보통 쓰는 예들도 쓰지 않았는데, 그가 칭찬해 말하는 것은 모두 보통 사람의 평범한 식견으로는 능히 헤아리지 못할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전부터 준수하여 쓰던 정해진 법식이 있는데, 이를 가지고 본다면 혈도(穴道)가 바르지 못한 데다가 한쪽으로 치우친 지맥(支脈)의 경사져 내린 곳일 뿐입니다. 안대(案對)와 조종수(朝宗水)는 비록 수려한 듯 하나 산맥이 향하는 바와는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안쪽의 용호(龍虎)도 낮게 쳐져 있으며 좌우도 모두 허전합니다. 오직 박상의 만은 ‘이는 용이 서린 형상으로 흡점을 데가 없다’고 했으나, 술관들은 끝내 흡점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만일 문통의 말과 같이 한다면 무덤의 형태가 주룡(主龍)과는 비껴나고, 용미(龍尾)의 뒤가 아주 허전하여 가려주는 것이 없게 될 것으로, 이 하나만 가지고도 감히 경솔하게 쓰자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나는 옳고 그르고 간에 이곳을 쓰고자 한다. 바깥의 의논들은 어느 곳을 쓰고자 하는가?” 하자, 회계하기를, “지금 전교하신 뜻을 가지고 반복해서 논의하였는데 박상의는 쓸 만하다고 하였고 송윤(宋峯)의 의견은 교하현의 뒷산이 쓸만하다고 하였으며, 김덕원(金德遠)과 김여겸(金汝堅)은 신평을 쓰자고 했습니다. 술관들의 의견은 별도로 기록하여 아뢸 것이며, 성영과 정구는 각자 계달할 것입니다” 하였다.

□ 산릉 정하기를 재촉하는 선조

<선조 33년(1600) 10월 10일> 김시현(金時獻)에게 전교하기를 “산릉의 일이 하루가 다급한데 왜 이리 지연시키는가? 교하현의 이문통이 점찍은 산을 쓸 일로 승전을 받들고, 다른 여러 일들은 살펴하도록 하라” 하였다.

□ 새로 잡은 묘자리에 이미 사대부들의 묘가 있다

<선조 33년(1600) 10월 10일> 이경함(李慶涵)에게 전교하기를 “교하현의 새로 잡은 곳에 세력 있는 사대부들의 분묘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누구누구의 것이 있는가? 빠짐없이 서계할 것을 감사에게 하서하도록 하라.” 상께서 여러 신료들이 굳이 쓰지 말자고 고집하는 것을 의심한 까닭에 이런 전교를 내린 것이다. 이에 삼공이 모두 별별 떨며 그곳을 쓸 만한 곳이라고 말하였으니, 장차 저런 정승들을 어디에 쓰겠는가.

□ 능자리로 이호민네 묘산을 추천하는 선조

<선조 33년(1600) 10월 11일> 이항복·이현국·김명원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이번 재차 살펴볼 때 박상의가 마침 한 자리를 보고서는 말하기를 ‘형세가 갖추어진 듯하고 조종수(朝宗水)도 매우 좋다’ 하였는데, 신들이 가 살펴보았더니 저현에 비해 형세가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이 혈(穴)을 쓰면 팬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풍양(豐壤)의 이호민(李好閔)네 묘산이 비록 이문통이 ‘꽃이 피었다가 일찍 시든다[花發早凋]’고 폄하기는 했으나 대단한 흥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이 두 곳이 그래도 가려 쓸 만한 곳이기에 감히 재가를 품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박상의가 무엇을 안단 말인가. 다른 사람의 서계가 있거든 아울러 들이도록 하라. 그곳은 교하현 뒷산과 한 국내(局內)인가?” 하였다.

회계하기를, “이번에 새로 얻은 혈은 현(縣)의 뒷산 백호의 지맥으로 자리가 된 곳은 조금 다르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별로 멀지 않습니다” 하였다. 이에 비망기에 친히 써서 답하기를, “지금 여러 술관들의 의론을 듣건대, 교하창(交河倉)의 뒷산은 모두들 불길하다고 하였다. 또 듣건대, 정혈(正穴)이 백호에 가까이 근접하여 한편으로 치우치고 좁다고 하니

나라의 장지로 쓰기에는 합당치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문통이 써 올린 서장을 보면, 그곳은 ‘큰이들이 끊어질 곳이니 왕을 모실 곳이 어찌 이처럼 쓸쓸해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이곳도 똑같은 한 국내이니 이같은 곳에다가는 결코 쓸 수 없다. 신평(新坪)은 비단 박자우·박상의가 흥하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섭정국은 중국 사람 중에서도 비교적 술법이 높은 사람인 듯한데 신평을 일러 ‘죽은 뱀장어가 칼등에 걸쳐 있는 형상이요, 우장혈(右長穴)은 겨우 자식 손자는 둘 만한 곳이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손자 이후는 알 만한 것이다. 이문통은 우장혈은 흥한 곳이라며 보아 주기를 청해도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다고 한다.

가차리는 혈도(穴道)가 낮고 합경도를 오가는 큰 길가이니 어찌 군부(君父)를 길가에 장사 지낼 수 있겠는가. 도로를 막아버리고자 한 것은 매우 앞을 내다보지 못한 생각이다. 천만년 후까지도 조선이란 나라가 존재해 그것을 막겠는가. 이 두 곳은 모두 결코 쓸 수 없다. 교하도 이렇고 다른 곳도 합당한 곳이 없으며, 그 나머지 요즈음 살펴본 곳들도 사람에 비유하자면 변변치 않은 곳들이니, 어찌 족히 취하겠는가.

이제 남은 것은 단지 이호민네 묘산인데, 그곳은 쌍분(雙墳)을 할 수 없고, ‘꽃이 피었다가 일찍 시드는 형국으로서 장사를 지낸 뒤에 국가의 재정이 마르고 백성들은 곤궁해진다’는 설이 있다 하니, 역시 길지는 아니다. 또 들헌대, 그 곁에 두 개의 혈이 있는데 민씨(閔氏) 집안의 산은 장생수파(長生水破)라서 우리나라에서 꺼리는 바이고, 봉성군(鳳城君)의 산은 문통이 흥하다 하였다니, 훗날이라도 이 두 곳은 모두 쓰기가 어렵다. 지금 비록 그곳을 쓴다 하여도 단지 뒷자리를 하나밖에 만들 수가 없다. 사세가 이 지경이니 나도 또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모르겠다. 다섯 달 만에 장사지내는 것은 예이다. 그런데 기한이 지나도록 장례를 지내지 못하고 있으니, 무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아쉬운 대로 이

호민네 묘산으로 자리를 정해 여러 가지 일들을 속히 거행했으면 하는 데 어떻겠는가?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회계하기를, “하교를 받들고 신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였더니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현에 대해 신들이 논한 바는 단지 우리나라에 유래하는 옛 법식에 의거해 한 것일 뿐이고 중국 사람들의 묘처(妙處)는 우리나라의 평범한 식견으로는 미치지 못할 바입니다. 섭정국이 이미 들 어왔으니 그로 하여금 의당 가서 살펴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의 의견이 이문통과 서로 부합된다면 다행스럽게도 신들이 국가의 장지로 정하자고 한 말도 근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급히 정국에서 청해 내일 가서 살펴보게 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이는 위험한 방법이다. 섭정국이 분명하게 말해줄 것인지 의 여부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곳을 섭이 장차 벼릴지라도 아뢴 대로 시험삼아 보여 보아라. 다만 많은 중국 사람을 접촉해 본 경험에 의하면 시기를 잘하니, 문통이 잡은 곳을 모르도록 해야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박하니 의당 잘 감추어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 능을 만드는 데 9,000명이 동원된다

<선조 33년(1600) 10월 17일> 인산도감(因山都監)이 아뢰기를, “새로 잡은 교하현 저현은 보토하는 역사(役事)가 신평보다 10배나 되며, 또한 올해의 60갑자와 상극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지(冬至)를 지나고서야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일이 많지 않아 더욱 군박한 데다가 대부석(大浮石)을 조계(曹溪)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교하와는 거의 120리나 되어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인력이 신평에 비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래 정한 5천 명 외에 병조로 하여금 4천 명을 더 뽑아 보내 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대행왕비의 지문

<중종 10년(1515) 3월 23일> 대행왕비 지문(誌文)은 다음과 같다.

“후(后)의 성인 윤씨(尹氏)의 세계(世系)는 파주에서 나시어 연원이 멀고 현달하였다. 시조 신달(莘達)은 고려 태조조에 훈공을 세워 이름이 났다. 4세를 지나 태보문하시중문숙공(太保門下侍中文肅公) 관(瓘)에 이르러 여진(女眞)을 평정하고 공을 세워 더욱 그 문중을 떨쳤으며, 후로 잇달은 관작이 넘쳐흘러 크게 높아졌다. 왕부(王父) 번(璠)은 시중의 후손으로 중영의정이며, 시호는 정정(貞靖)으로 우리 성모(聖母) 정희왕후(貞熹王后)를 낳아 광릉(光陵)과 짹하였으며, 성묘(成廟)를 옹립하여 재차 종사(宗社)를 평안히 하였다. 공조판서겸 보문각대제학(工曹判書兼寶文閣大提學)으로 시호 성안(成安)인 윤사균(尹士均)은 증조부로서 정난좌의공신(靖難左翼功臣)에 책봉되고 영평군(鈴平君)에 봉하여졌으며 후에 좌찬성으로 증직되었다. 그 아들 보(甫)는 습작(襲爵)으로 파릉군(坡陵君)이 되고, 중의정부 영의정이 되었으니, 모두 국구(國舅)의 관질(官秩)에 의하여 추후로 선조들의 사당에 미친 것이다. 국구 여필(汝弼)은 정국공신(靖國功臣)에 녹훈되고 승록대부영돈녕부사 파원부원군(崇祿大夫領敦寧府事坡原府院君)이 되었다. 부인 박씨는 순천(順天)의 귀한 집안으로서, 증우의정인 평양부원군(平陽府院君) 박중선(朴仲善)의 딸이며, 추후로 순천부부인(順天府夫人)으로 봉하여졌다. 내외 집안이 공로가 많아 이런 사록(沙麓)의 상서를 열었다.

성종 22년(1491) 7월 경진일에 후(后)는 호현방(好賢坊) 사제(私第)에서 나셨다. 겨우 8세 때에 황비(皇妣)를 여의었는데, 애훼(哀毀)하여 복상[持服]하기를 한결같이 성인처럼 하니, 그 외종모(外從母) 승평부인(昇平夫人)이 듣고서 비범한 아이라 하며 거두어 길렀다. 아름다운 규범으로 가르치고 『소학』·『내훈』의 여러 편을 가르쳤는데, 드디어 경서와 사기를

통달하여 크게 행신에 드러났다.

중종 즉위년(1506)가을에 성상이 즉위하시고, 뽑혀 궁에 들어가 숙의(淑儀)가 되었는데 공경하고 유순하며, 대궐 안의 일을 잘 거행하니 궁중에서 모두 칭송하였다. … 시호를 올려 장경(章敬)이라 하고, 휘호(徽號)를 숙신명혜(淑慎明惠)라 하였다. 현궁(玄宮)을 광주읍(廣州邑) 서쪽 현릉(獻陵)의 오른쪽 건좌(乾坐) 손향(巽向) 언덕에 만들고, 윤4월 신유일에 장사를 지내고 능호를 희릉이라 하니, 후의 경사를 넓힌다는 뜻이다”[직제학(直提學) 김안로(金安老)가 지었다].

□ 친히 희릉에 가고 싶은 왕과 말리는 신하

<중종 25년(1530) 8월 23일> 삼공 및 예조에 전교하기를, “산릉(山陵)을 친히 살피는 것이 예문에는 없는 일이지만 옛 사적에는 있었고 또한 조종조에도 있었던 일이므로, 내가 친히 살피고 싶은데 해도 되겠는가?” 하였다. 삼공 및 예조가 아뢰기를, “세종조에는 형편에 따라 친히 살피신 일이 있었지만 성종조에는 승지를 보내 살피셨습니다. 이번은 그때와는 다르니 아랫사람들을 보내 살펴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산릉으로 내려가신 다음에 친히 가서 제사하는 것이 곧 임금이 하는 상례의 일이다. 그러나 산릉을 친히 살피는 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옛적에도 그렇게 한 분이 있기 때문에 나 역시 그렇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삼공 및 예조가 아뢰기를, “상께서 친히 살피시고자 하시는 것은 정이 한없어 그러시는 것이지만, 유사(有司)로 하여금 보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문에 있는 일들도 오히려 다 거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왕들도 혹 간심을 거행하지 못한 적이 있는데, 어찌 친히 살피시려고만 하십니까? 신들의 생각은 모두 온당치 못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

교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지문(誌文)을 어떻게 하려는가. 행적(行迹)을 보지 않아도 오히려 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행적을 보아야 되겠는가?” 하였다. 삼공 및 예조가 아뢰기를, “지문은 이미 심사순(沈思順)으로 하여금 짓게 했습니다. 다만 행적을 보지 못했으므로 시호를 의논할 때는 부득이 의법(懿範)과 선행(善行)을 안 다음에 해야 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조금 있다 비망기(備忘記)를 예조에 내리며 이르기를, “대행왕대비(大行王大妃)께서 생존하셨을 적에 언문(諺文)으로 써 놓은 것을, 내가 지금 황망하고 총총하여 대략만 쓴 것이다” 하였다.

그 글은 다음과 같다. “자순왕대비(慈順王大妃) 윤씨는 파주인(坡州人)이다. 아버지 윤호(尹壕)가 신창현감(新昌縣監)으로 있을 때인 임오년(1462) 6월 무자일에 그 고을 관아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창(昌)자를 가지 고 창년(昌年)이라고 이름을 지었었다. … 나이 12살이 되던 계사년(1473) 6월에 숙의(淑儀)로 뽑혀 들어왔는데 … 기해년(1479)에 옹주를 냉으셨고 경신년(1500) 10월에 왕비로 책봉되셨는데, 성품이 인자하고 은혜로웠으며 총명하고 민첩하여 널리 배워 문견(聞見)이 많으셨다. 성종 섬기기를 소심(小心)하게 날마다 새롭게 하고 조금도 질투하는 일이 없었으며, 모든 비빈(妃嬪)들의 자녀를 어루만져 돌보기를 소생처럼 하여 시종(始終) 간격이 없게 하였으며, 위로는 대비께 효도하고 아래로는 식구들을 무육하여, 비록 옛적의 왕후라 하더라도 더할 수 없이 하였다. … 을사년(1485) 11월에 아홉 달 만에 공주가 출생하므로 궁중(宮中)이 깜짝 놀랐었고, 무신년(1488) 3월에 대군(大君)[곧 今上임]이 출생하였고 경술년(1490) 11월에 공주가 출생하였으며, 정미년(1487) 2월과 계축년(1493) 5월에는 본가(本家)에 행행하여 헌수(獻壽)하셨는데, 세자가 세자빈과 거

가(車駕)를 호위하고 잔치에 가게 되므로 사람들이 모두 경사롭게 여겼다. 임자년(1492) 5월에는 창덕궁(昌德宮) 금원(禁苑)에서 친잠(親蠶)하시었다.

연산군이 일찍 자모(慈母)를 잃게 되어서는 대비께서 어루만져 기르시 되 소생에게보다도 배나 하시므로, 안팎이 모두 칭찬하고 감탄하여 마지 않았다. 불행히 갑인년 12일에 성종께서 승하하시자 대비께서 통곡하고 여러 날을 먹지 않으셨는데, 이로 인해 병이 나 거의 위독하게 되니 소혜 왕후께서 갖가지로 돌보아 치료하셨었다.

… 갑자년(1504) 4월에는 소혜왕후께서 흥서(薨逝)하시므로 애통이 망극하셨는데, 연산군이 단상(短喪)하려고 했었다. 대비께서 옛 예법에 의거하여 분부하시기를 ‘삼년복은 천자(天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똑 같은 천하의 공통된 상사인데 어찌 단상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감히 따르지 못하겠다’ 하시자, 연산군이 발끈 노하면서 ‘부인은 삼종(三從)의 의리가 있는 법인데, 시왕(時王)의 법을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는가?’고 했었다. 대비께서 마음에는 크게 한스러웠지만 억지로 따르기로 하여 앞 당겨 상복을 벗었었고, 좌우 사람들에게 분부하시기를 ‘내가 소혜왕후께 죄를 지었다’ 하시면서 종신토록 유감스럽고 한탄스럽게 여기셨다. … 경인년(1530) 6월에 병이 심하여져 … 8월 22일에 흥서하셨다.”

7. 소령원(昭寧園)

소령원은 영조 어머니 숙빈최씨(淑嬪崔氏)의 원소(園所)로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7에 자리잡고 있다. 숙빈최씨는 최효원(崔孝元)의 딸로 1670년(현종 11) 태어나 7 세에 입궁하여 숙종의 후궁이 되었다. 1694년(숙종 20) 창덕궁에서 영조를 낳았으며



소령원(사적 제358호)

1718년(숙종 44) 춘추 49세로 돌아가 그해 5월 12일 당시 양주땅이었던 지금의 광탄면 영장리에 장사지냈다. 영조는 1725년(영조 1) 어머니를 위해 육상묘(毓祥廟) 현 서울 종로구 궁정동 1-1 七宮를 건립해 어머니의 신판을 봉안하고 그 옆에 여막을 만들게 하였다. 처음에는 소령묘로 불렸으나 1753년 육상묘를 육상궁으로 개칭하면서 원으로 승격시켰다. 수복방은 조선시대 원소 중 소령원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다. 진입로 초입에는 숙빈최씨의 신도비가 보호각에 보호되고 있다(소령은 숙빈최씨의 호).

□ 마산의 화평옹주 묘를 둘러보고 소령묘에 이르다

<영조 25년(1749) 2월 11일> 제례를 마친 뒤 마산(馬山) 화평옹주(和平翁主)의 묘를 거쳐 낮에 파주에서 머무른 뒤 해질 무렵 소령묘(昭寧墓)에 이르렀다.

□ 소령원 수봉관을 파면하다

<영조 36년(1760) 8월 15일> 소령원 수봉관(守奉官)을 먼저 파면한 뒤에 나문(拿門)하고, 예조당상(禮曹堂上)을 감봉하라고 명하였다. 처음에

수봉관 임찬주(任贊周)가 가파현(加波峴)에 나무 베는 일로써 예조에 보고하니, 판당(判堂) 한익모(韓翼謨)가 전례에 따라 제송(題送)한 때문에 이 명이 있었다.

□ 임금이 소령원의 사초를 다시 입히다

<영조 36년(1760) 10월 1일> 임금이 소령원에 나아갔다가 육상궁(毓祥宮)에 들러 참배하였다. 이에 앞서 소령원에 충재(蟲災)가 있어서 사초(莎草)가 모두 말랐기 때문에, 이때에 이르러 거동하여 친히 다시 사초를 고쳐 입혔다. 임금이 융복(戎服 : 철릭과 주립으로 된 옛 군복의 하나)을 갖추고 원소(園所)에 나아가서 봉심(奉審)하고 대신(大臣)과 예조·호조·공조 판서로 하여금 같이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 임금이 직접 향을 받다

<영조 43년(1767) 7월 13일> 임금이 숭정전 뜰에서 소령원에 쓸 향을 경건히 맞이하였다.

□ 임금이 직접 향을 전하다

<영조 43년(1767) 7월 17일> 임금이 직접 소령원에 향을 전하였다.

□ 소령원에 제사를 지내고 능원관을 승진시키다

<영조 46년(1770) 9월 2일> 임금이 소령원에 나아가 친히 제사를 지내고, 능원관(陵園官)을 승진시키고, 차등 있게 상을 내렸다.

□ 영남의 상민이 소령원을 능으로 봉하기를 청하다

<영조 50년(1774) 1월 22일> 거창유생(居昌儒生) 김중일(金重鎰) 등이

상소하여 숙종의 존호(尊號)를 올리고 소령원을 능(陵)으로 봉하기를 청하자 임금이 불러들여 그로 하여금 잘 모르는 구절을 읽도록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 정성이 있었다면, 어찌 이 무리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하도록 하였겠는가? 이 일은 마땅히 엄중히 처단해야 할 것이나, 작은 일이 커질까 염려스러우니 그에게 일정기간 과거를 못 보도록” 하고,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즉시 강교(江郊)로 축출하고 그 상소는 사고(史庫)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튿날 한성부로 하여금 호적을 상고해 보니, 그는 곧 영남의 상민(常民)이었다.

□ 팔도 유생 남궁옥 등이 상소하여 소령원의 추승을 청하다

<영조 50년(1774) 8월 12일> 팔도 유생 남궁옥(南宮鍾) 등이 상소하여 소령원을 추승(追崇)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소견하여 비답을 내렸으나 의견을 따르지는 않았다.

□ 가을 능침 전알시 소령원에 배알하고자 하다

<정조 2년(1778) 8월 1일> 임금이 경연과 관계하는 관원[筵官]들에게 하유하기를, “금년은 곧 소령원의 기일의 회갑(回甲)이 되는 해이다. 선왕께서는 매양 무술(戊戌)의 간지(干支)로써 추모하였었다. 금년 가을 능침에 전알한 뒤에 마땅히 소령원에 들러 배알하겠다. 외읍(外邑)에서 밤에 왕이 거동시 길 양쪽에 헛불을 쭉 밝히는 것이 폐단이 많다고 하니, 날이 밝을 때에 궁에서 나가 능침에 전알하고 고양(高陽)에서 유숙하겠다. 그리고 이튿날 소령원에 배알한 다음 다시 고양에서 유숙하고, 그 다음날 환궁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 능행에 주정을 없도록 명하다

<정조 2년(1778) 8월 3일> 능행(陵行) 때 검암(黔巖)에서의 주정(晝停)을 없애도록 명하였다. 능소(陵所)에서 고양에 이르기까지와 고양에서 소령원에 나아갈 때에도 또한 선조 19년(1586)의 전례에 의거하여 주정을 진설하지 말게 하였으며, 환궁할 때 양철평(梁鐵坪)에서 주정하게 하였다.

□ 정조가 소령원을 배알하다

<정조 2년(1778) 8월 20일> 소령원에 배알하고 제사를 지냈으며 수길원(綏吉園)에 들러 배알하였다.

□ 소령원의 요를 훔쳐 간 두산

<정조 2년(1778) 11월 2일> 형조에서 소령원의 요를 훔쳐간 죄인 두산(斗山)에게 부대시의 형벌을 적용할 것을 아뢰니, 하교하기를, “소령원의 신어상(神御床)의 요를 훔친 죄인은 해당부서에서는 단지 대사(大祀) 때 신어물(神御物)을 훔친 율만 인용하고, 중사(中祀)도 또한 같다고 한 율문은 인용하지 않았다. 나는 당초에 육상궁은 이미 중사이니 원(園)에 만 대사의 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여겼었는데, 아침에 형조당상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당초에 조율(照律)한 문서에서 아래에 있는 한 단락을 빠뜨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해당 당상은 이미 문비(問備 : 죄과가 있는 벼슬아치에 대해 사헌부의 관원이 서면으로 심문하는 말에 답변하는 일)하도록 명하였고, 원래의 문안(文案)에 이를 첨서(添書) 한 뒤에 즉시 형을 집행하게 했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건대, 원범 두산이 신어상의 육석을 훔친 그 의도가 수복(守僕)을 해치려는 계책에 있었다면 사정(事情)에 미루어 반드시 사람이 없는 곳에서 형적을 없앴어

야 하는 것이니, 수복의 방 부엌 아궁이에다 불태운 것은 부당한 듯하였다. 또 더구나 그가 사람들이 쉽사리 알 수 있는 일을 조금도 두려워하여 돌아보지 않고 하였다면, 또한 반드시 악한 짓을 함께 한 사람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이는 부대시의 율에 관계된 것인데, 이제 이렇게 경솔하게 결단하여 뒤에 억울한 단서가 드러나게 하는 것은 형벌을 신중히 하는 본의(本意)가 아닌 것이다. 전자에 육상궁의 장막을 훔친 변고가 있었을 적에 현창(玄種)의 일 때문에 선대왕(先大王)께서 매양 한탄하여 애석해 하는 하교가 있었던 것을 내가 들었다. 이런 뜻에 의거하여 정법 죄인 두 산은 결안(結案)을 시행하지 말고 다시 의견을 내어 낱낱이 밝히되 만일 실정을 알아내지 못하게 되면 형신(刑訊)을 가하여 자복을 받아 아뢰도록 하라” 하였는데, 두산이 곧 사형당하였다.

□ 정조가 소령원을 배알하다

<정조 054 부록 정조대왕 행장> 11년 … 가을에는 명릉(明陵)과 소령원을 배알하고 기임각(祈穏閣)에 나아가 수획 광경을 구경한 다음 술을 내려 농부들 노고를 치하였다. 수길원을 또 배알하고 돌아오는 길에 고양에 머물러 그곳 부로들을 불러 접견한 다음 양주·고양 두 읍의 묵은 적곡을 특별 감면하였다.

□ 원행시에 왕세자 의식을 소령원 간인식의 예에 따르도록 하다

<순조 27년(1827) 3월 5일> 예조의 계언(啓言)으로 인하여 원행(園幸) 할 때에 왕세자가 행례(行禮)하는 의식 절차는 소령원 간인식(刊印式) : 판각하거나 조판하여 출판물을 인쇄하는 것)의 예(例)에 의거하도록 명하였다. 능행(陵行)에 있어서 능을 배알할 때에 왕세자의 배위(拜位)는 북향으로 하되 홍진문(紅箭門) 밖에 설치하고, 행제(行祭)할 때에는 왕세자

의 배위를 서향으로 하되 동계하(東階下)에 설치한다. 소령원 식의 예에는 전배(展拜)할 때에 왕세자 배위를 전하(殿下) 판위(版位)의 뒤쪽 가까운 동쪽에서 북향으로 설치하고 행제할 때에는 왕세자 배위를 전하의 판위 뒤쪽 가까운 동쪽에서 북향으로 설치하였는데 능(陵)과 원(園)을 차별하여 의식을 달리하였기 때문이었다.

□ 정조대왕 행장

<정조 054 부록> 을미년(1775) 8월에 하교하기를, “선왕의 부묘례(祔廟禮) 3년상을 마치고 신주를 사당으로 옮겨 모시는 의식)를 거행할 날이 머지않아 왕대비께도 책례를 올려야 할텐데 유독 글자 한 자의 칭호도 올릴 수 없단 말인가. … 그전 역사를 보아도 황자나 공주에게 호(號)를 주는 규정이 있었고, 본조(本朝)로만 밀하더라도 순강(順康), 소령(昭寧)으로 가호(加號)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내 마음으로 옮다고 생각되는 길을 찾아 그대들과 논의하여 실현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하여, 이에 혜경궁(惠慶宮)으로 호를 올리기로 정하였던 것이다.

파주실록 연표

- 태조 2년(1393) 11월 6일 봉성현을 서원군으로 승격시키다
- 태조 3년(1394) 6월 23일 경기도를 좌·우도로 나누다
- 태조 6년(1397) 8월 9일 파주지역에 천동과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다
- 태종 12년(1412) 4월 20일 파주지역에 비가 내리고 우뢰와 번개가 치다
- 태종 13년(1413) 2월 5일 임금이 임진강 나루에서 거북선과 왜선으로 꾸민 배
가 해전연습하는 것을 보다
- 태종 15년(1415) 7월 7일 요언을 지은 교하 사람 김문영의 죄를 한 등 감하다
- 태종 15년(1415) 9월 24일 태조가 교하에 행차하다
- 태종 15년(1415) 9월 25일 파주지역에 번개가 치고 우박과 유성이 떨어지다
- 태종 16년(1416) 5월 7일 진흘에 대해 감사드리기 위해 교하의 노인들이 대궐
로 오다
- 태종 16년(1416) 11월 9일 이방간과 내통한 청원군 심종을 교하에 안치하다
- 태종 17년(1417) 5월 26일 전라도 조운선이 교하의 오도성 아래에서 침몰하다
- 태종 18년(1418) 5월 11일 황희가 교하로 돌아가다
- 태종 18년(1418) 5월 28일 황희를 남원부에 안치하다
- 세종 1년(1419) 7월 23일 한평군 조연이 교하에 벼가 여물지 않았다고 계하다
- 세종 5년(1423) 2월 22일 교하 등지의 환곡을 미두로 지급하게 하다
- 세종 6년(1424) 12월 22일 살인한 교하죄수 구질금을 참형에 처하다
- 세종 7년(1425) 2월 2일 교하의 서원이 이름을 숨기고 교하수령을 고발하다

- 세종 8년(1428) 1월 17일 박도(朴燭)가 교하현감에 부임하다
세종 9년(1427) 6월 25일 교하 사람 전 도총제 노필의 졸기
세종 10년(1428) 9월 5일 조만안이 교하현감 재직시 남용한 재물을 소급하여
징수하다
- 세종 13년(1431) 4월 21일 교하현감이 황희에게 땅을 주다
세종 13년(1431) 5월 22일 교하현감이 명화적 금음마를 의금부에 기두다
세종 13년(1431) 9월 8일 세종이 황희 등 고금 인물을 평론하게 하다
세종 13년(1431) 10월 28일 예조에서 교하의 효자·절부에 대한 포상을 주청하다
세종 13년(1431) 12월 19일 허눌(許訥)이 교하현감에 부임하다
세종 17년(1435) 7월 22일 교하현을 고양과 원평에 나누어 소속시킬 것을 건
의하다
- 세종 17년(1435) 10월 1일 이평(李平)이 교하현감에 부임하다
세종 17년(1435) 12월 17일 교하현을 원평에 소속시키다
세종 19년(1437) 11월 29일 교하의 농부가 바람에 견디는 볍씨를 말하다
세종 21년(1439) 10월 23일 절도범 교하 관노 김선삼을 사형에서 감형시키다
세종 23년(1441) 7월 17일 허완(許完)이 교하현감에 부임하다
세종 23년(1441) 8월 20일 황보신의 속공 과전을 황희의 과전으로 바꾸어주다
세종 25년(1443) 5월 19일 교하 사람이 벼락 맞다
세종 27년(1445) 7월 13일 교하의 공수위전을 소로로 정하다
세종 28년(1446) 4월 19일 교하현감 이연손이 환곡미를 착복하다
세종 30년(1448) 10월 16일 황희가 유행병이 성한 교하를 구료할 것을 청하다
문종 즉위년(1450) 10월 10일 교하백성이 농번기에도 석회 굽는 데 동원되다
문종 1년(1451) 3월 17일 교하현의 석회를 쓸 일이 있으면 임시로 만들게 하다
문종 1년(1451) 4월 1일 악병이 성행하는 교하에 의원과 약재를 보내다
문종 1년(1451) 7월 20일 활민원을 수리하여 교하 등의 악병 치료소로 사용할
것을 건의하다
- 문종 1년(1451) 9월 5일 임금이 교하 등의 악병을 구료하는 방법을 강구하다
문종 1년(1451) 9월 15일 원평·교하 등지의 전염병 치료를 위해 수륙재를 열다
문종 1년(1451) 9월 19일 양반들이 전염병 치료를 위한 수륙재를 반대하다

문종 1년(1451) 9월 20일 교하 등지의 악병이 전염된 곳에서 제를 올리다
문종 1년(1451) 11월 5일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토담집에 모아 치료하게 하다
단종 즉위년(1452) 6월 28일 원평·교하에 전염병이 퍼지다
단종 2년(1454) 3월 9일 청렴결백한 교하현감 이계기를 3등을 뛰어 가자하다
단종 2년(1454) 3월 11일 조효문이 이계기를 3등을 뛰어 가자한 것은 옳지 못
 하다고 아뢰다

세조 1년(1455) 9월 11일 교하를 우익에 편성하다
세조 3년(1457) 10월 1일 왕이 법을 남첨한 교하현감 민충원을 편들다
세조 3년(1457) 10월 20일 교하가 양주진에 속하다
세조 5년(1459) 10월 2일 자성왕비의 고향인 원평부를 승격, 파주목으로 삼다
세조 6년(1460) 10월 5일 대가가 파주에 머물러 파주목사를 겸찰하다
세조 6년(1460) 11월 2일 임금이 파주목 행궁에서 유숙하다
세조 8년(1462) 1월 4일 파주에 있는 강희백 어미 묘의 길흉을 알아보게 하다
세조 8년(1462) 2월 21일 장순왕세자빈을 파주 보시동에 장사지내고 공릉이라
 하다

세조 8년(1462) 2월 25일 장순빈을 파주에 장사지내다
세조 8년(1462) 3월 9일 산전이 많은 파주의 세를 해마다 조사하여 면해주다
세조 9년(1463) 6월 14일 서울의 군사로 파주 등지의 강도를 잡게 하다
세조 10년(1464) 12월 12일 윤필상이 파주에 가 조부모를 근친하는 것을 청하다
세조 12년(1466) 7월 5일 정부와 함께 남편을 살해한 파주 여인 고미를 벌주다
세조 12년(1466) 7월 12일 군 무기를 신청하다
세조 12년(1466) 8월 11일 전파주목사 윤훈이 노비를 때려죽이다
세조 13년(1467) 7월 27일 파주사람이 화살을 맞고도 살아 돌아오다
세조 13년(1467) 11월 26일 소년가장 철동에게 잡역을 지운 현감을 국문하다
세조 14년(1468) 5월 7일 명의 사신을 위해 파주 등지의 재인과 백정을 부르다
예종 1년(1469) 2월 16일 훈련을 평계로 사냥을 시킨다
성종 1년(1470) 2월 7일 백성들의 고충을 자세하게 말한 박근을 교하현감에
 제수하다
성종 1년(1470) 2월 11일 이조판서 한계미가 파직경험이 있는 박근에게 교하

현감은 무리라고 보고하다

성종 1년(1470) 2월 20일 박근이 하직하자 대왕대비가 선정을 당부하다

성종 2년(1471) 6월 27일 박근이 현감의 근무성적이 나빠 파출되자 읍인들이 반대하다

성종 2년(1471) 7월 2일 전교하현감 박근을 그대로 근무하게 하다

성종 2년(1471) 7월 5일 선정을 베푼 전교하현감 박근을 경직에 서용하기 위해 행적을 살피다

성종 3년(1472) 7월 29일 호조에서 교하 등에 풍수해가 심하다고 아뢰다

성종 4년(1473) 7월 22일 경기관찰사가 교하에 병충해가 많다고 보고하다

성종 4년(1473) 9월 26일 교하현감 하맹순이 체임시 우등을 약속 받다

성종 5년(1474) 4월 14일 교하의 관노로 정속된 박석산(朴石山)을 방면하다

성종 5년(1474) 4월 17일 파주에 도년으로 정역한 이숙무·이차중과, 파주에 총군한 죄산 등을 방면하다

성종 5년(1474) 6월 7일 공혜왕후를 파주에 장사지내고 순릉이라 하다

성종 6년(1475) 2월 14일 파주에 충군된 죄산장(崔山長) 등을 방면하다.

성종 6년(1475) 10월 24일 능이 많아 곡식이 부족한 파주의 군자미 중 3분의 2는 벼로 받다

성종 7년(1476) 1월 21일 파주에 정역된 노계산(盧戒山) 등을 방면하다

성종 7년(1476) 11월 24일 파주에 정속된 자화동(자火同) 등을 놓아주다

성종 8년(1477) 4월 17일 송선충(宋善忠)이 교하현감에 부임하다

성종 8년(1477) 12월 25일 보동을 파주의 관비(官婢)로 정속시키도록 명하다

성종 9년(1478) 9월 24일 두 번 도둑질한 파수 죄인 김효동을 교수형에 처하다

성종 10년(1479) 10월 6일 임금이 파주에 거동하였는데 날씨가 나빠 군대가 길을 잊고 대오를 이탈하다

성종 10년(1479) 10월 12일 사신이 서둘러 벽제역을 지나가 우의정 홍옹 등이 선위예를 행하지 못하다

성종 11년(1480) 1월 24일 교하의 노비가 양인을 살해하다

성종 12년(1481) 1월 16일 역적에 연좌된 이계량의 가솔들을 교하에 안치하다

성종 13년(1482) 7월 16일 파주에 정속되었던 이정을 석방하다

성종 14년(1483) 9월 29일 병중인 명나라 사신을 모화관에서 배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논의하다

성종 14년(1483) 10월 3일 중국 부사가 파주에 이르러 상사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전하다

성종 15년(1484) 8월 19일 파주 출신 서녀를 놓고 재상끼리 첨 써움하다

성종 15년(1484) 8월 28일 첨씨움을 한 재상의 벼슬을 빼앗다

성종 15년(1484) 11월 28일 첨씨움을 한 재상을 외방에 부처하게 하다

성종 17년(1486) 1월 20일 파주목사 이윤의 불법에 대해 국문을 전교하다

성종 19년(1488) 1월 23일 이의무를 교하에 보내어 수령의 부정을 조사하다

성종 19년(1488) 1월 25일 파주 백성들이 세거두는 것을 보류해 달라고 조르다

성종 19년(1488) 3월 12일 파주에서 중국사신과 조서를 맞이할 때 절차문제에 대해 논하다

성종 19년(1488) 6월 29일 정문창(鄭文昌)이 파주목사에 부임하다

성종 20년(1489) 12월 17일 교하 등지의 수령의 불법을 아뢰다

성종 24년(1493) 5월 28일 파주가 조잔하여 관속이 부족하자 무시함으로 뽑게 하다

성종 24년(1493) 10월 29일 농사가 잘 되지 못한 교하의 공신전, 별사전, 직전, 사전의 세를 받지 않다

성종 25년(1494) 6월 19일 파주목사가 평계를 대고 제사에 불참하다

연산군 5년(1499) 8월 19일 우박 피해를 입은 파주 등지에 강무 중단을 청하다

연산군 5년(1499) 8월 19일 파주지역에 밤틀만한 우박으로 벼 등이 손상되다

연산군 6년(1500) 5월 5일 파주지역에 우박이 내리다

연산군 6년(1500) 8월 14일 늙은 파주목사 김원신을 바꾸도록 하다

연산군 8년(1502) 11월 3일 실농한 파주·장단의 조세를 창에 바치게 하다

연산군 9년(1503) 8월 23일 파주지역에 지진이 일어나다

연산군 10년(1504) 8월 29일 금표 안에 들어간 고양의 군곡을 파주로 옮기다

연산군 10년(1504) 11월 9일 파주 보곡현까지 금표 안에 들다

연산군 11년(1505) 5월 29일 파주의 금표 밖으로 남은 땅과 백성을 이웃 고을에 불이다

연산군11년(1505) 7월 1일 금표 안에 들어가는 자를 죽여 길가에 버리게 하다
연산군11년(1505) 7월 22일 금표 안 무덤에 제사지내려 들어가도록 허가하다
연산군12년(1506) 6월 2일 동도검찰사 등에게 금표 안의 일을 검찰하도록 하다
중종 4년(1509) 4월 12일 전파주목사 여윤철이 죽자 파주백성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여 영구 앞에서 제사지내다
중종 4년(1509) 6월 26일 박영창은 파주수령에 적합지 않다고 대간이 보고하다
중종 4년(1509) 10월 5일 임금이 파주 등지의 도적을 잡으라고 명하다
중종 5년(1510) 8월 14일 김양균이 나이가 많아 파주목사로 부임하지 못하다
중종 5년(1510) 10월 12일 파주아전들을 괴롭힌 남섭원을 벌주라는 사간원 보고
중종 6년(1511) 4월 25일 파주의 별창이 비다
중종 10년(1515) 9월 21일 파주지역에 지진이 일어나다
중종 10년(1515) 10월 1일 파주지역에 지진이 일어나다
중종 10년(1515) 10월 3일 청나라 사신이 왕래하는 길에 있는 파주 등의 반당을
줄여 달라고 건의하다
중종 10년(1515) 10월 11일 파주지역에 지진이 일어나다
중종 15년(1520) 3월 14일 파주창에 저장된 황두가 적어 소를 기를 수가 없어
경창 황두로 구제해 달라고 청하다
중종 16년(1521) 3월 15일 파주지역에 우박이 내리다
중종 16년(1521) 4월 28일 승지 서후가 파주에 머물고 있는 사신을 찾아가 조선
과 명의 상례 차이를 설명하다
중종 16년(1521) 8월 4일 파주지역에 지진이 일어나다
중종 17년(1522) 6월 15일 사헌부에서 파주목사의 부인 유씨의 투기심에 대해
아뢰다
중종 19년(1524) 5월 13일 파주지역이 충해를 입다
중종 20년(1525) 12월 10일 입거한 사람이 도망쳐 파주목사 양계벽을 파출하다.
중종 21년(1526) 8월 27일 파주지역에 우박이 내리다
중종 24년(1529) 5월 17일 파주지역의 밀·보리·조밭에 해충이 발생하다
중종 25년(1530) 4월 24일 파주목사 채세걸에게 향표리 한 벌을 하사하다
중종 25년(1530) 8월 23일 임금이 친히 희릉에 가고 싶어하나 신하들이 말리다

- 중종 27년(1532) 4월 3일 파주지역에 서리가 내리다
- 중종 27년(1532) 6월 13일 파주목사 공서란이 처남의 집을 노리다
- 중종 29년(1534) 8월 1일 파주 지나는 길에 있는 윤은로의 묘에 치제하도록
전교하다
- 중종 30년(1535) 3월 12일 파주교수 김응벽을 탄핵하다
- 중종 30년(1535) 9월 19일 임금이 파주에 이르러 노인과 효자에게 음식을 내
리다
- 중종 33년(1538) 11월 18일 파주목사 심광언이 정도와 중용으로 송사를 보다
- 중종 36년(1541) 11월 18일 파주지역에 눈이 내고 우레가 치다
- 중종 37년(1542) 5월 6일 경창의 곡식으로 파주 백성을 구휼하다
- 중종 37년(1542) 5월 9일 파주사람 김섬이 불법으로 수행원을 두다
- 중종 37년(1542) 7월 21일 파주지역에 우박과 큰 바람으로 곡식 피해입다
- 중종 37년(1542) 12월 18일 사헌부에서 늙은 파주목사 이희보의 파직을 청하다
- 중종 38년(1543) 11월 23일 조의랑과 김옥이 파주 장부포의 일을 쟁송하다가 양
쪽 모두 부당하여 속공되다
- 중종 39년(1544) 5월 14일 파주목사 안위가 부역을 균등히 하다
- 중종 39년(1544) 5월 17일 안위(安璋)가 파주목사에 포장되다
- 중종 39년(1544) 7월 6일 동궁의 나인 사랑금을 파주에 유배보내다
- 중종 39년(1544) 7월 10일 은대의 배소를 더 면 곳으로 옮기게 하다
- 명종 1년(1546) 5월 23일 파주지역에 지진이 일어나다
- 명종 2년(1547) 6월 7일 치민과 구황을 잘못한 파주목사 안위를 파직하다
- 명종 2년(1547) 6월 20일 이자(李芝)가 파주목사에 부임되다
- 명종 2년(1547) 7월 5일 유숙(柳淑)이 파주목사에 부임하다
- 명종 3년(1548) 1월 3일 관원이 파산부원군 윤지임을 능멸하다
- 명종 3년(1548) 2월 4일 백성들이 파주목사가 돌아가는데 행장을 빼앗다
- 명종 3년(1548) 3년 28일 파주지역에 우박이 내리다
- 명종 10년(1555) 11월 10일 파주지역에 비가 오고 우박과 천둥이 치다
- 명종 11년(1556) 8월 12일 파주지역에 우박이 내리다
- 명종 11년(1556) 9월 13일 파주지역에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리다

- 명종 12년(1557) 4월 18일 파주지역에 보리와 밀의 씨앗이 부족해지다
- 명종 13년(1558) 2월 22일 문례관이 중국 사신과 칙서를 받드는 예에 대해 의
논한 일을 아뢰다
- 명종 15년(1555) 5월 24일 충효하고 우애한 이용수·이순례 등에게 상을 내리다
- 명종 20년(1565) 4월 19일 파주지역에 지진이 일어나 지붕의 기와가 흔들리다
- 명종 22년(1567) 4월 12일 비가 오지 않아 파주지역의 우물이 바짝 마르다
- 선조 즉위년(1567) 10월 15일 파주에 유배된 윤강원을 풀어주다
- 선수 1년(1568) 7월 1일 백인걸이 병을 이유로 파주로 돌아가다
- 선수 4년(1571) 7월 1일 백인걸이 벼슬을 그만두고 파주로 돌아가다
- 선수 7년(1574) 4월 1일 이이가 6개월간 벼슬하고 파주로 낙향하다
- 선조 8년(1575) 10월 16일 임금이 파주로 돌아간 백인걸에게 식물을 내리라고
명하다
- 선조 8년(1575) 10월 25일 이이가 파주에서 학문과 성흔의 등용에 관해 아뢰다
- 선조 11년(1578) 2월 29일 경기감사가 파주에 사는 백인걸에게 식물을 내려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다
- 선조 11년(1578) 4월 15일 백인걸이 식료를 내려준 일을 감사하고 조광조의 문
묘 종사를 청하다
- 선조 11년(1578) 5월 28일 이이가 파주에서 시폐 상소를 올리다
- 선수 12년(1579) 7월 1일 백인걸의 상소를 이이가 윤문하다
- 선수 16년(1583) 6월 1일 이이가 병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다
- 선조 16년(1583) 7월 29일 파주지역에 눈·귀가 넷, 코와 입이 둘, 손과 발이 넷,
자지가 둘인 아이가 태어나다
- 선조 16년(1583) 9월 5일 이이가 파주에서 올린 상소에 대해 임금이 답하다
- 선수 16년(1583) 9월 1일 임금이 벼슬을 사양하는 이이를 안타까워하다
- 선수 17년(1584) 3월 1일 선조가 이이의 장례와 유가족들을 챙기다
- 선수 20년(1587) 3월 1일 진사 조광현이 이이가 무함당한 정상을 상소하다
- 선수 20년(1587) 9월 1일 파주에 머물렀던 전 청양군 심의겸이 출하다
- 선조 20년(1587) 10월 27일 황정식(黃廷式)이 파주목사에서 의자되다
- 선조 20년(1587) 10월 29일 파주목사 노준(盧峻)이 파직되다

- 선수 22년(1589) 10월 1일 정여립이 문하에 드나들었다는 죄로 성혼이 해직되다
선수 22년(1589) 11월 1일 성혼이 소명을 두 번이나 사양하다
선수 25년(1592) 4월 1일 임금의 행차가 날씨가 나빠 늦게 도착하자 파주에서
준비한 수리를 하인들이 먹다.
선수 25년(1592) 5월 1일 이산보와 이항복을 임진에 나아가 주둔하게 하였다
선조 25년(1592) 5월 23일 왜군이 파주와 양주를 왕래하다
선조 25년(1592) 9월 21일 파주등의 의병을 심대의 통제를 받게 하다
선조 26년(1593) 1월 11일 홍가신(洪可臣)이 파주목사에 부임되다
선수 26년(1593) 1월 1일 이여송이 파주에 진군하여 벽제역에서 싸우다가 불리
해지자 개성에 후퇴하다
선조 26년(1593) 1월 30일 파주에 주둔해 있던 적이 경성으로 떠나다
선수 26년(1593) 2월 1일 파주 대홍산성에서 싸우지도 않고 왜군이 물러가다
선수 26년(1593) 2월 1일 적의 기세가 꺼였으나 명나라 군사들이 물러가서 대
적적으로 진공을 할 수 없게 되다
선조 26년(1593) 2월 6일 명군이 벽제에서 패하여 파주로 퇴진하다
선조 26년(1593) 2월 7일 예조에서 파주서 전사한 중국군에 대한 예를 청하다
선조 26년(1593) 2월 10일 명군이 혜음령에서 패하여 동파로 퇴진하다
선조 26년(1593) 2월 16일 접반사 윤근수가 중국군의 진퇴 상황을 아뢰다
선조 26년(1593) 2월 19일 운암원에서 이덕형 등과 중국군의 무기, 군량, 병력
등을 논의하다
선조 26년(1593) 2월 21일 위관이 반적 김덕희 등을 공초한 내용을 아뢰다
선조 26년(1593) 2월 23일 비변사가 파주 전투 결과를 보고하다
선조 26년(1593) 2월 23일 권율이 도성을 버리고 파주로 진을 옮기다
선조 26년(1593) 2월 25일 유성룡이 경성의 포위 상황을 아뢰다
선조 26년(1593) 2월 25일 권율을 파주로 진을 옮기다
선조 26년(1593) 3월 4일 황정조로 굽주린 파주백성들을 먹이다
선수 26년(1593) 4월 1일 경성 주둔 왜장들, 군사를 이끌고 남하하여 해상으로
돌아가다
선조 26년(1593) 4월 20일 왜군이 조공과 강화를 청해오다

선조 26년(1593) 5월 11일 홍가신(洪可臣)이 파주목사에 부임되다
선조 26년(1593) 6월 5일 파주가 왜노에게 침탈당하다
선조 26년(1593) 8월 23일 사헌부에서 파주수령의 자리가 비었다고 보고하다
선조 26년(1593) 9월 2일 대사헌 김옹남이 도성 주변 상황 등을 아뢰다
선조 26년(1593) 10월 3일 중국군의 쇄마 요구로 여러 고율이 어려움을 겪다
선수 27년(1594) 3월 1일 전란 중에 임금이 파주를 지나는데도 나와보지 않은
성흔을 이상하게 여기다
선조 27년(1594) 4월 9일 파주 파발아의 식량을 서울에서 주도록 전교하다
선조 27년(1594) 11월 18일 왜군이 파주산성이 행주산성보다 더 공략하기 힘들
다고 말하다
선조 27년(1594) 12월 22일 홍치경(黃致敬)이 파주목사에 부임되다
선조 29년(1596) 11월 26일 권율이 파주산성을 군사요충지라고 말하다
선조 31년(1598) 2월 18일 사헌부에서 파주목사 심일휴의 가자를 개정해 달라
고 하다
선조 33년(1600) 3월 5일 파주 둔전관 박내성이 유숙하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
지 않다
선조 33년(1600) 3월 5일 파주 둔전관 박내성이 조관이나 사자들까지도 중국인
을 사주하여 쫓아내고 겁탈하다
선조 33년(1600) 3월 7일 중국관원 이승총이 박내성을 석방시켜 달라고 하다
선조 33년(1600) 10월 1일 희릉의 후보로 세군데 길지를 심사하다
선조 33년(1600) 10월 2일 희릉의 후보지로 교하현과 포천 가차리가 오르다
선조 33년(1600) 10월 5일 희릉의 후보지로 교하현이 가장 좋다고 하다
선조 33년(1600) 10월 7일 희릉을 교하현의 세 산 중 한 곳으로 결정하게 하다
선조 33년(1600) 10월 9일 희릉의 후보지에 대해서 신하들의 의견이 제각각이다
선조 33년(1600) 10월 10일 교하현에 새로 잡은 희릉의 자리에 이미 사대부들의
묘가 있다
선조 33년(1600) 10월 10일 어서 희릉을 정하라는 왕이 재촉하다
선조 33년(1600) 10월 11일 임금이 희릉의 자리로 이호민네 묘산을 추천하다
선조 33년(1600) 10월 17일 교하현 저현을 보토하는데 9,000명이 소요되다

- 선조 34년(1601) 6월 16일 황서(黃璽)가 파주목사에 부임되다
- 선조 34년(1601) 9월 30일 지평 김정일이 파주 마산참에 도착하자 목사가 식사
를 주어 먹은 죄로 파직을 청하다
- 선조 34년(1601) 12월 29일 권순(權恂)이 파주목사에 부임되다
- 선조 35년(1602) 1월 6일 권순이 파주목사에 부임되다
- 선조 35년(1602) 2월 12일 공정성의 시비가 많은 파주목사 이성록을 파직하다
- 선조 35년(1602) 2월 13일 유공신(柳拱辰)이 파주목사에 부임되다
- 선조 35년(1602) 2월 15일 사헌부가 전란의 소식을 듣고도 나오지 않은 성흔의
처벌을 청하다
- 선조 36년(1603) 10월 17일 폐기된 파주산성을 되살리다
- 선조 36년(1603) 10월 23일 목사를 교체하여 파주의 군기를 강화하다
- 선조 37년(1604) 6월 19일 허상(許鏗)이 파주목사에 부임되다
- 선조 37년(1604) 9월 26일 김공휘(金公輝)가 파주목사에 부임되다
- 선조 37년(1604) 10월 12일 왕도의 보호를 위해 파주 등지의 산성을 점차 수축하
자는 의견을 내다
- 선조 38년(1605) 7월 24일 파주지역에 풍수해을 입다
- 선조 39년(1606) 4월 10일 유희분이 파주에 가서 조사를 만나고 와서 보고하다
- 광해군 즉위년(1608) 4월 8일 관학 유생 이복 등이 성흔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상소하다
- 광해군 즉위년(1608) 4월 10일 이복이 성흔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재상소하다
- 광해군 즉위년(1608) 11월 22일 광주목사 신옹구가 성흔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상소하다
- 광해군 즉위년(1608) 11월 25일 전 서부참봉 배홍중이 성흔의 원통함을 풀어달라
고 상소하다
- 광해군 즉위년(1608) 12월 20일 최기남이 성흔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상소하다
- 광해군 1년(1609) 11월 17일 사헌부에서 욕심많은 파주목사 이세온을 보고하다
- 광해군 2년(1610) 1월 17일 파주산성의 중요성을 들어 수리하도록 하다
- 광해군 3년(1611) 3월 29일 부사용 한교가 성흔의 억울함을 상소하다
- 광해군 4년(1612) 11월 15일 이의신의 교하 천도에 대한 예조에서 회계하다

광해군 5년(1613) 8월 29일 두 차관이 따로 거쳐하고 싶어하다
광해군 7년(1615) 7월 3일 전 파주목사 한백겸이 졸하다
광해군10년(1618) 3월 13일 이시발이 파주목사로 부임된 후에야 인사를 하다
광해군10년(1618) 6월 14일 파주의 상번 군사에게 번을 서는 일을 면제하다
광해군10년(1618) 6월 16일 경기·강원 군사에게 파주산성을 지키게 하다
광해군10년(1618) 6월 19일 임금이 파주산성 등은 꼭 지켜야 할 곳이니 군사를
나누어 들여보내 지키도록 하다
광해군10년(1618) 7월 5일 파주·임진이 무너지면 경성도 위협하다
광해군10년(1618) 7월 9일 비변사에서 파주·임진을 지킬만한 계책을 논의하다
광해군12년(1620) 4월 25일 사헌부에서 파주산성의 군량을 훔친 김희를 사판에
서 깎아내라고 보고 하다

인조 1년(1623) 3월 25일 성흔이 관작을 회복하다
인조 1년(1623) 11월 10일 파주산성의 수비상태를 점검하다
인조 2년(1624) 2월 12일 적의 도강을 방비하지 못한 목사의 파직을 청하다
인조 2년(1624) 2월 14일 임진의 하탄을 방수하다가 달아난 파주목사 박효립을
군율에 따라 처치하다
인조 3년(1625) 10월 4일 선혜청의 부족한 쌀을 파주등지에서 충당하다
인조 5년(1627) 1월 17일 별장 한사람을 정해 파주산성을 수비하게 하다
인조 5년(1627) 7월 14일 파주지역에 비바람으로 곡식이 모두 쓰러지다
인조 5년(1627) 7월 17일 파주 장관 이순온·안신도 등은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도망칠 것을 맨 먼저 주창하다
인조 5년(1627) 11월 4일 병자호란때 도망간 안신도를 잡았으나 단단히 가두지
않아 온 집안이 도망하다
인조 6년(1628) 1월 7일 역변 소식을 듣고 파주등지의 군병들 자발적으로 나
오다
인조 6년(1628) 9월 29일 파주산성의 병력을 줄이다
인조 6년(1628) 10월 12일 파주산성에 우물이 부족하다
인조 10년(1632) 8월 3일 정지경(鄭之經)이 파주목사에서 파직되다
인조 10년(1632) 11월 2일 박노(朴魯)가 파주목사에서 판결사로 바뀐다

인조 11년(1633) 12월 18일 심기성(沈器成)이 파주목사로 감좌되다
인조 13년(1635) 5월 13일 유생 송시성이 성혼을 문묘종사하라고 상소하다
인조 13년(1635) 6월 19일 파주유생 유용태가 성혼을 문묘종사하라고 상소하다
인조 14년(1636) 3월 27일 장단의 한 면을 파주에 소속시키다
인조 18년(1640) 4월 1일 우의정 강석기가 세자를 모시고 벽체에서 지송할 것
을 청하다
인조 22년(1644) 1월 18일 세자가 장릉을 전알하다
인조 25년(1647) 5월 23일 파주지역에 서리가 내리다
인조 25년(1647) 11월 10일 파주의 승려 세명이 명나라의 국세회복을 빌다가 사
형을 당하다
인조 25년(1647) 12월 21일 형벌을 남용한 파주목사 윤형각을 파직하다
효종 즉위년(1649) 11월 16일 송준길이 궁실의 농장으로 파주백성들이 시달리다
고 상소하다
효종 2년(1651) 7월 10일 장릉에 은 광택이 있다는 파주에 사는 이원의가 보고
하다
효종 4년(1653) 2월 20일 파주 등에 전염병이 돌자 계를 올리고 약물을 보내다
효종 8년(1657) 11월 12일 임금이 송준길에게 성혼에 관하여 묻다
현개 즉위년(1659) 12월 1일 관학유생 윤항 등이 이이와 성혼을 문묘에 종사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현개 1년(1660) 2월 29일 국상 중에 술과 고기를 먹은 파주목사를 파직하다
현개 4년(1661) 6월 20일 이민적 등이 이이와 성혼을 신원해 달라고 청하다
현종 5년(1664) 1월 12일 차임 규정에 어긋나게 제수한 파주목사를 보고하다
현종 5년(1664) 2월 12일 파주의 노비 충현이 양반 처녀를 납치하여 며느리 삼
으려 하다
현개 5년(1664) 6월 29일 관용 물품을 끌어다 쓴 전 파주목사
현종 6년(1665) 2월 2일 파주지역에 도적이 날뛰다
현종 6년(1665) 4월 23일 파주지역에 밤툴만한 우박이 내려 보리·밀·목화가 손
상을 입다
현개 7년(1666) 2월 13일 민폐를 끼친 파주목사 유정을 파직하다

- 현종 8년(1667) 11월 8일 청렴치 못한 파주목사 박유동의 파직을 청하다
현종 10년(1669) 5월 11일 파주지역에 비둘기 알만한 크기의 우박이 내리다
현개 11년(1670) 1월 29일 청 사신이 파주에 도착했으나 임금이 편찮아 나아가
맞이하지 못한다는 뜻을 전하다
- 현종 11년(1670) 2월 1일 임금이 발가락 병을 평계로 사신에게 절하지 않다
숙종 1년(1675) 5월 25일 파주산성의 지도를 그려 올리다
숙종 6년(1680) 9월 21일 대신들이 파주에 와 있는 청 사신을 청대하다
숙종 8년(1682) 5월 20일 파주로 예관을 보내 성혼의 제사를 지내다
숙종 8년(1682) 8월 20일 파주 등지에 방출했던 군량미를 강화도로 수송하다
숙종 10년(1684) 6월 15일 파주 백성이 조맥을 갚지 못해 목을 매다
숙종 11년(1685) 11월 20일 남구만이 파주에 가 교영하는 일을 불허해달라고 척
사에게 청하였지만 허락하지 않다
- 숙종 12년(1686) 12월 7일 홍산의 유학 방숙제가 장릉을 옮겨야 한다는 뜻을 상
소하다
- 숙종 12년(1712) 11월 1일 경기도어사가 파주목사 이보의 선정을 아뢰다
숙종 13년(1687) 10월 9일 장릉에 행행하다
- 숙종 19년(1693) 8월 28일 임금이 파주 행궁에 멀을 때 행사 진행을 잘못하여
목사가 곤장을 맞다
- 숙종 20년(1694) 10월 19일 공릉의 행행을 치른 파주백성의 적곡을 감해주다
숙종 20년(1694) 11월 25일 좌의정 박세채가 파주에 가서 나오지 않다
숙종 21년(1695) 2월 5일 좌의정 박세채가 졸하다
- 숙종 21년(1695) 7월 28일 파주에 7월 28- 8월 2일까지 밤마다 서리가 내리다
숙종 23년(1697) 7월 12일 파주에 살고 있는 고 장준일의 첨 유씨가 적자인 장
위와 서로 소송하다
- 숙종 27년(1701) 7월 14일 파주지역에 병충해로 곡식이 피해를 입다
숙종 27년(1701) 12월 20일 능역에 사역한 파주의 대동미를 탕감하다
숙종 28년(1720) 8월 2일 파주목 시장의 분정을 불허하다
- 숙종 31년(1705) 1월 9일 이동언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이언경이 상소하다
숙종 31년(1705) 10월 20일 이동언 사건에 대한 각 사람마다의 진술이 틀려 다시

살피게 하다

숙종 31년(1705) 11월 25일 초상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조택억을 벌주다

숙보 32년(1706) 4월 16일 이상언이 서형 이동언의 억울함을 호소하다

숙종 34년(1708) 5월 26일 파주의 유학 이중영 등이 채명윤과 임수간이 선현을
모욕한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다.

숙종 38년(1712) 11월 10일 치적도 없이 승진한 파주목사에 대해 논하다

숙종 39년(1713) 5월 28일 자운서원에 합향했던 김장생과 박세채의 배향에 대한
논의하다

숙종 39년(1713) 9월 2일 북한산성의 환곡을 파주·교하 등에 나누어 주다

숙종 44년(1718) 2월 1일 파주 등의 대동미를 줄여달라고 청하다

영조 1년(1725) 4월 25일 송시열을 비난한 파주 유생 이의천

영조 1년(1725) 5월 11일 임금이 파주목사 정내주의 치적을 칭찬하여 상주다

영조 1년(1728) 11월 2일 파주목사와 교하현감이 재황이 있었으니 세를 진휼하
는 밑천으로 삼게 해달라고 하다

영조 4년(1728) 12월 19일 파주의 환곡을 탕감하다

영조 4년(1731) 3월 19일 임금이 파주목사에게 임진별장도 함께 맡으라고 하다

영조 5년(1729) 1월 26일 파주에 효장세자를 장사지내다

영조 5년(1729) 7월 3일 땔나무를 파주와 금천에서 교대로 바치게 하다

영조 7년(1731) 8월 17일 어가가 장릉에 이르다

영조 7년(1731) 3월 16일 장릉에 뱀이 나타나다

영조 7년(1731) 5월 17일 영릉 때문에 고생한 교하 백성들에게 돈을 내리다

영조 7년(1731) 8월 4일 새 능을 정한 교하현을 군으로 승격하다

영조 7년(1731) 9월 19일 산릉으로 힘든 파주목사 이평에게 상을 내리다

영조 7년(1731) 9월 27일 왕이 파주 행궁에서 유숙하고 제사를 행하다

영조 7년(1731) 10월 19일 파주만 세를 감해주지 않았다고 파주유학이 상소하다

영조 7년(1731) 12월 9일 늙어서 송사를 못 보는 파주목사 홍옹몽을 파직하다

영조 10년(1734) 11월 13일 파주지역에 화적과 호환이 극성을 부리다

영조 16년(1740) 8월 1일 능행 준비를 잘못한 파주목사 이사윤을 감처하다

영조 16년(1740) 8월 29일 후릉에 나아가기 위해 임금이 파주에 이르다

- 영조 16년(1740) 8월 30일 임금이 파주에서 출발하여 도중에 성흔의 묘를 보다
- 영조 16년(1740) 9월 5일 파주의 환곡과 모곡을 감면하다
- 영조 16년(1740) 9월 26일 성수침과 성수종을 파주 파산서원에 배향하다
- 영조 21년(1745) 4월 5일 좌의정 송인명이 파주 등은 노비가 적어 사객 접대가 어렵다고 아뢰다
- 영조 21년(1745) 8월 21일 파주목사를 불러 농사의 형편을 물어보다
- 영조 22년(1746) 12월 27일 파주에 묻힌 황보인의 관작을 추복하다
- 영조 25년(1749) 2월 11일 영조가 화평옹주 묘를 들러보고 소령묘에 이르다
- 영조 28년(1752) 1월 21일 효순왕후가 37세로 세상을 떠나다
- 영조 30년(1754) 2월 1일 파주목사는 포상받고 교하군수는 승직되다
- 영조 30년(1754) 11월 28일 파주 관내인 장산에 별장을 두다
- 영조 31년(1755) 8월 14일 병조판서 홍봉한이 방어를 위해 파주목사를 방어사로 승격시키라고 보고하다
- 영조 32년(1756) 10월 15일 사헌부에서 심한 형벌을 가한 파주목사 이언소의 파직을 청하다
- 영조 33년(1757) 5월 23일 역이 많아 파주는 양전을 미룬다
- 영조 35년(1759) 1월 6일 김이형(金履亨)이 파주목사에 부임되다
- 영조 36년(1760) 8월 15일 소령원 수봉관을 파면하다
- 영조 36년(1760) 10월 1일 임금이 소령원의 사초를 다시 입히다
- 영조 37년(1761) 4월 16일 파주시장이 혁파되다
- 영조 39년(1763) 2월 29일 파주 열부 문씨를 정려하다
- 영조 40년(1764) 5월 14일 파주의 1개 면을 군대로 편성하다
- 영조 40년(1764) 10월 13일 홍봉한이 파주 등지의 수비책을 올리다
- 영조 40년(1764) 10월 19일 원중회(元重會)가 파주목사에 부임되다
- 영조 40년(1764) 11월 9일 구 장릉의 토지를 개간하게 하다
- 영조 41년(1765) 2월 23일 파주의 심씨와 윤씨네가 산송을 벌이다
- 영조 42년(1766) 4월 29일 파주 방어사를 의정부에서 추천하게 하다
- 영조 43년(1767) 7월 13일 임금이 직접 소령원의 향을 받다
- 영조 43년(1767) 7월 17일 임금이 직접 소령원의 향을 전하다

- 영조 45년(1769) 9월 22일 파주목사 이윤덕(李潤德)이 파직되다
- 영조 46년(1770) 1월 12일 파주목사 장지풍(張志豐)이 파직되다
- 영조 46년(1770) 9월 2일 임금이 소령원에 제사를 지내고 능원관을 승진시키다
- 영조 50년(1774) 1월 22일 영남의 상민이 소령원을 능으로 봉하기를 청하다
- 영조 50년(1774) 3월 27일 사헌부에서 파주목사 권식 등을 죄줄 것을 청하다
- 영조 50년(1774) 8월 12일 유생 남궁옥 등이 상소하여 소령원의 추승을 청하다
- 영조 51년(1775) 2월 11일 홍화보(洪和輔)가 파주목사에서 승지로 부임하다
- 영조 127, 영조대왕행장 16년 9월에 왕이 파주를 지날 때 성흔과 이이의 묘에 치
제하게 하셨다.
- 정조 4년(1780) 9월 3일 임금이 영릉에 친히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파주에 머물렀다
- 정조 2년(1778) 7월 20일 윤면동이 서울방어를 위해 파주고을을 혜음령 위로
옮기라고 상소하다
- 정조 2년(1778) 8월 1일 임금이 가을 능침 전알시 소령원에 배알하고자 하다
- 정조 2년(1778) 8월 3일 임금이 능행에 주정을 없도록 명하다
- 정조 2년(1778) 8월 20일 정조가 소령원에 배알하다
- 정조 2년(1778) 11월 2일 두산이 소령원의 요를 훔쳐가다
- 정조 3년(1779) 6월 18일 정치달의 아내(화완옹주)를 교동부로 안치시켰다
- 정조 4년(1780) 9월 4일 파주부의 환곡 이자를 특별 텡감하다
- 정조 5년(1781) 3월 7일 공물을 횡령한 전파주목사 이장한을 추문하다
- 정조 7년(1731) 7월 1일 파주가 가뭄으로 농사가 어려워지다
- 정조 7년(1783) 1월 7일 파주에 있는 정치달의 처를 멀리 귀양보내라고 조시
위 등이 아뢰다
- 정조 7년(1783) 5월 23일 진홀청을 설치하여 파주 등지를 진홀하다
- 정조 7년(1783) 9월 22일 임금이 파주의 대동미를 전미로 대신하다가 하다
- 정조 8년(1784) 4월 20일 파주 등지의 진홀을 마치다
- 정조 8년(1784) 4월 21일 진홀에 공이 큰 파주목사 이윤빈에게 말을 내리다
- 정조 8년(1784) 8월 16일 임금이 영릉에 제사지내러 가다
- 정조 8년(1784) 8월 19일 파주의 둑은 환곡 등을 정지시키고, 교하의 둑은 환곡

도 기일을 물려주도록 하였다

정조 8년(1784) 10월 24일 파주에 안치된 정치달의 처를 엄격히 경비하지 못하여 무뢰배들과 교통하다

정조 8년(1784) 10월 24일 파주의 죄인 이규명, 정달원, 이동빈, 이지령 등을 신문하여 벌주다

정조 9년(1785) 2월 25일 파주 유학 조중길 등이 상소하여 성수총을 파산서원에 다시 배향할 것을 청하였다

정조 9년(1785) 7월 26일 유학 조익이 파주를 서울의 4보 중 하나로 삼으라고 상소하다

정조 9년(1785) 11월 6일 파주목사 오재휘를 승진시키다

정조 10년(1784) 11월 11일 파주의 열녀에게 정문을 하사하다

정조 10년(1786) 2월 23일 파주에 안치된 정치달 처를 문병하게 하였다

정조 10년(1786) 4월 26일 비변사에서 파주 삼릉 능군의 폐단을 아뢰다

정조 11년(1787) 5월 23일 파주목사에 흥인목을 등용하다

정조 12년(1788) 7월 19일 장용영이 새로 정한 향군절목을 올리다

정조 13년(1789) 2월 13일 장릉에서 작현례를 행하다

정조 13년(1789) 2월 13일 파주 행전에서 장관들에게 활과 총 쏘기를 시험하고 시상하다

정조 13년(1789) 2월 14일 파주에 군량미 지원과 함께 목은 환곡을 텅감하다

정조 14년(1790) 2월 13일 파주의 유생 정재간이 백인걸·이아·성흔 등의 사당문제를 상소하다

정조 14년(1790) 9월 2일 경기관찰사 김사목이 가마를 가지고 파주에가 정치달의 처를 싣고 서울로 올라가다

정조 14년(1790) 9월 4일 이의봉이 안치된 파주목을 이탈한 정치달의 처를 처벌하라고 상소를 올리다

정조 14년(1790) 9월 7일 파주목사의 파직을 청한 경기관찰사를 파직하다

정조 14년(1790) 9월 10일 박종악(朴宗岳)이 파주목사에 부임하다

정조 14년(1790) 9월 29일 회시에 응시한 파주 서민을 특별히 용서해 주다

정조 14년(1790) 12월 24일 임진나룻배 관리하는 자리를 금위영에 소속시키다

- 정조 15년(1791) 6월 9일 파주산성 축조를 허락하지 않다
- 정조 15년(1791) 9월 2일 이민보(李敏輔)가 파주목사에 부임하다
- 정조 16년(1792) 2월 24일 임금이 영릉으로 가는 길에 파주의 민폐를 살피다
- 정조 16년(1792) 2월 27일 군대 사열시 파주목사에게 시상하다
- 정조 16년(1792) 12월 15일 파주의 우영을 총용청의 중영으로 개칭하다
- 정조 17년(1793) 1월 12일 장용청의 후초가 파주에 설치되다
- 정조 17년(1793) 9월 18일 직무를 기피한 파주목사 이백연을 석방하다
- 정조 18년(1794) 3월 28일 파주 아전이 왕명을 받드는 관원에게 행패를 부리다
- 정조 18년(1794) 11월 16일 어사가 파주목사가 백성들이 낸 수미를 퇴짜놓아 원
망의 소리가 높다고 보고하다
- 정조 19년(1795) 3월 11일 속량과 귀양자의 소재 불명으로 파주목사 홍용진을
거제부에 충군하다
- 정조 19년(1795) 3월 11일 왕명을 받은 일행을 교란한 파주목사를 충군시키다
- 정조 19년(1795) 3월 14일 의금부가 정치달의 처를 파주목 배소로 돌려보낼 것
을 아뢰다
- 정조 19년(1795) 3월 28일 정치달의 처를 다시 파주목의 배소로 보내다
- 정조 19년(1795) 8월 5일 파주목사 서영보(徐英輔)가 유임되다
- 정조 21년(1797) 8월 8일 총용청의 파주 능행 담당을 면제하다
- 정조 054 부록 정조대왕행장 소령원을 배일하다
- 순조 2년(1802) 2월 7일 파주의 초군을 수어영으로 이속시키다
- 순조 2년(1802) 9월 12일 파주의 둔토를 군역청에 소속시키다
- 순조 5년(1805) 12월 16일 파주목사 심광업(沈公燾)이 감죄되다
- 순조 6년(1806) 7월 13일 임진왜란 때 전사한 전 파주군수를 표절사에 제향하다
- 순조 8년(1808) 8월 9일 임금이 영릉·순릉·공릉에 제사지내다
- 순조 8년(1808) 12월 17일 파주목사 이인식(李寅植)이 감죄되다
- 순조 12년(1812) 3월 13일 예조에서 파주의 충·효·열의 문서를 보고하다
- 순조 27년(1827) 3월 5일 원행시에 왕세자 의식을 소령원 간인식의 예에 따르
도록 하다
- 순조 즉위년(1800) 9월 21일 파주목사 김점운(金漸運)이 감죄되다

현종 8년(1842) 3월 10일 임금이 파주목 행궁에서 유숙하다
현종 13년(1847) 2월 21일 임금이 파주목 행궁에서 유숙하다
현종 13년(1847) 2월 22일 왕이 장릉을 전배하다
현종 13년(1847) 2월 22일 임금이 장릉에 들러 전배하고 파주목 행궁에서 유숙
하다

철종 1년(1850) 3월 10일 임금이 파주목 행궁에서 유숙하다
철종 5년(1854) 3월 10일 임금이 파주목 행궁에서 유숙하다
철종 6년(1855) 8월 4일 임금이 파주목 행궁에서 유숙하다
철종 14년(1861) 7월 7일 태풍에 무너진 파주목의 가호에 홀전을 배풀었다
고종 3년(1866) 10월 15일 이양선 출몰에 대비해 파주에도 진을 치다
고종 4년(1867) 1월 25일 파주목의 전세를 대납하도록 하다
고종 9년(1872) 3월 1일 임금이 제릉과 후릉 행차한 후 파주목 행궁에서 유숙
하다
고종 9년(1872) 3월 7일 임금이 파주목 행궁에서 유숙하다
고종 19년(1882) 9월 10일 파주의 전결 납부기한을 연기하다
고종 28년(1891) 8월 30일 파주의 혜음령에 도적의 출몰이 잣다

찾아보기

- ㄱ
- 간인식 293, 313
 - 강무 69, 120, 299
 - 거북선 17, 259
 - 고두례 172
 - 공릉 254, 256-258, 263, 297, 308, 313
 - 공서린(孔瑞麟) 44-45, 301
 - 공수위전 110, 296
 - 공신전 112, 299
 - 광택 270, 307
 - 교하천도 70, 306
 - 군량미 59, 115, 160, 253, 308, 312
 - 군역청 30, 313
 - 권순(權恂) 33, 305
 - 권식(權式) 62, 311
 - 금위영 22, 25, 58, 312
 - 금표 94-97, 299-300
 - 금표비 94-95
 - 김공휘(金公輝) 33, 305
 - 김문영(金文永) 69, 295
 - 김섬(金錫) 19, 301
 - 김수(金洙) 48, 153-154, 302
 - 김약균(金若鈞) 42, 300
 - 김원신(金元信) 41, 299
 - 김옹벽(金應璧) 45, 301
 - 김이형(金履亨) 33, 310
 - 김장생(金長生) 234-235, 309
 - 김점운(金漸運) 33, 313
 - 김효동(金孝同) 74, 298
 - 김희(金緝) 76-77, 306
- ㄴ
- 남구민(南九萬) 176, 237-238, 306
 - 남섭원(南燮元) 81-82, 300
 - 노계산(盧戒山) 73, 298
 - 노준(盧俊) 33, 303
 - 노필(盧弼) 234, 296
 - 능원관 289, 311
 - 능행 26, 60, 116, 290, 292, 309, 311, 313
- ㄷ
- 대동미 116, 125-128, 308-309, 311
 - 대행왕비 283, 300
 - 대홍산성 135, 303
 - 둔토 30, 313
- ㅁ
- 명화적 72, 296
 - 모곡 126, 128, 310
 - 문묘종사 220, 237
 - 민충원(閔忠源) 36, 297

■

- 박근(朴瑾) 37-39, 297
박내성(朴乃成) 49-50, 76, 304
박노(朴魯) 33, 307
반당 165, 300
반인 165, 169
박도(朴禱) 35, 80, 180, 295
박석산(朴石山) 73, 298
박세채(朴世采) 234, 240, 257, 272, 308-309
박영창(朴永昌) 42, 300
박유동(朴由東) 57, 308
박종악(朴宗岳) 33, 63, 312
박효립(朴孝立) 53, 306
백인결(白仁傑) 187-198, 302, 312
백정 161, 297
벽체역 138, 161, 251, 298, 303
별사전 112, 299
별장 21, 23-25, 27, 60, 156, 243, 261, 306, 309-310
별창 122, 300
병자호란 54, 131, 264, 306
보곡현 94, 299
봉성현 11, 295
북한산성 21-22, 28, 59, 252, 309
- ▲
- 사랑금(思郎今) 244
사사전(寺社田) 112
사초 288-289, 310
산릉 59, 116, 268, 272, 280, 285, 309
산전 118, 297
서리 91, 108, 236, 301, 307-308
서영보(徐英輔) 33, 313
- 석회 110-111, 118, 296
선위례 161
선혜청 56-57, 114-115, 125, 306
성수종(成守琮) 197, 226, 310, 312
성수침(成守琛) 185-187, 197-198, 209, 226, 310
성율(成璣) 45, 301
성훈(成渾) 51, 196-229, 232, 236-238, 254, 302-308, 310-312
세명(世明) 175, 307
소령원 287-292, 310
송선충(宋善忠) 33, 250, 298
쇄마 149, 152, 304
수륙재 99-104, 106, 296
수미 67, 106, 115, 313
수봉관 288, 310
수어영 26, 313
순릉 254-256, 258-259, 263, 298, 313
술사(術士) 272
시장(柴場) 114, 125, 308, 310
심공엽(沈公燁) 33, 313
심광언(沈光彦) 46, 301
심기성(沈器成) 33, 307
심대(沈岱) 134, 242, 303
심의겸(沈義謙) 188-189, 209, 234, 236, 303
심일휴(沈日休) 48-49, 304
심종(沈宗) 69-70, 295
-
- 악병 97-99, 103, 106-107, 296
안신도(安信道) 53, 306
안위(安璗) 46-47, 301

- 양계벽(梁季璧) 42, 300
양귀생(梁貴生) 54, 307
양전(量田) 61, 114, 116, 310
어제어월비 63
여윤철(呂允哲) 41, 299-300
열녀 240, 242-243, 312
영릉 63-64, 258-259, 261-263, 309, 311-313
오도성 15, 115, 295
오재휘(吳載徽) 63, 312
우물 112, 157, 159, 193, 302, 306
우박 108, 120, 295, 299-302, 307-308
원중회(元重會) 33, 310
원평(原平) 13-16, 97-98, 100, 103-104,
106-107, 117-118, 296-297
유공신(柳公신) 33, 305
유숙(柳淑) 33, 301
유정(柳頤) 56-57, 307
유탄연(柳坦然) 55
윤강원(尹剛元) 245, 302
윤은로 244
윤지임(尹之任) 83, 301
윤필상(尹弼商) 19, 162-163, 240, 297
윤형각(尹衡覺) 54-55, 307
윤훈(尹勳) 37, 297
의병 133-134, 138, 141, 146-147
이계기(李啓基) 36, 297
이계량(李季良) 244, 298
이광(李士宏) 59, 309
이규명(李揆明) 79, 312
이동빈(李東彬) 79, 312
이동언(李東彦) 84-88, 125, 308-309
이민보(李敏輔) 33, 64, 263, 312
이방간 69, 295
이백연(李柏然) 64, 313
이복희 313
이사윤(李思胤) 60, 309
이성록(李成祿) 51, 305
이세온(李世溫) 52, 305
이숙무(李叔武) 73, 298
이순례 302
이순온(李純溫) 53, 306
이시발(李時發) 52, 306
이양선 30, 314
이연소(李彦燭) 60, 310
이연손(李延孫) 35, 296
이용수 302
이원(李瑗) 153, 179, 181
이원(李原) 178
이원(李源) 270, 307
이윤(李掄) 39-40, 299
이윤덕(李潤德) 33, 310
이윤빈(李潤彬) 128, 311
이의천(李倚天) 71, 309
이이(李珥) 191-201, 206, 209, 215-216,
219-220, 222-238
이인식(李寅植) 33, 313
이장한(李章漢) 62, 311
이정(李挺) 74, 298
이중영(李重英) 70, 309
이지(李芝) 33, 301
이지형(李之衡) 79, 312
이차중(李次仲) 73, 298
이평(李樞) 33, 296
이희보(李希輔) 46, 301
임진 13, 16, 19-23, 27, 53, 60, 65, 94, 110,
131-132, 140, 146-147, 152, 155

- 임진별장 59, 309
 임진왜란 131, 204, 210-212, 219, 242
- ㅈ**
 자성왕비 14, 297
 자운서원 227, 234-235, 240-309
 자화동 73, 298
 작현례 275, 312
- 장릉 14, 25-27, 60, 259, 274, 310
 장산 21-22, 26-27, 60, 159, 274, 310
 장용청 24, 313
 장지풍(張志豐) 330, 311
 재인 161, 297
 저현 278-279, 281-283, 305
 적곡 57, 257-258, 292, 308
 전미 127, 311
 전세 128, 314
 전염병 97, 107, 296-297, 307
 절부 240, 296
 정내주(鄭來周) 58, 309
 정달원(鄭達源) 79, 312
 정려 242-243, 310
 정문 242, 299
 정문창(鄭文昌) 33, 299
 정여립 199-200, 303
 정재간(鄭在簡) 196, 312
 정치경(鄭之經) 33, 307
 정치달 쳐(화완옹주) 89-93, 311
 조공 171-172, 304
 조광조(趙光祖) 185, 187, 191, 209, 302
 조만안(趙萬安) 34-35, 296
 조맥 125, 308
 조운선 115, 296
- 주정 290, 311
 중국군 135-137, 140-147, 149, 170, 303-304
 지진 108, 299-302
 직전 112, 253, 299
 진휼 35, 39, 57, 59, 114, 122, 127-128, 138, 274, 295, 305, 309, 311
 진휼청 127-128, 311
- ㅊ**
 채세걸(蔡世傑) 43, 301
 초군 26, 263, 313
 총용청 21-26, 28, 159-160, 313
 최산(崔山) 73, 298
 최산장(崔山長) 73, 298
- ㅍ**
 파발아 124, 172, 304
 파산서원 186, 188, 197, 199, 226, 310, 312
 파주산성 76-77, 150-158, 160, 304-306, 308, 312
 파주시장 114, 310
 풍수해 108-119, 298, 305
- ㅎ**
 하맹순(河孟詢) 39, 298
 하탄 53, 306
 한백겸(韓百謙) 52, 306
 행궁 249-250, 252, 263, 272, 274, 276, 297, 308-309, 313-314
 행전 216, 253, 312
 향군절목 29, 312
 허눌(許訥) 296, 33

- 허상(許鏘) 33, 305
허완(許琬) 33, 296
혜음령 22, 31, 140, 143-144, 303, 311, 314
호역 242
호환 77-78, 309
홍가신(洪可臣) 33, 52, 303-304
홍봉한(洪鳳漢) 21-22, 26-27, 60, 79, 274, 310
홍용진(洪龍鎮) 67, 313
홍인득(洪仁默) 63, 312
홍치경(黃致敬) 33, 304
홍화보(洪和輔) 33, 311
화적 72, 77-78, 296, 309
환곡 21, 35-36, 61, 118, 125-126, 128, 253, 295-296, 309-310, 312
활민원 98, 296
황보인(皇甫仁) 101-102, 246, 247, 310
황서(黃曙) 33, 305
황정식(黃廷式) 33, 303
황정조 124, 304
황희(黃喜) 35, 97, 177-180, 184-185, 295-296
효순왕후 258, 260, 310
효자 240, 242, 251, 296, 301
효장세자 258, 260-261, 309
후릉 185, 225, 249-250, 252, 256, 310, 314
흘전 128, 314
희릉 276-277, 284-285, 301, 304

파주실록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파주 관련 사료

발행일 2001년 11월 15일

발행처 파주시·파주문화원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산 31번지

전화 (031) 941-2425

책임편집 고수연

기획·편집 도서출판 큰기획(02-2268-6832)

© 파주시·파주문화원, 2001

* 비매품

ও

ପ୍ରାଚୀ

